

# 저널리즘 측면에서 바라 본 '헤드라인 저널리즘'

이 준 호

동의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조
- 미(美)시간 주립대학 언론학 석사
- 미(美)남캘리포니아대 언론학 박사
- 부산영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부산경남언론학회 총무이사,  
동명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저서 및 논문 : 『보도자료와 언론보도 프레  
이밍의 대상과 기능에 관한 비교연구』,  
『신문기사 제목 무엇이 문제인가? - 부동산  
과 시학법 기사를 중심으로』 외 다수

## I. 서 론

기사의 제목이 지니는 기능과 영향력에 관한 실무적, 학문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그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 대상은 전통적인 저널리즘 뿐 아니라 온라인 뉴스서비스의 비교적 새로운 형태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사의 제목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 차원에서 또는 학문적 차원에서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그것은 제목의 역할과 비중이 과거 전통적 저널리즘에 비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윤영태·이준호, 2006).

최근 우리나라 뉴스미디어 현상에 관한 논의와 연구의 주요 분야로서 급부상하고 있는 대상은 일간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포털사이트 등의 뉴스, 기사제공 매체들의 제목(헤드라인)의 특성, 기능, 이용자들의 뉴스 소비패턴의 변화 등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기사의 제목과 본문이 일체의 단위로 여겨지던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기사 제목이 지닌 독립적인 의미와 영향력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새로운 맥락에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신문과 온라인 뉴스미디어에서 다루는 기사 제목과 관련하여 이들 매체와 정치적, 상업적 경쟁관계에 있는 방송사의 비판적 논의와 더불어 학계의 관심과 연구도 아울러 일어나고 있다.<sup>1)</sup>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는 배경으로는 우선 미디어 환경 변화와 여가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른 뉴스 이용자들의 뉴스 소비행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뉴미디어 환경과 미디어 간 경쟁이 본격적 궤도에 오른 지난 수년간 국내 미디어 이용자들의 신문열독 시간과 소비 지출액이 급속히 감소해오고 있으며, 그 대신 인터넷 기반의 뉴미디어와 이동통신 등 정보통신 미디어 이용에 투입되는 시간적, 금전적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신문 등 뉴스 기사를 헤드라인 위주로 신속하게 읽음으로써 본문까지의 의미 파악과 해석

1) KBS 미디어포커스, 2006. 11. 18. 자. 「신문사 입맛 따라 제각각 ... 본질 왜곡하는 신문 기사 '제목 달기」.  
KBS 스페셜, 2006. 12. 10. 자. 「언론의 숨은 얼굴, 기사제목」.  
정태철(1995a); 조수선(2005); 김희진(2005); 이희완(2006); 윤영태·이준호(2006); 임동욱·정미정(2006) 등.

미디어 환경 및 수용자의 미디어 이용 행태가  
달라지면서 기사 제목이 기사 선택 및 열독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떠올라

을 하게 되는 경향이 강해진 것이다.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유형의 기사 제목이 가지는 특성과 기능이 단순히 기사를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형식적이고 부수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기사 내용을 포함하는 기사 전체의 인지방식, 현실에 대한 인식과 평가 그리고 여론형성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의 증폭이 또 다른 배경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들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로서 독자에 대한 뉴스의 일반적 기능과 영향력을 설명하고 있는 스키마(schema)이론, 사회적 현실구성론(construction of social reality), 프레이밍(framing: 틀 짓기) 이론 등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이 이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사 제목이 가지는 광범위한 함축적 의미(implication)를 저널리즘의 측면에서 다루어보려고 한다. 미디어 이용자들이 뉴스읽기의 과정에서 기사 제목의 소비와 의존성을 증가시켜오고 있는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고, 기사 제목이 가지는 기능들을 정리해본 다음, 신문을 중심으로 뉴스 기사 제목이 가지는 의미와 영향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저널리즘 관련 연구들과 이론들을 토대로 정리하고 논의해보고자 한다.

## II. 기사제목의 소비행태 변화

현대사회의 미디어 기술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더불어 현대의 미디어 환경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와 함께 미디어를 이용하는 수용자 역시 변화하고 있다. 미디어 수용자들의 미디어 이용 습관이 바뀌고 있는 추세는 이미 여러 연구들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며, 매체별 수용자의

미디어 소비시간은 과거와 비교할 때 확연히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현상이 신문을 비롯한 뉴스 소비에 투자하는 수용자의 시간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신문을 정기 구독하는 인구의 감소와 함께 신문을 읽는 시간인 열독률 역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한국언론재단, 2004).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소비자 행태 조사에 의하면, 평일의 일일 평균 신문 열독시간은 1999년 46분에서 차츰 줄어들어 2006년에는 22분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토요일의 경우는 더 심해서 열독시간이 45분에서 18분으로 3분의 1 가까이 줄어들었음을 보고하고 있다(2006, p. 155). 이러한 현상은 그 이전에도 지속되어 왔다. 1984년에서 1992년 사이에 10분 미만의 신문열독자의 비율은 0.8%에서 25.1%로 대폭 증가했고, 1시간 이상 열독자의 비율은 61.6%에서 11.4%로 급락했다(신문과 방송, 1992년 10월호, p. 45, 정태철(1995a), p. 204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열독률 감소는 신문 전체를 다 읽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경향은 기사의 제목이 기사를 선택하고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미디어 수용자는 관심 있는 기사일 경우 완독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주로 제목만 읽거나 또는 기사 앞부분만 읽는 경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필자의 미디어 이용 및 채택 관련 연구(2003)에서 실시했던 서울, 수도권과 부산지역의 1,500명에 대한 설문조사인데, 응답자의 15.3%가 신문을 읽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신문 열독자 중 20.7%가 제목만 읽는다고 답했고, 30.8%는 제목을 보고 관심이 가면 읽게 된다는 응답을 했다. 따라서 2003년 기준으로 신문 열독자들의 절반 이상

이 제목만 읽거나 제목에 이끌려 기사 본문을 읽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신문의 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 신문, 포털사이트, 무료일간지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뉴스제공자 등장에서 보듯이 뉴스 제공의 채널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미디어 수용자가 매일 수많은 기사를 모두 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비용이 덜 들거나 새로운 미디어로 이동하는 현상도 생기고 있다. 권호영(2007)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간신문에 대한 소비지출액은 2000년의 월평균 3,320원에서 2005년 월평균 2,450원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시간재할당가설<sup>2)</sup>에 따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디어 소비 시간을 빠르게 재조정하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 기존 미디어에 대한 비용지출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수용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 현대의 미디어 환경은 수용자에게 시간과 비용 면에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미디어 수용자는 개인적 관심에 따라 뉴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선택은 무엇보다도 기사의 제목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제목소비자(shopper of headlines)의 증가라는 현상(정태철, 1995a)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 III. 기사 제목의 개념과 기능

#### 1. 기사 제목의 정의와 특성

한국편집기자협회가 제시하는 신문기사 제목(headline)의 정의에 따르면 “헤드라인은 신문이나

신문 기사의 앞에 내용을 가리키거나 요약하기 위해 굵은 활자로 붙인 낱말이나 낱말군(群)”이며,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고 대표하되 독립적인 의미와 기능을 갖춘 독특한 표현 양식”이다. 따라서 “신문의 제목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 소설 등의 상징적 제목의 의미와 다르다”는 것이다(박선흥 외, 2001, pp. 56-57). 즉 제목은 기사의 내용을 함축하는 것이 우선이며, 경우에 따라 기사에 성격을 부여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기사 제목은 기사의 내용을 벗어나 작위적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되지만 편집자의 가치관과 기사 내용 및 사건의 진실에 대한 재해석이 제목을 통해 독자들에게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편집기자협회는 “신문의 제목은 기사를 요약하고 있으나 기사의 전문(前文)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요약된 기사이고 압축된 사건의 기술이라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제목은 기사 전체를 진술하는 완전한 문장이 되어야 한다”(박선흥 외, 2001, p. 56)고 전제하면서 동시에 신문 기사 제목이 가지는 파생적인 기능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기사 제목이 기사의 내용과 구별되는 주요 특성으로는 이재경(2004)이 지적한 바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기사 제목은 편집데스크가 주로 담당하는 몫이다. 제목의 중요도가 클수록 편집국장과 편집국 간부들이 신중히 상의해서 결정한다. 대부분의 경우 제목은 편집부장과 지면별 편집담당자가 뽑는 것이 관행이다. 따라서 제목 결정에 있어 취재기자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취재기자는 기사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제목이 결정되어졌을 때 전체 기사 내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2) 이재현(2005)에 의하면, 새로운 미디어의 도입은 생활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어 시간의 재배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특히 인터넷 이용이 생활시간의 변화에 영향을 주어 전통적 미디어의 이용시간에 변화를 유발한다는 가설은 뉴스매체들 간의 경쟁관계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 기사의 제목은 다양한 기능적 특징과 역할 지니고 있어

왜곡하지 않는가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기사쓰기와 제목달기는 이처럼 분리된 작업인 것이다(p. 42).

### 2. 기사제목의 기능

기사 제목의 기능적 측면을 분석해보면, 제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신문독자의 입장에서 신문읽기의 과정을 고려했을 때, 우선 기사 제목은 기사읽기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대부분의 독자는 제목을 먼저 읽고 기사의 본문읽기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목만 읽고 기사의 내용과 방향을 대략 파악하고 나서 본문읽기로 접어들지 않는 경우도 많다. 본문까지를 읽고 나서도 기사 내용에 대한 기억 및 심리적, 행동적 변화의 특성 역시 제목의 방향성에 의해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된다.

제목은 또한 기사의 중요도와 현저성(salience)을 명백히 나타내어주는 기준이 된다(뉴스가치 평가기능). 여러 겹의 다행(多行) 제목을 달고 큰 활자로 주 제목을 부여하는 경우, 실제 본문의 기사량은 적더라도 독자는 이 기사를 크고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신문 지면에서 제목이 차지하는 크기 자체와 공간의 비중 등도 독자들에게 미치는 인지적, 심리적 영향력의 측면에서 볼 때 제목의 내용과 더불어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할 부분이다. 실제로 스포츠 신문 1면 기사는 제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 이상이며, 일간지, 주간지 등도 3분의 1 정도로 기사 제목의 비중이 양적으로 커지는 추세이다. 즉 신문 독자들의 시각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신문 기사의 제목이 차지하는 역할과 기능은 지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재경, 2004).

웨슬리(Westley, 1980)는 보다 구체적으로 제목의

기능을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첫째, 기사 제목은 기사를 분류하는 기능을 한다(색인기능). 독자가 기사를 다 읽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사를 선별적으로 취사선택하게 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사회가 다원화되고 언론의 기능 또한 다양화되면서, 신문 지면과 기사량이 증가하면서 독자들의 시간 관리 차원에서 더 중요해지고 있다. 둘째, 기사의 제목은 기사가 담고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요약하여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표현기능, 요약압축기능). 제목만 보아도 기사 전체 내용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제목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사 리드(lead)와 본문의 내용을 짧게 압축하거나 핵심을 뽑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사의 제목은 크기나 위치 등으로 기사가 지닌 상대적 중요성 및 심각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뉴스가치평가 기능). 그리고 기사의 제목은 수용자에게 관심을 유발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관심유발기능). 궁극적으로 기사의 제목은 특정 언론사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 등과 같은 특성을 표현하는 기능(암시기능, 사시유발기능)을 한다(김민환, 2005).

이러한 헤드라인의 기능들은 신문뿐만 아니라 방송뉴스에서도 그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거의 전 방송매체에서 뉴스 프로그램 서두와 말미에서까지 헤드라인이 제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일반 오락, 교양 프로그램에서도 시청자의 주목, 관심, 이해도를 상승시키기 위해 빈번히 이용되고 있다. 이는 제목이 가지는 광의의 광고기능으로서 독자나 시청자의 주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며, 앞으로 전개될 기사 내용과 방향성에 대한 암시기능을 가지기도 한다. 그리고 지면미화 내지 장식의 기능에 있어서도 제목의 중요성 또한 부각된다(박선희 외,

2001; 임준수, 1995).

정태철의 연구(1995b)에서는 149명의 일간지 기사를 설문조사하여 신문 제목의 기능이 네 가지 요인으로 정리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첫째는, 제목의 본문에 대한 보완성이고, 둘째 요인은 본문의 주장이나 의도를 제목이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셋째는 제목이 본문을 축약적으로 요약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면이고, 네 번째 요인은 독자 시선을 제목이 유도하여 읽게 하는 선택성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바는 신문 제목이 그 기본적인 본연적 기능인 보완성, 요약성과 더불어 상업적 기능인 주관성과 선택성으로 다시 양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사의 헤드라인이 가지는 기본적 기능들은 이상과 같이 저널리즘의 실무적 과정에서 관행화되거나 필요에 의해 제시된 제목들이 가지는 역할 및 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비교적 단편적인 추론과 분류에 의해 제시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저널리즘 이론의 분석틀에 의해 보다 상세히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IV. 헤드라인 저널리즘의 주요 논점

저널리즘의 실무적 관점에서 기사 제목이 기능성에 기초하여 본연적, 상업적 필연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의문의 여지는 없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관점에서 기사 제목의 본질과 영향에 대한 본격적 탐구의 틀을 갖추어나갈 단계에 도달한 것이다.

##### 1. 제목과 기사는 하나인가?

기사 제목 관련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우선적으로

제목은 단순히 기사를 구성하는 하나의 부분 내지 요소라는 관점에서 벗어나고 있다. 전통적 저널리즘 연구에서는 이들의 일체성이 강조되었으나 최근의 연구들에서 기사의 본문과는 분리된 헤드라인의 독립적 성격과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오고 있다.

##### 2. 제목은 어떤 표현방식과 내용을 담고 있나?

이는 헤드라인의 올바른 의미전달을 위한 표현 방식과 내용의 충실성에 관한 것이다. 일단 제목이 의미론적으로 그리고 문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을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기사 제목이 기사 내용을 충실히 나타내고 있는가 아니면 기사 내용의 일부만을 부각하거나 불일치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헤드라인이 기사 본문의 텍스트 전체에 대한 적합한 요약으로서 대표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함께 제목이 기사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거나 전체 의미를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현상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측면이다.

##### 3. 제목 위주의 신문읽기는 독자의 기사 내용 이해도를 포함한 인지구조와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증면, 별지발행, 신문열독시간 단축, 뉴스미디어의 다각화 등으로 인하여 독자들의 제목 위주의 신문읽기가 확대,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압축·요약 정리된 제목만을 접하고 해석하여 기사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름대로의 의견을 어떻게 형성해나가는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즉 제목읽기가 대세가 되어 가고 그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는 현 시점에서, 부분적이거나 압축된 정보(제목)만으로

헤드라인 저널리즘의 주요 이론적 논점은  
헤드라인이 갖는 특성에 대한 이해 필요성과  
헤드라인을 소비하는 개인과 사회에 대한  
영향력 분석 측면으로 나눌 수 있어

어떻게 전체 정보(본문)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추리할 수 있고, 태도를 형성하거나, 또는 이어지는 기사 본문까지를 어떻게 더 많이, 정확하게 읽게 하는 제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관한 독자들의 인지적 과정에 관한 연구에 중요성이 주어져야 한다.

4. 제목이 가지는 사회적 현실의 구성력과 독자들의 사고를 틀 짓기(framing)하는 기제는 무엇인가?

언론이 가지는 광범위하고 강력한 효과(영향력) 중의 하나는 현실과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세계에 대한 관점의 변화로서 사회적 현실의 구성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대상이나 현실에 대한 이해와 의견 형성을 매스미디어가 선택해서 간추려주고 설명해주는 내용물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신문열독은 방송 시청과 함께 이러한 영향력을 가지는 주체가 된다. 특히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의견이나 이론(異論)이 존재하여 표출할 수 있는 대립적이고 논쟁적인 뉴스아이템이나 이슈, 정책 등을 보도하는 경우 이해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뉴스미디어는 자신들의 입장이나 선택이 용해되어 있는 용어나 문구로 헤드라인, 리드, 본문, 인용구, 시각적 보조자료 등을 이용하여 틀 짓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독자들의 기사읽기와 인지, 저장, 해석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제목이 현실을 어떻게 반영(표현)하고 이슈를 어떤 틀에 맞추어 취급하는가에 따른 효과분석이 주목을 끌어들여 오고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네 가지의 헤드라인 저널리즘의 주요 이론적 논점들은 다시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앞선 두 논점은 헤드라인 자체가 가지는 특성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제시되는 것이고, 뒤의 두 가지 논점은 헤드라인이 이를 소비하는 개인과 사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는가를 분석하는 측면에서 제시된 것이다. 이러한 논점들이 그리 새롭고 낯선 내용들은 아니며 기존의 저널리즘 이론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어온 논의들을 헤드라인이라는 대상 또는 헤드라인 소비의 증가라는 현상에 접목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이 주제들에 관하여 실제 문제제기와 연구 수행을 했던 사례, 주요 이론적 성과들이 제시될 것이다.

V. 헤드라인 저널리즘의 이론적 접근

1. 기사 제목의 독립성

기사 제목이 기사 본문의 보완적인 요소로서 기사의 명칭에 불과하다고 보던 시각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근거는 첫째로, 기사 본문과 비교할 때 생산주체와 생산과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사 본문은 일반 취재기자가 쓰는 반면, 제목은 편집데스크에서 만드는 것이다.

둘째로는 독자들의 신문열독 행태가 제목읽기 위주로 변화하다보니 본문과 동떨어진 내용이나 본문의 중립성, 객관성과는 다른 방향성 내지 주관성을 내포한 제목 위주의 소비의 경우에는 본문 위주 열독 행태와는 다른 별개의 인지적, 정서적 효과를 가져다주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일찍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에 걸친 신문 산업의 발달과 경쟁의 심화가 당시의 급속한 산업화 및 사회변동과

맞물려 있었던 상황에서 독자들이 제목을 위주로 신문 열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1944년 미국의 4대 신문 제목의 독이성(讀易性, readability) 연구를 수행했던 잉글리쉬(English)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독자를 “제목소비자(a shopper of headlines)”라고 부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독자들은 신문 본문은 읽지 않아도 제목은 꼭 읽는 경향이 있었으며, 제목이 기사의 분위기나 인상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제목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날의 심리상태나 기분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Allport & Lepkin, 1943). 실험방법으로 수행된 이 연구에서는 미국에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전쟁 상황을 강조하는 제목이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전시 상황을 강조하는 제목에 비해 독자들의 전쟁 참여 동기를 약화시킨다는 결과를 내보이면서 신문 제목만으로도 충분히 독자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했다. 그보다 이전인 1928년의 서베이 연구(Emig)에서도 51.2%의 응답자들이 뉴스아이템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에 제목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했고, 31.4%는 본문이 영향을 주었다고 답했다. 제목과 본문이 함께 의견에 영향을 주었다고 답한 경우는 38.4%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신문 기사의 제목과 본문이 일체의 단위로 여겨지는 관념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과 더불어 제목이 본문보다 독립적이거나 때로는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셋째로는, 제목과 기사를 단일체로 볼 것인가 별개의 것으로 볼 것인가를 확실히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도 종종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제목에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 있을 때이다(정태철, 1995a). 본문의 내용이나 취지와 상관없는 제목에 의해 개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경우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각각 판례가 엇갈리는 경향이 있다.

파스트네크(Pastemeck, 1987)에 의하면, 미국의 판례에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제목은 본문에서 그와 다른 세부 내용이 있으면 대체로 단위(단일)접근법(unit approach)에 의해 면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주류이나, 다음과 같은 예외도 적지 않다. 원래 제목이 없는 자료를 인용하거나 기사화하는 경우 그 내용과 제목을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고, 보도 관행상 제목용 용어는 본문과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거나, 제목이 뉴스 내용을 본문처럼 직설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암시하거나 시사하는 기능이 충분하므로 제목만으로 명예훼손의 구성능력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판례 한 가지를 보면, 신문 기사에서 보도되는 내용은 “통상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회적 평균인인 독자의 수준에 따라 이해되어야 할 것이고...기사의 내용은 그 전체로 파악되어야 하며 단순히 제목만으로 그 기사 내용을 파악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제목만 본다면...오인될 소지가 있기는 하나 그 기사 내용과 함께 그 전체적 취지를 파악할 때...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언론중재, 1994, 가을, p. 160; 정태철, 1995a, p. 212에서 재인용)라는 판결내용으로써 신문 기사의 제목과 본문을 독립적으로 떼어서 보지 않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과정에서는 제목이 내용의 취지와는 차이가 나는,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문사들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기로 한 경우가 있었다(신문과 방송, 1995년 1월, p. 160).

## 2. 기사제목의 표현과 내용

신문의 헤드라인이 어떠한 언어적 표현과 의미를 가지는가에 관한 언어학적 내지 의미론적 논의와 함께 제목의 내용이 본문 내용과 어느 정도 일관성을

제목의 의미상 문제보다는 독자들의 시선을 유도하는  
 상업적 기능을 더 중요시 하는 인식도 있어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저널리즘적 논의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간헐적으로 있어 왔다. 헤드라인은 해당 신문의 기사들에 대한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어내어야 하는 역할을 가지므로 그 신문의 개성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표시이며 그 신문의 광고기능의 일부까지도 담당한다(전태현, 2001, p. 264). 이러한 연유로 신문 제목에는 비정상적이고 강도 높은 표현들이 자주 사용되므로 주관적이고 선정적으로 흐르기 쉬우며, 어법이나 어감, 문법 등이 파괴되고, 기사의 본문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최현미, 1991; 임태섭, 1994).

신문 제목의 언어적 표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연구들에서는 우선, 헤드라인이 가지는 독특한 언어와 수사적 표현에 의해 표준 어법에서 이탈된 면을 지적한다. 접사의 생략, 단어의 생략, 맞춤법의 오류,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비문법성과 비표준어가 너무나 빈번하다는 것이다(박갑수, 1991; 전태현, 2001). 또한 스포츠 신문이나 온라인 보도 매체가 선도하고 일간신문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보도 기사 제목의 선정성이 적지 않은 문제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법상, 어법상의 오류와 선정적 표현이 상식화되고 용인되고 있는 매체를 초·중·고교의 교육자료로 삼는 NIE(Newspaper in Education) 프로그램이 그 긍정적 취지와 효과 이면에 어떠한 부정적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다.

다음으로는 신문 제목과 본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데, 우선 미국 신문의 경우 1980년 마르케즈(Marquez)의 연구에서 기사 제목이 본문과 대비하여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되었는가를 분석했는데, 전체 기사 중 3분의 2 이상이 일단은 부정확하다는

것과 본문 내용의 진의를 오도하거나 모호하게 나타낸 경우는 전체 기사 중 3분의 1 정도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의 두 연구들에서는 최근의 네 가지 큰 이슈였던 부동산 정책, 사립학교법, 한미 FTA,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한 일간신문의 보도 기사 제목과 본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했다(윤영태·이준호, 2006; 임동욱·정미정, 2006). 결과를 요약하면, 기사 제목은 전체의 3분의 2 정도가 본문을 압축 요약해 제시하며 정통적인 제목의 제시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지만, 기사 제목이 본문을 왜곡하거나 부정확한 또는 반대방향으로 이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제목들은 대부분 본문 중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내용을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부각하는 경향이 있는 기사 제목이었으며, 극소수지만 본문과 전혀 무관한 제목도 발견되었다. 그리고 기사 제목과 본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 중립적 내용의 본문을 제목에서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부정적 평가를 덧붙인다는지, 취재원의 말 중 일부분을 조합하여 강렬하게 표현한다는지 하는 관행이 발견되었다. 이와 더불어 사진의 경우에도 기사 내용의 대표성보다는 과장, 축소, 왜곡을 하는 사례도 지적되었다.

제목이 본문 작성 기자의 손을 떠나 편집데스크에서 작성되므로 편집 업무 종사자들은 언론 실무의 근본적 도구인 완벽한 언어구사력이 요구되고 본문 작성 기자가 의미하는 기사 내용과 제목의 일치성에 유념해야 마땅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Baskette, et al., 1986; Smith, 1999; 김희진,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은 제목의 의미의 모호성과 선정성 그리고 문법상의 문제 등 제목의 의미상의 문제보다는 독자들의 시선을 유도하는 상업적 기능을 여전히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정태철, 1995b).

### 3. 스키마 이론과 제목 읽기의 인지적 영향

신문의 제목 위주의 읽기 경향은 독자들이 제목과 본문을 다 읽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관심이 생겨나면서 제목에 함축적으로 제시되는 단서만으로 기사 전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게 되었다(Tannenbaum, 1953; Smith & Fowler, 1982; 정태철, 1995a). 그리고 더 나아가 제목의 특성이나 유형에 따라 본문 읽기로의 유도력, 기사 내용의 입장에 대한 평가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관한 연구(윤혜정, 1996)가 있으며, 온라인 신문 기사의 제목과 개요(lead)가 기사에 대한 회상(recall)과 재인(recognition)과 같은 기사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과 기사에 대한 신뢰도, 선호도, 질에 대한 평가 등 기사에 대한 주관적, 평가적 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조수선, 2005).

이러한 범주의 연구들은 그 이론적 기초를 스키마(schema) 개념과 기능에 두고 있다. 피아제(Piaget)에 의해 설명이 시도된 스키마 이론의 중심 내용들을 살펴보면, 스키마란 인간이 생득적으로 타고난 다양한 감각 및 운동의 구조와 잠재성이며 심리적 반응과 언어, 지식 등의 학습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이정모 외, 2004). 따라서 스키마는 인간이 어떤 사실 내지 자극을 공통된 특성이나 일관된 방식으로 분류하게 하는 도구로 작용하므로 언론 현상과 관련한 스키마 이론은 텍스트 정보가 이해되고 기억되며 해석되는 과정에서 사전 지식이나 이미 정립된 스키마 체계(schemata)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키마의 기능을 살펴보면, 기존의 기억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의 이해, 처리, 저장을 결정하게 하는데, 새로운 정보를 재정리하고 평가하여 기

준에 가지고 있는 인지구조에 적합화시킨다. 또한 스키마는 정보의 중복적 누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동시에 생략되거나 불분명하게 제시되거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보충, 수정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키마는 문제해결의 방식을 제공하며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의 여부도 결정하는 한 요인이 된다(Graber, 1988; 이영애, 1987). 기존의 인지구조, 즉 스키마와 유기적으로 결합 가능한 정보나 자극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과정은 동화(assimilation)이고, 외적 자극이 기존 스키마의 변형이나 수정을 필요로 하는 인지구조의 변화과정은 조절(accommodation)이다.

독자들이 신문 제목을 읽은 후 그 제목에서 연상되는 기사 본문의 내용이 실제 기사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는 미국의 경우 42%의 낮은 결과로 조사된 바 있는데 신문을 대충 읽는 경우가 꼼꼼하게 읽는 경우보다 기사 제목과 연상하는 본문의 일치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Smith & Fowler, 1982). 우리나라의 경우 정태철의 조사연구(1995a)에서는 일치도가 58.3%였는데, 그나마 조사대상 집단 중 3분의 1이 기자들로서 이들은 타 집단보다 제목을 기초로 한 기사 이해도가 다소 높아 62.6%를 나타내며 평균치를 끌어올린 역할을 했지만 이들 역시 제목에 의한 기사 전체의 이해도가 그리 높다고는 할 수 없다. 그 이전에 있었던 탄넨바움(Tannenbaum, 1953)의 연구는 스키마 이론의 틀에 더 가까운 것인데, 기사 내용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제목에 상관없이 본문 내용의 이해도가 높았지만, 사전 지식이 모자라는 경우는 제목에 나타난 그대로 기사를 이해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일련의 기사 이해도 연구는 기사 읽기에서 제목에 의해 기사 전체에 대한 오해가 일상적으로 빈번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독자들의 사전 지식을 포함하는 스키마가 강하게 작용함을 알게 해

언론 현상과 관련한 스키마 이론은  
텍스트 정보가 이해·기억·해석되는 과정에서  
사전 지식이나 이미 정립된 스키마 체계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초점 뒤

준다.

더 진전된 이론적 연구들에서는 기사 제목들의 특성이나 유형에 따라서 이해도와 인지과정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했다. 윤혜정의 실험연구(1996)에서는 헤드라인의 표현 차이가 헤드라인 읽기로 이끄는 유인력 및 뉴스에 대한 인식과 추측 그리고 기사를 인지하는 과정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스키마 동화와 조절 차원과 정보처리의 정교성(elaboration)의 차원에서 분석했다. 분석 결과, 독자들은 제목이 무미건조하고 정보중심적인 '요약적 정보'인 경우보다 과장되고 선정성이 있는 '감정적 정보' 단서가 제공되는 경우 기사 읽기로 유인하는 요인인 흥미성, 인상성을 더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독자들이 기사 내용을 더 정확하게 추측하게 되는 경우는 기사 제목이 요약적 정보로 표현될 때였다. 또한 이 연구는 제목의 감정적 정보가 기사 본문 읽기로 유인하는 능력은 더 크지만 제목을 보고 형성된 기대감, 호기심, 관심 등의 감정과 태도 때문에 제목과는 일관성이 없이 전개되는 본문의 기사 읽기를 끝까지 해내게 하지 못하게 하며, 반면 뉴스 내용 전체에 대한 충분한 인지를 유발하는 요약적 정보의 제목을 접한 경우에는 기사 본문의 정보를 끝까지 정교하게 처리해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조수선(2005)의 온라인 신문 기사 제목과 개요의 특성이 기사 본문에 대한 이해도와 평가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또 다른 실험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사에 대한 기억양인 회상에 미치는 기사 제목은 선정 제목보다는 정보 제목이 개요(리드)가 없이 제시될 때 가장 효과적이었고, 기사 이행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재인은 정보 제목이 요약적 개요와 제시될 경우 가장 효과적

이었다. 선정 제목은 기사의 선호도는 높지만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은 정보 제목 및 요약개요였다. 기사의 질을 평가하게 한 결과, 정보 제목과 요약개요의 경우에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선정 제목과 서두 개요의 경우에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시사되는 바는 감정적이고 선정적인 신문제목이 독자의 시선과 관심, 흥미를 이끌어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독자들의 인지과정 속에서 기사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진지하게 신문을 읽어 실질적으로 뉴스의 취지나 방향에 공감하고 좋은 평가를 내리게 하는 데는 역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4. 사회적 현실 구성과 틀 짓기

일반적으로 뉴스는 수용자들이 직접 경험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현실을 보여주는 창(window)의 역할을 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뉴스가 최소한 객관적 현실(objective reality)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뉴스는 현실의 반영뿐만 아니라 현실을 (재)구성한다는 인식에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관심이 모아져오고 있다. 현실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이해는 객관적 현실에서만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에 의해서 나름대로 정의되고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객관적 현실인 상징적 현실(symbolic reality)과 미디어 수용자가 상징적 현실에 기반하여 구축한 주관적 현실(subjective reality)이라는 3원적 현실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Adoni & Mane, 1984). 그래서 미디어가 사회적 현실을 그대로 여과 없이 투영하는데 그친다기보다는 (재)구성한다는 이론적 주장들과 연

구들이 더 지배적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사나 뉴스는 기자가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일반적 믿음에 반해, 전문가 중에서는 여러 가지의 복잡한 과정을 통해 재생산되는 사회적 산물이라는 입장에서 특정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 있고, 언론조직의 조직적, 경영적 특성과 제도적 규정성의 틀 내에서 사건, 사고들이 사회적으로 재구성된다는 시각이 있다(임동욱·정미정, 2006).

언론 보도 저널리즘에서 현실 구성은 3단계로 나누어진다. 첫째와 둘째 단계는 미디어에 의한 의제 설정 과정과 현실의 정의과정이다. 이는 사회적 이슈나 의제에 중요성 내지 현저성(salience)을 부여하고, 그 이슈에 대하여 미디어 나름의 해석적 규정을 내리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미디어가 구성한 현실이 수용자(독자)에게 전해지고 나서 이들의 의식 속에서 다시 구성되는 단계이다(박윤철, 1997; 송미진, 2002). 이러한 이론적 명제를 기초로 하여 엔트만(Entman, 1993)은 틀 짓기(framing)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틀 짓기는 지각된 현실의 일부 측면만을 선정하여 텍스트 내에서 그러한 면들을 중요하게 인식시키는 것으로 특정 문제나 이슈에 대해 정의하며, 원인을 진단하고 심판하며, 해결책을 제시한다”(p. 52). 또한 이준웅의 기능적 측면에 근거한 정의에 따르면, “뉴스가 하나의 유기적인 이야기로서 조직되는 방식으로 독자나 시청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뉴스를 이해하도록 돕는 이야기 구성방식”이다(1997, p. 111). 따라서 틀 짓기는 용어 그대로 해석하자면 신문기사나 방송 뉴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언론이 수용자에게 세상을 투영해주는 창틀(window frame)의 위치, 크기, 모양을 결정하고, 특정 시각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사회 현상의 정의와 대체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뉴스 소재의 선택과 특정 시각의 부각과 축소 그리

고 배제와 함께, 갈등 이슈의 경우 본질보다는 갈등 부분을 더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오미영·정인숙, 2005).

이러한 보도 저널리즘 미디어의 틀 짓기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언론종사자의 개인적 태도, 이데올로기, 내면화된 규범과 더불어 미디어 조직 형태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프레임이 선택된다. 이와 더불어 정치인, 정부, 기업, 이익집단, 엘리트 집단 등 광범위한 사회적 압력체 등이 영향을 주기도 한다(Scheufele, 1999; 김훈순, 2004).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언론은 기사나 논평의 내용과 관점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면서, 헤드라인, 단수, 시간 배분, 사진, 인용, 그래픽, 뉴스 컷, 카메라앵글 등 실로 다양한 수단인 틀 짓기 기제(framing mechanism)들을 이용하여(전오열, 2003; 오미영·정인숙, 2005), 특정 주제나 이슈에 대한 자신들만의 특색 있는 틀을 구성해나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임종수와 한동섭(2002)에 따르면,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북한 관련 기사에서 각 신문은 자신들의 핵심 주장을 펴는 정보원의 진술을 기초로 제목을 뽑고, 리드를 달면서 중점적 정보원으로 삼는 동시에 반대 주장의 정보원의 진술은 선택적으로 제시 또는 누락하며 그 주장의 관점을 흐리게 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쟁점의 소지가 없는 정보원의 진술 내용은 선택과 보강의 방식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즉 정보원의 진술도 단순히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제목, 리드 등 프레임 기제와 선택, 누락, 보강 등의 틀 짓기 및 수사(Rhetoric)가 활용된다는 것이다.

보도 기사의 틀 짓기 현상을 그 효과의 측면에서 보면, 틀 짓기 효과를 일단 “뉴스 프레임이 구성되는 방식에 따라, 뉴스에 대한 개인의 해석과 의견이 달라지는 효과”(오미영·정인숙, 2005)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관점은 뉴스의 틀 짓기 특성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과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

틀 짓기 개념은 개인적 스키마에 토대를 두는  
개인 프레임인 수용자의 인지적 특성과  
어우러져야 영향 끼쳐

다는 것이다. 2004년의 탄핵 국면에서 탄핵 원인보다는 국회의 강행 통과와 촛불집회 그리고 대통령 지지자들에 초점을 맞춘 친정부 방송의 보도 프레임과 함께 그 이후의 십 수 차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의 강행에 대한 세금폭탄, 비실효성 등 부작용에 초점을 맞춘 반정부 신문들의 프레이밍 등이 가까운 사례이다. 이러한 틀 짓기는 특히 헤드라인을 중심으로 한 틀 짓기 기제가 다수의 수용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된다. 기사 본문이 중립적이고 틀 짓기가 미미하더라도 헤드라인의 프레임만으로 수용자들의 태도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전오열, 2003).

미디어에 의해 설정되고 정의되고 평가된 현실이 뉴스(기사)의 텍스트(내용물) 상에서 부각되었다 하더라도 독자의 관념이나 신념에 따라 갖추어진 스키마에 의해 그 현저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뉴스 텍스트 상에서 특정 이슈의 틀 짓기가 미미하다 하더라도 수용자의 스키마에 부합하면 그 현저성이 커질 수도 있다. 따라서 틀 짓기 개념은 미디어의 일방주도에 의해서만 완성되지 않고 개인적 스키마에 토대를 두는 개인 프레임인 수용자의 인지적 특성과 어우러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증분석한 전오열(2003)에 의하면, 특정 이슈에 대한 수용자의 관심도, 관련지식, 인지·행동적 태도, 정보처리 방식, 기사에 대한 동의 정도 등의 요인과 뉴스프레임 및 헤드라인 등 프레이밍 기제가 상호 결합하여 수용자의 태도변화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수용자 개인의 정치적, 이념적 선유성향(predisposition) 또는 인식의 스키마가 견고할 경우는 프레이밍 효과가 적거나 없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 VI. 결론 - 헤드라인 저널리즘 연구의 미래

정보화와 신자유주의 경향으로 대표되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기초한 헤드라인 중심의 뉴스 이용행태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 경영의 차원에서도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동향을 반영하기 때문에 기사 제목은 저널리즘의 현상의 본류로서 자리잡아나갈 것이다. 따라서 헤드라인 저널리즘 연구의 출발점은 헤드라인 위주의 소비를 하게 되는 수용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어떤 기사에 대하여 헤드라인 중심의 소비가 되는지에 대한 파악이 부단히 이루어져야 한다.

더 진전된 차원에서 볼 때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헤드라인이 어떠한 내용으로 독자들의 후속적인 신문읽기 행태와 인지적, 정서적 차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고찰에 대한 필요성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사 제목의 편향성, 선정성, 상업성 등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기사의 제목 읽기가 수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점차 확대해서 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존의 헤드라인 저널리즘 연구들의 한계를 깨워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 제목의 메시지 효과분석의 도구로써 주로 실험 연구(experiment)가 이용되어 왔는데, 이는 단기적이고 가변적인 효과 위주의 결과물이 생산되기 쉽다. 방법론상 인위적으로 제목을 읽는 당시의 효과 측정 위주로만 흐른다는 점은 스키마 이론이나 현실구성과 틀 짓기 이론을 충분히 검증해 내는 데는 의문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효과(영향)를 규명하는 새로운 방법론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기사 제목이 언론사와 기사 생산자들의 의도나 주관에 의해 구성된 현실이고 이는 독자들에게 대단히 크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은 유보할 필요가 있다. 스키마 이론과 개인적 프레임에 관련된 논의들에서 알 수 있듯이 언론에 의해 구성된 사회적 현실을 그대로 자신의 인지와 태도 변화에 적용되도록 허용하는 수용자들이 절대 다수라고 상상하는 것은 성급한 것이다. 예컨대, 신문을 상대적으로 많이 정교하게 읽는 독자들은 이들이 다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각 언론 매체의 기사 프레임을 이미 알고 있다는 가정도 동시에 필요한 것이다. 특히 독자의 이념적 스키마를 기사 제목이 독립적으로 단기간에 변화시키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다만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 인권상의 위험성이 있는 헤드라인은 기사와의 차별성에 근거하여 당위론적인 사회적 책임과 제재가 뒤따르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신문 기사뿐만 아니라 온라인 저널리즘과 방송의 보도행태에서도 헤드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뉴스가 신문의 제목을 변형시키거나 그 효과의 크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그리고 방송에 있어서도 신문의 헤드라인과 유사한 보도행태가 만연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단지 그 시간적인 제시 정도가 짧다는 것이 차이이며, DMB, IPTV 등의 등장 시기에 즈음하여 방송 보도 매체의 디지털화와 채널 간의 경쟁 격화로 인하여 헤드라인을 통한 수용자 주목 능력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방송과 뉴미디어의 보도 관행도 공영과 상업 방송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신문과의 차이점은 줄어들 가능성이 향시 내포되어 있다. □

## 참고문헌

- 권호영(2007). 한국인의 미디어 이용과 지출행태의 변화. <KBI 포커스>. 24호.
- 김민환(2005). <민족일보> 1면 머리기사 내용분석. <커뮤니케이션과학>. 22호. 5-14.
- 김훈순(2004). 한국언론의 젠더 프레임. <한국언론정보학보>. 27호. 63-89.
- 김희진(2005). 잘못된 단어, 사동법과 명령법 오용: 신문방송 기사 제목의 문제. <신문과 방송>. 10월호. 38-41.
- 박갑수(1991). 신문기사의 문체와 표현. <신문기사의 문체>. 한국언론연구원 연구서 2.
- 박선홍 외(2001). <신문편집>. 한국편집기자협회.
- 박윤철(1997). 한국신문의 정치기사에 나타난 정치적 현실의 구성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미진(2002). 기사의 부정성 유형이 수용자의 기사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언론중재위원회(1994). <언론중재>. 가을호.
- 오미영·정인숙(2005). <커뮤니케이션 핵심이론>. 커뮤니케이션선북스.
- 윤영태·이준호(2006). 신문기사 제목: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언론재단, 한국편집기자협회 공동주최 세미나 발표 논문.
- 윤혜정(1996). 헤드라인의 표현상 차이가 독자의 기사인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애 역(1987). <인지심리학>. 을유문화사.
- 이재경(2004). <기사작성의 기초>. 나무와숲.
- 이재현(2005). 인터넷, 전통적 미디어 그리고 생활시간 패턴: 시간재할당가설의 제안. <한국언론학보>. 49권 2호. 224-293.
- 이정모 외(2004). <인지심리학>. 학지사.
- 이준용(1997). 언론의 틀 짓기 기능과 여론의 변화. <언론과 사회>. 17호. 100-135.
- 이준호(2003). 디지털 방송기술의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7권 3호. 87-120.
- 이희완(2006). 제목 바꾸기로 뉴스의 진정성 하락: 포털사이트의 뉴스편집권. <신문과 방송>. 2월호. 128-132.
- 임동욱·정미정(2006). 신문 제목, 이대로 좋은가? 한국언론재단, 한국편집기자협회 공동주최 세미나 발표 논문.
- 임중수·한동섭(2002). 미디어의 정보원 진술 활용과 현실정

- 의. <한국언론학보>. 46(3). 520-558.
- 임준수(1995). <신문은 편집이다>. 나남.
- 임태섭(1994). 보도문장과 언어. <신문과 방송>. 280호. 78-83.
- 전오열(2003). 뉴스 프레이밍이 수용자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햇볕정책과 언론자유에 대한 신문 기사와 제목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태현(2001). 헤드라인의 은유에 관한 이해. <언어와 언어학>. 26집. pp. 263-285.
- 정태철(1995a). 제목소비자의 증가와 신문제목의 이해도. <한국언론학보>. 49권 3호. 203-208.
- 정태철(1995b). 신문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신문제목의 문제점 연구. <경성대학교 논문집>. 제16집 1권. 247-275.
- 조수선(2005). 온라인 신문기사의 제목과 개요 효과. <한국언론학보>. 49권 2호. 5-32.
- 최현미(1991). 범죄기사가 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방송광고공사(2006). <2006 소비자 행태조사>.
- 한국언론연구원(1992). <신문과 방송>. 10월호.
- 한국언론연구원(1995). <신문과 방송>. 1월호.
- 한국언론재단(2004). <수용자 의식조사>.
- Adoni, H. & Mane, S.(1984). Media and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Toward an integration of theory and research. *Communication Research*, 11, 323-340.
- Allport, F. H. & Lepkin, M.(1943). Building war morale with news-headlines. *Public Opinion Quarterly*, 7, 211-221.
- Baskette, F. K. et al.(1987). *The art of editing*. New York, NY: MacMillan.
- Emig, E.(1928). The connotation of newspaper headlines. *Journalism Quarterly*, 4.
- English, E.(1944). A study of readability of four newspaper headline types. *Journalism quarterly*, 21, 217-229.
- Entman, R. M.(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 Graber, D. A.(1988). *Processing the news: How people tame the information tide*. New York, NY: Longman.
- Marquez, F. T.(1980). How accurate are the headlines? *Journal of Communication*, 30, 30-36.
- Pasterneck, S.(1987). Headlines and libel: Is the 'unit' approach the most effective? *Newspaper Research Journal*, 8(2), 33-41.
- Scheufele, D. A.(1999). Framing as a Theory of Media Effects. *Journal of Communication*, 49(1), 103-122.
- Smith, E. J.(1999). Leadlines may be better than traditional headlines. *Newspaper Research Journal*, 20(1), 55-64.
- Smith, E. J. & Fowler, G. L.(1982). How comprehensible are newspaper headlines? *Journalism Quarterly*, 59(2), 305-308.
- Tannenbaum, P. H.(1953). The effect of headline on the interpretation of news stories. *Journalism Quarterly*, 30, 189-197.
- Westley, B. H.(1980). *News Editing*. Boston, MA: Houghton Mifflin.

# '헤드라인 저널리즘'의 역기능과 해결방안

김 서 중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졸, 동 대학원 신문학 석·박사
- 한국언론정보학회 기획이사, 월간 「말」이사  
언론개혁시민연대 신문개혁위원장
- 저서 및 논문 : 「세계언론법제동향」,  
「1990년대 언론 산업의 변동과 언론법제의  
변화」, 「신문의 성격과 보도 경향의 관계 -  
두뇌한국 21 사업과 교육법 개정을 중심  
으로」 외 다수

## 1. 제목의 중요성과 그 (역)기능

신문을 읽는 독자나 기사를 쓰는 기자나 기사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한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기사라도 제대로 포장되지 않고서는 그 성과를 인정받기 어렵다. 신문마다 제목을 강조하고, 편집을 중시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기사를 읽고 난 뒤에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제목이다. 또 정보 폭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시간에 쫓기는 독자들은 어느 특정 지면만을 보거나 주제목이나 소제목들을 보고 기사 내용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목이 내용을 결정해버리는 일도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강준만, 231쪽).

그래서 제목 달기는 매우 중요하다. 제목은 기사의 전체 내용을 압축해서 보여 주는 문장이라는 것이다. 편집 기술이 발달하면서 제목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임영호, 225쪽). 첫째, 제목은 독자의 눈길을 끌어 기사를 읽게 한다. 둘째, 제목은 기사요지를 압축해서 전달한다. 셋째, 제목은 뉴스의 중요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중요한 뉴스일수록 크고 눈에 잘 띄게 제목을 뽑는다. 넷

째, 제목은 신문 지면을 보기 좋게 꾸미는 기능도 한다. 제목의 모양은 신문 디자인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구실을 한다. 그리고 제목은 기사의 분위기는 물론 신문의 색조, 즉 성향까지 드러낸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하게 작성된 제목이라도 제목 자체가 가지는 자수의 제약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들을 잘못 인도할 수 있다(박유봉 외, 236쪽). 그래서 제목은 간결하면서도 정곡을 찌르고, 기사 성격에 맞게 부쳐져야 함을 강조하기도 한다. 또 편파적이거나 혼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거나 애매한 표현의 제목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편집기자의 주관적 의견은 엄격히 배제되어야 한다.

교과서적으로는 이제까지 서술한대로 기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제목을 달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많은 독자들을 잡아 두어야 하는 상업적인 이유, 특정 방향으로 독자들을 이끌어야 하는 정치적인 이유, 신문사의 이해관계를 옹호해야 하는 이유 등으로 인해 제목이 왜곡되고 독자들을 오도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정적이고 과장이 심한 제목은 객관적이고 요약적인 제목보다 독자들에게 높은 유도력을 지니지만 기

언론의 상업적 이유, 정치적 이유,  
신문사의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이유 등으로 인해  
제목이 왜곡되고 독자들을 오도하는  
일이 종종 발생해

사 전체 내용을 잘못 인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린다. 앞서 언급한 기사 제목이 지닌 기능들은 전문적으로 제대로 작업되었을 때 순기능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적절하게 작업되지 않았다면 기사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어려워지며 기사 내용에 대한 독자나 시청자의 이해를 왜곡시키는 역기능으로 작용한다. 결국 독자나 시청자의 올바른 판단과 의견형성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기능한다(윤영태, 28쪽). 고스란히 독자나 시청자의 피해인 것이다.

독자들의 오해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사의 취재 대상이 입는 피해로 귀착한다. 신문은 사회 제 세력들에 대한 취재 보도를 하는 것이며, 이들에 대한 일반의 오해는 그들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 신문에서 봄을 맞이하고 있는 서울 여의도 윤중로를 소개하는 사진을 실었다. ‘벚꽃길 따라 사랑이’라는 제목과 함께 두 남녀가 벚꽃 나무 아래로 걷고 있는 장면이었다. 그런데 실상은 남자는 유부남이었고, 여자는 곧 결혼을 앞둔 직장 동료 사이로 식사 후 산책을 즐기는 것이었다. 불륜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었다. 사진에 대한 정정보도문이 해당 신문사 지면에 게재되기는 했지만 과연 이들이 주변으로부터 받은 인식이 쉽게 사라질까? 물론 이 예는 무책임한 사진기자와 편집기자의 일회성 해프닝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언론의 제목달기를 통한 왜곡 현상은 그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보여 지기도 한다. 의도적이거나 객관성을 상실한 가치 지향적 언론들에 의해서 특정 집단에 대한 공격, 기득권의 방어, 상업적 선정성의 극대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신문들이 발생시키고 있는 오도된 제

목의 문제점을 그 의도에 따라 분류하고 예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 볼 것이다. 이후 문제점의 성격에 따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볼 것이다.

## 2. 왜곡된 제목달기의 사례와 피해

왜곡된 제목 달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역기능을 다 망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사 내용과 제목의 왜곡 형태에 따라 그 역기능의 피해는 천변만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우리 사회 언론 환경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분류해보고자 하였다.

신문들이 사람의 관심을 간편하게 끌 수 있는 요인들 중 대표적인 것이 선정성, 폭력성, 갈등과 대립, 참사 등이다. 즉 대부분의 제목이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요인들을 기사의 내용보다 더욱 증폭시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윤영태, 28쪽). 이러한 요인들에 우리 사회의 특수 상황인 남북대치, 권력과 언론의 대립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념 관련 기사, 정치적 성향 기사, 신문사의 이념과 관련된 기사, 신문의 자사 이익과 관련한 기사, 신문의 상업주의적 성향 반영 기사 등을 언급할 수 있다.

### 1) 체제 이념 관련 기사

우리 사회에서 북한의 김일성은 실제 사망 이전에 여러 번 죽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외국의 오보나 유언비어를 기사화하여 대서특필했지만 사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이후에는 단신기사 처리하거나 정정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이다. 김일성 사망에 대해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람도 없었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적성국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경향은 북한 관련기사에서 곧잘 벌어진다.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 ㄹ일보는 남북정상회담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소한 사안으로 계속 시비를 걸고 있었다. 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국민 정서를 자극한 『태극기 내리면 나라도 내리는 것』(2000년 5월 31일자)이라는 기사는 특히 그렇다. 남과 북은 남북 공연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양국 국기를 게양하지 않기로 한 합의 사실이 있었음에도 주체성이 없다고 비난하였다. ㄹ일보 기자가 이 부분을 몰랐을 리 없다. 결국 기존의 합의사항에 대해 무시한 것이다. 내용상으로는, 실제로 진실이 무엇이든 주어진 현상은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상황은 북한과 당시 정부에 적대적이었던 많은 독자들에게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적 이념 관철을 위한 사례는 남북 교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김일성 사망설 같은 것이 아니라 남북 교류 행사에 대한 시비 형태로 나타난다. 2001년에 있었던 8·15 방북단이 보여 주었던 몇 가지 돌출행동에 대한 보수 신문들의 반응이 그랬다. 이 사건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통일운동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다양성의 일부였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이 이러한 인식을 가지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재 편집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ㄹ일보나 또 다른 ㄹ일보는 『꽤 씹죄 정도로 국민 비난 여론 잠재우기 어렵다』(2001년 8월 18일자 기사 본문 중), 『별 것 아니라고』(2001년 8월 23일자 사설), 『국기를 흔드는 방북단의 돌출 행동』(2001년 8월 24일자 1면 기사) 등에서 방북 시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국기를 흔드는 중대 사건으로

의미 규정하고 은근히 강경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ㄹ일보의 경우처럼 사법당국의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사 중에 들어 갈 수 있는가도 문제지만 이번 주제와 관련하여 『별 것 아니라고』와 같은 제목으로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신문들의 행태는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한다.

보수 언론에서 남북 교류에 관한 부정적 인식은 계속 보인다. 북한 방문단이 현충원을 참배하였던 것에 대해 보수 언론들은 남쪽 방문단이 북쪽에 가서 김일성에게 참배할 것을 염려한다는 자세로 일관하였다. 그런데 ㄹ일보의 참배관련 기사는 점입가경이다. 대다수의 신문들은 예상과 달리 10초간 묵념으로 끝난 북 참배에 아쉬움을 보냈지만 『55년간의 상처... 5초간의 묵념』(2005년 8월 15일자)과 같이 선정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55년과 대구를 맞추기 위해서인지 짧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ㄹ일보에게만 5초였다. 편집자는 편집의 묘미라고 흡족해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 참배가 남북 교류의 새 지평이 열리기 위한 시작점에 불과함을 누구나 알고 있음에도 마치 북측이 5초간의 묵념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 한다는 인상을 주는 기사에 독자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지 자못 궁금하다.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기사의 정점은 ㄹ일보의 『60년 전으로 돌아가나...』(2005년 8월 15일자)라는 기사였다. 『광복절에 김정일과 추종세력들 굿판』, 『대한민국 죽느냐 사느냐 위기』라는 부제와 함께 찬탁, 반탁 갈등의 60년 전을 연결시키는 기사는 남남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다. 보수 언론들은 북한의 의도를 말하기에 앞서 흥분하고 있는 자신들을 냉철하게 되돌아보아야 했다. 정식 교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참배한 북한 대표단을 향해 ‘굿판’을 운운하는 것이 그들의 행위를 기사화한 본문 내용과 일치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 2) 정치적 성향 관련 기사

체제 이념 관련 기사, 정치적 성향 관련 기사,  
선거 보도 기사 등에서 언론사의 의도, 왜곡,  
선정성 등이 담긴 제목 드러나는 경우 많아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에서 활동했던 이모 씨의 사건에 관한 보도도 마찬가지로였다. ‘구국전위’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고, 본인도 가담을 확인한 사실이니 이모 씨가 인수위에서 활동한 것은 분명 잘못이었다. 그러나 이를 인수위 성격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려 한 것은 잘못이었다. 자신이 기소중지 상태임을 몰랐던 이모 씨가 인수위에 포함되었던 것을 사실(2월 28일자)에서 『공안사범이 인수위에 따리를 틀다니』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의 오류를 지나 인수위의 성격에 대해 문제 삼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안은 정치적 이념의 표현이자, 권력과 갈등관계가 같이 표현된 사례였다.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의할 수 없는 권력의 성격을 드러내고자 하는 언론 보도의 전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소집한 국정토론회를 보도하는 보수 언론의 보도에서 신문들이 자사 신문을 이용해 권력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는가를 볼 수 있다. 『건전 비판 수용 주장하다 정통부 차관 면박 당해』, 『사무실 기자 출입 대통령이 막아야』 등 제목만 보면 대통령은 극도의 대 언론 혐오증 환자 아니면 독재자인 것처럼 인식을 유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반박한 정통부 차관 발언은 건전 비판 수용 부분이 아니고, 기자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자는 부분이었다. 본문에서는 그렇게 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목은 아니다. 기자 출입 문제는 각 부처가 문광부 홍보업무 운영방안처럼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을 막으려고 해도 장관이 언론에 약할 수밖에 없으니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외교안보연구원장의 발언이었다. 기자들의 사무실 무단출입은 옳지 않은 것이다. 취재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운다 하여 업무 중인 사무실에 무

단출입하여 정보를 요구하거나 정보를 가져가는 행위는 정당한 취재행위가 아니다. 그런데 제목만 보면 기자들의 취재를 방해하도록 지시한 것처럼 보인다.

### 3) 선정적인 선거 보도

신문들의 선정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경우 중의 하나가 선거 보도이다. 선거 기간에는 무책임한 폭로성 정보가 난무하고, 온갖 의혹이 제기된다. 언론은 일차적으로 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전달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가 있다. 그것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첫째 이유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그 동안의 현실이었다.

2001년 재보궐 선거가 있었던 몇 개월 동안 정치판은 물론 국민들도 혼란과 절망의 상황이었다. 각종 비리들이 지속적으로 폭로됨으로써 이전 정권과 다를 바 없는 당시 정권에 대한 실망과 동시에 정치권 전반에 대한 혐오감도 증대했다. 연일 터져 나오는 폭로 기사가 언론들의 일면을 장식했다.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도 강력했다. 정치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보궐 선거가 끝나면서 이런 종류의 기사들이 급격히 감소했다. 아니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루 사이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것도 아닐 테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이는 언론의 받아쓰기 관행, 상업주의 성향, 권력화 현상 등이 교묘하게 어울려서 빚어 낸 결과이다. 소위 이용호 게이트, 백궁 정자지구 개발, 김홍일 씨와 여운환의 관계, 노랑진 수산시장 입찰 사건 등 많은 사건들이 언론에 오르내렸지만 그 기사들에서 기자들의 추적에 의해 밝혀진 사실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 정치권의 주장과 일부 밝혀진 사실의 부풀리기를

통해 작성된 기사였다. 한나라당이 문제 제기하려 했던 두산의 한국중공업 인수 시 여권 실세 개입설이 한나라당의 포기에도 불구하고 일부 석간의 기사로 나갔던 것은 받아쓰기의 폐해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제목들은 당시 의혹들을 기정사실처럼 묘사했다. 설사 의혹이라고 표현하더라도 누구나 사실임을 믿도록 암시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사건들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1면 기사감이며, 더 기사화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언론은 확인이라는 절차가 필요했다. 언론이 취재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로를 받아쓰는 관행에 머물러 있었음은 정치권의 발언이 없자 기사가 더 이상 생산되지 않았던 당시의 모습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언론이 정보원, 출입처에 의해 홍보도구로 사용되었다는 비판에 대해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

그렇다면 언론이 홍보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왜 이렇게 기사를 받아썼을까. 언론의 상업주의적 성향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각종 정치적 현안은 매우 복잡하다. 독자의 관심을 끌기에도, 기사를 만들기에에도 복잡하다. 반면 정치권의 비리만큼 충격적이고 쉽게 호기심을 자극할 사건이 있겠는가. 한마디로 기사거리가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타 언론사가 받고 키울 것을 생각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사건의 기사화가 과연 정당한가? 혹 언론의 속보성을 들어 변명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당시의 사건들이 화급을 다투는 일이었던가? 결국 내용은 의혹이었지만 제목만 본 많은 독자들은 그 많은 의혹을 사실로 믿었을 것이다.

언론들이, 특히 신문들이 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이용한 정치 폭로를 여과 없이 보도한 것은 최근 일련의 상황들을 고려하면 권력화 된 언론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2002년 대선에서도 신문들의 과장보도는 제목을 통

해서 드러났다. 신문들은 대선후보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여론조사, 이회창 - 정몽준, 노무현표 더 가져가』, 『40대 지지, 한달만에 노(盧)서 이(李)로』, 『40대 지지율 이(李) 43% - 노(盧) 34%』 등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제목을 달았으며 이회창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 설문내용 (예컨대, 3자가상 대결시의 지지도, 경제문제 가장 잘 해결할 것 같은 후보를 묻는 것 등)만을 그래프화시켜 첨부하거나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가상대결 전망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등 편향성이 뚜렷한 보도태도를 보였다. 물론 나중에 노무현 후보의 반전에 대해 별로 보도하지 않았던 이들 신문의 보도 태도와 비교하면 더욱 그 의미가 드러난다. 이런 보도태도의 연장선상에서 실제 퍼센티지의 차이는 크지 않은데 '완전히', '더욱' 등의 수식어를 제목에 남용하여 보도하거나, 무응답층이 많은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만을 크게 다루는 등 편집에 있어 '편파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한나라당의 우세를 눈에 띄게 보도하거나 특정 지역의 민주당 지지를 하락 사실을 크게 보도하는 등 지나치게 특정 후보, 특정 당 편들기를 하고 있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보도가 제목의 미술이었다고 하겠다.

#### 4) 신문의 사회적 지향의 표현

우리 신문들은 특정집단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반면, 또 다른 특정집단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전교조나 시민운동에 대한 태도 등이 그렇다.

기간제 교사에 대한 처우 문제로 조사를 받던 교장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먼저 언론들은 이전에도 익히 보였던 기민한 '과감성'을 발휘하였다. 교장의 자살이 알려지자 교장이 왜 자살했는가에 대해 차분히 따져 보기도 전에 교장의 자살 원인에 대해 '언

신문의 사회적 지향이  
기사의 제목에 반영돼  
표현되는 경우 많아

론제판’을 행하였다. 『전교조 사과요구에 고민 초등 학교 교장 자살』(7일보, 2003년 4월 4일자), 『전교조와 갈등 초등학교장 자살, 학교 홈페이지 잇따른 비난글에 시달려』(2일보, 2003년 4월 5일), 『교권침해 사과요구 받은 초등학교 교장 목매 자살』(8일보, 2003년 4월 5일) 등의 제목을 일제히 달았다.

물론 모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는 초등학교 교장이 전교조의 사과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고, 또 그 사람이 자살한 사실이 있을 뿐 그 둘 사이의 관계가 밝혀진 바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앞의 제목들을 본 독자는 대부분 전교조의 사과요구에 시달려 자살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8일보는 아예 『전교조의 사과요구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규정해버렸다.

이후 전교조와 서 교장이 합의했고, 교감이 합의를 거부했으며 교장단 회의에 갔다 온 이후 교장이 자살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 과정이 교장이 고민하다 자살하게 된 이유라고 ‘시나리오’를 써 볼 수는 없을까? 이전의 추측 보도 식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사실’들은 주어졌다. 그런데 전교조의 추론에 대해 2일보는 사실을 통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였다. 사건의 수사를 좀 더 기다려 보라고, 언론들은 제목을 통해 추측을 확산하였으면서 전교조에게는 그런 추론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전교조에 대한 관점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다.

2003년 5월 2신문은 『갈등 커지는 새만금사업 / 보존이나 개발이나...정면충돌 태세』라는 기사에서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찬반 진영간 세싸움으로 치닫고 있다”며 갈등을 강조하면서 새만금 찬성, 반대 두 집단의 시위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물론 이 두 집단의 시위만을 놓고 보면 대립 갈등이요, 세싸움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갈등 당사자의 주

장이 가지는 명분의 정당성을 고려하면 그렇지 않다. 분명히 양자의 주장에 논리적 설득력이 차이가 있음에도, 동등하게 간주하여 언론에 대해 가장 많이 쏟아지는 비판인 대립 갈등 구도로 몰고 가는 양시양비론의 재판이 될 수 있다. 더군다나 이 기사에서는 대안은 많으나 현실성 있는 대안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안 없이 주장만 있는 집단의 갈등으로 새만금 문제를 호도할 위험이 있는 기사였다. 새만금에 대한 당시 신문들의 논조로 볼 때 이러한 보도가 이루어지는 배경에는 당시 정권의 실정에 대한 비판을 위해 ‘새만금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었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

또 다른 신문 역시 많은 기사에서 새만금 문제를 환경적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2003년 6월 7일에는 『이익단체 세(勢)대결 “이젠 국회로”』라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증권집단소송, 공무원 노조, 생명윤리법안 등 사회갈등 요소를 담고 있는 민감한 법안들이 국회에 속속 제출되면서 여의도가 이익단체들의 ‘힘겨루기 전장(戰場)’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한쪽에 선 갯벌의 보존을 요구하는 ‘3보 1배’ 행군이, 다른 한쪽에서는 간척사업 강행을 촉구하는 쉼기대회가 열리는 등 첨예한 사회적 논란거리로 부상한 새만금 간척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보도했다. 전술한 지적처럼 그 사안보다는 대립 갈등 구도로 몰아감으로써 사회 정의의 요구를 희석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전장, 세와 같은 용어가 들어간 제목이 뛰어난 효과를 발휘했음은 물론이다.

5) 신문의 상업적 속성

신문들은 선정적인 것에 대한 선호도가 있다. 물론

이는 독자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그 내용 전달보다는 갈등을 드러내 사람들의 관심을 호도하는 경우들이 있다.

교육부와 서울대가 통합형 논술고사 시행여부를 두고 대립을 한 적이 있었다. 이 사안은 교육부의 정책이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우수 학생만을 뽑겠다는 서울대의 통합형 논술고사가 반 미래지향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대가 자신의 의견을 드러낼 수는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민주사회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우선 여지없이 상업적이고 선정적이다. 이 사안에 '도발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언론이 그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언론이 오히려 더 부추기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대통령, 여당, 서울대 등의 발언을 제목으로 뽑거나 전면전, 진압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현상적으로 보면 이들 사이의 갈등 관계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서울대의 논술시험을 본고사로 볼 것이냐의 여부, 본고사가 필요하냐의 여부가 더 중요하다.

ㄷ일보는 서울대의 반응을 옹기면서 『진압이라니 ... 우리가 범죄자냐』(2005년 7월 8일자)를 제목으로 뽑았다. 물론 작은 제목과 내용은 서울대 안이 본고사가 아니라는 서울대측 설명이다. 흥신문도 마찬가지이다. 당정이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 핵심인 기사에 『전면전 선포』란다. 물론 당시 서울대 총장은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이 전면에 부각되었어야 할 것이다.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 중에서 『폭언인사가 주도하는 정책에 절망』(2005년 7월 8일자)이라는 표현을 제목으로 뽑아내는 ㄷ일보도 예외는 아니었다. ㄷ일보는 사실 제목을 『대학입시는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뽑았다. 대학의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보

다 더 좋은 비유가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교육부가 주장하는 3불 정책은 당시 정권이 내세운 것이 아니고 역대 정권이 지향해온 정책방향이었다. 그것도 모르고 교육문제를 다루었는지 의심스럽다. 결국 대립 갈등 구도의 선정적 보도 태도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목 달기가 이루어 낸 결과이다.

굿모닝 시티 윤 회장의 로비 사건도 역시 기사와 제목이 따로 놀았던 사례 중 하나이다. 의혹이 있는데 당사자는 부인한다는 매력적인 기사가 아니었을 것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부인 내용이 있어도 제목은 의혹이요, 의혹의 확산이다. 이 기사 역시 언론의 고질적인 병폐인 '특종강박증'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을 보도하면서 ㄷ일보가 보도의 기초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뭔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가 확인을 해주었다고는 하지만 검찰도 부인하고, 당사자들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실명보도가 가능한가? 기사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줄 문서가 있다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ㄷ일보는, 보도 당시로서는 100% 사실이라고 믿을만 했지만, 오보로 밝혀지면 대대적인 정정보도를 하겠다고 이례적인 선언을 했다. 보도 다음날에는 『'굿모닝 돈 수수설' 일파만파』(2003년 7월 17일자)라는 제목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당사자들의 부인 인터뷰 기사를 신기도 했다. ㄷ일보의 뒷심이 딸린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기사는 이미 나갔다. 결국 윤 회장의 로비에 여권의 핵심 인물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정보의 유혹을 떨쳐 버릴 수 없는 '특종강박증'이 작용한 것이 아니었을까?

## 6) 자사의 이해가 달린 보도

언론들이 자사의 이해가 달린 보도에서 냉정하고 객관적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일일수록 사실을 포함할 수밖에 없

신문들의 상업적 속성이나  
신문사의 이해관계 등에 따라 기사 제목이  
과장되거나 왜곡되는 경우도 있어

는 기사 본문과 제목의 괴리는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신문들이 이런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던 사례가 세무조사 시기이다. 2001년 대통령이 연두 성명에서 언론개혁에 대해 언급한 이후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연이어 시작되었다. 언론사들도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세무조사를 부담스러워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특히 큰 신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연일 기사와 사설로서 언론사 세무조사를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였다.

한 신문은 당시 진행되고 있었던 조사들을 언론탄압으로 몰고 가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야당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에 반영하고 있다. 2001년 2월 11일 한나라당이 발표한 ‘DJ’ 언론 발언록을 기사화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언론 자유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오다 집권 이후에는 정책 실패를 언론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주장을 그대로 옮겼다. 아마도 그 신문이 하고 싶은 이야기였을 것이다.

그 마음이 기사 제목 추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 신문이 새로 시작한 미디어면 첫 날, 언론사의 제정과 납세에 관해 다루면서 『한겨레 - 대한매일 등 5개, 97 ~ 99년 법인세 납부 “제로”, 95 ~ 99년 법인세 조선 633억, 중앙 426억, 동아 141억 납부』라는 제목을 뽑았다. 5개 신문사는 탈세했고 조선, 중앙, 동아는 성실 납부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이 그런 인식의 왜곡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의도적이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 신문의 기사를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이익을 남기는 좋은 신문 조·중·동, 이익도 못 남기는 5개 신문’으로 해석된다. 그게 그렇게 강조해야 할만한 상호 비평의 내용인가. 또 이익을 남겨야 좋은 신문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없어 보였다. 언

론사 세무조사가 탈세 조사하겠다는 것이지, 어느 것이 이익 더 남긴 좋은(?) 신문인가 알아보겠다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제목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었다.

언론사의 이해관계가 관련되면 분명히 자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기사는 변화한다. 2003년에는 미국 방송 시스템의 규제 완화가 관심대상이었다. 왜 미국 내 방송 정책이 우리의 관심사가 될까? 그것은 선진국의 사례에 ‘맹종’하는 우리 사회의 취약성 때문에 그렇다. 지금은 미국 내 비판도 소개하고 있고 아직 우리 사회의 주장으로 전염되고 있지 않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추종해야 할 또 하나의 가치로 우리 사회를 압박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때 신문들의 기사 제목에서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른 미래 주장을 엿보게 하는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도 있었다. 중립적 표현으로 전달하는 제목들이 대부분인 가운데, 『美 언론 ‘약육강식’ 시대, 미디어 소유제한 완화 파장』(기신문), 『‘미디어 소유제한 완화’ 결정/미 상원, 원상복귀 방안 고려』(흥신문) 등 우려를 전달하는 제목이 있는가 하면, 『[美 FCC 신문 - 방송 동시소유 허용] “뉴미디어 고속성장”』(디일보)처럼 그 장미빛 미래를 예측하는 제목도 있다. 더 나아가 기신문의 시론은 『또다른 폭거’美 언론소유 완화』인데 디일보의 시론은 『미디어 통합의 시대』이다. 1990년 후반 방송법 개정 논쟁에서 신문사의 방송사업 진출을 원했던 신문사들의 이해관계가 다시 등장하는 듯한 예였다.

### 3. 대안은 없는가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지나치게 정치 지향적이고, 상업적이며, 이념이 강한 신문들이 권력화했

다는 사실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비현실적이라 하더라도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은 언론 구조의 개혁이다. 사유화해가고 있고, 권력으로서 일정한 이념을 지향하는 신문들의 행태를 바꾸지 않고서 제목에 의한 왜곡이 사라지기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 해결을 포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다른 대안 역시 동시에 강구해야 할 것들이다.

### 1) 언론구조의 개혁

전술한 바와 같이 신문들은 1990년대 이후 정치적 통제가 약해지면서 상업적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증대하는 권력화 현상을 겪었다. 이러한 경험은 기사 제목의 왜곡을 악용하기도 하고 둔감해지게 만든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의 극복이 필요하다.

1990년대 말부터 진행해 온 언론개혁 논쟁은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사주의 영향력과 자본의 영향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우선 소유 지분 제한의 문제이다. 언론이 (대)자본에 종속됨으로써 자본에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러한 논리는 방송사의 대기업 참여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의 정신과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대기업과 계열 기업 및 사주 그리고 그에 피용되어 있는 자는 일간신문과 통신사 지분을 취득할 수 없게 하자는 것이다(김승수, 1998; 박형상, 1998; 김중서, 1996).

과거 정간법에 따르면 대기업이나 그 계열기업은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지분의 1/2 이상을 취득할 수 없도록(3조 3항)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기업이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대기업이 49%를 소유하고 대기업 소유주가 개인 자격으로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지금은 분리하였지만 삼성이 중앙일보, 현대가 문화일보, 한국화약이 경향신문을 이러한 방식으로 소유했었다.<sup>1)</sup>

공적 매체이어야 할 신문을 1인 또는 소수가 장악하여 여론을 좌우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따라서 그 소유 지분을 제한하여 일반적으로 언론을 장악하는 것을 막자는 것에 주안점이 두어진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한국기자협회, 한국프로듀서연합회 등 언론 3단체가 구성한 언론개혁정책위원회(1997, 27-29쪽)는 방송법에서 방송사 최대주주의 지분 한계를 30%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도로 신문사의 소유 집중을 제한할 것을 주장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개혁 논의가 정간법 개정 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편집 자율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법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은 국가권력이 중심이 되는 외부의 간섭과 내부의 기업 소유주의 경제적 목적에 의한 편집에 대한 간섭으로부터 언론인의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리보호, 즉 정확한 정보를 받을 권리, 알 권리의 충족과 언론이 수행하는 공적 임무를 통한 민주주의의 준립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이명구·이광진, 97쪽). 이러한 인식 아래 현재 신문법의 편집권 관련 조항을 권고(임의) 조항에서 의무 조항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통해 취재편집 종사자가 자유로이 취재한 사실에 근거하여 신문을 제작할 때 제

1) 예를 들어 문화일보는 현대그룹 계열사가 47.2%를 소유하고 나머지를 정주영, 정세영, 정몽준이, 경향신문은 한화화학이 49%를 소유하고, 김승연이 49.98%를, 중앙일보는 삼성 계열기업들이 42.51%를 소유하고 이진희와 전·현직 임원들이 나머지를 소유하는 방식을 취했었다.

언론구조 개혁 등의 대안을 바탕으로  
기사 제목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목 왜곡을 통한 기사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2) 신문윤리강령의 구체화

하지만 언론구조의 개혁은 그 효과가 큰 만큼 제도적 실현이 쉽지는 않다. 그 점에서 제목달기와 같은 언론행위는 언론사의 조직목표(예를 들어 수익극대화), 직업적 관행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론적)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제목의 문제는 미디어 윤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매일 접하는 기사의 제목은 현재 우리 언론의 질적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윤영태, 29쪽)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

따라서 당면한 상황에서 몇 가지 변화의 대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첫째가 신문윤리강령 구체화 같은 자율 규제의 강화이다(조용철 외, 299·311쪽 참조). 미국 직업 저널리스트 협회 시그마델타카이 윤리강령(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 Sigma Delta Chi, code of Ethics)에 따르면 정확성과 객관성 영역에 “4. 신문의 제목은 기사 내용으로 완벽하게 실증되어야 한다. 사건 및 TV 방송은 사건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야 하며 사소한 사건을 앞 뒤 없이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순하기는 하지만 현재 제목 왜곡의 정곡을 찌르는 조항이다. 이러한 직업윤리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이로부터 외부의 부당한 압력, 내부의 무언의 질서에 항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 신문·라디오·TV 윤리강령 역시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라’ 항목에서 “3. 신문제목, 리드의 내용은 기사 본문에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우리 역시 신문윤리강령은 아니지만, 신문윤리 실천요강에 “사실의 요약과 표제에 있어서도 사실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다. 윤리강령의 수준으로 그 권위를 강화하고, 좀 더 구체적인 적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더욱 큰 변수는 윤리 강령이 얼마나 실천되고 있으며, 위반 시 어떤 제재가 가능하냐의 문제이다.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3) 법적인 대응

언론의 보도로 인한 피해를 재판하면서 제목만을 별도로 판단하는 사례는 있기 어렵다. 다음의 판결 내용이 보여 주듯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신문 등 언론매체의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참조)”.

하지만 여기서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라는 해석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가면 언론학에서 제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논의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목은 현실에서 많은

독자들이 기사를 접하는 최소 단위이자 동시에 대부분의 경우 인식하는 전부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헤드라인이 본문에 없는 내용을 다루고 있을 경우, 헤드라인이 본문을 과장한 경우, 헤드라인이 본문의 일부만을 드러내어 왜곡한 경우, 본문에는 문제점이 없지만 헤드라인 자체가 위법한 내용일 경우 등등이 명백하게 구분되어 판결에 영향을 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제목의 경우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면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지만 제목 왜곡의 전형인 의견의 형식을 띠고 있을 경우는 오히려 언론의 논평의 자유 영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재판에서 유효한 판결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판결이 정립되면 그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조정·중재 절차도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재판에서 제목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대법원에서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징인이 ‘주사파’ 또는 ‘친북세력’으로 지목당하는 경우 그 특징인은 수사기관의 현실적인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반 사회세력으로 낙인찍혀 그 사회활동의 폭이 현저히 위축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주사파’라는 발언은 단순한 모욕적 언사를 넘어 충분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한다며 이는 언론이 의견과 평가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한 사실의 적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를 원용하면 제목이 본문과 무관하게 단순히 평가를 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실제적 피해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본문의 일부를 과장하여 표현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본문에는 사실이 충분히 적시되었다 하더라도 제목만 읽은 독자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제목에 따르는 실제적 피해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마땅하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판례들은 제목만을 겨냥한 판사가 아니며 제목만을 고려했을 때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제목과 관련한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판례가 성립되기를 기대해본다. □

#### 참고문헌

- 강준만(1993). 「권력과 언론」. 학민글밭 57. 학민사.  
 김승수(1998). 「신문 산업의 회생과 개혁을 위한 제안」. 언론개혁정책토론회 자료집. 39 ~ 52쪽.  
 김종서(1996). 「신문규제 입법의 필요성 - 내용과 한계」.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세미나 자료집 신문법제의 개선방향. 15 ~ 39쪽.  
 박유봉·서정우·차배근·한태열(1987). 「신문학이론」. 박영사.  
 박형상(1998). 「언론사 소유제한과 독과점 규제」. 언론개혁 심포지엄 자료집 『언론개혁, 지금이 기회다』. 33 ~ 44쪽.  
 언론개혁정책위원회(1997). 「언론개혁 10대 과제」.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윤영태(2006, 11). 「폭력 갈등 대립 등 내용보다 증폭된 제목 달아 - 무엇이 불량제목인가」. 신문과 방송.  
 이명구·이광진(1996). 「언론기업 내부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 헌법학연구. 제2집.  
 이철기(2005, 6). 「북한 관련 보도의 문제점과 과제 - '북한 핵실험 준비설'의 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언론노조/기자협회/PD연합회/인터넷기자협회/한국언론재단 주최 세미나. 2005. 6. 9.  
 임영호(2005). 「신문원론」. 한나래.  
 조용철·김진홍·송정민(2000). 「취재와 기사작성」. 양지.

# '헤드라인 저널리즘' 의 이상과 현실

- 편집기자가 말하는  
'헤드라인 저널리즘' 의 실제 -

이 상 국

일간스포츠 편집디자인에디터

- 중앙일보 위크엔 편집팀장  
중앙일보 경제편집부장
- 2006년 한국언론재단 언론교육원 겸임교수  
2005-2006년 경북대 신방과 편집 실무 출강
- 한국편집기자대상 제1회, 13회 수상  
'한국기자협회' 편집특종상 수상

## 1. 들어가는 말

'헤드라인 저널리즘'이란 말은, 헤드라인이 저널리즘이라는 점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과연 저널리즘인가. 신문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이 논란에 대해 선부른 답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은 위험하다. 헤드라인이 저널리즘이라고 보는 관점은 이미 헤드라인의 기능적 측면과 효과의 측면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다. 이런 시각은 옳을까. 헤드라인 저널리즘이라는 말은 자칫하면 헤드라인의 기능과 효과를 악의적으로 과장하거나 음모론적으로 해석하려는 일단의 관점들에 대해 힘을 실어주는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렇긴 하지만 신문 제작의 현장에서 20년간 일하면서 감지한 트렌드는 헤드라인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중사회가 역동적인 소통 구조로 변화하고 미디어 산업이 고도화되어가는 일과 맞물린 현상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헤드라인이 저널리즘화의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말과 통한다. 헤드라인의 이상(理想)과 그 출발이 단순하고 소박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현실 영역에서는 언론행위의 핵심적

일부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헤드라인 저널리즘에 관한 일련의 논의들은, 그런 징후들을 규명하고 정리해보자는 취지일 터이다.

## 2. 도대체 헤드라인이란 무엇인가

헤드라인의 저널리즘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이 용어에 대해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신문업계에서 헤드라인은 몇 가지 다른 용어들과 함께 서로 넘나들며 쓰인다. 제목, 표제, 타이틀, 카피, '미다시' 등이 그것이다. 제목이란 말은 가장 널리 쓰이고 있고 헤드라인이 지닌 다양한 성격들을 충분히 아우르고 있기는 하나, 바로 그 점이 문제이기도 하다. 제목이란 말은 개념이 너무 모호하고 넓다. 특히 소설, 연설문과 같은 다른 언어영역의 제목들 그리고 연극, 노래, 영화, 미술 등 다른 분야의 제목들과 신문 제목의 심각한 차이를 변별해내지 못한다. 제목은 다만, 내용물에 관한 호칭이며 함축적인 지시어이다. 하지만 때로 제목은 오디언스의 주목을 받기 위한 전략을 깔기도 한다. 표제(標題)는 일본 신문들이 써오던 용어

로 제목이란 의미와 비슷하나 독자들이 기사를 찾을 때 제목이 랜드마크처럼 두드러지는 점을 표(標)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다. 타이틀이란 말은 제목이란 말의 영어 표현이며 따라서 지나친 광의(廣義)와 범용성이 약점이다. 카피란 말은 광고의 카피라이팅에서 빌려온 말이다. 카피는, 채택되는 언어들의 창의성과 전략성이 부각된다. 카피에디팅(copy editing)은 편집의 언어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한 말이다. 그런데 이 표현은 사실, 헤드라인이 편집자의 발상과 기획에 의지하는 점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기사를 가감 없이 충실히 전달해야하는 헤드라인 본연의 정신을 간과하는 것처럼 보인다. 광고 카피는 철저히 마케팅의 산물이지만 신문 기사의 '카피'는 마케팅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미다시'는 일본 신문들이 표제라는 말 대신에 쓰기 시작한 용어이다. 이 표현은 우리말에서 '뽑는다'는 말과 비슷하다(우리는 흔히 제목을 뽑는다는 말을 쓴다). 샘플이나 견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샘플이나 견본은, 그것의 본론인 콘텐츠와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미리 제공하는 서비스란 개념이 들어있다. '미다시'는 헤드라인의 배치를 기사의 쇼윈도 개념으로 본다. 헤드라인이 지닌 인덱스 기능을 강조한 개념이다.

헤드라인이란 말에는 위의 용어들이 지니지 않은 특기할 만한 함의가 있다. 헤드라인이란 말은 바디라인이란 말과 양립한다. 우선 '라인'이라는 말은 글자들이 늘어선 행(行)이라는 의미이다. 라인이란 말은 명사형의 함축에 강조점을 두는 '제목'과는 달리, 길게 표현되는 진술을 허용한다. 미국이나 유럽 신문들의 비교적 긴 제목들은 바로 저 '라인'의 개념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들이 '라인'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완전한 문장으로 이뤄진 진술(statement)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문 제목이라고

말하는 개념에 근접해있는 표현이다. 물론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함축은 필요하다. 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 적시(指示)가 있느냐 없느냐가 헤드라인의 진술과 다른 제목의 중요한 차이이다. 예를 들면 '호환(虎患)'이라고 다는 제목과 "지난밤 호랑이가 김 모 씨 네 닭 두 마리 물고 갔다"라고 다는 '라인'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라인은 문장이다. 그것이 명사로만 이뤄져 있다 하더라도 '문장'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바디라인도 라인이다. 그러니까 헤드라인과 바디라인은 같은 진술방법을 지닌다는 점이, 저 용어에는 강조되고 있는 셈이다.

헤드는 머리다. 그것은 바디의 상대어로 쓰이고 있다. '머리'는 중요한 것, 앞선 것, 먼저 내놓는 것, 지적인 활동 등을 암시한다. 물론 그 말의 원뜻은 그것이 놓이는 위치를 표현하고자 했을 것이다. 기사의 머리 자리에 놓이는 게 헤드라인이다. 먼저 놓인다는 것은 독자가 먼저 읽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국의 브라운(Charls H. Brown)은 헤드라인을 "삼키기 쉽도록(easy swelling) 하나의 캡슐 속에 넣어놓은 종합(synthesis) 결정(crystalization) 증류(distillation)의 알약"이라고 말한다. 헤드라인 캡슐을 삼키는 사람은 독자이다. 헤드는 바로 바디를 '종합한 것'이고 '매력을 응결시킨 것'이며 '핵심을 뽑아낸 것'이다. 헤드라인은 기사를 종합 결정 증류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기사'이다. 그것도 독자가 가장 먼저 복용하는 기사이다. 또 신문 훑어 읽기를 하는 상당수의 <헤드라인 독자>들에게는 그것이 '기사'의 전부일 때도 있다.

### 3. 헤드라인 저널리즘의 문제의식은 무엇인가

1930년대 조선일보가 편집부를 만든 이후 70여 년 동안 한국의 신문사들은 편집기자를 육성해 신문을

‘헤드라인’은 기사를 종합·결정·증류한 것인 동시에  
그 자체가 기사이기도 해

만들어왔다. 편집기자는 한국에만 있는 고유한 직책은 아니지만 이 땅의 편집기자는 상당히 독특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은 신문제작 영역의 핵심적인 실무를 관장해왔다. 기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을 주도하고 헤드라인을 다는 일 그리고 지면 디자인까지 맡았으며 조판과 인쇄 공정까지 일부 관여하여 지휘했다. 이른바 취재업무를 제외한, 신문 제작의 전 영역을 총괄하는 일이었다. 거기다가 취재부서가 빠질 수 있는 ‘취재원 중심의 관점’을 바로잡는 게이트키퍼 역할도 중요시되었다. 일본의 정리부가 지면 제작 실무에만 종사하고, 미국의 많은 신문사들이 철저히 영역별로 나누어 운영하면서(카피 분야와 디자인 분야 그리고 코디네이터) 기능을 전문화해 온 것에 비한다면 한국의 편집기자는 방송사의 PD처럼 제작의 지휘자였다. 편집부는 취재기자들처럼 신문에 기명(記名)으로 이름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내부 실력자로 큰 자부심을 느껴온 것도 사실이다. 반면 업무 과중에 시달렸다. ‘편집부의 전횡’을 성토했던 신문사 내부의 분위기도 없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컴퓨터 제작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 분야의 생력화(省力化)가 빠른 속도로 이뤄진다. 문선(납활자를 뽑던 직책), 정판(쇠틀 위에서 판을 짜던 직책)이 사라지고 컴퓨터 조판을 담당하는 오퍼레이터가 등장한다. 최근 들어서는 그들 또한 사라지면서 편집기자들이 조판을 함께 맡는 체제가 보편화된다. 10여 년 동안 신문사들이 제작과 관련한 일련의 구조조정을 수행하면서, 편집기자의 역할이 재조정되기 시작한다. 뉴스 가치를 평가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은 취재부서를 총괄하는 ‘에디터’에게 넘겨주는 상황이다. 일부 신문사에서는 유럽처럼 헤드라인을 다는 역할 또한 에디터에게 맡길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신문 디자인은

전문 디자이너에게 맡기는 실험도 하고 있다. 이런 흐름이 보편화된다면, 편집부는 70년 역사와 함께 간판을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변화는 한국이 나름대로 발전시켜 온 신문 헤드라인의 체계와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된다. ‘헤드라인 저널리즘’은 그런 반성과 징후들을 요약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이 땅의 헤드라인은 편집기자의 손을 떠나 취재경력을 쌓은 ‘에디터’(취재부서장이거나 그보다 상위의 ‘작은 편집국장’, 이제 이들의 직책 명칭이 editor-편집자-이다)들에게로 서서히 넘어가려는 움직임이다. 따라서 헤드라인 저널리즘의 주체는 편집기자일 수도 있고 취재부서장이일 수도 있다. 이 점을 간과하면, 문제의 핵심을 놓치기 쉽다. 편집기자가 헤드라인을 다는 기본 원칙은 ‘독자 베이스’다. 편집기자는 편집국 내의 최초의 독자로서, 독자 수준의 지식과 감각으로 제목을 달아 왔다. 편집기자는 뉴스 생산자와 뉴스 소비자를 잇는 매개자 역할을 했다. 이런 역할은 뉴스를 소비하는 시점에서의 열독 환경과 독자 상태를 고려한 신문사 나름의 ‘소비자 마인드’였다. 그러나 이제 뉴스 생산자가 직접 독자와 만난다. 제목은 그 직거래 창구이다. 뉴스의 ‘중간 유통’을 줄이면서 신문사는 획기적으로 인력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찾았다. 독자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시장환경 속에서 이 같은 구조조정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매체 간의 경쟁, 신문사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헤드라인’은 뉴스를 미리 맛보는 서비스를 넘어서서 독자를 붙잡는 역할을 중시하게 된다. 취재원과 독자를 연결하는 ‘에디터’들은 신문 판매를 신장시키는 뉴스마케팅에 눈을 뜨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신문사는 팩트(fact)를 파는 팩토리(factory)가 아니다. 비유하자면, 팩트를 채굴(採掘)하여 원료 상태 그대로 파는 광산회사가 아니다. 팩트라는 원석(原石)은 신문사의 가공 노하우와 브랜드 이미지에 힘입어 소비 가능한 매력적인 보석으로 만들어진다. 이 보석회사는 좋은 원석을 쓰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원석을 가공하는 실력이 더욱 중요하다. 가공된 제품은 그 회사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소비자는 그 이미지를 구매한다. 팩트라는 원석이 신문 매체에 뉴스로 실리는, 일련의 선택들과 강조들이 편집 행위다. 신문을 만드는 모든 행위, 즉 신문편집은 사실상 팩트를 '손질'하는 행위다. 팩트를 고르는 행위, 선택되지 않은 팩트들을 버리는 행위, 부각시키고 소외시키는 행위, 팩트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 팩트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행위, 팩트를 비교하고 비판하는 행위. 이 모두는 팩트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일이다. 편집은 대개 뉴스의 선택과 소외, 문제에 대한 태도와 관점들로 표현된다. 독자들은 팩트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사에 의해 손질되거나 정리된 '팩트 가공품'을 소비한다. 뉴스가 선택되는 것은 팩트가 지닌 매력을 저울질한 결과이며, 입장과 해석들은 팩트의 매력을 증진시키려는 의도의 결과이다. 독자가 그 매력에 공감하고 그 매력에 기꺼이 돈을 지불할 때, 뉴스는 소비된다.

'헤드라인 저널리즘'이라 할 때의 저널리즘이란 명칭은 사실 모호한 표현이다. 저널리즘이 사회정의의 실현이나 냉철한 지성을 바탕으로 한 아카데미즘으로 이해되는 경우는 사실상 근대적 저널리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언론 출판의 자유가 정립되던 시절, 시민계급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구축된 공기(公器) 개념의 저널리즘은 물론 아직까지도 유효한 점이 있다. 현대적 저널리즘은 '언론 운동'이 아니라 소비자가 있어야 하는 생존할 수 있는 상품이란 의

식을 반영한다. 당파와 주의주장은 많은 독자에게 팔리지 않으므로 불편부당과 객관주의를 외친다. 독자에게 영합하는 선정성이나 상품 가치를 높이려는 오락성은, 사회적으로 건강한 기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이미 마음에 두지 않는다. 요컨대 현대 저널리즘은 자본의 법칙과 기업성이 강조되는 개념이다. 헤드라인 저널리즘의 문제 제기를 다시 정리하면, 현대적 저널리즘에 헤드라인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질문과, 근대적 공기(公器) 매체의 역할을 외면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헤드라인 저널리즘은 건드린다. 헤드라인이 저널리즘화 하는 것을 우려하는 관점은, 헤드라인이 기사를 요약하거나 샘플링하는 기능 이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시각이다. 헤드라인은 기사를 넘어서서는 안 되며, 그것은 팩트의 왜곡이라는 관점이다. 이 문제는 기사와 헤드라인 간의 문제이기도 하다. 기사는 사실상 팩트를 '1차 편집( 기사를 선택하고 하나의 입장에서 팩트를 기술)'한 것이다. 헤드라인은 이미 편집된 기사를, 더욱 짧은 말로 2차 편집한다. 제목은 기사 중에서 일부 내용이나 관점을 선택하여 부각시킨다. 기사에는 없는 '해석이나 평가'가 들어가기도 한다. 헤드라인 저널리즘은 이 '재편집'을 문제 삼고 있는 셈이다.

일부 학자들이 신문 헤드라인에 대해 지니고 있는 문제의식처럼 편집기자들이 상업주의 때문에 기사내용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관점은 적절한 것일까. 독자들의 눈길을 붙잡으려는 전략이나 혹은 독자들이 쉽게 기사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일까. 헤드라인 저널리즘을 논의하는 상당수의 학자들의 견해는, 기사는 팩트에 입각하고 있는데 제목을 발췌하는 과정에서, 혹은 언어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헤드라인이 그 팩트를 왜곡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수긍할 만한 점이 있다. 헤드라인의 발췌와 압축이, 정치적인 견해를 강화하거나 광

헤드라인 저널리즘은 기사 내용 중  
일부 내용이나 관점을 선택해 부각시키고  
때론 기사에 없는 해석이나 평가가 들어가기도 하는  
‘재편집’을 문제 삼고 있어

고주의 이익을 두둔하는데 쓰여 지는 경우가 없지 않으며 또 센세이셔널리즘에 활용되는 측면도 있는 게 사실이다. 편집기자의 언론 윤리가 중요시되는 것은 이런 인식에서다.

그런데 헤드라인이 저널리즘화하는 것이 반드시 편집기자가 언론 윤리를 잊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헤드라인은 태생적으로 저널리즘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기사가 팩트에 기반하고 있다면 헤드라인은 기사에 기반하고 있다. 기사에 비해 제목은 간접적으로 팩트를 만나는 셈이다. 게다가 기사는 보다 많은 문장을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섬세하고 치밀하게 팩트를 전달할 수 있지만 제목은 짧게 압축해서 표현해야 하는 제약이 지니고 있다. 따라서 메시지의 유통과정에서 노이즈가 끼어들 가능성이 있고, 또 긴 문장으로 표현된 팩트를 다시 압축하는 과정에서 진상이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이쯤에서 메시지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자. 기사는 팩트 그 자체가 아니라, 팩트로 보여 지는 것을 취재하여 글로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는 기자의 입장과 관점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최근에 만든 두 개의 영화는 입장과 관점에 대해 웅변한다. 미군과 일본군의 이오지마 전투를 그린 두 개의 영화 중에서 ‘아버지의 깃발’은 미군의 관점에서 본 전쟁을 그려나갔고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는 철저히 일본군의 관점에서 전쟁을 보고 있다. 이 두 영화를 보고나면, 전쟁은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 두 개의 상반된 입장들의 갈등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미군의 입장에서 보여 지는 전쟁에 관한 팩트와 일본군의 입장에서 보여 지는 팩트는 전혀 다르다. 하나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은 오직 자기들의 목숨을 노리는 괴물과 다르지 않다. 기자

가 미군 진영에서 취재한 중군기자였다면 미군의 입장과 관점으로 기사를 썼을 것이며, 일본군 중군기자였다면 전혀 다른 기사를 썼을 것이다. 동일한 전쟁이라는 하나의 팩트가 거의 상반된 기사로 씌어졌다고 해서, 양쪽의 중군기자들이 팩트를 왜곡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기자들은 자기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기사를 썼을 뿐이다. 문제는 입장이다. 팩트를 완전한 형태로 가감 없이 전달한다는 것은 이상이다. 그 전달자가 인간이라면, 거기에는 인간의 감성과 개인의 선입견과 입장에 따른 견해가 어떤 형태로든 개입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사는 ‘팩트’가 아니라, 팩트를 일정하게 편집한 ‘경험과 견해’의 요약이다.

헤드라인은 저 ‘편집된 팩트’를 다시 편집한다. 기사에서 표현된 팩트를 재구성하고 기사의 편집 의도를 추론하여 그것을 제목으로 표현한다. 재구성과 추론의 과정에서 또 다른 입장과 견해가 개입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사 전부를 제목으로 달 수는 없으므로 당연히 축약이 일어나고 취사선택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기사를 저널리즘으로 이해하는 까닭은 팩트와 기사 사이에 존재하는 험거운 영역에 기자의 견해와 관점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헤드라인을 저널리즘으로 이해하는 까닭도 기사와 제목 사이의 험거운 영역에 편집자의 견해와 관점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편집자의 견해와 관점이 상식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하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언론 윤리는 뉴스에 개입하는 개인의 입장과 판단이 공적인 건전성을 갖춰야 한다는 믿음이다.

그런데 헤드라인은 기사의 팩트를 전달하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독자마인드’에 눈을 뜬다.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뉴스공급자의 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보전달의 효과와 독자 영향력

을 고려하게 된다. 신문을 독자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행위는 '시장행위'라는 점에 눈뜨면서부터이다. 정보 전달은 상대가 있는 행위이므로 경쟁업체와는 다른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이 같은 인식이 기사와 헤드라인이라는 정보전달의 수단을 현대적 의미의 저널리즘으로 변모시킨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공적 기능을 가진 언론으로서의 부적절한 상흔(商魂)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신문의 '저널리즘'은 바로 편집의 작동이다. 편집자는 독자가 신문을 소비(열독)하는 순간의 상태를 고려해 헤드라인을 구성하며 독자의 관심을 붙잡는 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선정성(煽情性)과 팩트의 과장, 희화화, 말장난, 말초적 왜곡 등이 일어나는 것은 그런 노력들이 과도해진 결과이다. 저널리즘 비난은 그 '과도함'에 대한 지적이어야 옳다. 신문이 소비자가 채택하는 상품이라는 인식 전반을 비판하는 '헤드라인 저널리즘론'은 비현실적이며 비판을 위한 비판일 가능성이 있다. 언론이 헤드라인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선정적인' 공을 들이는 풍토는 일정하게는 현실로 인정해야 한다. 다만 그 선정성이 독자에게 해악이 되는 경우를 이성적으로 저울질하여, 기준을 세우는 일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헤드라인 저널리즘의 논의는 바로 이 기준과 잣대를 세우는 논의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 4. 헤드라인, 그 현장의 고민들

편집기자들은 헤드라인을 달 때 주로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다. 첫째는 팩트의 측면이다. 이 기사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 즉 WHAT의 측면이다.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흥미로운 게 있는지 따져본다. 흥미에도 큰 흥미와 작은 흥미가 있고 공공연히 흥미로운 것이 있고 은밀히 흥미로운 것도 있다. 당장

흥미로운 것도 있으며 앞으로 흥미로워질 것 같은 것도 있다. 기사의 배경이나 환경도 '팩트'의 중요성을 키운다. 역사적 맥락이나 민족의식, 국가의식, 사회적 트렌드, 인류의 공감대, 보편적 희망, 교양의 고양(高揚), 추억, 동심 또한 헤드라인을 달 때 고려하는 전략적 요소들이다. 또 다른 것과의 연관성이나 성적인 암시도 중요시된다. '무엇'을 썼느냐를 검토할 때 다양한 관심이 반영된다. 독자의 관심과 기자(미디어)의 관심, 공적인 관심과 사적인 관심 여부를 따진다.

두 번째는 기사의 취지와 의도를 검토한다. WHY의 측면이다. 일선 기자의 취재배경이나 데스크의 기획의도를 파악하여 헤드라인에 반영한다. 기자가 쓴 글이 처음에 담으려했던 '팩트'를 제대로 담지 못했을 때, 편집자는 처음의 의도를 재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취재기자가 취재원의 입장을 고려하여 얼버무린 팩트를 명확하게 제목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편집자가 '기사의 취지와 의도'를 중요시하는 것은 헤드라인이 저널리즘 활동이라는 의식을 깔고 있다. 취재 기사 또한 하나의 정보전달 행위이며 거기에 입장과 태도가 개입될 수밖에 없으므로 좀 더 팩트에 긴밀히 접근하여 사실의 왜곡을 줄이려는 노력이다. 헤드라인은 기사라는 텍스트만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런 적극적인 '필터링'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독자의 입장에서 검토한다. WHO의 측면이다. 헤드라인은 WHAT과 WHY를 WHO에게 전달하는지를 의식하는 태도이다. 헤드라인을 다는 편집기자가 존재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기도 하다. 편집기자는 전문가 수준의 기사를 독자 수준의 '헤드라인'으로, 반쯤 씹어서 입에 넣어주는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다. 어려운 말은 쉽게 풀고, 긴 말은 짧게 줄이고, 예들러 표현하거나 어렵게 뒤틀어 놓은 말은 명쾌하게 핵심을 잡아내고, 무미건조한 말을 매력적인 말로 바꿔놓고, 평범해 보이는 얘기를

헤드라인의 매력을 높이기 위한 ‘선정적인’ 공을  
들이는 풍토는 일정 정도 인정하되 그 과도함을  
경계할 수 있는 기준과 잣대 세우는 논의 필요해

관심이 가게 만든다. 편집기자는 취재원들에게서 자유로우며 전문가의 ‘동굴’ 속에 있지도 않다. 그의 위치는 독자에 가깝다. 독자의 눈으로 기사를 읽어낸 뒤 독자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헤드라인을 뽑아낸다. 이것 편집기자들은 ‘독자 마인드’라고 부른다. 헤드라인은 철저히 독자 마인드의 산물이다. 바꿔 말하면 말하면 헤드라인은 신문이 독자를 위해 벌이는 중요한 ‘마케팅’의 일부이다. 물론 이런 행위가 ‘지나친 친절’이나 ‘잘못된 의욕’, ‘무절제한 독자영합’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점은 경계해야 한다.

경제섹션에 취업 관련 기사, 무인경비 서비스 업체인 캡스를 다뤘다. 이 기사를 관심 있게 볼 사람은 아마도 취업준비생과 좋은 인력을 뽑기 위해 애쓰는 기업 쪽의 사람들일 것이다. 신문은 양쪽의 니즈를 증대해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출동대원이라는 독특한 직업을 소개하는 기사의 헤드라인은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까. 지나치게 기업을 홍보하는 쪽으로만 기울어서는 안 된다. 성실하고 건강한 사람을 뽑겠다는 인사 담당자의 말을 채택할 경우, ‘취업 공고’ 같은 냄새가 난다. 이 기사가 일반 독자들에게도 매력을 지니려면 무엇이 재미있는 요소인가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 편집자는 경찰복 비슷한 옷을 입고 비상벨이 울리면 출동하는 그 직업의 특수성에서 재미를 찾으려 한다. 그래서,

넌 출근하니? 난 출동한다

로 제목을 달았다. 취업하면 다른 사람은 출근하는데, 이 직원들은 ‘출동’을 하는 긴장감 있는 일을 한다는 얘기다. 출근과 출동의 비슷한 말을 대비시킴으로써, 언어의 즐거움과 이 직업의 핵심을 포착해낸

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캡스 직원이라고 출근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표현에는 과장법이 들어있다. 기사를 읽히게 하고, 독자의 주의를 잡으려는 편집자의 이런 노력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일본의 호황이 길어지고 있다는 기사. 기간을 따져보니 4년 3개월이다. 1965년부터 1970년 사이의 호황기에 이어 두 번째로 긴 호경기이다.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늘리고 고용과 소비 증가가 선순환의 흐름을 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기사의 헤드라인은,

일본 ‘4년 3개월의 봄’

으로 달렸다. 봄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모두 길어야 석 달이다. 4년 3개월 동안 봄이 지속되었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봄’이 비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일종의 모순어법이다. 이 기사가 나온 시점은 봄이다. 사람들이 현실로 느끼는 봄을 비유로 채택해서, 실감나게 문제의 핵심을 붙잡고 있다. 이때 모순어법은 긴 호황이 이례적임을 돋을 새기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비유’가 주는 과장법은 있다. 호경기과 봄은 정확하게 같은 정도의 의미값을 갖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한국의 닷컴서비스를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야후와 구글은 자신들의 사이트에 네이버나 싸이월드가 하고 있는 지식검색이나 카페, 아바타를 깔고 있다. 이 기사의 헤드라인은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야후, 구글은 ‘따라쟁이’

아이들이 쓰는 말을 비유로 썼다. 그들의 태도가 유치하다는 암시를 담는 제목이다. 그리고 그래픽은 붕어빵 이미지를 활용해 그들이 우리기업의 '무기'를 흉내 내는 것을 꼬집고 있다. 자칫 딱딱해질 수 있는 기사인데 재미를 높였다. 그러나 이런 식의 '비아냥'이 값싼 내셔널리즘일 수도 있다. 헤드라인은 그런 경계 위를 걸어간다.

코스닥의 테마주들을 덩석 샀다가 손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 연예인이 주주로 참여했다거나 로봇산업을 지원한다는 등 실적과 관계없는 '호재'들 때문에 가격이 똬 테마주들을 조심하라는 기사가 나왔다. 헤드라인은,

#### 코스닥 '테마불사' 믿지 마라

이렇게 달렸다. 이 헤드라인의 포인트는 '테마불사'이다. 원래 바둑의 용어인 '대마불사(大馬不死)'를 살짝 바꾼 것이다. 테마주를 사면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항간의 믿음이 위험하다는 걸, 저 네 글자의 조어로 간명하게 보여준다. 편집자의 재치가 엿보이지만, 저 언어유희가 투자자에게 자칫 또 다른 '편견'을 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코스닥 테마주 너무 믿지 마라'로 짧게 가라고 말해야 할까.

헤드라인 저널리즘에 관한 통찰을 주는 가장 인상적인 사례는, 2005년 8월 북한 대표단 국립묘지 참배와 관련한 각 신문들의 제목들이다. 북한 측이 뜻밖의 제안을 하자 국내 언론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한 태도는 우리나라 언론의 성향을 반영하는 핵심적인 잣대가 되어온 게 사실이다. 보수적인 신문들은 북한에 대해 불신과 적대감을 대개 풀지 않으나, 진보 성

향의 신문들은 때로 북한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 공격적인 신뢰를 보여주기도 한다. 어느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남북 상황이며, 한쪽 논리만으로 다른 논리를 제압하는 일이 때로 위험한 독선이 되어온 우리 사회이다.

한겨레신문의 헤드라인은

#### 북 대표단 8.15 때 현충원 첫 참배

로 뽑았다. 1면 좌상단 톱이었고 4단으로 처리했다. 이 위치와 크기를 편집 관행상의 상식으로 풀면 '충분히 머리기사로 처리할만한 힘 있는 기사'라는 함의다. 제목은 기사가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충실히 축약하고 언어를 알뜰하게 사용해서, 모범적인 헤드라인 기법을 보여준다. 중앙일보도 역시 1면 톱으로 처리했다. 같은 좌상단 4단이지만 어깨제목(주제목 위쪽에 부제를 걸치는 형식)을 활용해 훨씬 더 크게 처리했다.

#### 8. 15 민족대축전 북한 대표단 30여 명(부제목) 14-15일께 국립묘지 참배(주제목)

이 경우 주제목의 사이즈가 더 커진데다 고딕으로 처리해 힘을 줬다. 중앙일보가 자주 제목에 보여주는 전략은 숫자이다.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설득력을 제목에 담기 좋아하는 특징이 있다. 이런 헤드라인들은 중앙일보의 이미지를 이룬다. 사실 저 헤드라인만으로 보자면 긴급하게 전달해야 할 말들이 아닌 표현들이 늘어서, 약간 산만한 구성이 되었다. 이런 헤드라인의 약점은 한 눈에 속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깨제목의 경우, 큰 글씨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다(14-15일께 국립묘지 참배). 그 제목의 함의를 정리하면, 중앙일보는 이 기사의 가치에 대해 한겨레보다 더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

헤드라인에 편집자 의견이 들어가는 자체를  
제어하기 보다는 그 의견의 보편타당성과  
이성적 합리성에 주목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해

지만, 그것의 팩트만을 부각시키지 않고, 기록적인 의미를 부각시킨 산만한 진술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는 한겨레신문의 방식과 비슷하다.

북 대표단 ‘국립현충원’ 첫 참배(경향신문)

북 대표단 국립묘지 참배한다(동아일보)

그런데, 한겨레와 다른 점은, 그 위치이다. 경향은 오른쪽 상단(즉 사이드 위치)에 4단으로 배치했고, 동아는 같은 사이드이되, 한단 더 줄여 3단으로 썼다. 즉 기사가치에서 한겨레나 중앙에 비해 낮춰 잡고 있다. 조선일보의 경우는 다른 신문과 상당히 다르다.

북 대표단 “8. 15행사 때 국립묘지 참배”(부제목)

김정일 왜?(주제목)

다른 신문들은 스트레이트 진술(이 기사는 발생 상황에서 보도하는 제1신(信)이다)로 제목을 뽑은 반면, 조선일보는 그 1신은 어깨 위에 처리하고, 독자들의 궁금증을 큰 제목으로 뽑았다. 헤드라인의 위치도 독특하다. 의식적으로 상단을 피하여 지면의 배꼽 자리에다 배치를 했다. ‘김정일 왜?’ 라는 자극적인 제목은, 다른 어느 신문보다도 사이즈가 크다. 조선일보의 1면 헤드라인의 함의는, 북한이 제안한 일에 대한 불신이다. 북 대표단의 말은 작은 제목으로 처리되고, ‘도대체 저의가 뭘까’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스트레이트 제목에 이 같은 ‘의견’이나 ‘기분’을 넣는 경우는, 독자들이 이런 의견이나 기분에 대해 강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신문이 확신하고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각 신문들의 1면 헤드라인의 속뜻은 그 날짜 3면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빗장 풀린 ‘금기’ ... 진정한 화해 첫발 땀다

(한겨레신문)

‘마지막 금기’ 깬 화해의 상징

(경향신문)

북한 측서 자발적 참배 제안 남북관계

상징적 사건(중앙일보)

김정일 ‘금기깨기’ 제안...정부 고민 끝 수용

(동아일보)

방북 남 인사에 김정일 조문 요구 가능성

(조선일보)

한겨레의 표현 중에서 주목할 부분은 ‘빗장 풀린’이란 말과 ‘진정한 화해’, ‘첫발 땀다’라는 3종의 칭찬이다. 북 대표단이 국립묘지를 참배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만으로 이 정도의 찬사를 보낸 건 과격이라 할 만하다. 그 뒤 북한의 핵개발을 생각해 보면 이 제목은 조금 많이 나갔다.

경향신문은 ‘빗장 풀린’이란 말을 쓰지 않았지만 금기를 깬다는 점에 점수를 준다. 그리고 ‘진정한 화해’가 아닌 그냥 ‘화해’라는 표현을 써서, 한겨레보다는 냉정을 지키고 있다.

중앙일보는 1면 헤드라인에서 보여준 수다스럽고 복잡한 제목 형식을 다시 이어간다. 이런 방법은 기사 가치의 형식적 크기를 보여주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북한에 대해 평가하는 일에는 조심스럽다. ‘자발적’이란 표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앙일보가 이 사건에서 유의미하게 생각하는

건, 남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북한이 자발적으로 제안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앞의 신문들이 표현한 '진정한 화해'나 '화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대신 경향신문이 화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에서 쓴 '상징'('화해'보다는 '화해의 상징'이 다소 소극적인 평가이다)이란 말을 쓰고 있다. '상징적 사건'이란 표현은 판단 보류를 암시한다. 호평에 편승하는 인상이지만, 실은 중립적인 뉘앙스에 가깝다.

동아일보는 '평가'를 생략하는 대신 탄 소리를 한다. 김정일이 '금기깨기'를 제안했다는 점을 앞세우고는 있지만, 그 뒤에는 그 사건의 평가나 의미 분석이 아니라, 그런 제안을 받은 정부의 고민을 달아놓고 있다. 이른바 문제를 살짝 비켜가면서 냉담을 유지하는 제목이다.

가장 적극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내놓은 신문은 조선일보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상대의 선의(善意) 속에 숨은 속셈을 분석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북한이 그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것은 차후 그들 또한 우리에게 그 정도의 행위를 요구할 거라는 관점이다. 북한 정권에 대해 깊은 불신을 드러내는 기획 기사이며 그것에 발맞춘 헤드라인이다. 이 신문은 1면에 '왜?'라는 질문을 내놓은 뒤 3면에 나름대로 그 대답을 이어놓고 있다.

5개 신문의 1면과 3면 편집자들이 함께 모여서 치밀한 각본을 짰다 해도, 프리즘 속의 빛과도 같이 헤드라인의 뉘앙스가 5개의 톤으로 나뉘어지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 헤드라인 저널리즘은 같은 사건을 다루는 기사와 해설이 다섯 가지 빛깔로 갈라질 수 있는 헤드라인의 '빛깔'에 관한 논의이기도 하다. 이것은 신문사의 논조를 잘 이해하고 있는 편집자들이 나름대로 사건의 기사가치와 의미를 읽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진상의 왜곡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사실 견해와 입장

인 경우가 많다. 헤드라인 저널리즘은, 견해와 입장의 차이가 반영되는 '편집기술'에 대한 타당성 논의를 넘어서서, 견해와 입장의 차이가 생겨나는 사회의 여론 환경에 관한 논의여야 할지도 모른다. 헤드라인이 기사가 허용하는 의미 범주를 넘어서 있느냐를 따지는 건, 각 신문사들이 오히려 자체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에 가깝다. 헤드라인의 '뺨뺨기'나 '의미 왜곡', 속칭 '뉘시질'(내용없는 유혹)은, 그것을 외면하는 독자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헤드라인이 기사를 넘어서었다는 비판들은, 헤드라인이 표현하는 '견해'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나올 경우가 많다. 헤드라인의 견해에 반대하는 것과, 헤드라인이 작동하는 '저널리즘 구조'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주 다른 일이다.

## 5. 맺는 말

헤드라인 저널리즘의 논의는 신문 '헤드라인'의 함의와 작동 구조를 읽어내려는, 보다 성숙한 언론 논의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헤드라인 논쟁이, 경쟁 환경 속에서 뉴스를 읽어내는 솜씨와 안목을 무기로 하는 신문 편집자의 역할 자체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공허하다. 헤드라인 저널리즘은 독자의 눈길과 선택을 받아야 하는 '신문 환경'의 산물이다. 헤드라인이 어떤 의도를 지니거나 표현 기술 미숙으로 오해를 부르는 경우가 물론 없지 않다. 그것은 헤드라인 저널리즘이란 보편적 문제로 비약할 것이 아니라, 저열한 편집 관행들과 편집 기술들로 비판되어야 한다. 헤드라인에는 편집자 의견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닌다. 그 자체를 제어하려는 생각은 현실적으로 무모하고 위험하다. 문제는 그 의견의 보편타당성과 이성적 합리성이 아닐까. □

## 2006년도 국내언론관계판결의 동향

### I. 서론

민주주의에 필수불가결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국민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향유하는 자유는 한편으로는 서로 상호 보완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 충돌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제3자가 향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하여 우리 헌법은 우선 제2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한편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두 법익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4조에 의한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 형법 제307조 이하의 명예에 관한 죄 등은 위 헌법규정을 구체화하고 있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과거 검양을 미덕으로 공개적인 표현을 삼가는 전통적 사회에서 상대주의를 기본으로 개방적인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현대 서구식 민주주의 사회로의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언론·출판에 관한 법 이론과 판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구체적으로 형성한 언론관계 주요 판례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언론관계 판결의 과거와 현재를 확인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06년 국내언론관계판결은 전체적으로 보아 언론에 대한 종래의 입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판결은 없었다고 총평할 수 있다.

### 성 선 제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고려대 법대 졸
- 미 인디애나대 법학석사
- 미 위스콘신대 법학박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법무부의 해미르 미국변호사

즉, 신문법 위헌 결정으로 대변되는 이전에 형성된 이론적 기초와 판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론과 판례를 형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에 무게를 두는 판례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공인에 대한 비판의 폭 및 공격 사항에 대한 토론의 폭을 확대하되 이른바 안기부 'X' 파일 사건과 같이 사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는 엄격하게 규제하고자 하는 종래의 입장을 더욱 더 확고히 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판결들도 많이 나왔다. 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언론사간 소송도 예년과 같이 많이 나오고 인터넷 관련 소송도 증가하였다.

여기에서는 2006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언론에 대한 주요 판결의 동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판결의 범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하급심에서의 판결 중 언론과 관련되고 의미가 있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언론에 관한 판결이라 함은 언론기관의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한 언론기관의 책임에 관한 판결이 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에 한정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 광의로는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판결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 판결은 인터넷상에서 판결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인터넷상 공개된 대법원 홈페이지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의 판결문 검색시스템에 의하여 수집하였다.

이하에서는 2006년의 언론관계판결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신문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살펴보고, 최근 정치적·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안기부 'X' 파일 사건의 판결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어서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언론사간의 명예훼손 소송 그리고 인터넷과 관련된 소송으로 나누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신문법 위헌 결정

### 1. 사실개요

국회는 2005. 1. 27. 법률 제7369호로 종전의 '정기간행물 등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로 바꾸면서 전문 개정·공포하였고, 같은 날 법률 제7370호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도 제정·공포하였다. 이들 법률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2005. 7. 28.부터 시행되었으며, 다만 신문법 제16조 제3항 및 제3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 7. 28.부터 시행되도록 예정되었다. 청구인들은 2005. 2. 16.(2005헌마165), 같은 해 3. 23.(2005헌마314), 같은 해 6. 9.(2005헌마555) 및 같은 해 8. 26.(2005헌마807)에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의 특정 조항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2006헌가3 사건의 제청신청인은 2005. 7. 26. 자신이 발행하는 조선일보 A1면에 "국정원, 올 1월 도청테이프 성문분석, 목소리 주인공 확인했었다"라는 제목 하에 도청테이프와 관련된 기사를 보도하였고, 이에 국가정보원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청신청인 스스로 이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문'을 작성·게재하라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위 조정신청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는 직권으로 '반론 보도문'을 작성·게재하라는 조정을 하였는바, 국가정보원은 위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정정보도에 관한 조정신청은 법원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제청신청인은 위 사건의 계속 중 언론중재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 동 법원은 2006. 1. 19. 제청신청인의 신청대상 조항 중 일부의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

헌법불합치를 제정하였다.

## 2.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편집인의 편집 자율 보장 의무나 신문의 사회적 책임, 공정성과 공익성, 편집위원회·신문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기본권 침해나 자기관련성, 직접성 등이 없다며 각하를,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그리고 일간신문끼리의 복수소유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sup>1)</sup>

판결의 다수를 차지하는 ‘각하’ 판결의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문들이 추상적, 선언적, 권고적 성격의 규정이기 때문임을 들고 있다. 즉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독자 또는 국민의 한 사람인 청구인들은 신문법상의 “정기간행물사업자”나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아니고, 나아가 언론중재법상의 “언론”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위 청구인들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할 뿐 직접적·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고 이에 배치되는 신문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신문법 재개정의 과제를 부여하였다. 그 중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간신문이 뉴스통신이나 방송사업과 같은 이중 미디어를 겸영하는 것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고도의 정책적 접근과 판단이 필요한 분야로서, 겸영금지의 규제정책을 지속할 것인지, 지속한다면 어느 정도로 규제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자의 미디어 정책적 판단에 맡겨져 있고,

신문법 제15조 제2항은 신문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규제의 대상과 정도를 선별하여 제한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규제 대상을 일간신문으로 한정하고 있고, 겸영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즉 하나의 일간신문법인이 복수의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것 등은 허용되며,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편성이 아니어서 신문의 기능과 중복될 염려가 없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나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등을 겸영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신문법 제15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둘째, 신문법 제15조 제3항에서 일간신문의 지배주주가 뉴스통신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중 미디어 간의 결합을 규제하는 부분은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한도 내의 제한이라고 할 것이어서 신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제15조 제3항은 나아가 일간신문의 지배주주에 의한 신문의 복수소유를 규제하고 있다. 신문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문의 복수소유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지만, 신문의 복수소유가 언론의 다양성을 저해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조항은 신문의 복수소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필요 이상으로 신문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복수소유 규제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의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 조항에 대해서는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다만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셋째, 신문법 제17조는 신문사업자를 일반사업자에

1) 2006. 6. 29. 자. 헌재 결정, 2005헌마165·314·555·807, 2006헌가3(병합).

비하여 더 쉽게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는 신문의 다양성 보장이 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수단 이 되지 못한다. 첫째, 발행부수만을 기준으로 신 문시장의 점유율을 평가하고 있는 점, 둘째, 신문시 장의 시장지배력을 평가함에 있어 서로 다른 경향을 가진 신문들에 대한 개별적인 선호도를 합쳐 이들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고 있는 점, 셋째, 그 취급분야와 독자층이 완전히 다른 일반일간신문과 특수일간신문 사이에 시장의 동질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넷째, 신 문 시장의 시장지배적 지위는 결국 독자의 개별적·정신 적 선택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인 만큼 그것이 불공 정행위의 산물이라고 보거나 불공정행위를 초래할 위험성이 특별히 크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신 문사업자를 일반사업자에 비하여 더 쉽게 시장지배 적사업자로 추정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이 모두 불 합리하다. 따라서 신문법 제17조는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넷째,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즉 독자의 선호도가 높아서 발행부수가 많다는 점을 이유로 신 문사업자를 차별하는 것, 그것도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신문발전기금 지원의 범위와 정도에 있어 합 리적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금 지원의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사업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제도를 이용하여 규제하려고 한다면 먼저 그 지배력의 남용 유무를 조사하여 그 남용이 인정될 때에만 기금 지원의 배제라는 추가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시장지배적사업자제도의 취지에 맞다. 따라서 신문법 제34조 제2 항 제2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발행부수가 많은 신 문사업자를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다섯째,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은 정

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절차에 의 하여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정정보도청 구의 소에서는 그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사실의 인정을 '증명' 대신 '소명'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소송은 통상의 가처 분과는 달리 그 자체가 본안소송이다. 이러한 정정보 도청구의 소에서, 승패의 관건인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이라는 사실의 입증에 대하여, 통상의 본안절차에서 반드시 요구하고 있는 증명을 배제하고 그 대신 간소한 소명으로 이를 대체하는 것인데 이것은 소송을 당한 언론사의 방어 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정정보도청구를 가처분절차에 따라 소 명만으로 인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나아가 언론의 자유를 매우 위축시킨다. 진실에 부합하지 않을 개연 성이 있다는 소명만으로 정정보도 책임을 지게 되므 로 언론사로서는 사후의 분쟁에 대비하여 진실임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확보하지 못하는 한, 사실주장에 관한 보도를 주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언론의 위축효과는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신속한 보도를 자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민주주의의 기초인 자유언론의 공적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보호만을 우선하여 언론의 자유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 Ⅲ. 안기부 'X' 파일 사건

#### 1. 사실개요

MBC 이상호 기자는 지난 2004. 12. 5. 재미교포 박 모 씨로부터 전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1997. 4. 9 경, 같은 해 9. 9 경, 같은 해 10. 7. 경 등 3회에 걸쳐

서울의 호텔 일식집 등지에서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정치권 동향 및 대권후보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등에 대하여 논의한 대화를 도청하여 작성한 녹취보고서 3건 및 녹음테이프 등을 전달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고, 2005. 7. 22.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 취재기자로 출연하여 위 도청자료의 입수 경위와 내용을 설명하는 등 2005. 7. 21.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17회에 걸쳐 위 녹취보고서와 녹음테이프의 내용을 보도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득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한편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은 2005. 5. 하순경 전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도청, 제작한 녹음테이프와 녹취보고서 등이 존재한다는 풍문을 듣고 편집부 소속 기자에게 위 도청테이프를 확보하도록 지시하여 위와 같은 녹취록과 녹취보고서 3건을 입수한 후 같은 해 8. 초순경 월간조선 사장과 논의하여 위 녹취록과 녹취보고서 전문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다음, 같은 달 15. 경 편집국 소속 기자로 하여금 같은 달 17. 경 발간된 2005년 9월호 월간조선 94쪽부터 125쪽에 『유령처럼 떠돌 안기부 X파일 전문 공개』 제하의 기사를 통해 위 녹취록과 녹취보고서의 내용 전문을 게재하도록 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득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내용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 2. 원심 판결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MBC 기자와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

장에게 각각 무죄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sup>2)</sup> 법원은 이상호 기자의 혐의 부분에 대해 “자료의 입수 당시에 이미 그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경우에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고, 다만 취득한 정보의 내용이 국가의 안전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보도를 통하여 그 정보에 대한 공공의 관심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언론기관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말하고 “위 자료들과 이를 기초로 한 MBC의 보도내용을 종합해 보면 위 자료들에 담겨 있던 내용은 그 정보의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공익적 사항과 직결되어 있어 이를 취득한 언론기관이나 언론기관의 종사자로서는 그 정보에 대한 공공의 관심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언론기관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보도하는 것이 부득이하였다고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한 이상호 기자가 위 안기부 'X' 파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녹취보고서 및 녹음테이프를 제공한 박 모 씨에게 금전을 제공한 행위는 위 자료들을 넘겨받는데 대한 대가적 성격을 가졌다고는 보이지 않고, 위 자료들에 담겨진 내용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제보에 의하여 우연히 위 자료들의 내용을 알게 된 기자가 취재의 관행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사례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법원은 “이상호 기자 및 MBC가 위 안기부 'X' 파일을 취득한 뒤 위 자료의 진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언론기관으로서 보안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이고, 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1. 자. 선고 (2006고합177) 판결.

를자문을 통하여 공개에 대한 관계 법령의 검토를 하는 등 보도에도 신중을 기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하고 “전체적으로는 MBC의 보도가 그 수단,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도 보이지 않으며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면 비록 이상호 기자나 MBC가 최초 불법적인 자료를 취득하기는 하였지만, 그 보도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 불법성에 깊이 오염되지 않았다고 판단함이 정당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법원은 “위 대화의 당사자들이 영향력이 큰 공적 인물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정치자금이나 대선자금, 이른바 떡값 등의 지급문제에 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고 이를 일부 실행하였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자료가 있는 이상, 이에 관한 언론보도의 결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어느 정도의 인격권의 침해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히고 “이 사건 보도는 비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보도의 목적의 정당성, 법익의 균형성, 수단의 상당성 및 비례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김연광 편집장의 혐의에 대해서 법원은 “월간조선의 보도는 앞서 본 MBC의 보도와는 달리 녹취록 및 녹취보고서의 전문을 가감 없이 그대로 보도하였고, 그 내용 중에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와 관계가 없는 내용 또한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며 “이러한 경우에 언론기관의 보도에 대하여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하는 이유는 언론기관이 보도를 함에 있어서 개인의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충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고 그에 적합한 보도의 수단 및 형태를 선택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때 월간조선의 전문계재는 이러한 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

성은 인정될지라도 수단,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 내지 비례성을 갖지 못하므로 위법성의 조각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 3. 항소심 판결 요지

하지만 항소심은 원심과 다르게 이상호 기자의 유죄를 선고하였다.<sup>3)</sup> 항소심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는 영역은 언론 자유의 신장에 무게를 둔 영역과 다른 무엇이 있으며, 그것은 그 언론 보도의 정보원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존재 자체를 거부한 독과실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도청 내용 공개가 언론의 공적 사명에 기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려면, 일반적 정보원에 따른 언론 보도의 경우와는 달리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한 원칙에 기초하여 평가할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보호 법익과 침해 법익 사이의 법익 균형성 문제는, 특별법인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개인을 발가벗겨 수치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자는 인간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 부분, 양심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그 양심을 독백하거나 서로 간에 공개의 공포 없이 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생활의 자유 내지는 통신비밀의 보호가, 이를 엿듣고 싶고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관심 내지는 언론 보도의 자유보다 무게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거나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국민의 생명, 신체 등에 심각한 위협이 야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통신비밀의 공개 누설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을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안기부 ‘X’ 파일이 국가기관에 의해 전문 인력과 고도의 장비를 동원하여 저질러진 불법

3) 서울고등법원 2006. 11. 23. 자. 판결(2006노1725).

의 산물임에 주목하고, 재벌과 언론사주가 8년 전 대선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고, 정치인이나 검찰 고위직에 떡값을 주는 문제를 상의하였으며 또 이를 일부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는 물론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불법 도청을 응징하고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그 공개를 처벌하기로 한 특별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화의 내용이 국가의 안전 보장, 사회질서의 수호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보도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다고 평가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에 관하여서도, 언론 보도는 단순한 개인적 공개, 누설행위와는 전혀 달리 전국적이고 광범위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예상되므로 애당초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보도 행위가 단순히 추상적인 내용으로 안기부에 의해 대선기간 중 재벌 실세와 언론 사주 사이의 사적인 대화까지 불법 도청한 사실이 있었고 그 주요 내용이 무엇이며 이에 따른 증거로 녹음테이프까지 확보되었음을 보도하는 정도를 넘어서, 주고받았다는 돈의 액수까지 밝히는 등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보도한 점 등에 비추어 더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있었다고 평가하기에도 부족하다. 더구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당사자의 인격권을 더욱 크게 침해하였으며, 적어도 언론기관의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실명보도가 수단의 상당성이라는 척도에서 크게 일탈한 것이라는 점은 보도 관련자 누구에게나 분명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보도 당시는 그 내용의 배경이 된 대선이 끝난 지 이미 8년이 지났을 때였고, 그러므로 보도된 대화의 내용을 보도 당시의 국정 운영이나 국가 정치질서의 전개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만한 것이라 함은 지나친 것이고, 그 보도가 시급히 이루어질 이유도 그다지 있어 보이지 않다고

긴급성을 부인하였다.

또한 MBC나 이상호 기자를 비롯한 소속 기자로서는 불법 도청된 대화 내용의 공개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공개가 시급히 요청되지 않았는데도, 입수한 자료를 단서로 사실관계를 추적하여 불법에 오염되지 않은 자료를 발굴, 보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국가기관의 불법도청 실태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언론사주와 재벌이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실상을 공개하였고, 그 동기나 목적에 있어 꼭 국민에게 알려야 하겠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다면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받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여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양형에서 참작할 사유에 불과할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상고심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 IV. 명예훼손 소송

### 1. 언론사 패소 판결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언론이 취재의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미진하게 그리고 일방적으로 보도한 경우 언론에 패소판결을 하였다. 주요 판결은 다음과 같다.

MBC가 2004. 2. 16.과 2004. 2. 20.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학교는 나 몰라라’와 ‘수업 중 왕따 촬영’ 제하의 보도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된 이 사건 동영상의 일부 장면을 인용하여 “이 사건 동영상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1년 가까이 집단 괴롭힘을 당해 왔고, 그 부모가 학교 측에 재발방지를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동영상에 쉬는 시간이 아닌 수업시간에, 그것도 교사가 있는 상태에서 촬영된 ‘왕따 동영상’ 이미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등의 내용을 방영하자 자살한 중학교 교장의 유족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교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살한 중학교 교장의 유족들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sup>4)</sup>

법원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방송 전에 이미 네티즌들에 의해 인터넷 사이트에 학교 이름, 가해학생의 성명, 교장의 성명까지 공개된 사실, 다른 언론매체에 의해 보도된 내용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그와 같은 보도를 본 사람이라면 쉽게 그 중학교가 경남에 있는 중학교이고 그 교장이 윤 모 씨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대상인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 각 방송의 대상인 청소년 학생 사이의 집단 괴롭힘(소위 ‘왕따’) 현상은 그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제기와 그 대책마련이 이슈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는 대다수 국민의 정당한 관심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방송이 주로 그와

같은 문제제기와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보도 목적이 공익에 관한 것임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방송은 피해 학생 측의 입장에만 치우쳐 학교 측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내용을 주로 보도한 것으로서, 위 주요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하고 “청소년 학생문제에 관한 한 언론기관이 비판자의 입장에만 머무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언론기관은 청소년 학생에 관한 보도를 함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이 요청되고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에 있어서도 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 2. 언론사 승소 판결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은 대부분 언론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을 중시하여 언론사 승소 판결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T사는 SBS와 피고 학생들이 2005. 2. 1. 「SBS 뉴스추적」 프로그램 ‘우리는 노예였어요’ 제하의 보도에서 방송사가 학생들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기초하여 피고 학생들과 원고 회사의 직원이 나눈 대화 내용을 몰래 촬영해 방송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불법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원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다.<sup>5)</sup>

법원은 “언론사의 취재 과정에 일부 적절치 못한 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언론사가 익명보도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진실을 토대로 한 공익적 내용을 보도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3. 자. 판결(2004가합62370).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0. 자. 판결(2005가합26111).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조선일보의 2004. 7. 16. 자 『의문사위 간첩·사노맹 출신 조사관 군 사령관·전 국방 등 수십명 조사』 제하의 기사, 2004. 7. 17. 자 ‘김대중 칼럼’의 큰 제목 『국가의 틀을 바꾼다?』와 소제목 『간첩이 군을 조사하다니』 등으로 인해 의문사진상 규명위원회 전직 조사관 출신 김 모 씨가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조선일보 및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다.<sup>6)</sup>

법원은 “보도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전체적인 흐름 및 주된 내용이 진실한 경우, 지엽적인 부분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병원장이자 의사인 원고는 KBS 「뉴스 9」 프로그램 중 방송을 통해 원고 병원이 이 사건 제보자를 4년간 강제 수용하였고, 그를 엉터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 병원이 부도덕하고 과립치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다.<sup>7)</sup>

법원은 “정신보건법령상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보도 내용을 편집함에 있어 취재된 사실관계를 단순화시켜 그 일부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우에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하며, 정신보건법상 보호 및 치료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의사에 반해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는 그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V. 언론사간 명예훼손 소송

언론사간의 명예훼손 소송이 최근에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하였다. 법원은 언론사간의 상호 비판을 일관되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조선일보는 MBC가 2005. 7. 29. 「뉴스플러스 앵커입니다」 프로그램 『권력과 언론, 그 검은 커백션』 제하의 보도를 통해 “일명 ‘안기부 X 파일’ 내용을 보도하면서 1997년 당시 김대중 후보의 건강 문제에 관해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의 일부만 발췌해 방송함으로써 원고가 마치 김대중 후보만을 집중 공략하는 기획 기사를 따로 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안기부 X 파일’ 내용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이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사실로 단정해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악의적 태도를 가지고 원고에 관한 사항을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sup>8)</sup>

법원은 “이 사건 방송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익적 동기가 다소 내포되어 있지만 그 주요 목적과 동기가 여론형성과 공개토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또한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었던 홍석현의 대화내용에 관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홍석현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 1997년 대선 당시 원고와 중앙일보가 보인 편향적인 보도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그 대화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 대화내용에 근거한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은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18. 자. 판결(2004가단256802).

7) 부산지방법원 2006. 2. 15. 자. 판결(2005가합18545).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9. 27. 자. 판결(2005가단59554).

## VI. 인터넷 언론 관련 소송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터넷 언론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이라고 해서 새로운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첫째,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씨비에스아이의 노컷뉴스팀 소속 기자가 2005. 3. 8.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시장이 기자와 대화 도중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이 “이 시장이 여의도에 살고 있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이를 노컷뉴스 사이트에 올리면서 ‘김현미 대변인’을 ‘전여옥 대변인’으로 잘못 입력했고 이 기사는 곧바로 씨비에스아이와 뉴스공급계약을 맺고 있던 엔에이치엔의 네이버 분야별 주요뉴스 시사분야란에 「이명박 시장, “전여옥, 말을 그리 함부로 하나”」라는 제목으로 게재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엔에이치엔과 씨비에스아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sup>9)</sup>

법원은 “엔에이치엔이 자신들은 기사 작성 과정에 개입하지도 않았고 단지 씨비에스아가 전송해 준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였을 뿐이며, 제목 또한 씨비에스아가 전송해 준 기사에 의존하여 작성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허위기사 게재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여 볼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엔에이치엔으로서는 기사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되는 기사가 사실내용과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기사의 대상인물에게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히지 않

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법원은 “피고들 간의 내부관계에서 기사작성과 전송 및 게재의 체계상 엔에이치엔이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피고들 내부에서 책임의 분담을 정할 때 주장할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허위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원고 교회와 원고 목사는 피고 신도가 오마이뉴스 인터넷 신문 제보란에 ‘조그마한 농촌 교회의 담임 목사 연봉이 124,200,000원입니다’라는 내용을 제보하자 이에 오마이뉴스 인터넷 신문은 2005. 1. 20. 『시골교회 담임목사 연봉이 2억 원?』 제하의 기사 등을 통해 원고 목사의 역대 연봉과 도덕성 시비로 원고 교회가 들쭉이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내보내자 오마이뉴스 및 신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sup>10)</sup>

법원은 “교회 목사의 보수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는 대다수 국민의 정당한 관심사항이므로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본래의 의미나 내용과 전혀 다르게 이해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민의 알 권리 보호와 관련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VII. 결론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2006년 국내언론관계판결은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9. 8. 자. 판결(2005가단18300).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21. 자. 판결(2005가합18950).

전체적으로 보아 언론에 대한 종래의 입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판결은 없었다고 총평할 수 있다. 2006년 언론관계판결의 주요 동향을 요약하면 첫째, 헌법재판소의 신문법 위헌 결정을 들 수 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고전적 이론을 근거로 언론사의 자유 경쟁을 지지하고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 후속 논의로 활발한 입법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다.

둘째, 공인에 대한 비판의 폭 및 공적 사항에 대한 토론의 폭을 확대하되 이른바 안기부 'X' 파일 사건과 같이 사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는 엄격하게 규제하고자 하는 종래의 입장을 더욱 더 확고히 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판결들도 많이 나왔다. 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 귀추가 실로 주목된다.

셋째,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대부분 언론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을 중시하여 언론에 승소 판결을 내리고 언론을 보호하는 진일보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나, 일부의 사건에서는 충분한 취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미진하고 일방적 보도로 인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하였다.

넷째, 언론에 대한 정부의 간섭 내지는 제약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사간의 경쟁의 심화로 언론사간의 명예훼손 소송이 꾸준하였다. 언론사간의 소송에서 법원은 언론기관의 상호 비판을 일관되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판결하였다.

다섯째, 인터넷 언론과 관련된 판결이 이제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보편화되었다는 점이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터넷 언론과 관련된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 등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은 인터넷이 일정 부분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판결하고 있다. 인터넷이라고 해서 새로운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되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타인의 권리는 항상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양자가 충돌할 때 법원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공인이나 공적인 문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서 어느 정도의 부정확성이 있다 하더라도 언론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을 위하여 명예훼손의 인정은 엄격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법원의 2006년 언론관계판결을 검토해 본 결과 명예훼손 소송에서 언론의 감시 및 비판기능을 중시하는 판결이 다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안기부 'X' 파일 사건의 상고심에서 공적인 문제를 인정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판결을 기대한다. 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의 격언을 되새기며 이 글을 맺는다. “공공의 문제에 관한 토론은 제한 없이, 활발하고 널리 개방되어야 하며 이는 정부나 공직자에 대한 격렬하고, 따갑고 때로는 불유쾌한 날카로운 공격을 포함할 수 있다”. □

## 미국의 언론환경 변화와 법리 전개

함 석 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 I. 들어가며

우리는 현재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이익을 대변하는 수많은 개인과 집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1992년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 곳곳에 남아 있던 군사정부의 잔재들이 청산되고, 노동운동을 필두로 다양한 시민운동이 전개되면서 언론환경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잔뜩 웅크렸던 각계각층의 욕구가 일시에 터져 나오면서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희망이 함께 하는 활기찬 사회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고 싶다. 이런 배경 아래 통신과 미디어 발달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네티즌이라고 자부하는 사회가 도래하다 보니, 이제는 정보가 넘쳐나고 그 정보만큼이나 다양한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보다 철저히 보장해 다양한 토론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2002년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지 경우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 제기는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공개 토론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그리고 어떠한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등).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는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겪어 온 다양한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다만, 지금은 시점이 너무 근접해 지난 시대와 경험에 대해 적절한 논평을 하기는 이른 것 같다. 여하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공적인 논쟁, 공적인 사항과

공적인 인물에 대한 정보가 사회 구성원 사이에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그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자유로운 토론이 활발해졌으며, 궁극적으로는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었다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 II. 주요 법리 개관

현재 우리가 경험한 다양한 욕구와 목소리의 분출은 1960년대를 전후해 미국 사회가 경험한 사회 분위기와 흡사한 면이 있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조로 대변되는 언론의 자유를 여러 기본권 중에서도 최상위로 보호해야 할 기본권으로 보게 되었고, 언론의 자유에 관한 조항이 보통법(common law)이 지배하는 주법(州法)에 우선한다고 판단해 왔다. 이러한 경향은 1960년대를 지나면서 절정에 달했고, 미국에서 형성된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리는 그 후 우리를 포함해 세계 여러 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확립한 언론의 자유와 관계된 표현들은 우리에게도 익숙하다. 사상의 자유시장(free trade in ideas),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의 기준(present and danger test), 위축효과(chilling effects), 모호하여 무효 이론(void for vagueness), 비교형량 기준(balancing test),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 등 법률가뿐만 아니라 비법률가들의 귀에도 친숙한 표현들이 표현의 자유를 판단

하는 장(場)에서 생겨났다.

이제는 제법 시간이 지나 미국에서도 당시의 시대 상황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대한 평가가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어떤 법리가 형성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배경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미국의 언론의 자유에 관한 여러 이론들 역시 등장할 당시의 미국의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법리 형성 단계에서의 시대상과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는 그 법리 자체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파악하게 해 주는 좋은 계기가 된다.

지금 이 시점에 언론의 자유가 꽃피었다는 미국의 경험, 그중에서도 시민운동이 한창이던 미국의 1960년대를 전후한 시대 분위기와 법리 전개에 관해 되짚어 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냉전시대를 거쳐 반전(反戰)과 함께 시민운동이 확산되어 가면서 다양한 욕구와 목소리가 분출되어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던 시기에, 한 국가의 최고 법원이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법리를 전개해 나갔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III. 미국의 언론환경 변화와 법리 전개

(1) 미국은 영국 식민지로 있던 18세기 초까지만 해도 영국법의 영향을 받아 시민이나 언론사가 정부 혹은 공무원을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sup>1)</sup> 그러던 중 정부비방선동(seditious libel)에 대해서도 기

1) 당시까지만 해도 영국의 보통법(the English common law)은 정부(government), 법령(laws), 공무원(public officials)의 권위나 존경심을 침해하는 내용의 비판을 'seditious libel'로 다루어 민·형사상 일정한 제재를 가하고 있었다. 더욱이 영국은 미국을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위와 같은 국내법 체계를 식민지 지배 수단으로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다. Terry Eastland,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Supreme Court-The Defining Case(2000), Introduction xviii 참조.

사 내용이 '진실'이라는 항변이 가능하다는 'Zengerian principles'가 생겼고,<sup>2)</sup> 1776년 독립을 선언한 후 미국 연방헌법이 제정된 데 이어 1791년에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명시한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조<sup>3)</sup>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 후로도 노예해방, 남북전쟁 등의 크고 작은 역사적인 사건과 전쟁을 겪으면서 1798년에는 영국 보통법이 정한 정부비방선동(seditious libel) 금지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정부비방선동금지법(The Sedition Act of 1798)을 제정해 언론·출판의 자유를 탄압하기도 했고,<sup>4)</sup> 남북전쟁 중 링컨 행정부는 전쟁과 모병(募兵)을 반대하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극도로 제한하기도 하였다.<sup>5)</sup>

19세기를 지나면서 미국에서는 위와 같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한 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그 후로도 미 연방대법원은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조의 규정 형식이 미국 연방의회(Congress)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형태라는 이유로, 일반인이나 연방 혹은 각 주(州)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조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하거나<sup>6)</sup>, 정부비방선동금지와 함께 영국 보통법의 잔재로 남아있던 '위험한 경향의 기준(bad tendency test)'<sup>7)</sup>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2) 그러나 1919년 *Abrams v. United States*<sup>8)</sup> 사건과 관련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Holmes 대법관이 반대 의견에서 사상의 자유시장을 기술하면서,<sup>9)</sup> 언론의 자유를 정한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조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바뀌게 되었다. 이어 Holmes와 Brandeis 대법관은 다른 대법관들에 대한 설득 과정을 거쳐

2) New York Weekly Journal이라는 잡지에서 당시 뉴욕식민지의 주지사(Royal Governor of New York colony)와 그 측근들의 부패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 때문에 잡지 발행인인 Zenger가 정부비방선동(seditious libel)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당시에는 정부비방선동 혐의에 대해 기사 내용이 '진실(truth)'이라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Zenger의 변호사는 어떤 기사 내용이 명예를 훼손했는지는 배심원들이 판단할 사항이고, 그에 대한 '진실'의 항변은 배심원들이 사실(fact) 문제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Zenger는 석방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설명으로는 Leonard W. Levy., *Did the Zenger Case Really Matter? Freedom of the Press in Colonial New York*, William & Mary Quarterly 3rd ser. 18 (January 1960), pp. 35-50 참조.

3) 원문은, "Congress shall make no rule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4) 이 법은 연방주의자들의 반대파인 Thomas Jefferson, James Madison이 주도하는 비판에 밀려 1801년 폐지되었다. 한편, 이 법의 폐지 후에는 이 법에 따라 처벌받은 사람들은 모두 사면되었고, 미국 연방의회는 그들이 낸 벌금을 보상해 주었다고 한다. Terry Eastland, id., Introduction xix 참조.

5) 자세한 내용은 Terry Eastland, id., Introduction xi 참조.

6)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United States v. Cruikshank* 92 U.S. 542 (1875) 참조.

7) 이 기준이 제시된 판례로는 *Fox v. Washington* 236 U.S. 273 (1915); *Frohwerk v. United States* 249 U.S. 204 (1919); *Debs v. United States* 249 U.S. 211 (1919); *Gitlow v. New York* 268 U.S. 652 (1925) 등 참조.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1951년 *Dennis v. United States* 사건(341 U.S. 494)에서 bad tendency 이론을 폐지하였다. 이 사건은 아래에서 기술함.

8) 250 U.S. 616 (1919).

9) Holmes 대법관의 반대 의견(dissenting opinion)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을 발췌해 보면 다음과 같다. "[W]hen men have realized that time has upset many fighting faiths, they may come to believe even more than they believe the very foundations of the best test of truth is the ultimate good desired is better reached by free trade in ideas—that the best test of truth is the power of the thought to get itself accepted in the competition of the market, and that truth is the only ground upon which their wishes safely can be carried out."

같은 해 선고된 Schenck v. United States 사건<sup>10)</sup>에서 간첩법(Espionage Act of 1917)과 관련해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기준(clear and present danger test)’을 제시하였다. Holmes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기준에 따라 미국 연방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과 그 보호 밖에 있는 표현을 구분하고자 했다.<sup>11)</sup>

미국에서 그 후로도 비방선동 금지에 관한 기준이나 이론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조에 위배되는 주법은 효력이 없다고 한 1931년 Stromberg v. California 사건<sup>12)</sup>과 Near v. Minnesota 사건<sup>13)</sup>을 거치면서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조는 명실상부한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원칙 규정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3)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에서는 냉전시대로 대변되는 반(反)공산당 정서가 사회에 만연하였다. 1950년 “미국 연방정부 국무부 안에는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공화당 상원의원 McCarthy의 발언 후 McCarthyism으로 대변되는 반(反)공산당 기류가 정국을 휘감을 때였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법칙이 유지되기는 했지만,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다른 한편 대법관의 구성이 바뀌면서 원칙이 희석되어 갔다. 폭력에 의한 정부 전복을 옹호하는 단체 결성을 공모한 혐의로

미국공산당(American Communist) 지도자인 Dennis 등에 대해 연방법률<sup>14)</sup> 위반이 문제된 사례<sup>15)</sup>가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원칙은 사실상 중요한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 사건에서 다수 의견은 침해의 급박성(imminent)을 무시해 사실상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기준의 골자를 빼버렸고, 동조의견은 비교형량 기준(balancing test)을 내세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원칙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비교형량 기준(balancing test)은 개인의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조에 기한 이익을 사회 전체 혹은 국가의 안보에 관한 이익에 대비시킴으로써, 논쟁이 있을 경우 거의 대부분 국가의 안보 쪽에 비중을 두는 쪽으로 법리가 형성되어 갔다. 이 판결은 미국 정부가 정치적 발언을 폭넓게 제한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고,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연방대법원은 언론의 자유를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sup>16)</sup> 그 후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치적 발언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연방의회 입법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게 된다.<sup>17)</sup>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1957년 Yates v. United States 사건<sup>18)</sup>에서 Dennis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 관해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정부에 대항하는 직접적인 조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추상적인 표현 행위만으로 처

10) 249 U.S. 47 (1919).

11) 홉스는 극장에서 “불이야”라고 외친 때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이 존재하므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12) 283 U.S. 359 (1931).

13) 283 U.S. 697 (1931).

14) 당시 문제된 연방법률은 ‘Smith Act’라고 한다. 이 법을 ‘외국인등록법’이라고 했는데, 정부전복과괴뢰가 규정되어 있었고, 치안입법 색채가 강했다고 한다. 외국인에 대하여 등록과 지문신고를 의무화한 것은 전시 하에는 흔히 있지만, 평시 미국에서는 이것이 처음이라고 한다. www.naver.com 백과사전에서 참조.

15) Dennis et al. v. United States, 341 U.S. 494 (1951).

16) 이러한 평가로는 Morton J. Horwitz, The Warren Court and the Pursuit of Justice (1998), pp. 58-59 참조.

17) 이른바 ‘rubber stamp’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은 냉전 입법에 확고하게 찬성하는 대법관 5명이 유지되던 1962년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Horwitz, id., p. 62 이하 참조.

18) 354 U.S. 298 (1957).

별할 수 없다는 점에 근거해 사실상 Dennis 사건과 다른 결론에 이르렀다. 이어 같은 해 Watkins v. United States 사건<sup>19)</sup>에서 공산당 활동 관련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자를 의회모독으로 처벌하던 미국 연방의회의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표현의 자유가 서서히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심사로 다시 떠오르는 계기가 마련되었다.<sup>20)</sup>

(4) 하지만 Yates 사건과 Watkins 사건이 시대를 반영하는 주류는 아니었다.<sup>21)</sup> 1962년까지 공산당에 대한 반대 기조는 계속 이어졌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는 의회 입법과 정부 조치를 계속 지지했다.<sup>22)</sup> 그러나 다른 한편, 1962년 후로는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이 공산당 활동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처벌하거나 과거 공산당 활동으로 불이익을 주는 입법을 계속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의 근거는 표현의 자유보다는 자기부죄(自己負罪, self-incrimination) 금지의 원칙이었다고 한다.<sup>23)</sup>

Holmes와 Brandeis 재임 시절 활발히 논의되던 표현의 자유는 냉전의 영향으로 소강기를 맞았지만, 1962년을 전후해 McCarthyism이 쇠락할 무렵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조는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4

조의 적법절차(due process) 조항을 매개로 정치적 표현과 활동을 제한하는 주법을 감시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하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중심 화두로 다시 등장하게 된다.

정치 활동, 그중에서도 특히 민간단체, 시민단체의 정치 활동에 대해 폭넓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계속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주목할 사례는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NAACP) v. Button<sup>24)</sup> 사건이다. 당시 버지니아 주에서는 NAACP(전미 유색인종 지위향상 협회)와 같은 민간단체가 소송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특정 변호사 선임에 관해 조언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법을 두고 있었는데, NAACP가 버지니아 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러한 버지니아 주법 규정은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사건이었다. NAACP는 1909년 설립되어 주로 흑인의 권익을 위해 인종차별의 장벽을 없애기 위해 활동하던 단체로, 1954년 Brown v. Board of Education 판결<sup>25)</sup>이 있는 후부터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오던 단체였다. 이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미국 남부를 중심으로 비방과 탄압이 있었고, 버지니아 주와 같이 민간단체의 정치 활동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입법을 통해 활동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미

19) 354 U.S. 178 (1957).

20) 두 사건은 모두 1956년-1957년 재판회기(미국 연방대법원은 의회 회기와 같이 1년 중 일정기간 동안만 재판한다)의 마지막 날인 1957. 6. 17.에 선고되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기보다 증거법칙 등 소송 기술적인 법리가 주된 근거였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날을 'Red Monday'라고 불렀다 한다. 이에 대하여는 Horwitz, id., p. 59 이하 참조.

21) 'Red Monday' 사건과 1954년 인종차별금지를 선언한 Brown v. Board of Education 사건으로 미국 남부를 중심으로 미국 연방법원의 관할을 제한하는 움직임까지 있었고, 그러한 법안이 연방의회에 제출되었다가 연방상원에서 49-41의 근소한 차이로 부결된 적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법안이 상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연방의회가 당시 미국 연방대법원에 얼마나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한다. Horwitz id., pp. 64-65 참조.

22) Horwitz, id., p. 65 참조.

23) Horwitz, id., p. 65 참조.

24) 371 U.S. 415 (1963).

25) 347 U.S. 483 (1954).

국 연방대법원은 NAACP와 미국 전역에 산재한 관련 단체 그리고 단체의 임원들이 모두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조의 보호를 받는 당사자라고 판단하고, 이어 적법절차 조항인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4조에 따라 수정 제1조에 위배되는 주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NAACP의 주장을 받아들였다.<sup>26)</sup>

이 판결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 최고 법원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시민단체를 정치적 활동의 주체로 인정했고, 그 후 계속되는 사건에서 시민과 시민단체의 정치활동을 적극 보장해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법리를 형성해 가게 된다.

Holmes-Brandeis가 마련한 표현의 자유의 틀이 미국 사회에서 완전하게 자리 잡은 것은 Warren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난던 해인 1969년 무렵이라고 한다.<sup>27)</sup> 이러한 경향은 1969년 선고된 *Brandenburg v. Ohio* 판결<sup>28)</sup>에 잘 나타나 있는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법익침해가 급박한(imminent) 상태가 아닌데도 단순히 어떤 행위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발언을 제한하는 입법은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5)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 무렵 정립한 법리는 지금까지도 폭넓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고 있다. 그 근간이 되는 주요 원칙 중 하나가 위축효과(chilling effects) 이론이다.

위축효과(chilling effects) 이론은 표현의 자유에 대

한 여러 제약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시민이 타인에게 직접 피해를 가하지 않는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보장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미국에서 위축효과 이론은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관철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이 이론은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조에 따라 여러 법익 사이에 비교형량을 마쳐 유효성이 인정된 경우라도, 단지 규정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적용 가능성이 있어 표현의 자유를 완전하게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입법에 대하여 위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왔다.<sup>29)</sup>

위축효과(chilling effects)는 *Speiser v. Randall* 사건<sup>30)</sup>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이 사건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전쟁유공자에게 면세 혜택을 주기 위한 전제로 면세를 신청한 전쟁유공자에게 매년 자신은 폭력 등으로 연방 정부나 주 정부를 전복하는 것을 옹호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며 그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주법의 유효성이 문제된 사례였다. 이 사건에서 정부가 범행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 범죄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누구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적법절차(due process)의 요구이고, 이와 같은 요구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모든 소송에서 사실 인정에 오류 가능성이 있는데도, 시민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적법성을 입증하게 한다면 이러한 오류 가능성 때문에 적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는 표현에 대해서는 적법한 표현이

26) 흥미로운 것은 Frankfurter 대법관이 버지니아 주법을 승인하는 내용의 초안을 작성해 놓은 상태였는데, 그가 퇴임한 후 Brennan이 결론을 완전히 바꾸어 판결을 작성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Frankfurter는 이 사건 판결은 무경험에서 비롯된 잘못된 판단이라고 맹비난했다고 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orwitz, id., p. 66 참조.

27) Horwitz, id., p. 66 참조.

28) 395 U.S. 444 (1969). 미국에서는 1917년부터 1920년까지 러시아 공산혁명에 자극을 받아 과격한 노동운동을 제한하는 입법이 성행했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는 오하이오 주의 노동운동처벌법(Ohio Criminal Syndicalism Act)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이 법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29) Horwitz, id., p. 69 참조.

30) 357 U.S. 513 (1958).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이로써 절차의 해악성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자기 행동의 적법성을 입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그 적법성을 설득해야 하는 사람은 정부가 불법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때보다 필연적으로 ‘훨씬 더 넓은 불법의 영역에 내몰리는(steer far wider of the unlawful zone)’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sup>31)</sup> 결국 시민에게 부당한 입증부담을 지우는 제도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면 그 제도는 표현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 후 1963년 NAACP v. Button 사건에서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에는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어 1964년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에서 위축효과(chilling effects)를 더 진전시켜, 공적인 행위에 대한 비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후에 그 비판이 진실로 드러난다고 해도 비판 대상으로부터 제소당할 위험과 그에 따른 비용부담의 압박 때문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한 다음, 결과적으로 이는 합법적일 수 있는 표현을 훨씬 더 넓은 불법의 영역으로 내몰아 버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New York Times 사건에서는 John, S. Mill의 자유론(On Liberty)과 Areopagitica를 인용해, 오류에 따른 충돌을 겪음으로써 진실에 대한 보다 명백한 자각과 생생한 인상을 공적인 논쟁에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진실이라도 공적인 논쟁에서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sup>32)</sup> New York Times 사건에서 형성된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이론 역시 위축효과(chilling effects) 이론이

근간이 되었다.

위축효과(chilling effects) 이론에 대한 이러한 기초는 지금까지 미국 연방대법원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위축효과(chilling effects) 그리고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에 대해 적절히 기술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표현을 소개한다.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 이후로, 우리는 줄곧 허위에 기한 출판물 명예훼손으로 야기된 공인의 평판 훼손에 대하여는 발언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왔지만, 다만 이것은 진술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혹은 허위 여부를 무모하게 무시해버린(with knowledge that it was false or with reckless disregard of whether it was false or not)”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때에만 그러하다.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은 특히 가치가 없다. 그러한 진술은 思想(idea)의 자유 시장에서 진실 발견 기능을 방해하고, 아무리 설득력 있고 인상적이어도 반대 진술만으로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 개인 평판의 훼손을 야기한다. 그러나 허위가 그 자체로 거의 가치가 없다 해도,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논쟁에는 필수적이고”, 출판자에게 허위 사실의 주장에 대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법리는 공인과 관련된 발언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발언에 대하여 틀림없이 “위축(chilling)” 효과를 야기한다. “표현의 자유에는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이 필요하다.” 이 숨 쉴 공간은 공인(公人)이 진술이 허위라는 점과 그 진술이 법적 책임을 야기할 정도의 잘못에 기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는, 이 두 가지 점을 증명하였을 때에만 명예훼손(libel or defamation)에 따른 보상을 받게 하는 법리에 의하여 지지된다.】<sup>33)</sup>

한 가지 부언하고 싶은 것은 위축효과(chilling effects)

31) Speiser, 357 U.S., at 526.

32) New York Times, 376 U.S., at 279. Mill의 글 인용은 같은 판결 footnote 19 참조.

33) Hustler Magazine & Larry C. Flynt v. Jarry Falwell, 485 U.S. 46, 52 (1988) 참조.

역시 시대의 산물이고, 과거 McCarthyism으로 대변되는 지나친 정치적 발언 억압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는 점이다.<sup>34)</sup>

(6) 위축효과(chilling effects)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이론 중에 하나가 모호하여 무효(void-for-vagueness) 이론과 포괄규정(overbreadth) 금지 원칙이다.<sup>35)</sup>

모호하여 무효(void-for-vagueness) 이론은 죄형법정주의 가운데 명확성의 원칙과 유사한 면이 있다. 전통적으로 소송에 관해 법적인 이익을 가진 피고인에게만 법률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standing)을 인정해 왔다. 이는 대륙법계와 미국이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 무렵 이러한 전통 관념에 변화를 주어 모호한 법 규정이 자기에게도 적용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에게까지 적격의 범위를 확대하는 이론이 형성되었다. NAACP v. Button 사건에서 모호성(vagueness)에 반대하는 것은 공정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라기보다, 경계가 불분명한 모호한 규정 때문에 사회의 나머지 구성원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와 같이 적격을 확대하는 이유에 관한 좋은 설명이 된다.<sup>36)</sup> 이는 Brennan 대법관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검열(self-censorship)’에 대한 두려

움을 없애자는 것이다.<sup>37)</sup>

모호하여 무효 이론은 Baggett v. Bullitt 판결<sup>38)</sup>의 다수의견에 잘 나타난 것으로 알려진다.<sup>39)</sup> 이 사건에서는 주립대학 교수에게 정부를 폭력으로 전복하려는 시도를 옹호하거나 그러한 단체에 가입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을 하도록 한 워싱턴 주법이 문제되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와 같은 서약은 훨씬 넓은 불법의 영역으로 내몰린 서약 당사자에게 위축효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헌법에 위배될 정도로 모호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규정을 유지할 경우 직업을 잃을지 모르는 위협을 피하기 위해 의문의 여지가 없는 안전한 행동만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로운 언론은 그렇게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sup>40)</sup>

(7) 다음으로 모호하여 무효 이론과 함께 당사자적격에 관한 전통 이론에 수정을 가한 또 다른 이론은 포괄규정(overbreadth) 금지의 원칙<sup>41)</sup>이다. 헌법 테두리 안의 행위가 소송에 적용되는 법 해석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는 상태일 경우라도 당해 소송의 피고인만이 이 원칙을 주장해 법률의 무효를 다툴 수 있다는 것이 전통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그와 같은 제한에도 변화를 주어, 해석에 따라 적법한 행위까지 불법으로 포괄할

34) Horwitz, id., p. 69 참조.

35) 이 두 원칙은 Brennan 대법관이 NAACP v. Button 사건에서 “The objectionable quality of vagueness and overbreadth does not depend upon absence of fair notice to a criminally accused ... but upon the danger of tolerating, in the area of First Amendment freedoms, the existence of a penal statute susceptible of sweeping and improper application.”이라고 기술하면서 법령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된다. Void-for-vagueness와 overbreadth에 대해서는 확립된 번역어가 있는 것 같지 않아 필자가 의미를 생각해 번역하였다.

36) NAACP v. Button, 371 U.S., at 433 참조.

37) Horwitz, id., p. 71 참조.

38) 377 U.S. 360 (1964).

39) Horwitz, id., p. 71 참조.

40) Baggett v. Bullitt, 360 U.S., at 372 참조.

41) 보통 Overbreadth Doctrine으로 불린다.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위축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법 규정에 대해서는, 합헌적인 해석에 따라 불법을 저지른 행위자라도 위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규정의 포괄성에 근거해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United States v. Robel* 사건<sup>42)</sup>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공산당원이었지만 실제 활동 여부나 지위는 증명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근무하던 사업체가 방위산업체로 지정되면서 공산당원이었거나 공산당원인 자는 모두 사직해야 할 처지였지만 피고인은 이를 거부해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산당원이라고 해서 어떤 방위산업체의 어떤 직위에도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한 연방 법령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 당원이건 처벌 가능한 당원이건 가리지 않고 무차별하게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어서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조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흥미로운 것은 하급심이 실제 활동하는 당원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소를 기각했고 이에 대해 미국 연방정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에까지 상고한 사안인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더 나아가 미국 연방 법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은 비록 소송의 직접 피고인이 처벌받아야 하는 처지라도 그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사람에게 위헌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면, 피고인이 그 규정의 무효를 다룰 수 있고 그에 따라 무효인 규정의 적용 배제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사례로 알려져 있다.<sup>43)</sup>

#### IV. 마치며

(1)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0년대를 전후해 언론의 자유에 관한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조를 다른 기본권에 비해 우월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태도를 견지해왔다. 이러한 경향은 1919년 Holmes와 Brandeis가 사상의 자유시장론을 펼치며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조가 정한 표현의 자유를 다른 기본권보다 우월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립한 이래, 1960년대 성장하는 시민운동을 배경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의 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때 형성된 법리는 아직까지 미국 사회의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와 같이 진보 성향의 일관된 판결을 유지한 것은 어쩌면 냉전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청이 배경이 되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연방제 국가로서 미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 즉 각자 고유한 사법권을 가진 주 정부의 권한을 적법절차 조항을 통해 연방 정부가 적절히 통제하고자 하는 정치적 이유도 작용했을 것이다. 어쨌든 이 시기에 미국에서는 여러 시대적 요청과 상황 변화에 따라 언론환경이 시시각각 변해갔고, 이에 대해 최고법원 구성원들은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법리를 전개해 나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2) 2002년을 전후해 대법원은 정치적 논쟁, 이념 논쟁은 자유롭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 역시 정확한 정책 비판을 위해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사회의 근간이 되는 기본 정치 이념에 대한 논쟁은 공개된 토론의 장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처벌의 우려, 명예훼손에 따른 책임을 질 우려가 있다면 합리적인 사람은 보통의 경우 그 기준에 맞추어 토론에서 자신의 입지와 태도를 결정할 것이다.

42) 389 U.S. 258 (1967).

43) Horwitz, id., p. 72 참조.

결국 공적인 논쟁에 대해 명예훼손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장차 생길지 모르는 법적인 책임 때문에 참여자들이 위축된 상태에서 토론에 임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정치 이념에 대한 진정한 검증을 위해 이러한 제도적 부담은 없어야 마땅하다.

대법원의 판례 동향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군사정권 시절을 겪으며 경험해 온 우리 사회의 왜곡된 제도적 허점을 적절히 지적하고 타과해 나가는 좋은 계기였다고 본다.

(3)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역사의 길을 걷게 될지, 그에 따라 언론환경과 법리가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여야가 합의한 유일한 개혁입법이었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5년 7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시행되기도 전부터 언론사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위헌 논쟁이 벌어졌고, 헌법재판소는 2006. 6. 29. 그 중 일부 규정들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기에 이르렀다.

신문을 펴보고 방송을 보면 우리 사회는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여러 이해의 충돌과 격한 논쟁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역시 냉전을 겪으며 군사정권 시절 언론이 억압당하는 모습을 보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시민운동이 확산되어 가는 모습도 보았으며, 사회 각계각층에서 일시에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모습도 보았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고 겪어온 우리의 모습이 자 발자취였고, 앞으로도 변화는 계속될 것이다.

이제는 비교적 사회 구성원들이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미국이 오랜 기간 경험한 역사적 사건을 우리는 짧지만 모두 경험했다는 느낌이 든다. 시시각각 변하는 언론환경 속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해 사상의 자유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반을 계속 다져가야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시대의 흐름과 요청을 반영해 언론환경 변화에 따른 적절한 법리 전개를 했던 경험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 2006년도 조정·중재신청 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2006년 한 해 동안 1,087건의 조정신청 사건 및 7건의 중재신청 사건 등 총 1,094건을 접수·처리하였다. 이는 새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2005년의 883건 보다도 211건이 많은 수치로 중재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 1981년 위원회 설립 이후 접수·처리된 누적 신청건수가 1만건을 돌파해 10,328건에 이르고 있다.

조정신청 사건 처리결과 합의율은 32.8%(356건)로 전년도의 37.8%(334건)에 비해 다소 감소한 반면 취하율은 38.0%(413건)로 전년도의 32.0%(283건)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조정불성립결정률은 20.8%(226건)로 전년도의 20.5%(181건)와 비슷했으며 직권조정결정률은 5.2%(57건)로 역시 전년도의 5.8%(51건)와 큰 차이가 없었다. 조정신청 건 중 22건(2.0%)이 기각되었으며 13건(1.2%)이 각하되었다.

2005년에 비해 조정신청 청구건수가 급증한 것은 매년 점증하는 조정신청의 추세와 더불어, 새로운 언론중재법의 시행으로 손해배상청구 건수 및 인터넷 신문에 대한 신청건수가 증가하였고, 이 밖에도 병합신청이 가능해진 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던 것이 3개월로 늘어난 점,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만 사건을 접수하던 방식을 탈피해 구술과 온라인으로도 조정신청서 접수를 할 수 있게 된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구제율은 60.6%로 2005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0년 이후 60%대의 피해구제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는 2006년 한 해 동안 총

683종의 매체를 심의하여 이 중 190건의 심의기준 위반 내용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다. 이 중 위원회가 자체 시정권고한 건수는 188건이며 제3자가 신청하여 시정권고한 건수는 2건이다.

시정권고 건수가 2005년에 비해 34%나 감소한 것은 언론사들이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피의자·피고인 및 목격자·신고자의 신원공개 등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유의하여 기사화하고 있으며 마약의 용량·용법 공개 등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하여 기사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2004년 위원회 내에 설치된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에서는 2006년 한 해 동안 총 2,304건의 상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언론사, 대학 등 각급 기관을 상대로 언론피해의 예방과 구제책에 대해 총 70회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 ◇ 조정 및 중재신청 처리현황 ◇

### I. 조정신청 처리현황

조정신청 처리결과는 합의 356건(32.8%), 직권조정결정 57건(5.2%), 조정불성립결정 226건(20.8%), 기각 22건(2.0%), 각하 13건(1.2%), 취하 413건(38.0%)으로 나타났다.

기각되거나 각하된 사건을 제외한 전체 1,052건의 조정신청 사건 가운데 637건에 대해 피해구제가 이루어져 피해구제율은 60.6%를 기록했다. 이는 2005년도의 피해구제율 62.4%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이다.

전년도에 비해 합의율이 5.0% 포인트 낮아진 반면, 취하율은 6.0% 포인트 높아졌다. 직권조정결정과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비율은 전년과 비슷했다. 취하율이 높아진 것은 언론중재법 시행으로 병합청구가 가능해짐에 따라 정정보도 등과 함께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 당사자간에 정정 또는 반론 보도를 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상당수의 신청인들이 이에 만족하고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취하하는 경향이 많았던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신법 시행이전·이후의 조정사건의 처리결과를 비교해보면 시행이전에는 합의율이 32.3%였으나 시행이후에는 33.1%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취하율은 시행이후가 36.3%로 시행 이전의 41.7%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 조정불성립결정률은 시행이후가 21.6%로 시행 이전인 19.8%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다.

조정신청 청구권별 신청건수는 정정보도청구 546건(50.2%), 손해배상청구 318건(29.3%), 반론보도청구 211건(19.4%), 추후보도청구 12건(1.1%) 순이었다. 전년도에 비해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청구건수는 소폭 증가했으나 청구비율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531건, 60.1%→50.2%),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건수와 청구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141건, 16.0%→29.3%), 반론보도청구사건 역시 청구건수는 소폭 증가했으나 청구비율은 다소 감소하였다(194건, 22.0%→19.4%).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청구비율은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이며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청구비율 역시 2004년 이후 감소세에 있다.

특히 2005년도에는 정정보도청구 요건이 완화된 언론중재법의 시행으로 반론보도청구 대비 청구 비율이 2.7배에 이르는 등 정정보도청구사건 신청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나 2006년에는 정정보도청구 신청 비율은 대폭 감소한 반

면 손해배상청구신청이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

이는 손해배상청구가 정정이나 반론보도와 함께 중복해서 청구되는 경향이 많은데다 과거와 달리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로 발생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금전적 배상을 받고자 하는 언론피해자들의 인식의 변화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권별 피해구제율은 추후보도청구 91.7%, 정정보도청구 62.3%, 반론보도청구 61.2%, 손해배상청구 55.9%로 나타났는데 2005년과 비교해 손해배상청구의 피해구제율(51.9%→55.9%), 추후보도청구의 피해구제율(64.7%→91.7%)은 대폭 증가한 반면 정정보도청구의 피해구제율(63.5%→62.3%), 반론보도청구의 피해구제율(66.7%→61.2%)은 다소 감소하였다.

청구권별 합의율은 정정보도청구사건이 40.2%로 반론보도청구사건의 37.4%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손해배상의 경우 15.4%에 머물렀으나 2005년도의 11.3%에 비해서는 다소 높아진 수치이다. 청구권별 취하율은 정정보도청구가 30.9%로 반론보도청구의 37.6%에 비해 다소 낮았으며 손해배상청구의 취하율은 이들 청구에 비해 월등히 높은 50.9%를 기록했으며 이는 2005년도의 47.5%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치이다.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경우 합의율이 낮고 취하율이 높은 것은 신청인들이 손해배상청구에서 요구하는 액수가 피해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어서 정정이나 반론보도청구에 비해 합의율이 낮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조정신청의 주된 목적이 언론보도로 인해 훼손된 명예를 정정 또는 반론보도 등으로 회복하고자 하는데 있기 때문에 언론사와 정정이나 반론보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신청인들이 이에 만족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구권별 불성립결정률은 정정보도청구가 19.8%, 반론보도청구가 17.5%인 반면 손해배상청구는 25.2%로 다소 높았다.

침해유형별 조정신청 현황을 보면 명예훼손 침해가 1,00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초상권 침해 48건, 신용훼손 17건, 음성권 침해 7건 등의 순이었다. 언론중재법 시행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지면서 특히 초상권, 음성권 등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조정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직권조정결정은 총 57건으로 청구권별로는 정정보도 23건, 반론보도 14건, 손해배상 20건으로 2005년도에 비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사건의 직권조정결정건수는 감소했으나 손해배상사건의 직권조정결정건수는 3배 가까이 증가했다(2005년 7건). 직권조정결정된 57건 중 29건에 대해 당사자들이 이의신청하지 않았으며 28건에 대해서만 이의신청하였다. 이의신청 비율은 2005년도의 39.2%에 비해 약 10% 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49.1%로 2004년 이후 증가세에 있다.

## II. 조정신청인 유형별 현황

조정신청인 유형별로 청구된 사건을 분류해보면 개인의 조정신청이 529건(48.7%), 국가기관 151건(13.9%), 기업체 127건(11.6%), 일반단체 126건(11.6%), 조합 및 협회 46건(4.2%), 교육기관 35건(3.2%),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30건(2.8%), 언론사 17건(1.6%), 공공단체 15건(1.4%), 종교단체 9건(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과 비교해 개인의 조정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385건, 43.6%→48.7%) 국가기관의 신청비율이 다소 낮아졌고(16.5%→13.9%) 일반단체의 신청건수가 58건에서 126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교육기관의 신청건수

및 비율 역시 두 배 이상 증가했다(12건, 1.4%→35건, 3.2%).

개인의 조정신청건수는 2005년도에 전년 대비 120건 증가한데 이어 2006년도에도 전년대비 144건이 증가하였는데 개인 청구가 증가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새로 시행된 언론중재법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법 시행으로 인해 조정대상매체가 확대되고 조정신청기간이 연장되면서 전체 청구건수가 증가했으며 특히 구술신청과 인터넷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청절차상 어려움을 겪는 개인들이 민간언론 피해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위원회가 TV, 신문, 잡지, 케이블TV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광고를 내보낸 것도 개인의 조정신청 증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는데 위원회는 2004년 158회, 2005년 393회(전년대비 2.5배)에 이어 2006년도에는 865회(전년대비 2.2배)의 광고를 내보냈다.

개인이 신청한 사건의 경우 경찰을 제외한 전·현직 공무원이 78건(14.7%)으로 월등히 많았으며 회사원이 48건(9.1%), 공인으로서 뉴스의 초점이 되는 국회의원이 39건(7.4%), 교수·교사 등 교육계 종사자 37건(7.0%)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언론인 29건(5.5%), 개인사업가, 농·수산·도소매업 종사자, 일반단체 및 각종조합대표·임원 등이 각각 28건(각 5.3%), 서비스업 종사자와 주부 각각 25건(각 4.7%), 문화예술인, 학생 각각 18건(각 3.4%), 기초광역단체장 및 의원 17건(3.2%), 정당정치인, 군인·경찰, 법조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인 유형에 따른 처리결과는 교육기관의 합의율이 54.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국가기관 43.7%,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40.0% 순이었다. 반면 종교단체의 경우는 11.1%에 머물렀고,

기업체와 언론사의 합의율 역시 각각 23.6%와 29.4%에 머물렀다. 조정불성립결정률은 종교단체가 88.9%로 월등히 높았으며 언론사 53.0%, 기업체 30.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하는 공공단체 60.6%, 기업체 44.9%, 개인 41.5% 순이었다. 개인의 합의율(30.8%)은 단체의 합의율(34.6%)에 비해 다소 낮은 반면 취하는 41.8%로 단체의 34.4%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조정불성립결정률은 17.4%로 단체의 24.0%에 비해 매우 낮았다.

신청인 유형별 피해구제율은 단체가 60.3%로 개인의 60.9%와 큰 차이가 없었다. 단체의 경우 교육기관의 피해구제율이 80.0%로 월등히 높았으며 공공단체 73.3%, 국가기관 69.3%, 일반단체 65.8%,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6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종교단체는 11.1%, 각종 조합 및 협회 40.9%, 언론사 47.1%의 낮은 피해구제율을 기록했다.

개인의 경우 학생 85.7%, 종교인 80.0%, 전·현직 공무원 75.6%, 의료인 70.0%, 문화예술인·언론인 각 66.7% 등의 순으로 높은 피해구제율을 기록한 반면 기초광역 단체장 및 의원 23.5%, 국회의원 43.6%, 서비스업종사자 48.0% 등으로 비교적 낮은 피해구제율을 보였다. 종교단체와 언론사 등 단체로 조정신청한 경우 합의율 및 피해구제율이 비교적 낮은 반면 종교인, 언론인 개인으로 신청한 경우는 비교적 높은 합의율과 피해구제율을 기록하였다.

### Ⅲ. 조정신청 매체별 현황

매체 유형별로 청구된 사건을 분류해 보면 일간지가 598건(55.0%), 방송 216건(19.9%), 주간신문 125건(11.5%), 인터넷 신문 77건(7.1%), 시사주간지 29건(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 비해 일간지(492건, 55.7%→55.0%) 및 방송(174건, 19.7%→19.9%)의 청구건수는 대폭 증

가하였으나 청구비율은 큰 변화가 없었으며 주간신문은 약간 감소하였고(12.8%→11.5%) 인터넷 신문은 다소 증가하였다(5.4%→7.1%). 반면 시사주간지는 2005년 4건(0.5%)에서 2006년도에 29건(2.7%)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신문매체 내에서 중앙일간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48.8%로 2005년의 49.8%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으며 지방일간지는 33.9%로 2005년도의 31.6%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다. 주간신문은 17.3%로 2005년도의 18.7%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방송매체의 경우 TV가 차지하는 비율이 86.6%로, 방송을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2005년도의 85.1%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치이다. 뒤를 이어 케이블TV 11.1%, 라디오 2.3% 순이었다.

매체유형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합의율은 잡지와 인터넷 신문이 각각 48.1%, 44.1%로 타매체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이어 라디오 40.0%, 통신 35.3%, 중앙일간지 34.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케이블TV와 TV의 합의율은 각각 20.8%, 26.8%를 기록, 방송매체의 합의율이 저조했다. 반면 TV의 조정불성립결정률은 31.0%로 타매체에 비해 매우 높았다.

매체유형별 피해구제율을 살펴보면 통신 92.9%, 월간지 80.0%, 인터넷 신문 72.2%, 케이블TV 68.2%, 신문 62.7%, 방송 4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의 신문 64.5%, 잡지, 인터넷 신문 각 59.5%, 방송 57.2%, 통신 53.3%에 비해 통신과 월간지, 인터넷 신문의 피해구제율이 월등히 높아진 반면 신문의 피해구제율은 다소 감소했고 방송의 피해구제율은 10.0% 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일간신문의 경우 중앙일간지가 64.6%로 지방일간지의 63.0%에 비해 약간 높았다. 방송의 경우 케이블 TV 68.2%, 라디오 50.0%, TV 43.7% 순으로 나타났다.

#### IV. 조정대상기사 현황

조정대상 기사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2005년도에 이어 사건·사고 등 사회문제 관련 기사가 572건(52.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치·행정관련 기사 244건(22.4%), 산업·경제관련 기사 45건(4.1%), 교육관련 기사 44건(4.1%), 의료·건강관련 기사 34건(3.1%), 문화관련 기사 22건(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간지를 제외한 모든 매체의 조정대상 기사는 사건·사고를 포함한 사회기사, 정치·행정기사, 경제기사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간신문·통신의 경우 사회기사 291건(47.3%)에 이어 정치·행정기사 173건(28.1%), 경제기사 31건(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2005년에 비해 정치·행정기사의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111건, 21.8%→28.1%).

방송의 경우 사회기사가 162건(75.0%)으로 방송관련 조정신청건수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정치·행정기사가 22건(10.2%)으로 뒤를 이었다. 주간지·주간신문의 경우는 사회기사 79건(51.3%), 정치·행정기사 31건(20.1%)으로 나타났으며 월간지의 경우는 의료·건강기사가 9건(3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 신문의 경우는 사회기사가 38건(49.4%), 정치·행정기사 17건(22.1%)을 차지했다.

조정대상 기사의 종류는 일간신문·통신의 경우 스트레이트 기사 508건(82.6%), 해설 기사 23건(3.7%), 심층기사 21건(3.4%), 사설 18건(2.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방송의 경우 뉴스프로그램이 144건(66.7%), 시사고발프로그램이 45건(20.8%), 교양정보프로그램이 15건(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취재원을 살펴보면 기자가 직접 인지하여 취재한 경우가 310건(28.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보도자료 및 발표자료 231건

(21.2%), 민원 및 제보 230건(21.2%), 사건의 당사자 및 주변인물 197건(1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V. 중재부별 처리현황

중재부별 처리결과를 보면 서울 6개 중재부가 709건(65.2%), 지방 10개 중재부가 378건(34.8%)을 접수·처리하였다. 2005년과 비교해 서울중재부의 접수율(67.0%→65.2%)이 소폭 감소한 반면 지방중재부의 접수율(33.0%→34.8%)이 소폭 증가했다.

합의율은 서울중재부가 33.3%로 지방중재부의 31.7%에 비해 다소 높은 반면 취하율은 지방이 46.3%, 서울이 33.6%로 지방중재부의 취하율이 월등히 높았다. 조정불성립결정률은 서울이 22.1%, 지방이 18.3%로 서울중재부가 다소 높았으며 직권조정결정건수는 서울중재부가 49건으로 지방중재부의 8건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지방중재부 중에서는 경기중재부가 113건(10.4%)으로 가장 많은 사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광주중재부 55건(5.1%), 전북중재부 50건(4.6%), 부산중재부 42건(3.9%), 대구중재부 31건(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중재부는 2005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북중재부와 경기중재부, 대전중재부 등의 신청건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지방중재부 가운데 경남중재부의 합의율이 70.0%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중재부 53.8%, 대전중재부 51.7%, 전북중재부 4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재부별 피해구제율을 살펴보면 2005년에 이어 경남중재부가 95.0%의 높은 피해구제율을 보였으며 대전중재부 86.2%, 강원중재부 83.3%, 충북중재부 76.9%, 전북중재부 6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VI. 손해배상 처리현황

2006년 접수된 손해배상청구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318건이 접수·처리된 가운데 합의 49건(15.4%), 직권조정결정 20건(6.2%), 조정 불성립결정 80건(25.2%), 기각 6건(1.9%), 각하 1건(0.3%), 취하 162건(51.0%)이며 취하된 건 가운데는 정정·반론 등 피해구제보도로 만족하여 취하한 건수가 115건(전체 손배청구 건수대비 36.2%, 취하건수 대비 71.0%)으로 집계되었다. 직접적인 금전배상에 합의한 것 외 정정·반론 등 피해구제보도로 만족하여 취하한 것을 모두 포함한 피해구제율은 55.9%로 나타났다.

손해배상 사건에서 주장된 인격권의 침해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318건 가운데 명예훼손을 주장한 사건이 260건, 기업 등의 신용훼손을 주장한 것이 3건, 초상권 침해를 주장한 것이 42건, 음성권 침해를 주장한 것이 7건, 성명권 침해를 주장한 것이 1건, 프라이버시(사생활) 침해를 주장한 것이 4건, 기타 1건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을 구한 신청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이 210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일반단체가 45건, 기업체가 41건의 순으로 많았다.

## VII. 법원 자동소제기 현황

직권조정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이의신청되어 법원에 자동으로 소가 제기된 경우는 모두 24건이었다. 손해배상청구건이 8건,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 각 6건, 정정 및 손해배상 병합 청구 2건, 정정 및 반론보도 병합 청구 2건이며 이 중 1건은 인용되고 3건은 취하되었으며 1건은 기각되고 나머지 건은 계류중이다. 신청인에 의해 이의신청된 사건은 4건이며 나머지는 모두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하였다.

## VIII. 중재신청 처리현황

중재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5년에 중재신청이 한 건도 없었으나, 2006년에는 7건이 청구되었다. 2006년에 이루어진 7건의 중재신청은 손해배상청구가 5건, 정정보도청구 1건, 반론보도청구 1건이었으며, 침해유형별로 보면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각각 2건이었고, 음성권 침해가 1건으로 나타났다.

### ◇시정권고 현황◇

2006년에는 일간지 97종, 주간지 10종, 주간신문 276종, 월간지 6종, 뉴스통신 2종, 인터넷신문 292종 등 총 683개 매체를 심의한 결과 190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2005년의 278건에 비해 34.0%나 감소한 수치이다. 이 가운데 위원회가 자체 시정권고한 건수는 총 188건이며 언론중재법 제정에 따라 제3자가 신청한 50건 가운데 2건에 대해 시정권고했다.

침해유형별로는 자살관련 상세묘사 기사가 73건(38.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피의자·피고인 신원 공개기사가 69건(31.7%), 목격자·신고자·피해자의 신원 공개기사가 22건(11.7%), 마약용량·용법 공개기사가 10건(5.3%) 순이었다.

자살 사건 기사에 대한 시정권고 비율이 2004년 7.4%, 2005년 30.9%, 2006년 38.8%로 급증하고 있는 반면 마약 용량·용법을 공개한 기사에 대한 시정권고 비율은 급감했으며(17.1%→5.3%),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기사에 대한 시정권고 비율 역시 감소했다(4.0%→2.1%).

피의자·피고인의 신원을 공개한 기사에 대한 시정권고 비율은 소폭 증가했으며(32.0%→36.7%), 목격자·신고자·피해자의 신원을 공

개한 기사에 대한 시정권고 비율 역시 소폭 증가했으나(8.7%→11.7%) 시정권고 건수는 2005년에 비해 각각 19건과 2건이 감소했다.

매체별로는 일간신문이 150건(79.8%)을 차지하였으며 인터넷 신문이 16건(8.5%), 뉴스통신 14건(7.4%), 주간신문 8건(4.2%) 순이었다. 2005년에 비해 일간신문의 시정권고 비율이 대폭 감소한 반면(89.0%→79.8%), 인터넷신문의 시정권고 비율이 월등히 높아졌다(0.7%→8.6%).

제3자가 신청한 심의건수는 모두 50건으로 이중 2건만이 시정권고 되었으며, 취하 36건, 기각 11건, 각하 1건 등이었다. 2005년의 17건에 비해 신청건수는 대폭 증가한 반면 시정권고로 이어진 건수는 감소했다(3건→2건).

2005년에 비해 취하율은 급증한 반면(23.5%→72.0%) 기각률은 대폭 감소하였는데(52.9%→22.0%) 취하율이 높고 또 취하 및 기각 건수가 많은 것은 시정권고 신청을 통해 사과문 게재, 기사삭제 등을 요구하거나 사전방송금지를 요청하는 등 시정권고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 운용 현황◇

### I. 상담처리결과 현황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에서는 2006년 한 해 동안 총 2,304건의 상담을 접수·처리하였다.

상담신청유형은 전화상담이 1,836건(79.7%)으로 가장 많았고, 방문상담 178건(7.7%), 인터넷 게시판 상담 140건(6.1%), 인터넷 실시간 상담 132건(5.7%)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 비해 전화 상담 비율(77.1%→79.7%) 및 인터넷 게시판 상담 비율(4.0%→6.1%)이 소폭 증가한 반면, 방문 상담은 다소 감소했다(11.3%

→7.7%).

인터넷 사용의 증가를 반영하듯 인터넷을 이용한 상담은 2005년도 257건(10.9%)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는데 인터넷 게시판 상담 및 인터넷 실시간 상담 272건 외에도 이메일을 통한 상담 7건(0.3%) 등 모두 279건(12.1%)이 접수·처리되었다.

상담결과 1,719건(67.6%)에 대해 조정신청과 관련된 절차를 안내하였으며, 타기관 안내 297건(11.7%), 소송제기 등의 법적 구제 방법 및 절차 안내 286건(11.3%) 등의 순이었다. 2005년에 비해 조정절차 문의 및 안내 비율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63.2%→67.6%) 타기관 안내 비율도 소폭 증가한 반면(9.3%→11.7%), 법적절차의 안내 비율은 다소 감소(21.0%→11.3%)하였는데 이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언론중재제도 내에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상담의 결과로 보여지며 전체 상담건수 2,542건(상담처리 결과는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2,304건의 상담건수와 불일치) 가운데 조정신청으로 이어진 건수가 555건으로 조정절차 안내 건수 대비 32.3%의 접수율을 보였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명예훼손이 1,384건(58.0%)으로 가장 많았고, 초상권·성명권 등 침해 224건(9.4%), 신용훼손 침해 118건(4.9%), 사생활 침해 65건(2.7%) 등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에 비해 명예훼손 관련 상담이 급감한 반면(71.0%→58.0%) 신용훼손 침해(2.1%→4.9%)와 초상권·성명권 등의 인격권 관련 침해(7.1%→9.4%)는 다소 증가했다.

### II. 상담신청 매체별 현황

상담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매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문매체 997건(41.6%), 방송매체 575건(24.0%), 인터넷 282건(11.8%), 통신 64건(2.7%), 잡지 58건(2.4%)

순으로 나타났다. 신문매체 내에서는 일간신문이 750건(75.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터넷 매체가 차지하는 상담비율이 2004년 5.4%, 2005년 8.5%, 2006년 11.8%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 신문매체의 상담비율(40.2%→41.6%)과 방송매체의 상담비율(23.5%→24.0%)은 소폭 증가했다.

### Ⅲ. 상담신청 신청인별 현황

상담신청인의 유형을 살펴보면 개인이 1,084건(47.0%), 회사 267건(11.6%), 일반단체 135건(5.9%)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 비해 회사 상담이 다소 늘어난 반면(9.7%→11.6%) 개인 상담 비율은 크게 감소하였다(52.7%→47.0%).

상담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익명 상담 비율은 2005년 29.6%, 2006년 31.9%로 다소 증가했다.

### Ⅳ. 교육 현황

2006년 한 해 동안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에서는 언론사, 대학, 공공기업 등 각급 기관을 상대로 언론피해의 예방과 구제책에 대한 총 70회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대상별 교육현황을 살펴보면 언론사를 상대로 한 교육이 40회(5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방 공무원 14회(20.0%), 대학 5회(7.1%), 공·사기업 4회(5.7%), 기타 7회였다. □

## ◇ 조정 및 중재신청처리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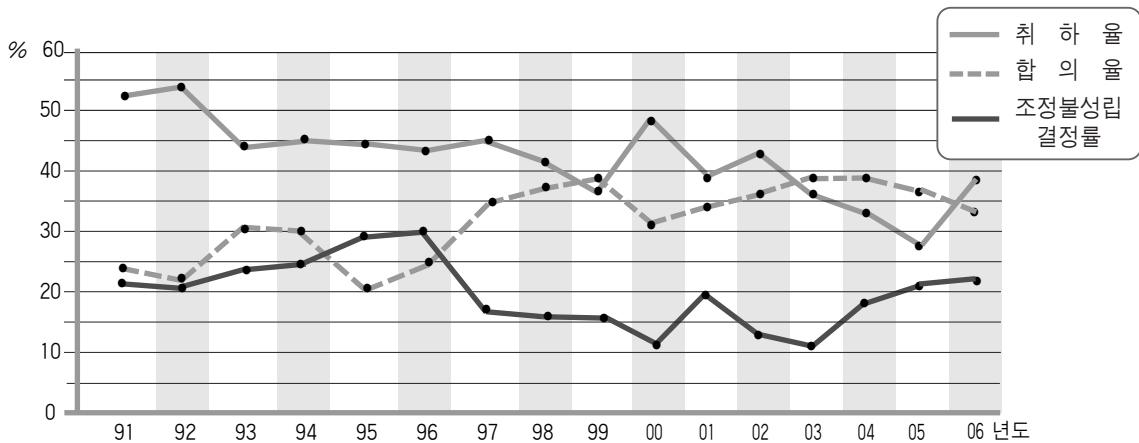
### 1. 조정신청처리현황

조정신청사건의 처리결과

\* ( )안은 %

연 도	구 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합 의	직권 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2006	1,087	356 (32.8)	57 (5.2)	226 (20.8)	22 (2.0)	13 (1.2)	413 (38.0)

1991년 이후 합의율 · 취하율 · 조정불성립결정률 추이비교



실질적 피해구제율(피해구제건수/조정건수) 현황

연 도	구 분 청구건수(A)	기각 · 각하 (B)	조정건수 (A-B)	피해구제건수	피해구제율 (%)
1981~2002	6,868	196	6,672	3,845	57.6
2003	724	30	694	474	68.3
2004	759	13	746	495	66.4
2005	883	34	849	530	62.4
2006	1,087	35	1,052	637	60.6
계	10,321	308	10,013	5,981	59.7

언론중재법 시행 이전과 이후 처리결과

\* ( )안은 %

구 분	청 구 건 수	처 리 결 과					
		합 의	직권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구 법 (1981.~05. 7. 27.)	8,758	2,833(32.3)	286(3.3)	1,737(19.8)	215(2.5)	39(0.4)	3,648(41.7)
신 법 (05. 7. 28~06. 12.31.)	1,563	518(33.1)	86(5.5)	337(21.6)	27(1.7)	27(1.7)	568(36.3)
계	10,321	3,351	372	2,074	242	66	4,216

최근 5년간 연도별 조정신청현황

구 분 \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청구건수	511	724	759	883	1,087
전년대비 증감		213	35	124	204

청구권별 처리결과

\* ( )안은 %

청구명 \ 구 분	건 수	처 리 결 과					
		합 의	직권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정 정	546(50.2)	220(40.3)	23(4.2)	108(19.8)	14(2.6)	12(2.2)	169(30.9)
반 론	211(19.4)	79(37.4)	14(6.6)	37(17.5)	2(0.9)		79(37.6)
추 후	12(1.1)	8(66.7)		1(8.3)			3(25.0)
손 배	318(29.3)	49(15.4)	20(6.3)	80(25.2)	6(1.9)	1(0.3)	162(50.9)
계	1,087(100.0)	356(32.8)	57(5.2)	226(20.8)	22(2.0)	13(1.2)	413(38.0)

최근 5년간 청구권별 조정신청현황

\* ( )안은 %

청구명 \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합 계
정 정	307	503	414	531	546	2,301(58.1)
반 론	201	216	301	194	211	1,123(28.3)
추 후	3	5	44	17	12	81(2.0)
손 배				141	318	459(11.6)
계	511	724	759	883	1,087	3,964

### 청구권별 피해구제율

청구명 \ 구분	청구건수(A)	기각·각하(B)	조정건수(A-B)	피해구제건수	피해구제율(%)
정정	546	26	520	324	62.3
반론	211	2	209	128	61.2
추후	12		12	11	91.7
손배	318	7	311	174	55.9
계	1,087	35	1,052	637	60.6

### 신법시행 후 침해유형별 조정신청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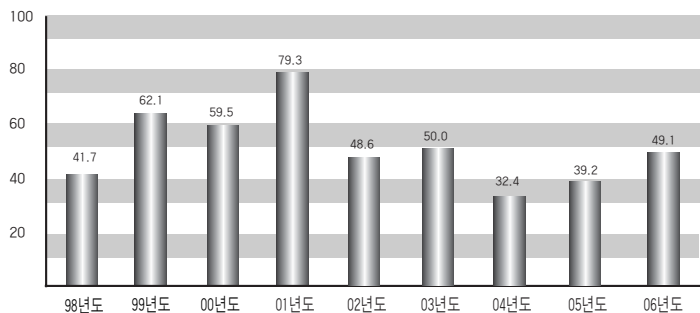
연도 \ 침해유형	명예훼손 및 기타인격권훼손					신용훼손	기타	합계
	명예훼손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사생활침해			
2005 (7. 28. 이후)	433	15	2	14	-	10	2	476
2006	1,003	48	7	1	5	17	6	1,087
계	1,436	63	9	15	5	27	8	1,563

### 최근 5년간, 침해유형별 조정신청현황

\* ( )안은 %

연도 \ 침해유형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명예 및 기타인격권훼손	493	698	718	845	1,064	3,818(96.3)
신용훼손	10	10	39	36	17	112(2.8)
기타	8	16	2	2	6	34(0.9)
계	511	724	759	883	1,087	3,964(100.0)

### 조정결정 이의신청률 추이



## II. 조정신청인 유형별 처리현황

###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 ( )안은 %

유형	구분 건수	침해유형			처리결과					
		명예 및 기타인격권 훼손	신용 훼손	기타	합의	직권조정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개인	529(48.7)	521	5	3	163 (30.8)	35(6.6)	92(17.4)	16(3.0)	2(0.4)	221(41.8)
국가기관	151(13.9)	150		1	66 (43.7)	10(6.6)	30(19.9)	1(0.7)		44(29.1)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30(2.8)	30			12 (40.0)	5(16.7)	9(30.0)	1(3.3)		3(10.0)
공공단체	15(1.4)	15			5 (33.3)		1(6.7)			9(60.0)
조합 및 협회	46(4.2)	46			8(17.4)	2(4.3)	14(30.5)	2(4.3)		20(43.5)
일반단체	126(11.6)	123	3		47(37.3)	5(4.0)	20(15.9)	1(0.8)	11(8.7)	42(33.3)
종교단체	9(0.8)	9			1(11.1)		8(88.9)			
기업체	127(11.6)	116	9	2	30(23.6)		40(31.5)	1(0.8)		56(44.1)
언론사	17(1.6)	17			5(29.4)		9(53.0)			3(17.6)
금융기관	2(0.2)	2					1(50.0)			1(50.0)
교육기관	35(3.2)	35			19(54.3)		2(5.7)			14(40.0)
계	1,087	1,064(97.9)	17(1.6)	6(0.5)	356(32.8)	57(5.2)	226(20.8)	22(2.0)	13(1.2)	413(38.0)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그 직업별 처리결과

※ ( )안은 %

유형	구분 건수	처리결과					
		합의	직권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국회의원	39(7.4)	8(20.5)	1(2.6)	9(23.1)			21(53.8)
법조인	10(1.9)	1(10.0)	1(10.0)	6(60.0)			2(20.0)
전·현직 공무원	78(14.7)	23(29.5)	4(5.1)	4(5.1)			47(60.3)
군인/경찰	13(2.5)	4(30.8)		1(7.7)			8(61.5)
기초광역단체장/의원	17(3.2)	2(11.8)		8(47.0)			7(41.2)
정당정치인	14(2.6)		2(14.3)	2(14.3)			10(71.4)
의료인	10(1.9)	5(50.0)					5(50.0)
문화예술인	18(3.4)	6(33.2)	1(5.6)	1(5.6)			10(55.6)
종교인	9(1.7)	4(44.5)	3(33.3)		1(11.1)		1(11.1)
회사원	48(9.1)	20(41.6)	6(12.5)	14(29.2)	1(2.1)		7(14.6)
언론인	29(5.5)	12(41.4)	1(3.5)	7(24.1)	2(6.9)		7(24.1)
교육자(교수·교사·강사 등)	37(7.0)	16(43.2)		5(13.6)			16(43.2)
개인사업가	28(5.3)	9(32.2)	3(10.7)	2(7.1)			14(50.0)
농업·수산업·도소매업	28(5.3)	8(28.6)	1(3.6)	8(28.6)			11(39.2)
서비스업	25(4.7)	6(24.0)	3(12.0)	8(32.0)			8(32.0)
학생	18(3.4)	7(38.9)	2(11.1)		2(11.1)	2(11.1)	5(27.8)
일반단체·각종조합대표 등	28(5.3)	8(28.6)	2(7.1)	8(28.6)	6(21.4)		4(14.3)
시민단체 대표 및 회원	2(0.4)		1(50.0)	1(50.0)			
주부	25(4.7)	4(16.0)	2(8.0)	7(28.0)	1(4.0)		11(44.0)
무직	14(2.6)	7(50.0)					7(50.0)
기타	39(7.4)	13(33.3)	2(5.1)	1(2.6)	3(7.7)		20(51.3)
계	529	163(30.8)	35(6.6)	92(17.4)	16(3.0)	2(0.4)	221(41.8)

최근 5년간, 신청인 유형별 현황

※ ( )안은 %

유형 \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합 계
개 인	216	247	265	385	529	1,642(41.4)
국가기관	22	164	190	146	151	673(17.0)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	26	43	33	31	31	164(4.2)
공공단체	17	17	30	22	15	101(2.5)
정 당	10	1	3	7	-	21(0.5)
조합 및 협회	49	60	69	87	46	311(7.8)
일반단체	35	71	34	58	126	324(8.2)
종교단체	12	16	11	19	9	67(1.7)
기업체	90	71	98	103	126	488(12.3)
언론사	20	10	15	10	17	72(1.8)
금융기관	3	1	1	3	2	10(0.3)
교육기관	7	14	8	12	35	76(1.9)
의료기관	4	9	2	-	-	15(0.4)
계	511	724	759	883	1,087	3,964(100.0)

신청인 유형별 피해구제율

유형 \ 구 분	청구건수(A)	기각·각하(B)	조정건수(A-B)	피해구제건수	피해구제율(%)
개 인	529	18	511	311	60.9
국가기관	151	1	150	104	69.3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	31	1	30	18	60.0
공공단체	15		15	11	73.3
조합 및 협회	46	2	44	18	40.9
일반단체	126	12	114	75	65.8
종교단체	9		9	1	11.1
기업체	126	1	125	62	49.6
언론사	17		17	8	47.1
금융기관	2		2	1	50.0
교육기관	35		35	28	80.0
계	1,087	35	1,052	637	60.6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그 직업별 피해구제율

유 형 \ 구 분	청구건수(A)	기각·각하(B)	조정건수(A-B)	피해구제 건수	피해구제율(%)
국회의원	39		39	17	43.6
법조인	10		10	4	40.0
전·현직 공무원	78		78	59	75.6
군인/경찰	13		13	7	53.8
기초광역단체장/의원	17		17	4	23.5
정당정치인	14		14	8	57.1
의료인	10		10	7	70.0
문화예술인	18		18	12	66.7
종교인	9	1	8	8	80.0
회사원	48	1	47	28	59.6
언론인	29	2	27	18	66.7
교육자(교수·교사·강사 등)	37		37	22	59.5
개인사업가	28		28	16	57.1
농업·수산업·도소매업	28		28	15	53.6
서비스업	25		25	12	48.0
학 생	18	4	14	12	85.7
일반단체·각종조합대표 및 임원	28	6	22	12	54.5
시민단체 대표 및 회원	2		2	-	-
주 부	25	1	24	14	58.3
무 직	14		14	14	100.0
기 타	39	3	36	22	61.1
계	529	18	511	311	6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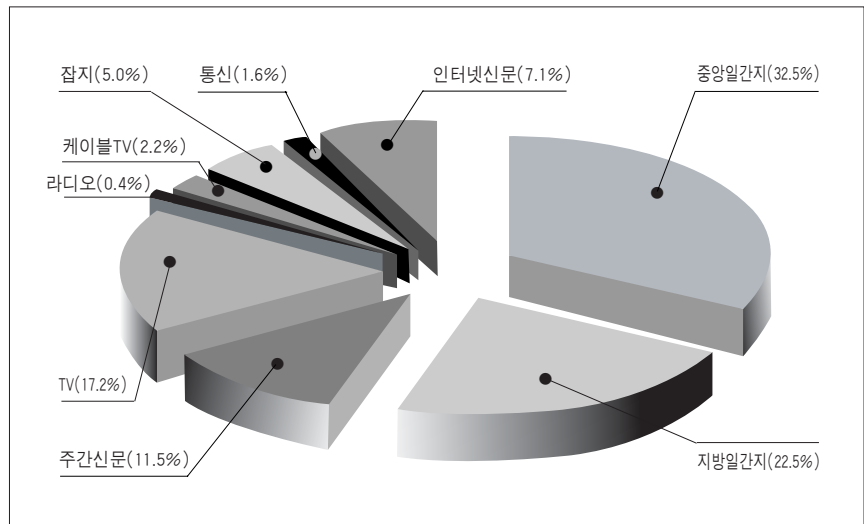
### Ⅲ. 조정대상 매체별 처리현황

####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 )안은 %

매체유형		구 분 건 수	합 의	직권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신 문	중 앙 일 간 지	353	120 (34.0)	17 (4.8)	70 (19.8)	7 (2.0)	7 (2.0)	132 (37.4)
	지 방 일 간 지	245	72 (29.4)	7 (2.9)	37 (15.1)	2 (0.8)		127 (51.8)
	주 간 신 문	125	41 (32.8)	10 (8.0)	24 (19.2)	4 (3.2)		46 (36.8)
방 송	T V	187	50 (26.8)	14 (7.5)	58 (31.0)		4 (2.1)	61 (32.6)
	라 디 오	5	2 (40.0)		2 (40.0)	1 (20.0)		
	C A T V	24	5 (20.8)	3 (12.5)	6 (25.0)	1 (4.2)	1 (4.2)	8 (33.3)
잡 지		54	26 (48.1)	4 (7.4)	15 (27.8)			9 (16.7)
통 신		17	6 (35.3)		1 (5.9)	2 (11.7)	1 (5.9)	7 (41.2)
인 터 넷 신 문		77	34 (44.1)	2 (2.6)	13 (16.9)	5 (6.5)		23 (29.9)
계		1,087 (100.0)	356 (32.8)	57 (5.2)	226 (20.8)	22 (2.0)	13 (1.2)	413 (38.0)

#### 매체별 조정신청률



최근 5년간 매체유형별 조정신청 현황

※ ( )안은 %

연도 \ 매체유형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일간지	303	485	449	492	598	2,327 (60.7)
주간신문	89	60	89	113	125	476 (12.3)
시사주간지	10	10	14	4	29	67 (1.6)
방 송	89	121	161	151	192	714 (17.7)
케이블TV	1	12	15	23	24	75 (1.7)
월간지	14	22	18	33	25	112(2.9)
통 신	4	13	10	18	17	62(1.5)
인터넷신문				48	77	125(1.4)
계	510	723	756	882	1,087	3,958(100.0)

조정대상 매체별 피해구제율

※ ( )안은 %

매체유형 \ 구 분	청구건수(A)	기각·각하(B)	조정건수(A-B)	피해구제건수	피해구제율(%)	
신 문	중 앙 일 간 지	353	14	339	219	64.6
	지 방 일 간 지	245	2	243	153	63.0
	주 간 신 문	125	4	121	69	57.0
방 송	T V	187	4	183	80	43.7
	라 디 오	5	1	4	2	50.0
	케 이 블 T V	24	2	22	15	68.2
시 사 주 간 지	29		29	14	48.3	
월 간 지	25		25	20	80.0	
통 신	17	3	14	13	92.9	
인 터 넷 신 문	77	5	72	52	72.2	
계	1,087	35	1,052	637	60.6	

언론사별 침해유형 및 처리결과

매체유형	구분		침해유형						처리결과						
	매체명	건수	명예	신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기타	합의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중앙일간지	경향신문	16	15		1					6	1	5			4
	국민일보	14	14							4	2				8
	내일신문	7	7							3					4
	동아일보	55	53				1	1		14	5	18		1	17
	문화일보	21	21							4	1	6			10
	서울신문	15	14		1					4	2	4			5
	세계일보	12	12							4		1	2		5
	조선일보	65	60		3				2	25	3	19	2	1	15
	중앙일보	34	34							13		5	1	1	14
	한겨레	31	31							11	2	4	1	2	11
	한국일보	12	11						1	4		1	1	1	5
	소계	282	272		5		1	1	3	92	16	63	7	6	98
	지방일간지	서울	시민일보	4	4						1		3		
아시아일보		4	4							1				3	
내외신문		2	2							1				1	
부산		국제신문	5	5						3				2	
부산일보		8	8							1		1		6	
경상일보		1	1											1	
광역일보		2	2							1				1	
대구·경북		경북일보	2	2										2	
대구신문		3	3							1				2	
매일신문		6	6							3				3	
영남일보		6	6							3		2		1	
신라일보		2	2							2					
광주·전남		광주매일	2	2										2	
광주일보		3	3											3	
무등일보		4	4							1		1		2	
전광일보		4	4									2		2	
전남매일		2	2											2	
전남일보		1	1							1					
호남매일		2	2									2			
호남일보		2	2											2	
남도일보		3	3										1	2	
대한일보	5	5							1				4		
호남투데이	2	2											2		
대전·충남	대전일보	3	3							1			2		
충도일보	6	6							4				2		
충청신문	1	1											1		
중앙매일	2	2							1				1		
인천·경기	경기도민일보	3	3						1				2		
경기매일	8	8									4		4		
경기신문	9	9							3		1		5		

매체유형	구분		침해유형						처리결과						
	매체명	건수	명예	신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기타	합의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지·방·일·간·지	천·경·기	경기일보	11	11						3					8
		경인매일	1	1						1					
		경인일보	9	9						1	1				7
		기호일보	2	2											2
		서울일보	3	3						2					1
		수도권일보	3	3											3
		우리일보	6	6						2					4
	강원·충북·전북·제주	인천일보	13	13						1	1	5	1		5
		중부일보	9	9						2		2			5
		전국매일	2	2											2
		현대일보	3	3						1					2
		투데이뉴스	3	3						1	2				
		평화일보	2	2											2
		강원도민일보	2	2						1					1
충북	강원일보	3	3						2					1	
	동양일보	4	4						2					2	
	한빛일보	6	6						3					3	
전북·제주	충청투데이	4	4						2					2	
	전북	새전북신문	3	3								1			2
		전라일보	2	2											2
		전민일보	5	5						1		1			3
		전북도민일보	3	3						2					1
		전북일보	6	6						3	1				2
		전북중앙신문	13	13						6	1	6			
		전주매일	2	2						1					1
	경남·제주	전북매일	1	1											1
		새전북신문	1	1						1					
전북대중일보		2	2						1	1					
경남	경남도민일보	3	3						2					1	
	조간경남	3	3						1					2	
제주	제민일보	2	2						1					1	
	한라일보	6	6								6				
소계		245	245						73	7	37	2		126	
경제지	매일경제	17	15	1	1				5		1			11	
	서울경제	4	4						2					2	
	파이낸셜뉴스	2	1					1						2	
	한국경제	11	10		1				4				1	6	
	헤럴드경제	5	5						2		1			2	
	머니투데이	2	1		1				1		1				
	아시아경제	5	5						2					3	
	소계	46	41	1	3				1	16	3		1	26	
스포츠지	스포츠서울	5	3		2				3					2	
	일간스포츠	2	2						1					1	
	소계	7	5		2				4					3	

매체유형	구분		침해유형						처리결과						
	매체명	건수	명예	신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기타	합의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특수 일간지	농민신문	2	2							1					1
	전자신문	5	5												5
	일간환경	2	2							2					
	소계	9	9							3					6
무료 일간지	더데일리포커스	5	2		3					2	1	2			
	A M 7	2			2					2					
	광주드림	2	2									2			
	소계	9	4		5					4	1	4			
중 앙 방 송	KBS-TV*	7	4	2		1				1		2			4
	KBS-1TV	41	38	1	2					13	4	11			13
	KBS-2TV	18	10	4	2	2				4	2	9			3
	MBC-TV	46	33	5	6	2				11	7	18		1	9
	SBS-TV	28	22	1	2	1		2		9		4		3	12
	SBS-R	1	1										1		
	PBC-R	2	2									2			
	소계	143	110	13	12	6		2		38	13	46	1	4	41
지 방 방 송	부산KBS-1TV	6	6									3			3
	강릉KBS-1TV	2	2							1					1
	춘천KBS-1TV	2	2												2
	진주KBS-1TV	1	1							1					
	전주KBS-1TV	4	4							1					3
	부산MBC-TV	3	3									1			2
	강릉MBC-TV	1				1					1				
	청주MBC-TV	2	1		1					1					1
	안동MBC-TV	5	5									3			2
	마산MBC-TV	1	1							1					
	울산MBC-TV	1	1												1
	진주MBC-TV	1	1							1					
	전주MBC-TV	1	1												1
	광주MBC-TV	3	3							1		1			1
소계	33	31		1	1				7	1	8			17	
지 역 민 방	KNN	5	4		1					1		3			1
	TJB-TV	4	3		1					3		1			
	TBC-TV	4	4							1		2			1
	경기방송-R	2	2							2					
	소계	15	13		2					7		6			2
케이블 TV	YTN	15	12		3					2	1	5		1	6
	MBN	2	2								1	1			
	YTN STAR	2	2							1					1
	TVN	1			1					1					
	Q채널	1			1						1				
	양천방송	1	1										1		
	CMB광주방송	2	2							1					1
	소계	24	19		5					5	3	6	1	1	8

\* KBS1, KBS2TV에 모두 방송된 경우 KBS-TV로 처리함

매체 유형	매체명	구분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신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기타	합의	직권 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이동멀티 미디어	T U 미디어	1			1										1
	소 계	1			1										1
뉴스 통신	연 합 뉴 스	8	6		1			1	2		1	2	1		2
	뉴 시 스	9	9						4						5
	소 계	17	15		1			1	6		1	2	1		7
시사 주간지	뉴스메이커	2			2				2						
	시 사 저 널	17	15		2				3	2	8				4
	이코노미스트	1	1						1						
	주 간 동 아	4	4						1		3				
	한 겨 례 2 1	5	5						2		2				1
	소 계	29	25		4				9	2	13				5
시사 주간신문	일 요 서 울	3	3							3					
	일 요 신 문	3	3							1	2				
	시 민 의 신 문	2	2						1						1
	소 계	8	8						1	4	2				1
지역 주간신문	종 로 신 문	3	3						2		1				
	사 하 타 임 즈	2	2						2						
	주간사하신문	2	2						2						
	영주시민신문	3	3								3				
	나주투데이	4	4						1		2				1
	서남신문	2	2												2
	완도신문	2	2												2
	전남타임즈	4	4												4
	당진뉴스	1	1						1						
	청양신문	1	1								1				
	주간리더	2	2								2				
	여주신문	1	1												1
	e-서부신문	2	2									2			
	서해안신문	1	1												1
	하나로신문	1	1												1
	연기신문	3	3						1						2
	용인신문	1	1												1
	주간한국기자연대	3	3						1						2
	안양광역신문	2	2						1						1
	경기북부시민신문	1	1						1						
부천자치신문	1	1						1							
포천신문	1	1												1	
뉴스리더	2	2												2	
원주투데이	4	2						2			2			2	
증평괴산저널	1	1						1							
목포투데이	4	4								4					
정읍신문	2	2												2	
고창신문	1	1						1							
남해신문	1	1						1							

매체유형	구분		침해유형						처리결과						
	매체명	건수	명예	신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기타	합의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지역주간신문	함안아라신문	1	1							1					
	고성신문	2	2							1					1
	함안신문	3	3							2					1
	진주신문	2	2							1					1
	소계	66	64						2	21		13	4		28
특수주간신문	수산신문	1	1							1					
	북지연합신문	3	3							2					1
	게임신문	2	2							1					1
	연천저널	1	1									1			
	기독교보	3	3								3				
	한국건설신문	1	1							1					
	한국마케팅신문	2	2												2
	교통신문	1	1												1
	국제태권도신문	1	1							1					
	보건신문	2	2							2					
	한국목재신문	4	4							2					2
	컴퓨터타임즈	1	1												1
	수산인신문	1	1									1			
	교수신문	2	2									2			
	기독교신문	4	4							1		3			
	목사장로신문	3	3									2			1
	기자협회보	4	4							2					2
	국민대신문	1	1							1					
	재외동포신문	1	1								1				
	동국대학원신문	2	2												2
	한국방송대학보	1	1												1
	복음과상황	1	1							1					
	교통환경신문	2	2								2				
	경향게임스	2	2												2
	주거환경신문	1	1							1					
	P D 저널	1							1	1					
	순례자	2	2							1					1
	e-조은뉴스	1	1							1					
	소계	51	50						1	19	6	9			17
	월간지	신동아	3	3								1			2
		월간조선	1		1							1			
아트인컬처		2	2						2						
레이디경향		1	1						1						
로즈저널		2	2						2						
민들레		2	2						1					1	
여성중앙		2	2							1	1				
싱글즈		2		2					2						
월간미술		1		1					1						
러닝라이프	1		1					1							

매체유형	구분		침해유형						처리결과						
	매체명	건수	명예	신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버시	기타	합의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월간지	월간SHAPE	2	2							2					
	부산대교지(효원)	2	2							2					
	전국버스노동자신문	1	1							1					
	레몬트리	1	1							1					
	모터트렌드	2	2							1					1
	소계	25	20		5					17	2	2			4
인터넷신문	노컷뉴스	15	14		1					3	1	2	2		7
	오마이뉴스	8	8							4		2			2
	프레시안	2	2							1		1			
	쿠키뉴스	2	2							1					1
	인터넷시민의소리	2	2									2			
	인터넷e조은뉴스	1	1												1
	이타임즈	2	2										2		
	CNBNEWS	2	2							1					1
	브레이크뉴스	2	2												2
	이데일리	2	2							1					1
	프린티어타임즈	1	1								1				
	데일리서프라이즈	6	6							2		2			2
	코리아포커스	1	1												1
	뉴스엔조이	3	3							3					
	데일리엔케이	2	2							2					
	폴리뉴스	1	1							1					
	마이데일리	1	1							1					
	메디컬투데이	2	2							1					1
	E B N	1	1							1					
	거체타임즈	1	1							1					
	디트뉴스24	1	1							1					
	인천뉴스	1	1												1
	이슈제주	3		3						2					1
	천안일보	2	2							1					1
	소통뉴스	4	4							4					
	부천타임즈	1	1							1					
	용인인터넷신문	2	2									2			
	울산노동뉴스	2	2									2			
	아라신문	1	1							1					
	머니투데이	1	1												1
	런아시아넷	1	1										1		
	디시뉴스	1			1					1					
	소계	77	72	3	2				6	34	2	13	5		23
총계	1,087	1,003	17	48	7	1	4		356	57	226	22	13	413	

#### Ⅳ. 조정대상 기사 현황

매체유형별 조정대상기사 내용 현황

※ ( )안은 %

매체유형	구분	기사내용	조정대상기사 내용 현황											
			정치행정	경제	사회	과학환경	문화	의료건강	스포츠연예	노조	교육	언론	기타	합계
일간신문·통신	중앙지		115	15	88	3	3	3	8	4	23	8	12	282
	지방지		35		182	2		2			8		16	245
	경제지		15	17	5	3		2		2			2	46
	스포츠지		2		2			1	2					7
	특수일간지		5		1	2							1	9
	무료일간지				2		2						5	9
	통신		1		11		2	2					1	17
	소계		173	32	291	10	7	10	10	6	31	8	37	615
방송	전국방송		19	4	98	5	1	8	2		1	1	5	144
	지역방송		1		45			1			1			48
	케이블TV		2	1	19		1		1					24
	소계		22	5	162	5	2	9	3		2	1	5	216
주간지·주간신문			31	2	79	3	6	4	2		4	4	19	154
월간지			1		2		3	9		1	4	2	3	25
인터넷신문			17	6	38		4	2	3	2	3	2		77
합계			244 (22.4)	45 (4.1)	572 (52.6)	18 (1.7)	22 (2.0)	34 (3.1)	18 (1.7)	9 (0.8)	44 (4.1)	17 (1.6)	64 (5.9)	1,087

매체유형별 조정대상 기사의 종류

※ ( )안은 %

매체유형	구분	기사종류	
		종류	신청건수
일간신문·통신		스트레이트	508 (82.6)
		해설	23 (3.7)
		심층기사	21 (3.4)
		사설	18 (2.9)
		논단 및 칼럼	14 (2.3)
		인터뷰	14 (2.3)
		사진	10 (1.6)
		비평	2 (0.3)
		기타	5 (0.8)
계		615 (100.0)	
방송		뉴스해설	100 (46.3)
		뉴스내 고발프로	44 (20.4)
		시사고발프로	45 (20.8)
		교양정보	15 (6.9)
		드라마	2 (0.9)
		스포츠	2 (0.9)
		연예정보	1 (0.5)
		다큐멘터리	1 (0.5)
		기타	6 (2.3)
계		216 (100.0)	

매체유형별 취재원 분류

\* ( )안은 %

매체유형 \ 취재원	기자 직접	민원 및	사건의	민·형사	보도자료	통신 및	회의	인터넷	기타	합계
	인지 취재	제보	당사자·주변인물	사건기록	및 발표자료	타매체 보도	세미나 연구보고서	사이트		
일간지·통신	160	115	112	10	153	14	4	1	46	615
방송	49	56	38	4	58	1			10	216
주간신문	64	36	33		9		4	2	6	154
잡지	10	3	5						7	25
인터넷신문	27	20	9	2	11	2	3		3	77
합계	310 (28.4)	230 (21.2)	197 (18.1)	16 (1.5)	231 (21.2)	17 (1.6)	11 (1.0)	3 (0.4)	72 (6.6)	1,087

인터넷신문 조정신청 처리결과

\* ( )안은 %

청구명 \ 구분	건수	처리결과					
		합의	직권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정정	43	21(48.8)		7(16.3)	3(7.0)		12(27.9)
반론	13	10(76.9)					3(23.1)
손배	21	3(14.3)	2(9.5)	6(28.6)	2(9.5)		8(38.1)
계	77(100.0)	34(44.1)	2(2.6)	13(16.9)	5(6.5)		23(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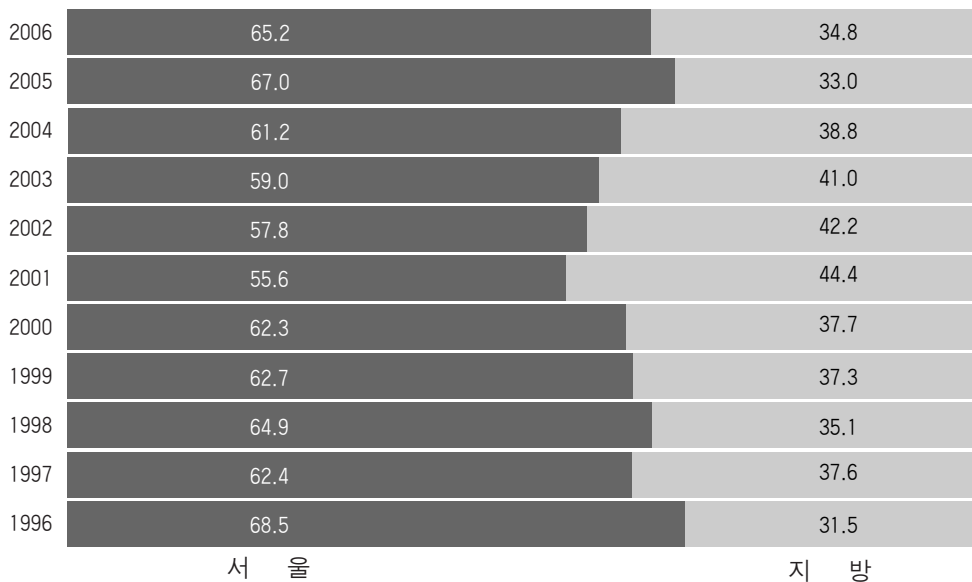
## V. 중재부별 처리결과

### 중재부별 처리결과

※ ( )안은 %

중재부	구 분 건 수	처 리 결 과					
		합 의	직권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서울중재부	709(65.2)	236(33.3)	49(6.9)	157(22.1)	16(2.3)	13(1.8)	238(33.6)
부산중재부	42(3.9)	15(35.7)		10(23.8)			17(40.5)
대구중재부	31(2.8)	10(32.3)		10(32.3)			11(35.4)
광주중재부	55(5.1)	6(10.9)		16(29.1)	1(1.8)		32(58.2)
대전중재부	29(2.7)	15(51.7)		2(6.9)			12(41.4)
경기중재부	113(10.4)	25(22.1)	4(3.5)	17(15.1)	3(2.7)		64(56.6)
강원중재부	14(1.3)	4(28.6)	1(7.1)		2(14.3)		7(50.0)
충북중재부	13(1.2)	7(53.8)					6(46.2)
전북중재부	50(4.6)	21(42.0)	3(6.0)	8(16.0)			18(36.0)
경남중재부	20(1.8)	14(70.0)					6(30.0)
제주중재부	11(1.0)	3(27.3)		6(54.5)			2(18.2)
계	1,087	356(32.8)	57(5.2)	226(20.8)	22(2.0)	13(1.2)	413(38.0)

### 서울·지방간 조정신청 구성비율추이



최근 5년간 중재부별 조정신청 현황

※ ( )안은 %

연도 \ 중재부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
서울중재부	307	496	558	592	709	2,662 (67.2)
부산중재부	15	18	27	35	42	137(3.5)
대구중재부	14	20	17	14	31	96 (2.4)
광주중재부	39	40	32	45	55	211 (5.3)
대전중재부	16	20	15	18	29	98 (2.5)
경기중재부	45	64	41	87	113	350(8.8)
강원중재부	7	10	13	15	14	59 (1.5)
충북중재부	16	6	4	10	13	49(1.2)
전북중재부	25	25	27	29	50	156(3.9)
경남중재부	20	16	20	25	20	101(2.6)
제주중재부	7	9	5	13	11	45(1.1)
계	511	724	759	883	1,087	3,964(100.0)

중재부별 피해구제율

구분 \ 중재부	청구건수(A)	기각·각하(B)	조정건수(A-B)	피해구제건수	피해구제율(%)
서울중재부	709	29	680	418	61.5
부산중재부	42		42	21	50.0
대구중재부	31		31	14	45.2
광주중재부	55	1	54	16	29.6
대전중재부	29		29	25	86.2
경기중재부	113	3	110	67	60.9
강원중재부	14	2	12	10	83.3
충북중재부	13		13	10	76.9
전북중재부	50		50	33	66.0
경남중재부	20		20	19	95.0
제주중재부	11		11	4	36.4
계	1,087	35	1,052	637	60.6

최근 3년간 중재부별 피해구제율 추이

구 분 중재부	2004			2005			2006		
	조 정 건 수	피해구제 건 수	구제율 (%)	조 정 건 수	피해구제 건 수	구제율 (%)	조 정 건 수	피해구제 건 수	구제율 (%)
서울중재부	545	367	67.3	566	352	62.2	680	418	61.5
부산중재부	27	19	70.4	34	19	55.9	42	21	50.0
대구중재부	17	11	64.7	14	8	57.1	31	14	45.2
광주중재부	32	22	68.8	44	24	54.5	54	16	29.6
대전중재부	15	10	66.7	18	12	66.7	29	25	86.2
경기중재부	41	32	78.0	86	44	51.1	110	67	60.9
강원중재부	13	4	30.8	15	14	93.3	12	10	83.3
충북중재부	4	2	50.0	10	7	70.0	13	10	76.9
전북중재부	27	18	66.7	29	19	65.5	50	33	66.0
경남중재부	20	7	35.0	21	20	95.2	20	19	95.0
제주중재부	5	3	60.0	12	11	91.7	11	4	36.4
계	746	495	66.4	849	530	62.4	1,052	637	60.6

VI. 손해배상청구사건 처리결과

손해배상청구사건 처리결과

※ ( )안은 %

청구명	구 분		처 리 결 과						
	건 수		합 의	직 권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병 합 청 구	정정 손배	정 정 손 배	199	82	8	52	6	1	50
	소 계		199	18	7	51	6	1	116
	소 계		398	100(25.1)	15(3.8)	103(25.9)	12(3.0)	2(0.5)	166(41.7)
	반론 손배	반 론	16	3	1	4			8
		손 배	16			5			11
	소 계		32	3(9.4)	1(3.1)	9(28.1)			19(59.4)
	추후 손배	추 후	10	7		1			2
		손 배	10			1			9
	소 계		20	7(35.0)		2(10.0)			11(55.0)
	정정 반론 손배	정 정	19	6		6			7
		반 론	19	10	1	5			3
	손배	손 배	19	1		6			12
소 계		57	17(29.8)	1(1.8)	17(29.8)			22(38.6)	
정정 추후 손배	정 정	1	1						
	추 후	1						1	
손배	손 배	1						1	
	소 계	3	1(33.3)					2(66.7)	
손배 단독청구		73	30(41.7)	13(18.0)	17(23.3)			13(18.0)	
계		583	158(27.1)	30(5.1)	148(25.4)	12(2.1)	2(0.3)	233(40.0)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 ( )안은 %

유 형	구 분		처 리 결 과					
	건 수		합 의	직 권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개 인	210		41(19.6)	18(8.6)	45(21.4)	5(2.4)	1(0.4)	100(47.6)
국가기관	0							
지방자치단	4		1(25.0)	1(25.0)	2(50.0)			
공공단체	4							4(100.0)
일반단체	45		1(2.2)	1(2.2)	12(26.7)	1(2.2)		30(66.7)
종교단체	3				3(100.0)			
기업체	41		5(10.6)		14(38.3)			22(51.1)
언론사	6				4(66.7)			2(33.3)
교육기관	5		1(20.0)					4(80.0)
계	318		49(15.4)	20(6.2)	80(25.2)	6(1.9)	1(0.3)	162(51.0)

침해유형별 처리결과

※ ( )안은 %

침해유형	구 분 건 수	처 리 결 과					
		합 의	직권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명예훼손	260	21(8.1)	9(3.5)	73(28.1)	6(2.3)	1(0.4)	150(57.6)
신용훼손	3		1(33.3)				2(66.7)
초상권	42	23(54.8)	9(21.4)	4(9.5)			6(14.3)
음성권	7	4(57.1)	1(14.3)				2(28.6)
성명권	1			1(100.0)			
프라이버시	4	1(25.0)		1(25.0)			2(50.0)
기타	1			1(100.0)			
계	318	49(15.4)	20(6.2)	80(25.2)	6(1.9)	1(0.3)	162(51.0)

Ⅶ. 자동 소 제기 현황

연도별 자동 소 제기 현황

연도	구분 건수	청 구 명					이의신청		1심결과			
		정정	반론	손배	정정 손배	정정 반론	신청인	피신청인	인용	취하	기각 각하	계속
2005	9	2	4	1	2		2	7	2	3	1	3
2006	24	6	6	8	2	2	4	20	1	3	1	19
계	33	8	10	9	4	2	6	27	3	6	2	22

매체별 자동 소 제기 현황

매체	구분 건수	청 구 명					이의신청		1심결과			
		정정	반론	손배	정정 손배	정정 반론	신청인	피신청인	인용	취하	기각 각하	계속
국민일보	1			1				1	1			
동아일보	5	3	2					5		1		4
조선일보	1	1						1			1	
한겨레	1		1					1		1		
전북일보	1		1					1				1
시사저널	1				1			1				1
일요신문	1			1				1				1
프런티어타임스	1			1				1				1
교통환경신문	1				1		1					1
재외동포신문	1	1						1				1
전북대중일보	1	1						1				1
KBS-1TV	2		1			1	1	1		1		1
KBS-2TV	1			1				1				1
MBC-TV	3		1	1		1	2	1				3
Q채널	1			1				1				1
여성중앙	1			1				1				1
노컷뉴스	1			1				1				1
계	24	6	6	8	2	2	4	20	1	3	1	19

## VIII. 중재신청현황

※ ( )안은 %

침해유형	구 분 건 수	청 구 명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명예훼손	2	1	1	
신용훼손				
초상권	2			2
음성권	1			1
성명권				
프라이버시	2			2
계	7	1	1	5

◇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 운용 현황 ◇

상담신청유형

※ ( )안은 %

연 도	상담건수	전 화	방 문	인터넷 실시간	인터넷 게시판	이메일 상 담	기 타
2004 (4.1.~12.31.)	1,816	1,346	176	177	77	15	25
2005	2,353	1,815	267	147	94	16	14
2006	2,304	1,836	178	132	140	7	11
계	6,473	4,997 (77.2)	621 (9.6)	456 (7.0)	311 (4.8)	38 (0.6)	50 (0.8)

상담처리결과

※ ( )안은 %

연 도	구 분 건 수	상 담 처 리 결 과							총 계	*조정신청 접수
		조정절차 안내	법적절차 안내	재상담 예정	타기관 안내	자 체 종 결	기 타			
2004 (4.1.~12.31.)	1,816	1,151	533	91	183	103	11	2,072	318	
2005	2,353	1,663	554	63	246	42	64	2,632	446	
2006	2,304	1,719	286	59	297	36	145	2,542	555	
계	6,473	4,533 (62.6)	1,373 (19.0)	213 (2.9)	726 (10.0)	181 (2.5)	220 (3.0)	7,246 (100.0)	1,319 (29.1)	

- \* 상담처리 결과는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상담처리 결과의 합계가 불일치할 수도 있음.
- \* 조정신청 접수율은 조정절차 안내 건수 대비 조정신청사건 접수비율을 의미.
- \* 자체종결은 언론피해와 무관하거나 조정절차 또는 법적절차로는 구제불가능한 사안에 대한 상담을 의미.

피해유형

※ ( )안은 %

연 도	구 분 건 수	피 해 유 형					총 계
		명 예 훼손	신 용 훼손	초상권·성명권 음성권 침해	사생활 침해	기 타	
2004 (4.1.~12.31.)	1,816	1,034	153	137	15	527	1,866
2005	2,353	1,710	51	172	42	435	2,410
2006	2,304	1,384	118	224	65	594	2,385
계	6,473	4,128 (62.0)	322 (4.8)	533 (8.0)	122 (1.8)	1,556 (23.4)	6,661 (100.0)

- \* 피해유형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총계의 합계가 불일치할 수도 있음.

## 매체유형

※ ( )안은 %

연도	구분 건수	피해유형								총계
		일간신문	주간신문	방송	월간지	통신	인터넷	기타	불명	
2004 (4.1.~12.31.)	1,816	641	201	565	35	33	103	13	333	1,924
2005	2,353	780	234	595	57	76	215	10	561	2,528
2006	2,304	750	247	575	58	64	282	15	408	2,399
계	6,473	2,171 (31.7)	682 (10.0)	1,735 (25.3)	150 (2.2)	173 (2.5)	600 (8.7)	38 (0.6)	1,302 (19.0)	6,851 (100.0)

\* 매체유형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매체유형의 합계가 불일치할 수도 있음.

## 신청인유형

※ ( )안은 %

연도	상담건수	개인	일반단체	회사	교육기관	종교단체	공공단체 공등	기타	불명
2004 (4.1.~12.31.)	1,816	829	141	229	28	7	47		535
2005	2,353	1,241	120	228	19	8	39	2	696
2006	2,304	1,084	135	267	25	9	48		736
계	6,473	3,154 (48.7)	396 (6.1)	724 (11.2)	72 (1.1)	24 (0.4)	134 (2.1)	2 (0.1)	1,967 (30.3)

## 월별 상담신청유형

※ ( )안은 %

월	상담건수	전화	방문	인터넷 실시간	인터넷 게시판	이메일 상담	기타
1월	192	150	24	5	13		
2월	182	141	13	18	9		1
3월	205	160	22	6	14	3	
4월	236	195	11	19	8	2	1
5월	208	171	13	12	10		2
6월	206	160	11	20	13		2
7월	149	124	10	6	8		1
8월	183	147	11	8	17		
9월	207	165	19	12	9		2
10월	186	142	22	6	14		2
11월	184	143	15	12	13	1	
12월	166	138	7	8	12	1	
계	2,304 (100.0)	1,836 (79.7)	178 (7.7)	132 (5.7)	140 (6.1)	7 (0.3)	11 (0.5)

◇ 연도별 조정·중재신청처리 및 시정권고 현황 ◇

1. 언론조정신청 처리현황

연도별 조정처리결과

(1981. 3. 31.~2006. 12. 31.)

연도	구분 건수	처 리 결 과						
		합 의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동 의	이 의				
1981	44	9			12(5)	1	2	20(2)
1982	50	19			19(5)		2	10(4)
1983	71	21			22(7)	1	1	26(8)
1984	54	12			29(8)	3		10(5)
1985	59	12			28(5)	4		15(7)
1986	49	14			10(2)	1		24(11)
1987	47	10			9(4)	1		27(2)
1988	55	16			12(5)		1	26(13)
1989	121	29			35(10)		6	51(21)
1990	159	42			43(10)	1	2	71(40)
1991	220	52			48(9)	3	1	116(43)
1992	381	81			79(12)	19		202(107)
1993	423	132			96(16)	8	2	185(84)
1994	541	162			127(10)	7		245(128)
1995	528	111			150(25)	26	3	238(124)
1996	556	129	2	7(1)	169(21)	9	1	239(137)
1997	490	161	10	5(1)	79(13)	8	4	223(108)
1998	602	226	14	10(2)	97(8)	5		250(106)
1999	641	244	11	18(2)	102(17)	24	5	237(92)
2000	607	198	10	15(2)	66(10)	14	2	302(156)
2001	659	229	6	23(3)	132(27)	18	2	249(133)
2002	511	182	18	17(3)	62(9)	8	1	223(101)
2003	724	287	15	15(1)	101(11)	27	3	276(158)
2004	759	283	46	22(6)	140(12)	13		255(148)
2005	883	334	31	20(4)	181(1)	19	15	283(160)
2006	1,087	356	29	28	226(2)	22	13	413(250)
계	10,321	3,351	192	180(25)	2,074(264)	242	66	4,216(2,148)
%	100.0	32.5	1.9	1.7	20.1	2.3	0.6	40.9

\* ( )안의 숫자는 합의·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보도가 된 건수 임.

증재처리 결과

\* ( )안은 %

연도	구분 건수	처리 결과				
		합의	증재결정	기각	각하	취하
2006	7		7			

연도별 피해구제율

연도	구분 처리건수 A	계속·기각 각하·계류 B	조정건수 (A-B)	처리 결과						피해 구제율 (%)
				합의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취하	소계	
					동의	이의				
1981	44	3	41	9			12 (5)	20 (2)	41 (16)	39.0
1982	50	2	48	19			19 (5)	10 (4)	48 (28)	58.3
1983	71	2	69	21			22 (7)	26 (8)	69 (36)	52.2
1984	54	3	51	12			29 (8)	10 (5)	51 (25)	49.0
1985	59	4	55	12			28 (5)	15 (7)	55 (24)	43.6
1986	49	1	48	14			10 (2)	24 (11)	48 (27)	56.3
1987	47	1	46	10			9 (4)	27 (2)	46 (16)	34.8
1988	55	1	54	16			12 (5)	26 (13)	54 (34)	63.0
1989	121	6	115	29			35 (10)	51 (21)	115(60)	52.2
1990	159	3	156	42			43 (10)	71 (40)	156(92)	59.0
1991	220	4	216	52			48 (9)	116 (43)	216(104)	48.1
1992	381	19	362	81			79 (12)	202(107)	362(200)	55.2
1993	423	10	413	132			96 (16)	185 (84)	413(232)	56.2
1994	541	7	534	162			127 (10)	245(128)	534(300)	56.2
1995	528	29	499	111			150 (25)	238(124)	499(260)	52.1
1996	556	10	546	129	2	7 (1)	169 (21)	239(137)	546(290)	53.1
1997	490	12	478	161	10	5 (1)	79 (13)	223(108)	478(293)	61.3
1998	602	5	597	226	14	10 (2)	97 (8)	250(106)	597(356)	59.6
1999	641	29	612	244	11	18 (2)	102 (17)	237 (92)	612(366)	59.8
2000	607	16	591	198	10	15 (2)	66 (10)	302(156)	591(376)	63.6
2001	659	20	639	229	6	23 (3)	132 (27)	249(133)	639(398)	62.3
2002	511	9	502	182	18	17 (3)	62 (9)	223(101)	502(313)	62.4
2003	724	30	694	287	15	15 (1)	101 (11)	276(158)	694(472)	68.0
2004	759	13	746	283	46	22 (6)	140 (12)	255(148)	746(495)	66.4
2005	883	34	849	334	31	20 (4)	181 (1)	283(160)	849(530)	62.4
2006	1,087	35	1,052	356	29	28	226 (2)	413(250)	1,052(637)	60.6
계	10,321	308	10,013	3,351	192	180 (25)	2,074(264)	4,216(2,148)	10,013(5,980)	59.7

\* ( )안의 숫자는 합의·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보도가 된 건수 임.

\* 피해구제율=피해구제건수(합의+조정결정 중 동의+조정결정중 이의·조정불성립결정·취하 중 정정 또는 반론기사 등이 게재된 건수)/조정건수

중재부별 조정신청건수

■ 조 정

연도 \ 구분	청구건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1981	44	37	5	1					1			
1982	50	44	3		1		1	1				
1983	71	61	8		1		1					
1984	54	46	3		1	2	1	1				
1985	59	48	3	2		1	1	1	1		2	
1986	49	38	3				1	3	2		2	
1987	47	42	1	1	1		1		1			
1988	55	41	2	1	3	1		2	3	1	1	
1989	121	78	14	2	8	1	6		3	2	4	3
1990	159	110	12	3	7	3	10	1	5	2	4	2
1991	220	137	20	7	9	5	10	3	3	10	12	4
1992	381	233	21	7	15	11	41	6	12	14	19	2
1993	423	236	32	25	23	15	37	9	9	16	19	2
1994	541	348	21	19	23	21	46	5	16	17	19	6
1995	528	323	27	9	15	23	55	14	16	25	13	8
1996	556	328	27	13	35	23	66	8	17	18	18	3
1997	490	283	29	24	23	15	46	14	22	11	20	3
1998	602	335	24	22	61	18	62	14	23	19	18	6
1999	641	402	27	18	43	13	62	10	16	28	16	6
2000	607	378	23	29	28	27	52	14	21	18	15	2
2001	659	428	21	18	32	19	62	9	16	36	17	1
2002	511	307	15	14	39	16	45	7	16	25	20	7
2003	724	496	18	20	40	20	64	10	6	25	16	9
2004	759	558	27	17	32	15	41	13	4	27	20	5
2005	883	592	35	14	44	19	87	15	10	29	25	13
2006	1,087	709	42	31	55	29	113	14	13	50	20	11
계	10,321	6,638	463	297	539	297	911	174	236	373	300	93
%	100.0	64.3	4.5	2.9	5.2	2.9	8.8	1.7	2.3	3.6	2.9	0.9

■ 중 재

연 도	청구건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2006	7	7										

## II. 연도별 시정권고 현황

1981. 3. 31. ~ 2006. 12. 31.

연도	구분 시정 권고 건수	침해 유형									종별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일간신문	주간신문	월간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방송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피의자, 피고인 신원 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사생활 침해 등	마약 용량 등 공개	자살관련 상세묘사	기 타									
1981																		
1982																		
1983	3								3			1	2					
1984																		
1985																		
1986	3					3								3				
1987	6	2				4						3	2	1				
1988	37	9		3		16			9			29	2	2	4			
1989	180	52		92		36						173	1		6			
1990	311	63		169	12	67						301	1		9			
1991	264	70		140	16	34	1		3			247	8	3	6			
1992	390	123		227	3	34			3			379			11			
1993	344	106		228		10						336	1		7			
1994	204	58		132		7	7					195	1		8			
1995	282	29		131			121		1			271	1		10			
1996	310	26	8	122	22	11	117	4				304		1	5			
1997	469	21	78	76	182	2	109		1			461	1		7			
1998	348	16	14	29	151		137	1				336	2	2	8			
1999	240	17	11	20	126		66					234			6			
2000	234	54	6	8	67	2	97					213	4		17			
2001	231	22	10	9	70	1	119					211	7		13			
2002	142	9			88	1	44					129	1		12			
2003	237	13	1	41	153	2	20		7			219	2		16			
2004	283	7	1	114	68	2	52	21	18			247	14	1	21			
2005	278	11		88	24	10	47	85	13			246	8	1	19	3	1	
2006	190	4	2	69	22	3	10	73	7			150	9		15	16		
계 %	4,986 100.0	712 14.3	131 2.6	1,698 34.1	1,004 20.1	245 4.9	947 19.0	184 3.7	65 1.3			4,685 94.0	67 1.3	14 0.3	200 4.0	19 0.4	1 0.0	

2006년도 시정권고 의결현황

1. 자체심의 의결현황

구 분		간 별	개인적 법익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침해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피의자, 피고인 신원 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사생활 침해 등	마약용량, 용법 등 공개	자살관련 상세묘사	기 타	
일간 신문	중 앙	7				2		1	4		
	지 방	143	4	2	57	17	2	6	52	3	
뉴스통신		14			7				7		
주간 신문	종합	3							2	1	
	지역	5			1	2			2		
인터넷신문		16			4	1		3	6	2	
계		188	4	2	69	22	2	10	73	6	
%		100.0	2.1	1.1	36.7	11.7	1.1	5.35	38.8	3.2	

2. 신청심의 의결현황

구 분		간 별	신 청 유 형				치 리 결 과				
			개인적 법 익 침 해	사회적 법 익 침 해	국가적 법 익 침 해	기 타	시정권고	기 각	각 하	취 하	기 타
일간신문		16	12	3		1		6		10	
뉴스통신		3	1	2			1			2	
주간신문		3	3				1			2	
시사주간지		1	1							1	
방 송		6	4	2				1		5	
인터넷신문		12	8	4				4	1	7	
기 타		9	4	5						9	
계		50	33	16		1	2	11	1	36	
%		100.0	66.0	32.0		2.0	4.0	22.0	2.0	72.0	

## 네티즌 댓글의 무분별한 인용 보도와 인격권

성 동 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1. 들어가며

최근 한 여성 댄스 가수가 목을 매 자살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고인의 자살 동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평소 고인에 대해 심한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던 네티즌들의 '악플'이 고인을 자살로 이끈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네티즌들의 악성 댓글이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고인이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으며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뉴스 공간에서, 특히 댓글은 이용자의 손쉬운 참여를 유도하며 현재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상호작용장치라 할 수 있다. 같은 뉴스를 읽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전통적인 뉴스미디어와는 다른 인터넷 뉴스의 획기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포털의 경우, 이용자의 규모가 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점에서 더 풍부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김은미·선유화, 2006). 하지만 댓글이 긍정적인 기능 보다는 역효과를 양산시키면서 댓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악의적인 댓글을 상습적으로 게재하는 네티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정부가 도입을 준비 중인 '인터넷 실명제'와 맞물려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작 네티즌들의 댓글을 기사 작성 및 보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언론은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는 듯하다.

많은 언론들은 그동안 네티즌의 댓글을 인용해 이를 기사화하고 전달해왔다. 네티즌들의 댓글을 주요 취재 소스로 활용해 온 것이다. 언론사들은 이를 연예뉴스에만 한정해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일반 사회적 이슈 또는 특정 인물에 대한 뉴스에서도 자주 인용해 기사화했다. 언론윤리에 입각한 보도에서 취재원 명시는 매우 중요하다. 취재원이 명시되면 인용이 가능해지고 의심이 가는 내용은 발설자가 명확하므로 즉각 내용의 진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김옥조, 2001). 하지만 익명의 네티즌들이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댓글은 이런 원칙에 위배되는 취재원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티즌들이 각종 사회 현안 및 특정 인물에 대해 발언한 내용 중 각종 의혹과 비

난, 추측성 언급 등을 담은 의견까지도 철저한 사실 확인 없이 기사에 인용하고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세밀한 사실 확인을 통해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독자 또는 시청자의 판단을 도와야 할 언론인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손쉽게 취재하고 아무런 검증 없이 기사를 통해 전파하는 행위는 언론의 기본 원칙과 사명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 또한 이러한 보도는 왜곡된 보도가 되기 쉽다. '정확한' 사실과 자료에 근거하고 있는냐는 왜곡된 보도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강명구, 1994). 댓글을 정확한 사실이나 자료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댓글을 취재원으로 사용한 보도는 왜곡된 보도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더욱이 특정 인물에 대한 평가에 있어 네티즌의 이름을 빌려 무분별하게 수집된 의견을 걸러내지 않고 보도했을 경우, 해당 인물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사실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네티즌의 의견을 익명의 취재원으로 활용해 인용·보도하고 있는 언론의 행태

를 살펴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특히 네티즌을 이용한 인용보도가 보도당사자의 인격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 사례를 찾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언론이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네티즌의 이름을 빌려  
무분별하게 수집된 의견을  
여과없이 보도할 경우  
인격권 침해할 수 있어**

## 2 인터넷 미디어와 댓글 열풍

저널리즘 미디어로서 인터넷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기술적 장점은 상호작용성이다. 과거의 전통적인 매스미디어, 즉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등은 일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니홈피나 블로그를 포함한 인터넷의 뉴스사이트들에서 제공하는 상호작용장치들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용

이하게 만들어 주었다. 뉴스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달기' 또는 '게시판'과 '토론' 등의 메뉴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메뉴들을 이용하여 네티즌들은 동시에, 혹은 비동시적으로 일대일, 또는 다대다의 대인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댓글'은 '독자의견 달기' 또는 '게시판'과 '토론' 등의 메뉴를 이용하여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댓글'은 '리플'(reply)로도 불리며, 원문 기사 또는 원문 기사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또 다른 의견 및 정보를 덧붙이는 것을 말한다. '댓글'의 등장은 게시판 메뉴의 기술적 진화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초기의 게시판은 읽는 사람이 게시된 글을 추천하는 기능과 글의 조회수 정보를 나타내주는 기능이 있었고, 이후 원문 기사나 먼저 게시된 글과는 다른 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올릴 수 있는 '답글'기능과 동일한 페이지에 정보를 게재할 수 있는 '댓글'기능이 추가되었다. '댓글'은 이용자들의 양방향적 의사소통을 통한 사회적 관계맺음에 대한 욕구, 매스미디어만 존재하던 시대에는 표출하지 못했던 개인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 인정받으려는 욕구 등이 혼합되

면서 확산되었다. 이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던 수용자들을 능동적 수용자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제 '댓글'은 하나의 트렌드를 형성하는 가운데, '댓글 저널리즘'이라는 용어까지도 등장하게 되었다(성동규, 2006).

댓글이 수행하는 저널리즘 차원에서의 기능은 크게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댓글'은 게재된 뉴스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친다. '댓글'은 오보를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 영상 및 사진에 대한 설명이 다르거나 기사 내용이 부정확할 경우, 해당 뉴스에 관한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이용자가 '댓글'에 게시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다. 국가 대표 축구팀이 경기에 패배한 후, 관중석에서 '실망'이라는 글자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축구팬의 사진을 경기 자체에 대해 실망하는 팬들의 모습이라는 해설로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실망'의 의미가 경기 패배에 대한 것이 아닌 축구협회의 행정에 대한 '실망'을 의미하는 것이었음이 '댓글'을 통해 알려진 경우가 있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다. 댓글

이 이러한 방식으로 언론들을 감시하고 견제한다면 저널리즘적인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위의 사례에서 기사 정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언론이 네티즌들의 감시와 견제에 무심하다면 댓글이 이러한 긍정적인 기능은 의미가 없어진다.

둘째, '댓글'은 의제설정기능을 수행한다. 원문 기사보다 '댓글'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는 것이다. 내용적 측면에서 '댓글'은 단순히 원문 기사에 대한 반응의 차원을 넘어 그 자체가 하나의 주장이나 독립적인 정보, 즉 뉴스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특정 뉴스사이트에서는 '댓글'을 기사형식으로 편집하여 따로 게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언론은 매우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댓글 자체는 객관적인 취재원이 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또한, 양적 측면에서 '댓글'의 존재여부와 많고 적음의 차이는 이용자가 기사에 대한 흥미를 갖거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신호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이것 또한 의제설정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일부사이트에서는

'댓글'이 많은 순서를 기준으로 기사를 분류하여 게재하기도 한다. 댓글이 이렇게 의제설정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댓글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댓글'은 읽는 사람들에 대한 설득 및 태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댓글'은 원문 기사의 내용이나 이슈에 대한 '의견지도자'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며, '댓글'을 읽는 사람을 설득하여 태도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댓글'을 읽고 쓰는 과정은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용자들은 '댓글'을 읽으면서 이슈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며, '댓글' 쓰기에 대한 참여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의견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여론을 형성하게 된다. '댓글'은 매스미디어가 주도하던 여론 형성 과정의 주도권을 이용자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댓글의 여론 형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했던 자살한 여자 가수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다. 특히 연예

인과 관련된 댓글의 경우 선정적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댓글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당사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넷째, '댓글' 자체는 원문 기사의 일부로 기능하기도 한다. '댓글'을 쓴 이용자는 원문 기사 작성자와 공동으로 기사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댓글'과 원문 기사는 웹사이트의 동일한 페이지에 존재한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원문 기사를 읽은 후 댓글을 살펴봄으로써 원문 기사가 다룬 이슈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재해석하기도 한다(성동규, 2006). 원문 기사가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면 댓글은 수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것은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네티즌들이 언론사와 수용자의 입장을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저널리즘 측면에서 '댓글'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지닌다. '댓글'의 역기능은 인신공격이나 논점이 어긋난 비판으로 이슈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칼 포퍼가 얘기한 것처럼 공중의 의견이 단일한 경우는 거의 없다.

댓글의 내용은 본인의 주관에 달려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혹은 어떤 소재든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윤봉길 의사에게까지 악플이 달린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류지영, 2007. 2. 27).

댓글은 이렇게 다양한 공중의 의견이 충돌되게끔 만들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의견

**댓글이 만들어낸 여론을  
비판적·객관적 시각에서 검증해  
전체 여론이 댓글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

충돌을 야기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감정적 댓글은 악플로 돌변하고 이것은 많은 부작용을 자아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댓글을 언론이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악플의 내용은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선정적인 보도에서 쓰일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댓글을 무비판적으로 보도자료화한다면 보도의 객관성을 담보해낼 수 없을 것이다. 댓글에 대한 언론의 역할과 태도는 댓글이

만들어낸 여론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도하여 전체 여론이 댓글에 휘둘리지 않게끔 하는 것이다.

다음은 그동안 언론이 댓글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왔으며, 그것이 어떠한 부작용을 양산해내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3. 언론보도와 인격권

현대인들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의 많은 부분을 자신의 직접 체험보다는 미디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획득하고 있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기초로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 것인가부터 어떤 영화를 볼까 하는 사사로운 소비생활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각종 판단과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므로 미디어가 만약 진실하지 않다면 이로 인한 국가·사회적 폐해는 실로 가공할 것이다(김옥조, 2001). 그렇기 때문에 언론보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언론보도의 영역과 개념이 변화하고 일반 수용자가 뉴스의 생산자가 되었지만, 언론보도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

다는 대명제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언론이 민주사회에서 막중한 기능을 수행하고 큰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언론은 진실할 것'이라는 공중의 신뢰와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는 것에 존재의의를 두고 있는데 만약 언론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면 국민의 알 권리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바로 그 순간 언론은 제 명을 다하게 된다. 따라서 언론에 있어서 진실은 저널리즘 바로 그 자체이다.

언론이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올바른 취재원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취재원은 작품이나 기사 재료의 출처를 뜻하는 말이다. 이러한 취재원에 문제가 있다면 올바른 보도가 이뤄지는 것은 시작단계에서부터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댓글을 취재원으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댓글은 이성애 근거해 쓴 책이나 직접 취재를 통해 얻어진 보도자료와는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개인의 의견이나 느낌일 뿐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취재원이 되기 어렵다는 말이다.

댓글을 보도자료로 활용해 기사를 쓰고자 한다면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기사에 다른 사람의 말이나 책 혹은 다른 보도내용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는 것도 많은 위험이 따른다. 자신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부분만을 인용해 원 자료의 의미를 곡해하는 경우가 비밀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댓글의 경우는 그 심각성이 더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댓글 자체가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느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댓글을 인용하려면 그 댓글이 의미하는 맥락이나 그 댓글에 담긴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인 경우에는 추측성 댓글과 감정적 호소가 주를 이룬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연예인 자살 보도의 경우 대부분의 댓글이 자살 혹은 타살 여부에 대한 추측성 댓글이나 수사를 다시 해달라는 등의 감정적 호소에 가까운 댓글이 많다. 이런 식의 내용을 보도자료로 쓰는 것은 분명 위험한 일이다.

한편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한 진실성 확보는 언론보도의 핵심적 가치이자 책무이다. 여기서 말하는 객관성의 의미는 가치중

립적임을 의미한다(한국언론재단, 2000). 그 가치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취재원이 객관적이어야만 하는데, 댓글은 가치중립적이 되기 힘들다. 따라서 언론사 입장에서 최대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댓글이 형성시킨 여론에 부합하는 선정적인 보도내용을 쏟아 내거나 댓글을 그대로 보도자료로 사용하여 대중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댓글을 보도자료로 사용하는 것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보도는 저널리즘 윤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인격권을 침해할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네티즌의 감정적이고 악의적인 댓글이 보도내용으로 버젓이 쓰였을 경우 당사자는 심정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댓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피해자가 느낄 정신적 충격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다. 인격권이란 인격적 이익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는 사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일신전속성(권리 중에서 주체와의 사이에 특히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성질, 또는 그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성질)으로 양도·처분할 수 없으

며, 민법은 이들에 대한 침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격권은 생명·신체·정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인격권에 대한 보호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민법에서는 신체·자유·명예를 침해하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을 뿐이며, 그 이상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그 밖의 다른 인격적 이익도 이를 침해하면 불법행위로 성립된다. 예컨대 타인의 성명이나 초상의 무단사용, 정조의 침해, 생활방해 등도 불법행위가 되는 것과 같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인격권을 인정하고, 타인의 침해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는 예도 있다(이재진, 2003).

인격권 침해가 분명 불법적 행위임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인격권을 침해했을 경우 거기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다. 사이버상의 악성댓글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물론 2007년 7월부터 악성 댓글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아직 의문

이다(최강, 2007 2. 23). 또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최근 몇 년 사이 악플의 폐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만하다. 언론보도의 입장에서 이러한 악플에 대해 비판과 견제의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댓글을 취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희생자들을 양산해 낸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최근의 몇몇 언론보도는 댓글을 무비판적으로 활용해 기사화함으로써 객관성 확보에 실패하는 문제점 노출**

어려울 것이다.

정리하자면 최근 몇 년 동안 언론보도는 댓글을 무비판적으로 보도자료로 사용함으로써 객관성 확보에 실패한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 또한, 보도를 통해 악플을 공론화시킴으로써 악플로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었다. 2005년에 크게 문제가 되었던 '개똥녀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개똥녀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댓글을 통해 한 개인

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는 사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보도는 잘못된 댓글 문화에 대해 비판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여론을 이끌어내었어야 했다. 하지만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들은 사건에 대한 올바른 접근 보다는 선정성 위주의 보도에 주력했다. 댓글을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댓글의 내용은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보도자료로 사용하면 대중들의 관심을 유도하기가 수월하다. 또한 취재원 확보도 인터넷을 활용하여 수월하게 할 수 있으므로, 최근 몇 년 동안 댓글이 취재원으로써 활용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양산되었던 것이다.

이번에 자살한 여성 연예인의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악플로 인해 상처를 입은 고인이, 댓글을 무비판적으로 기사자료로 활용한 언론들에 의해 또다시 상처받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자살 사건의 경우에는 실제로 한 인터넷 뉴스사이트에서 "타살의혹과 관련하여 남자친구가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네티즌의 추측성 댓글을 여과 없이 보도하였다. 현재 자살

한 여성 텔런트의 남자친구는 주변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인격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민감하고 자극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추측성 댓글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고인의 죽음에 관해서는 말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성 텔런트와 가까운 사이였던 남자친구는 네티즌들에 의해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고, 그들이 양산해 내는 댓글로 인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사실 규명에 집중하기보다 댓글을 사용한 선정적 보도에 치우친다면 더 큰 문제로 확산될 수도 있는 것이다.

#### 4. 결론

인터넷의 등장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이 가능한 새로운 미디어로서 각광을 받았다. 댓글은 인터넷의 상호작용성을 최적으로 살릴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특히 국내 인터넷 신문이 도입하고 있는 시민기자 제도와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달기와 같은 토론 공간은 시민의 목소

리가 반영된 뉴스 보도와 함께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일반 시민의 참여 및 토론의 폭을 넓혀 공공의 정책 결정에 시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 저널리즘 구현을 위한 공론장 형성에 필요한 환경을 마련해 준 것도 사실이다(김병철, 2004). 실제로 네티즌들은 이러한 환경을 활용하여 댓글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이 공론화되는 경우도 있을 만큼 댓글의 영향력 또한 막강해 졌다.

댓글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그것의 긍정적 효과 못지않게 부정적 효과도 만만치 않게 나타났다. 특히 ‘악플’로 불리는 ‘악성댓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특히 공인으로 불리는 연예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있다. 이는 연예인의 자살과도 큰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악성댓글의 성격을 올바르게 규명해 내고 그것에 대해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댓글을 무분별하게 인용함으로써 잘못된 사실이 유포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는 언론윤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에게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보도

행태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사회에 대한 비판과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바른 여론형성은 언론이 사회에 대해 안고 있는 권리이자 책임이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끊임없이 생성되고 이어지는 사건들 중에서 중요한 관심 사항들을 뽑아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제를 만들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언론의 기능은 한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노진남, 1995). 이러한 측면에서 고찰해 봤을 때, 취재원으로 객관성이 담보되기 힘든 댓글을 보도자료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언론 보도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다.

미디어, 특히 언론은 태동부터 윤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저널리즘은 환경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저널리즘이 지향하는 가치 체제는 인권, 자유, 정의, 민주, 진실, 객관성, 정직, 프라이버시와 같은 일련의 윤리적 개념 위에 정리되어 있다(김옥조, 2001). 언론이 이러한 윤리적 기능을 수행하기는 커녕 불분명한 취재원을 보도자료로 사용하여 대중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언론의 윤리적 기능은 마비될 수 있다.

보도 환경이 변화했다고 해서

언론보도의 근본마저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언론보도는 현실을 명확히 반영하고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면서 올바른 진실을 대중에게 전달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일반 시민들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긍정적인 일이나 일부 네티즌들의 과격한 악성댓글은 많은 부작용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은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댓글을 보도자료로 무분별하게 인용하는 일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공정하

고 객관적인 보도를 위해 취재원 확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화된 환경에서도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강명구(1994). 『저널리즘이론』. 서울: 나남출판.
- 김병철(2004). 인터넷 신문 댓글의 상호작용적 특성 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14호, 147~180.
- 김옥조(2001). 『미디어 윤리』. 서울: 중앙 M&B.
- 김은미·선유화(2006). 댓글에 대한 노출이 뉴스 수용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 50권 4호, 33~64.
- 노진남(1995). 경쟁으로 유실된 언론 윤리. 『저널리즘 비평』. 통권 15호, 69~71쪽.
- 류지영(2007. 2. 27). 애국지사에게까지 '악플' 화살. 『서울신문』.
- 성동규(2006). 『사이버커뮤니케이션』. 서울: 세계사.
- 이재진(2003). 『언론과 명예훼손 소사전』. 서울: 나남출판.
- 최 광(2007. 2. 23). 정통부, 작성자 확인 쉽게 시행령 개정. 『서울경제신문』.
- 한국언론재단(2000). 『언론인의 직업 윤리』. 서울: 한국언론재단.

**공개방송에서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을  
흥미본위로 지적하면 명예훼손**

- 일본 오사카지방법원 판결 -

마이니찌(毎日)방송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텔런트 야시키 다카지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텔런트 호리 지에미의 전 남편이 야시키와 마이니찌 방송에 도합 2,2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오사카(大阪)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 2006년 12월 22일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을 흥미본위로 지적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판시, 피고 측에 도합 330만 엔의 지불을 명하고, 마이니찌 방송도 “편집하면서 의도적으로 해당 발언을 방송했다”고 지적,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것은, 2005년 10월 18일 심야에 방송된 공개녹화프로 「たかじん(다까진) ONEMAN」인데, 판결에 의하면, 야시키의 공개녹화에서 원고와 호리의 이혼에 관해 발언하면서 “헤어질 때는 대단했다. 최고재판소에까지 갔다”, “남자가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등의 말을 했다. 실제의 이혼소송은 고등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되었다.

피고 측은 “보도 프로와 비교할 때 오락 프로에서의 표현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넓다”고 주장했으나, 판결은 “시청자들이 모든 것을 허위로 생각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피고 측의 주장을 물리쳤다.

피고 측이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되었으며, 마이니찌 방송은 “공인(公人)·예능인이 아닌 사람의 명예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제작 때 각별히 배려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문협회보』, 2007년 1월 16일자)



**일본신문협회「실명과 보도」발간 계기로  
실명보도·익명보도 논란 더욱 가열될 듯**

일본신문협회 편집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실명과 보도」라는 책자를 발간, 2만 4,000부가 매진되고 올해 들어 다시 증쇄(增刷)했다고 한다.

이 「실명과 보도」는 근래 정부기관을 비롯, 각 방면으로 익명(匿名)발표의 움직임이 확산되는가 하면 특히 경찰에서 각종 사건·사고의 피해자와 피의자들에 대한 익명화가 현저히 강화되고 있는 배경 하에서 간행됨으로 해서 앞으로 일본 내에서의 실명보도·익명보도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자는 실명·익명의 기준만을 마련한 매뉴얼이 아니고 보도 기관의 사명을 설명하는데서 시작하여 실명 발표의 의의, 실명 보도의 의미 등을 새롭게 제시하는 등 언론 측의 실명 공개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익명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정부기관이나 경찰, 범죄피해자단체 등 관련기관·인사들 간에 실명과 익명의 한계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한층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2005년 12월 각의(閣議)에서 결정된 ‘범죄피해자 등 기본계획’에는 “경찰에 의한 피해자의 실명 발표, 익명 발표에 관해서는 (중략) 개별 구체적으로 안전에 따라 적절히 발표내용이 되도록 배려한다”는 항목이 있으며, 이에 대해 신문협회 등 보도단체들은 “경찰의 자의적인 운용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위협받는다”며 삭제를 주장해왔었다.

또한 규슈(九州)변호사 연합회가 후쿠오카현(福岡縣)내 언론 기관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피해자는 중대사건을 제외하고 「거의 전부가 익명」이라고 했으며, 중대사건에서조차 「유족의 요망」 등을 이유로 익명으로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신문협회의 실명 발표 요구에 대해서도 경찰청의 和田昭夫 홍보실장은 “경찰은 수집·보유하는 정보를 공표함에 있어, 공표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공표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공익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판단·결정하고 있다. 발표와 관련하여 이러한 생각은 이전부터 일관되어 왔으며, 기본계획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신문협회보』, 2006년 12월 12일자, 2007년 1월 1일자) □

### 스냅 사진에도 저작권이 인정되며 저작권은 원판 소유자에게 있다

- 일본 도쿄지방법원 판결 -

자신이 촬영한 전 남편의 사진을 무단 게재한 서적에 의해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미국에 살고 있는 여성이 출판사인 角川서점과 저자를 상대로 출판금지와 11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일본 도쿄지방법원 민사 제46부는 지난 2006년 12월 21일 “출판은 원고의 의사에 반해 사진의 무단복제물을 반포(頒布)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출판금지와 함께 45만 엔의 지불을 명했다.

문제가 된 것은, 미국 출신 저널리스트인 로버트 파이팅의 저서 ‘도쿄 아웃사이더즈 도쿄언더월드Ⅱ’인데, 전후 일본 사회의 이면을 그린 논픽

션 작품으로 2002년에 단행본, 2004년에 문고판으로 발행되었다.

판결에 의하면 이 서적은 원고 여성이 1970년에 촬영한 당시의 남편과 장남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전 남편을 「전 CIA」라고 소개했는데, 파이팅은 전 남편의 친구로부터 이 사진을 입수, 사용 허가를 받았다.

재판에서 피고 측은 ① 일반저작물과는 다른 스냅 사진에 대해서는 저작권자를 엄밀히 조사하는 관행이 없으며, 그러한 조사는 일반적으로 곤란하다 ② 사진을 게재한 목적은 인물의 풍모를 독자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저작물로서의 감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사체의 구도나 셔터 찬스의 포착 방법 등으로 보아 사진의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전 남편의 친구가 사진을 갖고 있더라도 저작권은 사진의 네거티브(원판)를 소유한 원고 여성에게 있으며, 피고 측은 저작권 처리에 충분한 조치를 강구했다고 하기는 어렵고 사진 부분을 삭제하면 출판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신문협회보』, 2007년 1월 16일자) □

### 파파라치들, 유명 배우의 은밀한 사진 소유권 놓고 법정다툼

유명배우 올렌도 블롬과 시에나 밀러의 은밀한 장면을 담은 사진들로 인해 발생한 90,000파운드 규모의 법정다툼이 런던 파파라치들의 냉혹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사진기자인 사이먼 로이드는 그의 친구이자 동료 사진작가였던 찰리 파이크래프트를 상대로 손

해배상소송을 제기, 약 45,000파운드의 손해배상을 받아냈다. 로이드는 그의 전(前) 동료가 해당 사진에 대한 자신의 정당한 몫을 가로채려 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파이크래프트는 로이드가 “나와 회사의 명예를 더럽히고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이미 밝혀진 주장을 계속 제기했다”고 강력히 반발하는 등 양 측은 치열한 다툼을 벌여왔다.

사건의 발단은 두 사진기자가 함께 일했던 2005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해 7월 24일, 두 사람은 까르띠에 폴로 행사장에 갔고 파이크래프트는 밀러와 블룸의 사진을 여러 장 찍었다. 같은 날 밤, 두 사람은 파이크래프트가 일하는 YD 이미지사 소속 직원인 가레스 존스의 집에 가서 사진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데일리 메일』지에 보냈다. 사진에는 ‘Charlie Pycraft & Simon Lloyd/ydimage.com’이라는 타이틀이 붙었고 『데일리 메일』지는 35,000파운드를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로이드는 모든 사진들에 대해 50대 50의 권리를 가지기로 이미 둘 사이에 사전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들은 이 일이 있고 얼마 후 갈라섰고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르게 됐다. 파이크래프트는 법정 진술을 통해 “공동 필자명으로 된 타이틀은 내가 잠든 사이에 로이드가 컴퓨터를 이용해 고친 것”이라고 주장했고 “YD Image사와 관련이 있다”고 밝힌 데스몬드 윌리엄스는 “로이드를 방문했을 때 로이드가 ‘파이크래프트를 위협하는 발언’을 했고 이를 녹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로이드는 『프레스 가제트』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녹음자료가 위조된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 사건에 대해 런던 센트럴 법원의 해리스 판사는 “사진들이 매우 비싼 가격으로 팔릴 수 있는

특종”임을 인정하고 “그러나 파이크래프트의 말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데일리 메일』지로부터 받은 돈의 절반과 YD Image사가 해당 사진으로 벌어들인 55,000파운드의 절반을 로이드에게 지불할 것”을 판결했다.

(Press Gazette 2006년 10월 20일자) □

### 전동차 내 광고문구, 명예훼손 인정

-일본 도쿄고등법원 판결-

2004년에 발생한 사장 감금사건을 둘러싼 『주간 신조』(週刊新潮)의 기사와 광고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마이니찌(毎日)신문사와 피해자인 齋藤明 전 대표이사 사장이 발행사인 신조사(新潮社) 등에 약 5,000만 엔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공판에서 도쿄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지난 2006년 10월 18일 청구를 기각한 1월 18일의 1심 도쿄지방법원 판결을 변경, 신문광고나 전동차 내의 광고 문구를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여 齋藤 전 사장에게 100만 엔을 지불하도록 명했다.

문제가 된 것은 감금사건을 보도한 동 잡지 2004년 3월, 11월호의 기사와 그 광고인데, 기사나 제목의 위법성을 부정하면서 광고의 문구를 명예훼손으로 인정한 판단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기사는 공익목적도 있고, 중요부분은 진실”, “제목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나 기사와 함께 읽으면 오해는 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제목을 사용한 광고에 대해서는 “기사를 읽지 않는 압도적인 다수의 사람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없으며, 광고로서의 과장도 한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보』, 2006년 11월 7일자) □

### 영국 언론들 「보도금지」 규정 파기 전 비틀스 부부 이혼소송 보도 파문

이혼소송의 상세한 보도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영국에서, 전 비틀스의 제임스 폴 메카트니 (James Paul McCartney)의 처 밀즈가 법정에 제출한 이혼서류의 상세한 내용이 각 언론에 보도되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006년 10월 19일자 『가디언 지』(온라인판)에 의하면, 서류는 밀즈 측이 누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일리 메일』지가 10월 18일자 1면에 게재한데 이어 BBC, ITV, 스카이의 각 텔레비전 방송국이 뒤따라서 보도했는데, 이들 보도 기관은 이혼 소송의 상세한 보도를 금지한 소송 절차법을 무시한 결과가 되었다. 동법은 이름, 주소, 직업, 법률상의 논점, 고발·항변·반론의 보도를 규제하고 있다.

문서는 익명으로 PA통신에 보내졌다. 그러나 PA통신은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배포하지 않았다. 『데일리 메일』도 같은 날 밤 문서를 입수, 진실인지를 확인한 다음 법적인 조언을 받고 늦은 판(版)에 게재했다. 발행원이 같은 『이브닝 스탠더드』 지도 보도했다.

BBC의 텔레비전 뉴스 부문 책임자인 호릭스는 “많은 논의를 했으나 밀즈의 주장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적절한 보도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하고 있다. ITV의 뉴스관계자도 “책임과 절도를 가지고 취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를 보도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

해, 취급하기로 결정하기까지 활발한 논의가 있었음을 밝혔다.

메카트니 부부는 2006년 5월 별거를 발표했다. 폴, 밀즈 두 사람 모두 문서의 진위(眞僞)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밀즈 씨 측은 2006년 10월 24일 『데일리 메일』과 『이브닝 스탠더드』 두 신문을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협회보』, 2006년 10월 31일자) □

### 진실성이 없고, 허용되는 추론의 범위 벗어나면 명예훼손

-일본 도쿄지방법원 판결-

『주간 문춘』(週刊文春)의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 그룹 본사의 渡辺恒雄 대표이사 회장·주필이 발행사인 『문예춘추』 등에 1,000만 엔의 손해배상과 사죄광고를 청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방법원 민사 제12부는 2006년 10월 31일 명예훼손을 인정, 『문예춘추』 측에 200만 엔의 지불과 사죄광고의 게재를 명했다.

문제가 된 것은 「渡辺恒雄 회장에게 ‘개인자산 267억 엔’을 긴급직격(直撃)!」, 「나베즈네 ‘신문 주필의 10억 엔 부동산’의 수수께끼」 등의 제목으로 보도된 동지 2004년 11월 18일호, 동 25일호의 기사인데, 渡辺 회장에게 부정축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진실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허용되는 추론(推論)으로서의 범위를 일탈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문예춘추』 측은 11월 10일 항소했다.

(『신문협회보』, 2006년 11월 21일자) □

## 언론조정신청사례

##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이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안면마스크에 끼는 성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88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조 ○ ○

피신청인 : 뉴시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4

처리결과 : 합의 (정정)

취 하 (손배)

### 보도내용

뉴시스 : 『“연기로 안 보이는데 성에도…” 소방관 눈 가리는 공기호흡기』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29일자)

내 용 : (전략) 안면마스크에 성에가 끼면 소방관의 구조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성북소방서 구조대원인 김○○ 소방관은 “성에가 끼면 일단 시야

확보가 잘 안 돼 구조활동에 지장이 많다”면서 “조명을 비쳐도 잘 안 보이는데 성에까지 끼면 환자 구출 후 탈출 때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종로소방서 장비관리팀 관계자는 “배태랑 소방관들이야 공기호흡기의 압축공기를 적절히 조절해 성에 끼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완전제거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긴박한 구조현장에서 안면마스크에 끼는 성에쯤은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소방방재청 과학화기반팀 조○○ 장비계장(소방령)은 “어차피 구조현장은 칠흙같은 어둠 때문에 명암만 구분될 뿐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성에가 낀다고 해도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소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기호흡기를 공급하는 S업체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현재 대당 150만~170만 원 선인 공기호흡기 가격안에서는 성에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힘들다”면서 “하지만 제품 설계단계에서부터 공기흐름을 통해 성에를 줄일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1월 29일자 『“연기로 안 보이는데 성에도…” 소방관 눈 가리는 공기호흡기』 제하의 기사에서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에 공기호흡기 면체(안면마스크) 부분에 온도차로 인한 성애가 뿌옇게 끼어서 소방관들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에 긴박한 구조현장에서 안면마스크에 끼는 성애쯤은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며 “어차피 구조현장은 칠흑같은 어둠 때문에 명암만 구분될 뿐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성애가 낀다고 해도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인터뷰에 응한 조OO 씨는 공기호흡기 면체의 성애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어차피”라는 표현과 “성애가 낀다고 해도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반박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소방 공기호흡기 관련).
- 내 용 : 지난 11월 29일 『소방관 눈 가리는 공기호흡기』 기사 중 소방방재청 소방령 조OO씨가 “공기호흡기에 성애가 낀다고 해도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면서 공기호흡기 면체에 끼는 성애에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6. 12. 14일 계약된 언론사에 송고하고, 위 보도문의 제목을 2006. 12. 14. 09:00

시부터 2006. 12. 15. 09:00까지 뉴시스 홈페이지 초기화면(www.newsis.com에 접속 후 모니터 상에 처음 나타나는 화면)에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나타나도록 한다. 제목과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각각 보도한다.

- 피신청인은 2006. 11. 29자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하며, 기사 공급계약을 맺은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야후, 파란, 드림위즈 등)에 공문으로 기사 삭제를 요청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뉴시스 : 『<바로잡습니다> 소방 공기 호흡기 관련』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14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해양수산부가 긴장강도를 낮추는 것으로 불량방수복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94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해양수산부 (장관 김 성 진)

피신청인 : 노컷뉴스

종 재 부 : 서울제4종재부

접 수 일 : 2006. 12. 6.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노컷뉴스 : 『해수부, 불량 방수복 문제 미봉책 그쳐』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22일자)

내 용 : 해양수산부가 최근 방수복 인장강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형식승인시험 기준에 관한 법규를 개정했지만 방수복에 사용되는 원단고무 상당수가 불량품인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략)

이에 따라 그동안 현실성이 없는 인장강도 기준으로 발생했던 불량 방수복 논란을 잠재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인장강도 기준을 낮추는 것으로 불량 방수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왜냐하면 국내 업체가 생산하는 방수복 원단고무가 상당수 불량인 경우가 많아 아무리 좋은 제작방법으로 방수복을 만들어도 불량제품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방수복 제작 전문가는 최근 국내 6개 방수복업체의 원단고무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67%인 4개 업체의 원단고무 재질이 당기면 쉽게 부서지고 장기간 보관할 경우 옷이 축소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불량제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불량 원단고무로 만든 방수복은 실제로 해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착용을 할 수 없거나 입더라도 제대로 방수가 안 돼 인명피해가 확대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전문가는 해양수산부가 인장강도기준에 너무 집착하는 바람에 정작 가장 중요한 불량 원단고무의 문제점을 간과했다며 이번 법 개정도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수부가 소극적인 대책 마련으로 일관할 경우 불량 방수복 문제는 계속 불거질 전망이다.

##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1월 22일자 『해수부, 불량 방

수복 문제 미봉책 그쳐』 제하의 기사에서 해양수산부가 최근 방수복 인장강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형식 승인시험 기준에 관한 법규를 개정했지만 방수복에 사용되는 원단고무 상당수가 불량품인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한 방수복 제작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최근 6개 방수복 업체의 원단고무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67%인 4개 업체의 원단고무가 당기면 쉽게 부서지고 장기간 보관할 경우 옷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불량제품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는 인장강도 문제와 관련 방수복 검증결과 및 외국의 관련기준, 시험기관, 검사단체 및 관련업체의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인장강도 기준을 개정하였으며, 방수복의 고무 원단이 불량한 경우에는 인장시험시 당겼을 때 파단점에 도달하기 전에 원단고무가 먼저 파단되어 인장 시험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보존력 시험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나 현재까지 인장시험에 합격한 방수복 원단 중에 인장시 고무부분이 파단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고무제품의 특성상 장기간 시일이 경과할 경우는 경화되거나 수축될 수 있으므로 매년 선박검사시 또는 승선검사시에 구명설비(방수복 등)도 확인하여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하고 있음을 밝혀왔습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지난 11월 22일자 인터넷 뉴스면에 실린 『해수부, 불량 방수복 문제 미봉책 그쳐』 제목의 보도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에서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해왔습니다.

(1) 우리부에서는 인장강도 문제와 관련 방수복 검증결과 및 외국의 관련기준, 시험기관, 검사단체 및

관련업계의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인장강도 기준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2) 방수복의 고무원단이 불량한 경우에는 인장시험시 당겼을 때 파단점에 도달하기 전에 원단고무가 먼저 파단되어 인장시험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보온력 시험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나 현재까지 인장시험에 합격한 방수복 원단 중에 인장시험시 고무부분이 파단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 “고무제품의 경우에는 장기간 보관할 경우 옷이 축소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불량품으로 확인됐다”는 것과 관련, 고무제품의 특성상 장기간 시일이 경과할 경우는 경화되고 수축될 수 있으므로 매년 선박검사시 또는 승선점검시에 구멍설비(방수복 등)도 확인하여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초기화면에 24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활자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이 연결되게 한다.
- 피신청인은 노컷뉴스에 보관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 『“해수부, 불량 방수복 문제 미봉책에 그쳐”』에 위 보도문을 링크시킨다.
- 피신청인은 2006년 12월 20일까지(토, 일요일 제외) 위 2·3항을 이행한다. 위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노컷뉴스 : 『〈반론보도문〉 ‘해수부 불량 방수복 문제’ 관련 해수부의 반론문』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15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미국 병원에 물리치료사로 취업시켜주겠다고 데려간 연수생들을 방치하여 국제미사신세로 만들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PR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1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김 용 달)

피신청인 : SBS-TV

종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15.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SBS-TV : 「SBS 8뉴스」 프로그램 (2006년 11월 18일 20:00)

내 용 : ▷앵커 : 2년 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미국 병원의 물리치료사로 취업시켜주겠다고 미국으로 데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교육은커녕 벌써 2년째 오도 가도 못 하는 떠돌이 신세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OO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미국 동부 뉴저지의 한 영어학원. 한국인 7명이 미국 물리치료사 면허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년 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을 받은 송출업체를 통해 미국에 온 사람들입니다.

물리치료사로 취업시켜주고 영주권 취득까지 도와주겠다는 약속에 일인당 1만 7천 달러, 2천여만 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황당한 말부터 들었습니다.

▷김모 씨(피해자) : 밤에 12시에 도착해서 가방을

내려놓으니까 먼저 와 계시던 분이 나오시더니 “어, 왜 오셨어요, 사기인데”. 미국에서 처음 들은 한국 사람 말이에요.

▷기자 : 방값도 제대로 지불되지 않았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김모 씨(피해자) : 방값이 나왔는데 보니까 8천 불이 밀려 있는 거예요. 안 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들 동시에 짐을 싸서 하루에 다 도망 나왔어요.

▷기자 : 계약했던 물리치료사 면허 강의는 금세 끝났고 6개월짜리 영어 강의는 넉 달 만에 중단됐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기 위해 영어학원에 등록해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일부는 1년에 2천 8백만 원에 달하는 학원비를 대기 위해 불법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이들을 미국에 보낸 송출업체는 올해 3월 파산했습니다.

공단 측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센터 직원 : 처음에 문제가 있을 때 거기서 포기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연수생들이) 한 번 더 해보겠다고 한 부분이 일단 있었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기회를 한 번 드린 거였어요.

▷기자 : 무책임한 해외 인력 송출업체와 산업인력 공단을 믿었던 피해자들만 국제미아 신세로 떠돌고 있습니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SBS-TV 지난 11월 18일 「SBS 8뉴스」 프로그램에서 “‘국제미아 2년’ 미국 간 물리치료사들”이라는 제목 및 “송출업체 사기에 공단 측도 나몰라

라”라는 부제 하에 2년 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미국 병원의 물리치료사로 취업시켜주겠다고 미국으로 데려간 사람들이 있으며 약속한 교육은커녕 2년째 오도 가도 못하는 떠돌이 신세가 되어있다는 내용으로 보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연수과정을 직접 운영한 것은 공단과 연수과정 운영계약을 체결한 연수업체이며, 공단의 중재 노력에도 연수생 본인의 선택에 의해 미국에 체류하기로 결정하였고 국제미아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공단의 사전 승낙없이 비밀누취하여 보도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해외취업알선, 연수, 해외인턴파견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현재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해외취업관련사업 내지 행사를 취재·보도하되, 공단 팀장급 이상 간부의 직접 인터뷰를 포함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사전협조 및 협의토록 한다.

- 피신청인은 2007년 1월 31일까지 SBS-TV 「8시뉴스」 중에 제1항의 내용을 방송하되, 분량은 진행자 멘트를 포함하여 최소 1분 30초 이상이 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이 제2항의 이행기일까지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본 방송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모두 포기하며, 신청인은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임직원, 소속 기자에 대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일체 묻지 아니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SBS-TV : 「SBS 8뉴스」 프로그램 (2007년 1월 20일 21:22)

내 용 : ▷앵커 :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해외 취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IT와 서비스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지원자들이 좋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국내 청년 실업자는 37만 명에 달합니다.

2년 전 대학을 졸업한 28살 김○○ 씨는 대기업 대신 일본 IT업체 취업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김○○(일본취업 연수생) : 갔다 와서 한국에서의 대우 조건도 더 좋을 것 같고, 저로서는 일본어도 배우고 경력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기자 : 일본 IT업체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산업인력공단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연수 업체는 서울에만 6곳입니다.

열 달 동안의 교육 과정을 마친 연수생들의 일본 취업률은 평균 82%.

연봉 수준도 국내 대기업 못지 않습니다.

IT분야에서만 올해 안에 1천여 명이 일본에 취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T인력이 크게 부족한 일본에서도 한국 인력에 대한 평가가 호의적입니다. (후략) □

## 신청인 재단이 토지처분과 관련해 비리가 있다고 보도됐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부산조정30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재단법인 ○○사 (이사장 이 ○ ○)

피신청인 : e조은뉴스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15.

처리결과 : 합의

### 보도내용

e조은뉴스 : 『철용성 ○○사, 30여 차례 무혐의 신기록 깨져』 제하의 기사 (2006년 11월 30일자 1~11면)

내 용 : 30여 차례에 걸친 고소고발사건에도 모두 검찰 선에서 무혐의 종결처분을 받았던 ○○사 이모 이사장에게 처음으로 납득할만한 검찰의 재기수사명령이 떨어졌다.

2004년 2월 서울고등검찰청의 한 검사는 동료검사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켰던 ○○사 이모 이사장의 세무비리의혹에 대해 “업무상횡령죄가 농후하다”며 재기수사를 지시했다. (중략)

이상과 같은 점을 더 조사하면 배임의 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미진으로 만연히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요구된다.

원처분 검사는 피항고인이 세무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수 금액을 횡령한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항고인이 박○○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다는 물증을 찾기 어렵고, 박○○이 제출한 보수 12억 7,000여만 원의 소비내역에 관하여 보더라도 그 중에는 동인이 피항고인 딸 이○○ 명의의 임야 매수대금으로 금 3억 3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장지급일 가능성이 농후하며 다른 부분에 대한 사용내역, 자금이동 경로 등도 애매하여 횡령가능성이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

첫째, 피항고인의 새마을금고 경리장부와 수표대장을 조사하여 피항고인이 박○○에게 교부하였다고 하

는데 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

피항고인은 새마을금고에서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현금을 인출하여 새마을금고에서 입금 처리한 다른 수표로 바꾸어서 항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수표를 밝힐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둘째, 피항고인은 자신의 딸 이○○ 명의의 땅 매도자금으로 위장하여 금 3억 3천만 원을 횡령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박○○이 제출한 보수금 사용내역서 중 기록제 1664-1675에 편철된 계약서, 영수증,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위장매매 의혹이 짙다.

박○○과 피항고인도 위 땅 명의자가 피항고인의 딸이라는 점을 일체 숨기고 있고 위 명의인인 이○○도 자신이 피항고인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의 전화문의에 대하여 피항고인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허위 진술하고 있다. (중략)

그리고 대금지급 방법도 2회에 걸쳐 1억 원, 2억 3천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어 극히 이례적이다. 그러므로 위 이○○의 위 땅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밝혀 위 땅이 실질상 피항고인 소유인지 여부를 밝히고 박○○이 대금을 지급한 수단, 경로 등을 밝혀 위장매매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박○○이 2002. 2. 20. 건물주 최○○에게 전세보증금 변환 명목으로 금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임대계약서와 영수증(1649, 1650)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 또한 위장거래임이 엇보인다. (중략)

넷째, 박○○은 2002. 12. 21. 금 2억 원, 5. 13. 금 9억 7,700만 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보관한 상태나 사용내역이 극히 애매하다. 이는 피항고인이 일부만 보수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횡령한 후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송금 처리 등을 한 의심이 든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제 목 : 재단법인 ○○사 관련 정정보도문

•내 용 : 본지는 지난 11월 30일자 1~11면 『철웅성 ○○사, 30여 차례 무혐의 신기록 깨져』 제하의 기사에서 “고검-‘업무상횡령죄 농후하다’ 재기수사명령”이라는 부제로 재단이사장의 비리 및 재단법인 ○○사의 토지 처분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본지에 게재된 재기 수사명령인 서울고등검찰청 2003불항4570호 사건에서의 재기수사 명령결과와 서울중앙지검에서 2004형제12578호로 재기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고, 이에 불복한 고소인들의 항고, 재항고 결과도 서울고등검찰청 2005불항243호 및 대검찰청 2005재항721호로 혐의없음 처분되어 종결되었음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 합의사항

•제 목 : 재단법인 ○○사 관련 정정보도문

•내 용 : 본사는 2006. 11. 30. 발행된 시사주간지 e조은뉴스 제273호 재단법인 ○○사와 관련하여 『철웅성 ○○사 30여 차례 무혐의 신기록 깨져』라는 제목 하에 ‘고검 업무상횡령죄 농후하다. 재기수사명령’이라는 부제목으로 재단이사장의 비리 의혹 및 재단법인 ○○사의 토지처분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① 2004. 2. 서울고등검찰청의 한 검사는 동료검사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켰던 ○○사 이모 이사장의 세무비리 의혹에 대해 업무상횡령죄가 농후하다며 재기수사를 지시했다고 마치 최근에 새로운 재기수사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하였으며, 서울중앙지검에서 2004형제12578호로 재기 수

사한 사건에서도 서울중앙지검, 고검, 대검의 수사결과 모두 무혐의 종결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② 세무사는 지급받은 수입료의 사용처에 대하여 일일이 조사할 것이 예상되자 수입료 금액을 모두 지급받은 것처럼 맞추기 위해 이사장 딸 명의의 부동산을 세무사가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수입료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고, 단말기를 조작해서 입·출금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보도하였으나, 지출, 송금 및 수년간의 수입, 지출 등이 적법, 투명하게 처리되었음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e조은뉴스 2007. 1. 17.자(제279호) 5면에 원색의 상자기사로 보도한다.
- 피신청인은 향후 재단법인 ○○사와 관련하여 더 이상 일체의 보도를 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소송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e조은뉴스 : 『재단법인 ○○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17일자 24면)

내 용 : 본사는 2006. 11. 30. 발행된 시사주간지 조은뉴스 제273호의 재단법인 ○○사와 관련하여 『철용성 ○○사 30여 차례 무혐의 신기록 깨져』라는 제목 하에 '고검 업무상황령죄 농후하다. 재기수사명령'이라는 부제목으로 재단이사장의 비리 의혹 및 재단법인 ○○사의 토지처분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① 2004. 2. 서울고등검찰청의 한 검사는 동료검사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켰던 ○○사 이모 이사장의 세무비리 의혹에 대해 업무상황령

죄가 농후하다며 재기수사를 지시했다고 마치 최근에 새로운 재기수사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하였으며, 서울중앙지검에서 2004형제12578호로 재기 수사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고, 이에 불복한 고소인들의 항고, 재항고 결과도 모두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세무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 고검, 대검의 수사결과 모두 무혐의 종결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② 세무사는 지급받은 수입료의 사용처에 대하여 일일이 조사할 것이 예상되자 수입료 금액을 모두 지급받은 것처럼 맞추기 위해 이사장 딸 명의의 부동산을 세무사가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수입료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고, 단말기를 조작해서 입·출금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보도하였으나, 지출, 송금 및 수년간의 수입, 지출 등이 적법, 투명하게 처리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③ 세무사 사건으로 이모 씨가 고소됐을 때 노량진경찰서 모 경찰이 조사를 했고, 기소취지로 검찰에 조사를 요구했지만 담당검사는 전화로 무혐의 처리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검찰의 압력에 의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확인 없는 보도였습니다. ④ 서울시 정관변경으로 수천억을 챙기라고 하여 재단법인 ○○사의 정관을 변경시켜주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수천억을 챙긴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신청인 재단법인 ○○사는 서울시의 적법한 절차로 정관변경 신청을 하여 이를 승인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본사는 위와 같은 사실확인 없이 2006. 11. 30. 발행된 시사주간지 조은뉴스 1면부터 11면 이슈면의 경찰청과 이명박 서울시장과의 재단법인 ○○사의 결탁 의혹을 제기하게 되었으나, 위와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으며, 아울러 관계자 여러분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

## 신청인이 이웃 상인의 생선을 훔쳤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여과 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15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백 ○ ○

피신청인 : KBS-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18.

처리결과 : 합의

### 보도내용

KBS-TV : (1) 「KBS 8뉴스타임」 프로그램 (2006년 10월 16일 20:00)

내 용 : ▷앵커 : 수산시장에서 활어 등을 상습적으로 훔쳐온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상인들이 참다 못해, 폐쇄회로 TV를 확대해 살펴봤는데, 알고보니 이웃 사촌이었습니다.

임○○ 기자입니다.

▷기자 : 이른 새벽,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30대 남자가 배달온 활어 다섯 상자를 인심 쓰듯 옆집 수족관에 부어주더니 한 상자는 슬그머니 자기 수족관에 쏟아 붓습니다.

이번에는 옆집 수족관에서 몰래 광어를 꺼내 팔려다 흥정이 깨지자 자기 수족관으로 생선을 밀어 넣습니다.

옆집 횡감을 팔아주고, 돈은 자기가 챙기기도 합니다.

이웃 상인들은 최근 번번이 수족관 속 활어들이 사라지자 폐쇄회로 카메라 위치를 바꾸고 화면을 확대해 봤습니다.

▷피해자 : 우리 광어가 저 집에 넘어가 있는거예요.

요. 아닌데... 이걸 아닌데... 한번 봐보자.

▷기자 : 화면에 잡힌 용의자는 다름 아닌 옆 가게 주인 김모 씨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천만 원 어치의 생선을 훔쳐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 : 비밀비재하게 시장에서는 고기들이 많이 없어져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주인 없는 기회가... 우발적으로.

▷기자 :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입니다.

(2) 「KBS 뉴스9」 프로그램 (2006년 10월 16일 21:00)

〈보도내용 (1) 참조〉

(3)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 (2006년 10월 17일 06:00)

〈보도내용 (1) 참조〉

###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KBS-TV는 지난 10월 16일 「KBS 8뉴스타임」, 「KBS 뉴스9」, 10월 17일 「KBS 뉴스광장」 프로그램에서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의 상인이 활어 등을 상습적으로 도난당하자 가게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폐쇄회로 화면에 찍힌 범인을 잡았는데 다름 아닌 옆집 가게 주인이었다고 보도하면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현재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그 내용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하여 초상권과 음성권을 침해하였으며, CCTV 자료화면 또한 원본 그대로 방영하여 주변인들에게 신분 노출되는 등 명예가 현저히 훼손되었으므로 5,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

구합니다.

###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2007. 1. 12까지 지급한다.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지급기한부터 실제 지급할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소속 기자 및 직원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

## 신청인이 운영하는 가야비파구룡요가 조선막사발 가마터가 아닌 송기가마터로 판명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6경남조정15  
 청구명 :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 김○○  
 피신청인 : 진주신문  
 중재부 : 경남중재부  
 접수일 : 2006. 12. 20.  
 처리결과 : 합의 (정정)  
 취하 (손배)

### 보도내용

진주신문 : 『조선막사발 터 논쟁 ‘중지부’』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12일자 1면)  
 내용 : 진주신문이 해외취재를 포함한 ‘기획취재’를 통해 알리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됐던 일본의 국

보 도자기 ‘조선막사발(진주막사발, 이도다완)’ 복원 사업이 사실상 좌초위기에 놓였다.

사천시가 88억 원을 들여 추진한 ‘사천시 조선막사발 도요지 복원사업’은 지금까지 사남면 가야비파구룡요(김○○ 씨 운영)에서 다수의 언론을 통해 ‘이도다완 가마터’라고 알려졌지만 도요지, 즉 가마터가 발굴되지 않아 사천시는 ‘사천시 조선막사발 도요지 복원사업’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

하지만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 조사 대상이었던 2군데 중 사천시 사남면 가마터만 조사되고, 곤명면 가마터는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곤명 가마터’가 ‘조선막사발 가마터’로 인정될 경우 조선막사발 복원 사업은 재추진 될 전망이다.

이런 결정은 사천시가 지난 3월 30일 ‘사천조선 막사발 도요지 복원사업 간담회’에서 결정한 내용으로 ▷복원사업 중단과 이 사업을 위해 확보키로 한 88억 원의 예산 도예센터 건립 ▷사업 추진 당시 조사예정지로 결정됐지만 조사가 없었던 사천시 곤명면 발굴 조사 예산 500만 원 확보 ▷‘이도다완 가마터 또는 아가노 도자기 고향 인정이란 공식용어 사용 금지’ 등이다. (중략)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사천 곤명요 김△△ 씨는 “김○○ 씨의 역사 왜곡”이라며 강력주장하면서 “김○○ 씨의 도요지는 도자기가 아닌 송기가마터로 판명됐다”고 지난 6일 본지에 기고문을 전해왔다.

이에 대해 사천시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김○○ 씨의 가야비파구룡요에서 도요지가 발견되지 않아 사천막사발 복원사업은 없는 것으로 됐다”고 잘라 말했다. “공식 결과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즉 김○○ 씨가 가마터라고 주장하는 곳에는 가마터가 발견되지 않고 도자기 파편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2002년께 사남면 가야비파구룡요를 시굴조사했지만 조선막사발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 자리에 조선막사발 가마터도 발견되지 않아 입증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2006년 12월 12일자 1면에 『조선막사발 터 논쟁 ‘종지부’』란 제목으로 사천시가 88억 원을 들여 추진한 조선막사발 도요지 복원사업이 김OO 씨가 운영하는 가야비과구룡요가 발굴조사에서 조선막사발이 나오지 않아 사천시에서는 공식 포기했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김OO가 경영하는 가야비과구룡요와는 무관한 것이며, 아울러 조선막사발 복원사업을 위한 간담회에서 결정했다고 했는데 2006년 3월 30일에 있었던 사천시 간담회는 그 참석자 또한 외부인 4명 뿐이었고 그 어떤 것을 결정할 사항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가야비과구룡요와 「조선막사발 복원사업」은 전혀 다른 것이며 ‘옹기 가마터가 아닌 고급 도기 가마터로 바로잡으며 김OO 씨가 경남매일에 게재하는 「고려다완 이야기」도 본지에서 잘못 다루어 명예를 훼손시킨 점 깊게 사과하며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400,000,000원

## 합의사항

- 제 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2006년 12월 12일자 1면 『조선막사발 터 논쟁 ‘종지부’』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정 및 ‘가야비과구룡요’를 운영하고 있는 김OO씨의 반론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따라 독자 여러분께 알려 드리며, 김OO 씨께 사과드립니다.

본지는 지난 2006년 12월 12일자 1면에 『조선막사

발 터 논쟁 ‘종지부’』 제하의 기사로 보도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 내용을 보도합니다.

첫째, 사천시가 88억 원을 들여 추진한 ‘사천시 조선막사발 도요지 복원사업’이 김OO 씨가 운영하는 가야비과구룡요에서 가마터가 발굴되지 않아 사천시가 사업을 공식적으로 포기했다고 보도했으나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천시의 자체 사업이 아니며 사업이 공식적으로 포기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사천시가 지난 3월 30일 ‘사천 조선막사발 도요지 복원사업 간담회’에서 복원사업을 공식적으로 포기한다는 등의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으나 그 간담회는 그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으며 실제로 어떠한 결정도 내려진 바 없었습니다.

셋째, 간담회 내용 중 ▷복원사업 중단과 이 사업을 위해 확보키로 한 88억 원의 예산 도예센터 건립 ▷사업추진 당시 조사예정지로 결정됐지만 조사가 없었던 사천시 곤명면 발굴조사 예산 500만 원 확보 ▷ ‘이도다완 가마터 또는 아가노 도자기 고향 인정이란 공식용어 사용금지’ 등은 실제 거론이 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간담회 참석자로 보도한 내용은 참석대상자와 참석자가 혼동되어 정확한 것이 아니었으며 참석자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9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섯째, 사천 곤명요 김△△ 씨의 기고문을 인용하여 김OO 씨의 도요지가 도자기가 아닌 옹기 가마터로 판명됐다고 보도했으나 이에 대해 김OO 씨는 옹기 가마터가 아닌 고급 도기 가마터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진주신문 2007년 1월 2일자 1면 좌측 상단에 2단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이진 조정 대상기사의 제목 중 ‘조선막사발 터 논쟁’과 같게 하고, 내용활자 크기는 동 기사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 이견 조정대상기사가 실린 2006년 12월 12일자 5면 김△△ 씨의 기고문과 같은 크기의 신청인 기고문을 2007년 1월 2일자 5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한다.
- 신청인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한 손해배상청구는 취하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은 제기하지 않는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진주신문 :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2일자 1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서해대교 참사를 다룬 프로그램에서 피해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있는 신청인들의 모습을 동의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518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1. 김 ○ ○  
2. 성 ○ ○

피신청인 : KBS-2TV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6. 12. 21.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KBS-2TV : 「VJ특공대」 프로그램 (2006년 10월 6일 21:55)

내 용 : ▷나레이터 : 하루종일 연락이 두절된 남

편의 생사 확인 아내와 아들도 절박한 마음에 한가닥 희망을 놓지는 않았다.

▷김○○ : 60정도 초록색 잠바. 아니 그린색 잠바

▷장례식장 관계자 : 여자예요?

▷김○○ : 아니요 우리 남편이에요.

▷장례식장 관계자 : 남편이세요?

▷김○○ : 네, 그린색 잠바 입었거든요.

▷장례식장 관계자 : 네 네, 그린색 잠바.

▷김○○ : 네, 목걸이 했어요.

▷장례식장 관계자 : 네, 목걸이 하신 분 계세요.

▷김○○ : 어~어떻게?

▷장례식장 관계자 : 그린색 잠바요?

▷나레이터 : 내 남편, 내 아버지가 그 끔찍한 현장에 있었을까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성○○ :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장례식장 관계자 : 예, 조금만 계세요.

▷장례식장 관계자 : 잠바 입으신 분이 없는데요. 여기는요

▷김○○ : 아니, 아저씨가 있다고 했잖아요.

▷성○○ : 목걸이, 목걸이, 목걸이...

▷김○○ : 목걸이, 있다고

▷장례식장 관계자 : 남자 목걸이 있어요. 그런데 옷을 안 입었어요.

▷장례식장 관계자 : 몰라요. 그건 다 타가지고... 머리가 좀 벗겨 지셨나요?

▷성○○ : 머리가 어느 정도요?

▷장례식장 관계자 : 벗어진것 같던데.

▷성○○ : 키가 좀 작고요.

▷장례식장 관계자 : 키는 좀 작은 편이에요.

▷김○○ : 아이~난 몰라 어떻게 하니 ○○아!

▷장례식장 관계자 :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어 보여요?

▷성○○ : 60이요.

▷장례식장 관계자 : 60은 안 돼 보이던데.  
 ▷김OO : 보여주세요. 우리.  
 ▷장례식장 관계자 : 보여드릴 테니까.  
 ▷김OO : 네. 보여주세요.  
 ▷성OO : 가만 있어. 내가 볼테니까.  
 ▷김OO : 아니야 내가 봐야, 내가 봐야 알아 어떻게 어떻게...  
 ▷나레이터 : 어쨌면 아침에 멀쩡이 배웅하던 남편을 낫선 곳에서 형체 없는 죽음으로 마주해야 할 상황.  
 ▷장례식장 관계자 : 아줌마랑 아들만 들어가세요.  
 ▷성OO : 고모랑 고모부세요.  
 ▷김OO : 네.  
 ▷나레이터 : 그래도 설마 설마 했건만...  
 ▷성OO : 머리가 많이 빠져 가지고..., 여기가 똑같다.  
 ▷나레이터 : 마지막까지 믿고 싶지 않았지만 가족은 오열했다.

###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KBS-2TV 지난 2006년 10월 6일 21시 55분에 「VJ 특공대」 '서해대교 참사기록' 방송에서 서해대교 참사의 사건개요 및 사건의 처리 과정에 대해 방송 중 유가족 실제 모습을 사전 동의 없이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방송에서는 여과없이 실제 상황을 보도하면서 유가족의 모습 중 음성이 그대로 나왔으며 신분 확인 과정에서 언급된 성명도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또한 사체를 확인하고 나왔을 때 명확히 인터뷰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밖에까지 나와 동의 없이 촬영을 실시해 방송하여 명예가 훼손된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어 15,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06년 12월 29일까지 금 1,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신청인이 동료교사를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경기조정70  
 청구명 :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 조OO  
 피신청인 : 우리일보  
 중재부 : 경기중재부  
 접수일 : 2006. 12. 26.  
 처리결과 : 합의 (반론)  
 취하 (손배)

### 보도내용

우리일보 : 『동료 교사 폭행 물의』 제하의 기사 (2006년 12월 18일자 23면)

내용 : 같은 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동갑내기 여교사와 남 교사의 사소한 시비가 맞고소 사태로 확대되면서 학부모 등 지역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강화군 화도면 S중학교에 재직 중인 조모(47, 여)씨는 지난 5일 16시 30분경 교내에서 자신을 이혼녀라고 소문을 내며 다닌다는 이유로 교내 복도에서 동료교사 구모(47, 남) 씨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했다는 것.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어이없는 폭행을 당한 구씨는 심한 모욕감으로 인해 정신분열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나 오히려 조 씨가 자신을 명예훼손

손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자 최근 구 씨가 진단서를 첨부해 폭행혐의로 맞고소를 한 상태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모든 행동과 언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들의 몰상식한 행동에서 학생들이 과연 무엇을 배울까 걱정된다”며 “관계당국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우리일보는 2006년 12월 18일자 23면 『동료 교사 폭행 물의』 제하의 기사에서 ‘같은 학교 재직 중인 현직 동갑내기 여 교사와 남 교사의 사소한 시비가 맞고소 사태로 확대되면서 학부모 등 지역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강화군 화도면 S중학교 재직 중인 교사 조모(47) 씨는 지난 5일 16시 30분경 교내에서 자신이 이혼녀라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교내 복도에서 동료교사 구모 씨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했다는 것.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어이없는 폭행을 당한 구모(47) 씨는 심한 모욕감으로 인해 정신분열 증세로 병원치료를 받아왔으나 오히려 조 씨가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에 이르자 최근 구 씨가 진단서를 첨부해 맞고소를 한 상태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모든 행동과 언행에 모범을 보여야할 교사들이 몰상식한 행동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까 걱정된다’며 ‘관계당국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조모 씨는 동료교사 구모 씨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하지 않았으며, 구모 씨가 정신분열 증세로 병원치료

를 받던 중 맞고소를 했다고 하였으나 정신분열의 원인이 조모 씨의 폭행때문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구모 씨의 맞고소 시점도 보도내용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2006년 12월 18일자 23면 『동료 교사 폭행 물의』 제하의 기사와 관련, 조모 씨의 반론을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조모 씨의 주장에 의하면 위 기사 관련 구모 씨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그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구모 씨가 정신분열증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본지의 위 보도는 구모 씨의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기사화한 것으로 폭행 및 그에 따른 정신분열 초래 등 사실 여부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사실 확정 이전에 상대방 구모 씨의 일방적 주장을 기정 사실화하여 보도한 점에 대해 피해자 조모 씨에게 사과드립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우리일보 2007년 1월 8일 23면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 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제목(동료 교사 폭행 물의)과 같게 하고, 내용은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 신청인은 손해배상요구 부분은 취하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우리일보 :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07년 1월 8일자 23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최근의 국내언론관계 판결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소속회사,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익명처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판결원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판결 1

청구한 반론보도문이 단지 원보도를 재구성하는 것이거나 원보도가 인용한 제3자 의견이 실제로 표명됐는지 여부를 문제 삼는 취지가 아니라면 그 원보도는 의견표현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언론사에 반론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7. 1. 24.자 판결(2006나28135)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 2006년 2월 10일 파기 환송한 반론보도심판청구소송 재판에서 제1심 판결 중 동아일보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아일보의 취소재판 보도를 허용하며 국정홍보처는 동아일보에 18,896,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정홍보처(이하 신청인)는 동아일보(이하 피신청인)가 지난 2001년 7월 4일과 5일 『국정홍보처장 ‘특하면 성명’』 제하의 보도 등 3차례에 걸쳐 국정홍보처장이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정부성명 발표를 비정상적으로 남발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자 피해를 입었다며 반론보도심판청구를 제기, 1, 2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피신청인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은 “이 사건 각 보도에 진위의 입증이 가능한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

어 있음을 전제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명한 원심판결에는 반론보도청구권 인정의 요건으로서 ‘사실적 주장’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고 원심파기 후 2심 법원으로 환송 판결을 내린 바 있다(국내언론관계 판결집 제13집 pp. 27 ~ 43 참조).

파기 환송된 이번 사건을 담당한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표명인지는 원보도와 이에 대하여 게재를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며, 원보도와 반론보도문이 서로 다른 구체적인 경과를 알리거나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의 것이라면 원보도도 일응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새로운 사정을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원보도를 재구성하는 것이라면 그 원보도는 의견의 표명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 백

담당변호사 전 태 구

피신청인, 피항소의인 겸 항소의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학 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 용 현

제1심 판결 : 서울지방법원 2001. 10. 19. 선고

2001카기11669 판결

환송전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2. 7. 25. 선고

2001나67203 판결

환 송 판 결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변 론 종 결 : 2006. 11. 8.

판 결 선 고 : 2007. 1. 24.

주 문 : 1. 제1심 판결 중 피신청인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피신청인은 이 판결 선고 후 별지 8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할 수 있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18,896,000원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항소취지 및 취소재판보도 등 신청취지 :

####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하는 동아일보의 제4면에 상자기사로, 별지 5 기재 반론보도문을 별지 2 기사의 제목·본문과 같은 서체 및 활자크기로, 별지 6 기재 반론보도문을 별지 3 기사의 제목·본문과 같은 서체 및 활자크기로, 제5면에 상자기사로 별지 7 기재 반론보도문을 별지 4 사설의 제목·본문과 같은 서체 및 활자크기로 각 1회 게재하고,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반론보도를 명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

시까지 1일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신청인 :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은 당심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하는 동아일보의 제4면에 상자기사로, 별지 6 기재 반론 보도문을 별지 3 기사의 제목·본문과 같은 서체 및 활자크기로 1회 게재하고,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위 반론보도를 명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1일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신청인 : 주문 제1항과 같다.

#### 3. 취소재판보도 등 신청취지

주문 제2, 3항과 같다.

이 유 :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신청인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국정에 대한 국내의 홍보 및 정부 내 홍보업무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관이고, 신청인의 대표자인 국정홍보처장은 정부대변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동아일보'라는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언론사이다.

나. 피신청인의 이 사건 보도

피신청인은 동아일보 2001. 7. 4.자 A4면에 별지 2 기사(이하 '이 사건 1보도'라 한다)를, 같은 날짜 A5면에 별지 4 사설(이하 '이 사건 2보도'라 한다)를, 2001. 7. 5.자 4면에 별지 3 기사(이하 '이 사건 3보도'라 한다)를 각 게재하였다.

다. 반론보도청구의 경과

1) 신청인은 이 사건 각 보도에 대하여 별지 5 내지 7 기재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구하는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은 2001. 10. 19. 이 사건 1, 2보도에 관하여는 신청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통합된 하나의 반론보도문 게재 및 1일 500만 원의 간접강제를 명하고, 이 사건 3보도에 관하여는 신청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제1심 판결에 따라 2001. 10. 25.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였다.

2) 환송 전 당심은 2002. 7. 25.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신청인만이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이 사건 1, 2보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며, 상고심인 대법원은 2006. 2. 10. 상고가 제기된 이 사건 1, 2보도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따라서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한 이 사건 3보도에 관한 청구는 독립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1, 2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 및 피신청인이 환송 후 당심에서 제기한 취소재판보도 등 신청에 한정된다).

##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신청인은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있는 정부조직에 불과하여 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69호)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70호)이 시행되기 전인 2005. 7. 27.까지 유효하나, 언

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조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된다. 이하 '정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7항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민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기관이나 단체도 사회생활에서 하나의 활동 단위로 특정될 수 있고, 공·사법상의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언론보도의 면에 있어서는 공·사법상의 권리·의무 귀속주체와 별개로 그 기관·단체가 언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인 점, 그리고 이들 기관이나 단체 등이 언론기관의 사실적 주장에 개별적 관련성을 가질 경우 그 기관이나 단체도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얻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직접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공익과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점, 이들 기관이나 단체의 배후에 있는 권리 주체로 하여금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게 하기보다는 그 기관이나 단체에 당사자능력을 부여하여 직접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게 하는 편이 더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점 등을 감안하여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도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한편, 정부조직법 제24조의 2 제1항은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국정홍보처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국가행정기관으로서 위와 같은 사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정간법의 규정에 따른 '기관'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반론보도청구사건에서의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반론보도청구도 그 성질상 이행의 소에 속하는 이상 신청인의 청구 자체로써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신청인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 3. 본안에 대한 판단

#### 가.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반론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만 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1, 2보도는 국정홍보처장의 국정수행을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사의 의견 표명 내지 비평이어서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반론의 대상이 사실적인 주장에 국한됨으로써 반론보도청구권이 합헌적인 제도로 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1991. 9. 16. 89헌마165 결정 참조), 반론보도청구사건에 있어서는 반론의 대상으로 삼는 원보도(原報道, 이하에서는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 보도를 '원보도'라 한다)가 사실적 주장인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적 주장과 의견의 표명을 구별하는 척도로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원보도의 보도 대상이 된 행위자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면 이를 사실적 주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판단기준 자체도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며, 사실적 주장과 논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판단기준 자체도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표명인지는 원보도와 이에 대하여 게재를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며, 원보도와 반론보도문이 서로 다른 구체적인 경과를 알리거나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의 것이라면 원보도도 일응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새로운 사정을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원보도를 재구성하는 것이라면 그 원보도는 의견의 표명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원보도에서 제3자의 의견을 인용하여 보도한 경우 반론보도청구를 하면서 문제 삼는 대상이 그 제3자가 실제 그러한 의견을 표명하였는지의 여부라면 이는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것이나, 원보도가 제3자의 의견을 자기의 의견으로 보도하였고, 반론보도문에서도 제3자가 실제 그러한 의견을 표명한 것인지의 여부를 문제 삼는 취지가 아니라면 그 원보도는 의견 표명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1. 6. 23.부터 같은 해 7. 2.까지 10일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한 일부 언론보도가 자신들의 세무비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편향, 왜곡 보도이고, 정부를 음해하고 비난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그 중 2001. 6. 28.자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성명들과 관련된 기사를 동아일보에 게재한 다음 2001. 7. 4.자로 이 사건 1보도를 게재하고, 같은 날짜에 사설로서 이 사건 2보도를 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1보도의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동일한 취지의 성명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발표한 점에 주목하여 그러한 사실 및 성명 내용의 요지를 보도한 다음, 이러한 성명들이 정부 차원의 정당한 반론권 행사라는 신청인 측의 주장을 게재한 데 이어서, '사흘에 한 번 꼴로 언론보도 공격', '정부 일각서도 문제점 지적'이라는 소재명과 함께 본문기사 내용으로 '정부 일각' 및 '한 관계자'의 반응 내지 지적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6월 28일자 성명에서 해명한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 '정부성명이 이처럼 남발되는 것 자체가 정부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라는 보도를 한 것이고, 이 사건 2보도는 '사실'을 게재하면서 그 내용의 일부로서 '이 같은 언론 본연의 보도 및 비판행위를 놓고 왜곡, 편향이라고 비난하고, 국정수행 방해나 국론분열 조장이라고 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다.

그런데 원보도의 전체적인 인상 및 맥락으로 보면, 이 사건 1보도는 정부 일각 등에서 위와 같은 반응 내지 지적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 또는 신청인의 거듭된 성명 발표가 그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점을 드러내고자 하는 점에 보도의 본질적 핵심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을 빌려 신청인의 일련의 성명 발표가 그 내용상 부적절하다거나 정부의 권위에 비추어 남발된 것이 아닌가라는 언론사의 의견 표명 내지 비평 또는 "정부의 공식성명 만큼이라도 좀 더 차분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 내지 요청을 개진한 것이라고 보이고, 이 사건 2보도는 그 자체로 보아 의견 표명 내지 논평에 해당하는 기사임을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보도내용도 당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 피신청인이 자신의 입장과 이에 따른 보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립된 정부 성명의 내용

을 평가하고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언론사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은, 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반론보도에 의하더라도, 2001. 6. 23.부터 7. 2.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성명을 발표한 사실과 그 성명 내용에 대한 보도는 객관적인 사실로 전제하고, 그 성명 내용이 공정보도를 추구하였을 뿐, 언론보도를 비난하거나 공격한 것이 아니며, 정당한 직무수행으로서 언론 탄압이 아니라는 평가적 내용의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고, 제3자의 논평을 인용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그 제3자가 그러한 의견을 진술한 적이 있느냐의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가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론보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1, 2보도는 반론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인 주장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취소재판보도 등 신청에 관한 판단

정간법 제19조의 2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의 항소심에서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여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는 경우 언론사가 이미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게재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환송 후 당심이 이 사건 1, 2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하고, 피신청

인이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따라 이미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피신청인이 환송 후 당심에서 취소재판의 보도 및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당심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취소재판의 보도 및 손해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먼저, 취소재판의 보도 내용은 별지 8 기재와 같이 함이 상당하고, 다음으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보면,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한 손해배상액은 위 각 보도를 하기 위해 필요한 형식과 크기의 지면에 광고를 하는 데 필요한 광고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소을 제11호증, 소을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2001. 11. 10.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 형식은 '기사 중 돌출 광고'에 해당하고 그 크기는 23,62단이며 1단당 광고단가는 4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9,448,000원(40만 원 × 23,62단)이고, 한편 취소재판의 보도는 반론보도와 동일한 형식과 크기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재판의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액 역시 9,448,000원(소을 제1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광고단가는 변함이 없다)이라고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의 합계는 18,896,000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미 상고심 판결 내용을 기사화 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소재판 보도 등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청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항소심에서 제1심의 반론보도청구 인용판결을 취소하였다는 내용의 취소재판보도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5.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1, 2보도에 관한 반론

보도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위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신청인의 이 사건 취소재판보도 등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 용 구  
판사 이 승 한  
판사 장 일 혁

〈별지 8〉

## 국정홍보처 당사 상대 반론보도청구 패소

국정홍보처는 동아일보 2001. 7. 4. 자 제4면에 게재된 「국정홍보처장 '특하면 성명」 제하의 기사와 같은 날짜 제5면에 게재된 「오 국정홍보처장의 '깨번」 제하의 사실에 관하여 당사를 상대로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인 서울지방법원은 2001. 10. 19. 이를 일부 인용하였고, 당사는 2001. 11. 20. 판결대로 국정홍보처의 반론을 게재한 바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사건에서 위 기사들은 언론사로서 국정홍보처의 일련의 성명 발표가 그 내용상 부적절하다거나 정부의 권위에 비추어 남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표명하거나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 당사의 입장과 이에 따른 보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립된 정부 성명의 내용을 평가·비판하는 것으로서 반론보도의 대상인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2007. 1. 24. 같은 이유로 반론보도를 명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 판결 2

사생활의 자유 내지는 통신비밀의 보호가, 이를 엿듣고 싶고 알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관심 내지 언론 보도의 자유보다 무게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06. 11. 23. 자 판결(2006노1725)

## 사실개요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문화방송 기자(이하 피고 이상호)와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이하 피고 김연광)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 이상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이상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피고 김연광에 대한 항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특별형법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안에 관해서 민사적인 언론중재법률상의 위법성조각 조항이 ‘적용’ 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며 나아가 이 사건은 인격권 침해에 따른 개인의 명예훼손 등에 관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관한 특별위법성조각 조항을 적용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언론 보도가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특별한 위법성조각 조항을 두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며,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할 재판절차에서 마저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어 지득 또는 채록된 자료의 내용을 그 증거가치를 불문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그 법

률의 입법 취지와 규정 전반을 검토해 보았을 때 도청 내용 공개가 언론의 공적 사명에 기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정보원에 따른 언론 보도의 경우와는 달리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한 원칙에 기한 평가를 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별법인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그 양심을 독백하거나 서로 간에 공개의 공포 없이 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생활의 자유 내지는 통신비밀의 보호가, 이를 엿듣고 싶고 알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관심 내지는 언론 보도의 자유보다 무게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거나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국민의 생명, 신체 등에 심각한 위협이 야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통신비밀의 공개 누설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을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안기부 X파일이 국가기관에 의해 전문 인력과 고도의 장비를 동원하여 저질러진 불법의 산물이며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불법 도청을 응징하고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그 공개를 처벌하기로 한 특별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화의

내용이 국가의 안전 보장, 사회질서의 수호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보도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다고 평가하기엔 부족하다”고 말하고 “언론 보도는 단순한 개인적 공개, 누설행위와는 전혀 달리 전국적이고 광범위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예상되는 점,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보도한 점 등에 비추어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있었다고 평가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그 보도가 시급히 이루어질 이유도 그다지 있어 보이지 않고 문화방송이나 피고 이상호를 비롯한 소속 기자들로서는 불법 도청된 대화 내용의 공개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공개가 시급히 요청되지 않았는데도, 입수한 자료를 단서로 사실관계를 추적하여 불법에 오염되지 않은 자료를 발굴, 보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제시한 요건을 따라 판단한다 하더라도 기본권 상충의 영역 중 일반적 정보원에 의한 보도가 아닌 불법 도청에 의한 자료를 공개하는 보도 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은 더욱 엄격한 평가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르지 않은 불법 도청의 내용을 열어 보니 결과적으로 꼭 국민이 알아야만 하는 것이었다고 해서 공개의 위법성을 쉽게 조각한다면 어느 순간 어느 권력이나 재력 있는 세력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독과실을 얻고자 타인의 밀실을 엿듣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피고 이상호의 행위 나아가 당시 보도에 참여한 대한민국 모든 언론매체의 보도·출판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유죄”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보도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에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문화방송의 보도 여부나 보도 내용에 관한 결정이

종국적으로는 피고 이상호 개인이 아닌 방송국 내 지 보도국의 의사결정체계를 통해 이루어진 점, 다른 언론매체의 선제 보도가 보도 결정을 직접 촉발하였으며, 당사자들의 실명을 거론한 보도 역시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 이후 이루어진 점, 다른 언론매체도 유사한 보도를 하였으나 유독 피고 이상호와 피고 김연광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기소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피고 이상호는 전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를 도청해 작성한 녹취보고서 3건 및 녹음테이프 등을 지난 2004. 12. 5. 재미교포 박OO로부터 전달받아 그 내용을 보도하였으며 피고 김연광은 2005년 9월호 월간조선 94쪽부터 125쪽에 『유령처럼 떠돈 안기부 X파일 전문 공개』 제하의 기사를 통해 위 녹취록과 녹취보고서의 내용 전문을 게재하도록 하는 등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 이상호에게는 무죄를, 피고 김연광에게는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한 바 있다(『언론중재』 2006년 가을호 pp. 168 ~ 181 참조).

## 판 결 문

사 건 : 2006노1725 통신비밀보호법위반

Ⅲ 고 인 : 1. 이상호, 기자

2. 김연광, 기자(월간지 편집장)

항 소 인 : 피고인 김연광 및 검사

변 호 인 : 법무법인 정 세

(피고인 이 상 호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한 상 혁

변호사 김 태 수

(피고인 김 연 광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1. 선고  
2006고합177 판결

판 결 선 고 : 2006. 11. 23.

주 문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상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상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김연광의 항소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검  
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1. 원심판결과 항소이유의 개요

이 사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보도 또는 출판 행위  
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이상호에 대하여는 그  
보도 목적의 정당성, 법익의 균형성, 수단의 상당  
성 및 비례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그 위법성  
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피고인 김연광에 대하여는 그 편집 목적의 정당성  
은 인정될지라도 수단·방법에 있어서 상당성 내  
지 비례성을 갖지 못하여 위법성 조각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정상  
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  
하였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 이상호의 보도행위에 위법  
성의 조각이 인정될 여지가 없고, 피고인 김연광에  
대한 선고유예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한 양형  
이라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반면 피고인 김연광은  
자신의 편집행위 역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  
로 항소하였다.

2. 피고인 이상호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  
한 판단

가.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사생활 자유를 위한 통신의 비밀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언론의 자유가 상충  
되는 경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조항과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  
법률이라고 한다.)’ 제5조 제2항의 위법성조각 조  
항을 적용함이 상당하다는 전제 아래,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으로 도청된 이른바 안기부 X 파일을  
취득하여 그 대화 내용을 보도한 행위가 통신비밀  
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만, 위와 같  
은 조항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이상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즉, 원심은 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가 형법  
상 ‘업무로 인한 행위 등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  
니하는 정당행위’ 인지 여부 또는 위 언론중재법률  
에 규정된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  
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경우’ 인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통신의 내용에 관한 문제, 취  
득과정의 불법과의 관련성 문제, 편집·보도에서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문제, 기타 사항 등’의 원칙  
을 제시하였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관계를 확정된 다음, 그 내용이  
‘대통령 선거정국 기류 변화에 따른 여야 후보 진  
영에 대한 삼성 측의 정치자금 지원 문제, 정치인  
및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한 추석 떡값  
지원 문제’로서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공익적 사항에 관한 것이고, 녹음테이프 등  
을 제공한 자에게 100만 원을 건네준 것은 취재  
관행을 넘지 않는 수준이며, 성문분석, 보강취재  
등으로 진정성을 확인하고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보도에 신중을 기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언론기관  
에 이를 고의로 유출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실명공개로 인한 개인 인격권 침해 요소가 있었지  
만 이는 타 언론에서 실명이 공개되는 바람에 수

동적으로 그 보도행태를 좇은 것뿐이고 보도 내용 중 일부 오류는 단순한 실수로 보일 뿐이라서, 전체적으로 문화방송의 보도가 수단·방법에서 상당성을 결여하지 않았고, 그 보도에 이르는 과정에서 도청의 불법성에 깊이 오염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지급 나아가 1,000만 원 정도 추가 지급 제의가 불법 대가성이 있는 것인지, 타 언론기관에 유출되지 않도록 과연 보안에 신중을 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의 몇 가지 사실 '평가'에 관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쌍방에 이의가 없을 뿐더러,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 보아도 이 사건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관계 인정은 수긍할 수 있다.

진실을 캐어 이를 적시하고 널리 알려 건전한 여론을 형성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언론·출판의 속성은, 경우에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하는 개인의 사생활 자유나 명예, 초상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게 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사이에 상충하는 영역이 있게 된다. 형사상으로는 주로 명예훼손 등이 문제가 되고, 나아가 민사상으로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 책임 여부가 등장하기 마련이다.

원래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에서 출발하였는데, "그 기본권의 제한은 오직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으로써만 할 수 있고, 그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 국민과 국민 사이에 기본권이 상충하는 영역에서도 '법률'이 정하는 바가 있다면(그것이 위헌이라고 선

언되지 않는 한) 기본권 제한 여부를 그 법률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언론 보도를 둘러싼 기본권 상충 영역에서, 형사적 문제에 관하여는 형법에 명예훼손에 대한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를 두어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나아가 민사적 문제에 관하여는 언론중재법률에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 그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규정은, 적어도 공적 관심사가 되는 공적인 인물의 경우 사생활의 자유 등 그 인격적 권리가 언론 보도에 의해 침해되더라도 그 개인의 기본권 보호보다는 언론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특별형법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사안에 관해서 민사적인 언론중재법률상의 위법성 조각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나아가 이 사건은 인격권 침해에 따른 개인의 명예훼손 등에 관한 형사책임은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관한 특별위법성조각 조항을 적용할 수도 없다.

언론은 모든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제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그럼에도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 청취 등 통신의 비밀에 속하는 내용을 수집하는 행위와 별도로, 불법적으로 수집된 내용인 줄 알면서 공개 누설하는 행위를 동일한 범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제한이 가능한 대상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면서, 공개 누설행위를 불법 수집행위와 동일한 것이라는 전제 아래 그 행위자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어떤 방

법으로 이를 지득하였는지, 또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예외 없이 처벌함으로써 도청의 폐해를 원천 봉쇄하고 통신의 비밀을 강하게 보호하고자 한다. 나아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할 재판 절차에서마저도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어 지득 또는 채록된 자료의 내용을 그 증거가치를 불문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위와 같은 불법 도청의 산물은 당초부터 존재해서는 아니 되는 것인 만큼 그것이 현재 없는 것과 똑같이 만들겠다는 입법자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독과수에 열린 과실에 언론이 접근하여 그 과실을 취제한 결과 국민에게 이를 알려야만 한다는 언론 본연의 사명에 부닥치게 될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이는 어찌할 것인가. 언론 자유라는 기본권의 제한도 법률로써는 가능한 것이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 채취된 자료의 내용을 보도할 수 없는 것인가.

이 점에 관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형벌로 처벌되는 형사범인 이상 형법 총칙의 규정을 배제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한 형법 총칙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이 법원도 통신비밀보호법의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과 같다.

그런데 형법상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해서 허용되거나, 업무로 인한 행위 등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결국 위와 같은 불법 도청된 자료 내용의 보도가 원심에서 인정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됨에도 사회상규에는 위배되지 않은 것인지의 평

가 문제가 남게 된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정당행위가 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단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요건 해당성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물론 명예훼손에 대한 특별위법성 조각사유나 언론중재법률이 정한 위법성 조각사유도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는 영역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언론 자유의 신장에 무게를 둔 영역과 다른 무엇이 있다. 그것은 그 언론 보도의 정보원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존재 자체를 없이 하겠다고 한 독과실이라는 점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언론 보도가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특별한 위법성 조각 조항을 두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며, 사생활과 통신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통신 제한행위의 허용은 구체적 예외적으로 매우 엄격한 대상과 절차를 열거하며 사후적으로 국회에 의한 통제까지도 명시하고 있는 등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규정 전반을 검토하여 보면, 도청 내용 공개가 언론의 공적 사명에 기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려면, 앞서 본 일반적 정보원에 따른 언론 보도의 경우와는 달리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한 원칙에 기한 평가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보호 법익과 침해 법익 사이의 법익 균형성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특별법인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개인을 발가벗겨 수치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자는 인간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 부분, 양심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그 양심을 독백하거나 서로 간에 공개의 공포 없이 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생활의 자유 내

지는 통신비밀의 보호가, 이를 엿듣고 싶고 알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관심 내지는 언론 보도의 자유보다 무게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거나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국민의 생명, 신체 등에 심각한 위협이 야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통신비밀의 공개 누설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을 쉽사리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법원은 먼저 안기부 X파일이 국가기관에 의해 전문 인력과 고도의 장비를 동원하여 저질러진 불법의 산물임에 주목한다. 재벌과 언론 사주가 8년 전 대선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고, 정치인이나 검찰 고위직에 떡값을 주는 문제를 상의하였으며 또 이를 일부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는 물론 공격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불법 도청을 응징하고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그 공개를 처벌하기로 한 특별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화의 내용이 국가의 안전 보장, 사회질서의 수호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보도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다.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에 관하여는, 검찰은 피고인 이상호가 이 사건 테이프가 안기부에 의해 자행된 도청의 산물이고 이를 가지고 갈취 범행에까지 이르렀던 도구였음을 알고도 우연한 제보의 수용을 넘어서 공개 누설 행위를 교사하는 수준에 이르러 그 취득 과정이 불법에 오염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 판시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인 이상호가 투철한 기자 정신으로 적극적이고 용감하게 정보원을 추적, 취재한 활동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고 본다. 또 언론 보도는 단순한 개인적 공개, 누설행위와는 전혀 달리 전국적이고 광범위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예상되므로 애당초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보도 행위가 단순히 추상적인 내용으로 안기부에 의해 대선기간 중 재벌 실세와 언론 사주 사이의 사적인 대화까지 불법 도청한 사실이 있었고 그 주요 내용이 무엇이며 이에 따른 증거로 녹음테이프까지 확보되었음을 보도하는 정도를 넘어서, 주고받았다는 돈의 액수까지 밝히는 등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보도한 점 등에 비추어 더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있었다고 평가하기에도 부족하다. 더구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당사자의 인격권을 더욱 크게 침해하였으며, 이것이 비록 타 언론의 보도행태를 좇은 것이라는 측면이 있고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직접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언론기관의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실명보도가 수단의 상당성이라는 척도에서 크게 일탈한 것이라는 점은 보도 관련자 누구에게나 분명하였을 것이다.

긴급성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보도 당시는 그 내용의 배경이 된 대선이 끝난 지 이미 8년이 지났을 때였고, 그 사이 대선이 한 번 더 치러져 보도에 등장했던 대선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가 퇴임하고, 다른 후보는 연거푸 낙선하여 정계에서 물러난 이후였다. 그러므로 보도된 대화의 내용을 보도 당시의 국정 운영이나 국가 정치질서의 전개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만한 것이라 함은 지나친 것이고, 그 보도가 시급히 이루어질 이유도 그다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또한 문화방송이나 피고인 이상호를 비롯한 소속 기자들로서는 불법 도청된 대화 내용의 공개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공개가 시급히 요청되지 않았는데도, 입수한 자료를 단서로 사실관계를 추적하여 불법에 오염되지 않은 자료를 발굴, 보도하지 않았다. 과연 공공의 관심이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청자

료를 공개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그리하여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피고인 이상호는 국가기관의 불법도청 실태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언론사주와 재벌이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실상을 공개하였고, 그 동기나 목적에 있어, 실정법을 위반하더라도 특종을 하겠다는功名심이 아닌, 꼭 국민에게 알려야 하겠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다면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여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양형에서 참작할 사유에 불과할 뿐이다.

업무행위 등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인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반드시 대법원 판례에 적시된 요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원심이 새롭게 제시한 평가 원칙도 경청할 만하다. 그러나 원심이 제시한 요건을 따라 판단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기본권 상충의 영역 중 일반적 정보원에 의한 보도가 아닌 불법도청에 의한 자료를 공개하는 보도 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은 더욱 엄격한 평가를 거쳐야 할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적어도 도청에 의해서는 개인 간 대화 내용이 별거벗겨지지 않는다는 법의 울타리를 치고 있다. 그 울타리 안에서 때로는 추잡하고 부끄러운 대화들이 오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작 국민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과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이를 알려야만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도 하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르지 않은 불법도청의 내용을 열어 보니 결과적으로 꼭 국민이 알아야만 하는 것이었다고 하여 공개의 위법성을 쉽게 조각하여 이 울타리를 열어둔다면, 어느 순간 어느 권

력이나 재력 있는 세력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독과실을 얻고자 타인의 밀실을 엿듣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울타리를 엄하게 지키고자 하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이 법원은 피고인 이상호의 행위 나아가 당시 보도에 참여한 대한민국 모든 언론매체의 보도·출판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유죄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이상호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 이상호는 문화방송 주식회사의 보도국 기자로서,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득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방송 보도국장인 신○○ 및 소위 ‘안기부 X파일’ 관련 특별취재팀 기자들과 공모하여,

2004. 12. 5.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불교방송 부근 상호불상 커피판매점에서 재미교포인 박○○(□□□ 박)로부터 전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1997. 4. 9.경, 같은 해 9. 9.경, 같은 해 10. 7.경 등 3회에 걸쳐 서울의 호텔 일식집 등지에서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정치권 동향 및 대권후보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등에 대하여 논의한 대화를 도청하여 작성한 녹취보고서 3건을 전달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고, 같은 달 30.경 서울 동작구 ○○동 소재 박○○의 부친 집 앞 도로에서 위 녹취보고서

중 1997. 9. 9.자 대화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복사본을 전달받아 독자적으로 그 녹취록을 작성하고 보도국장 신○○ 등에게 보고하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위 녹음테이프에 대한 성문분석을 마침과 동시에 잡음이 제거된 마스터 CD를 제공받는 등 사전준비를 하다가, 위 도청자료의 보도를 위한 소위 '안기부 X파일' 관련 특별취재팀이 발족되자 위 마스터 CD와 녹취록을 위 특별취재팀에 제공한 다음, 2005. 7. 2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문화방송 사옥에서 방송된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 취재기자로 출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위 도청자료의 입수경위와 내용을 설명하는 등,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7. 21.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17회에 걸쳐 위 녹취보고서와 녹음테이프의 내용을 보도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극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이상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이상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이상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본의 진술기재
      1. 박○○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진술기재
        1. 김○○, 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MBC 9시 뉴스, "이상호 X-파일 사건" 보도 자료)의 기재
            1. 압수조서 등본의 기재

## 1. 감정서의 기재

###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에 따라 피고인 이상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으로 정한다.

#### 1. 선고유예

보도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에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문화방송의 보도 여부나 보도 내용에 관한 결정이 종국적으로는 피고인 이상호 개인이 아닌 방송국 내지 보도국의 의사결정체계를 통해 이루어진 점, 다른 언론매체의 선제 보도가 보도 결정을 직접 촉발하였으며, 당사자들의 실명을 거론한 보도 역시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 이후 이루어진 점, 다른 언론매체도 유사한 보도를 하였으나 유독 위 피고인과 피고인 김연광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기소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3. 피고인 김연광의 항소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이상호의 보도행위에 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김연광의 출판행위 역시 유죄로 인정되고, 또한 편집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에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이미 녹취록 및 녹취보고서의 주요한 내용을 다른 언론매체에서 모두 공개한 이후에 월간조선의 보도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혹과 불신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게재가 필요했으며 보도원칙을 준수하였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

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다른 언론매체도 유사한 보도를 하였으나 유독 위 피고인과 피고인 이 상호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기소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 김연광에 대한 선고유예는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김연광의 항소와 위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

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 용 호  
판사 박 우 중  
판사 김 상 채

□

독일 판결

의사표현으로 인한 중대한 침해와 표현의 금지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가 희생되는 것 사이의 비교형량 문제

해당조문 : 기본법 제5조; 독일민법전 제823조, 제1004조.

쾰른 고등법원 2006년 7월 11일자 판결 - 15 U 30/06

판결요지

1.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하 원고)이 비난을 받게 되는 원인인 언론인으로서의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지적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가치판단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는 출판규범을 위반했다는 독일출판위원회(이하 피고)의 견해에도 적용된다.

2. 그러한 점에서 피고가 표명한 비난은 비난과 연관되어 있는 출판물을 발행한 자가 침해받은 권리를 고려해 볼 경우 기본법 제5조 제1항의 보호범위에 해당하는 가치평가를 나타내고 있다.

3. 보도기사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피고는 출판규범(Pressekodex)을 근거로 하여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출판윤리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4. 협회 내부의 중요한 규칙총서(Regelwerk)에 대한 내용통제의 요구와 함께 신의와 믿음이라는 관점 하에서 협회의 징계규정에 따라 형성된 판결은 출판규범에는 적용될 수 없다. 피고는 자체의 징계규정에 따른 판결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조치는 단지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다.

사실관계

당사자들은 2004년 7월 16일자 원고(여)가 발행한 잡지 ÖKO-Test에 실린 기사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표명한 비난이 합법적인가에 대해 다투고 있다.

원고는 정기간행물 잡지인 ÖKO-Test에 “뿌리를 찾아서”(Auf Spurensuche)라는 제호의 기사로 친부확인검사에 관한 보도기사를 게재하였다. 각기 두 사람 분 2개의 서로 다른 익명의 실험재료가 11개의 연구소로 보내져 실험이 실시되었다. 그 중의 하나는 친부확인을 하기 위해서였고, 다른 하나는 형제확인을 위한 실험재료였다. 이와는 달리 참여한 연구소들이 건네받은 재료를 가지고 부자확인을 위한 실험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적인 분별능력이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검사가 이루어져야 했다. 검사결과는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쾰른에 있는 혈액형검사연구소(Blutgruppenforschung)의 경영자이자 연구소 소장인 H.박사가 평가하였다. H.박사는 혈통감정전문가단체의 회장직을 동시에 겸하고 있었다. 이 단체의 회원에게는 이익을 목적으로 실험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었다.

평가연구소의 하나는 “양호”(befriedigend) 판정을

받았으며, 9개의 연구소는 “불량”(ungenuegend)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비즈바덴(Wiesbaden)에 있는 “ID-Labor GmbH” 연구소는 실험결과 자료를 보내오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04년 2월 15일자 공문으로 “ID-Labor GmbH”는 1973년 12월 12일 ‘본’(Bonn)에서 피고가 출판협회(Presseverbaenden)와 공동작업으로 결정했고, 2001년 6월 20일 최신 개정된 바 있는 “출판매체의 기본 원칙” 제7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고를 비난하면서 항변하였다(이하에서는 출판규범). 출판규범 제7항은 편집집관(redaktionelle Veröffentlichung)이 사적 또는 영업상 이익 때문에 제3자 그리고 개인의 경제적 이익에 때문에 언론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때 공공성에 대한 출판매체의 책임을 다루고 있다.

“ID-Labor GmbH”는 불만의 사유로 H박사가 경쟁자들을 폄하하는 동시에 그가 대변하고 있는 단체가 경쟁에서 유리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의 소청위원회는 2004년 4월 30일자 공문으로 원고에게 첨부된 소청규정(Beschwerdeordnung)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기회를 보장하였다. 원고는 변호사인 S.박사와 함께 관련기사로 인해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고에 대한 소송에서 소청위원회가 다른 연구소를 대리하고 있고, 원고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2004년 5월 17일자 공문으로 기각을 했기 때문에 그의 역할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의 소청위원회는 7월 16일자 공문으로 판정을 위해 소집된 피고 산하 소청위원회의 소청 제1부가 출판규범 제7조에 대한 위반혐의를 찾아낼 수 없었다고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나 출판규범 제2조에 대한 위반 사실로 제기된 소송은 이유가 있다고 간주하는 것과 동시에 비난표명은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고 하였다. 원고가 비난을 받게 된 이유로는 원고가 관련 기사를 보도하여 언론인으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들었

다. 이는 왜 H박사가 대표하는 단체에 속하지 않는 배타적인 연구소에서 실험이 이루어졌는지 보도에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어떠한 기준에 따라 실험연구소가 선정되었는지에 대해 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소송의 재개를 위한 원고의 이어지는 노력은 성과 없이 끝나 버렸다. “ID-Labor GmbH”는 “생태실험(Ökotest)이 출판규범에 위반된다. - 피고는 이를 비난하다”라는 제호로 검사에 대한 출판계의 의견을 게재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비난이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문제가 된 보도기사로 출판규범 제2조를 위반했다고 해서 이를 자신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비난은 직업수행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의사표현으로서의 비난판정에서부터 주법원의 구두변론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위법성 판단의 경우, 공법상의 기관 또는 사회적 영향력 있는 단체가 평가할 수 있는 원고에 대한 조치의 중요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 거부통제(Billigkeitskontrolle)에 의한 위법성 판단은 민법 제315조에 상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울머(Ulmer)박사가 저작한 책의 내용에서처럼 이익형량의 과정 내에서 진행된 위법성 심사는 피고가 문제가 된 결정을 할 때 어떠한 점도 옳다고 하지 않은 5가지의 광범위한 심사목록에서 실시되었다. 또한 소가 제기된 조치와 함께 피고의 입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고에게 중요한 평판이 고려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그의 저작물을 비난함으로써 신뢰할 수 없는 보도를 한 출판업자 또는 언론인으로 공중에게 인식되어졌다는 것이다. 즉, 아이 어머니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실험연구소 선택기준, 혈액형검사연구소의 소장이자 혈통감정전문가단체회장인 H.박사의 임무 및 신뢰 있는 친부확인실험에 대한 그의 견해를 피고의 동의 없이

기사화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OLG Frankfurt am Main)이 2005년 8월 1일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의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와 또 다른 연구소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린바 있다는 것이다. 반복의 위험성은 존재할 수 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러한 비난은 회사 "ID-Labor GmbH"의 웹사이트를 통해 수많은 출판매체와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잡을 수 없이 게시된다는 것이다. 피고 스스로도 비난을 2005년도가 지난 후에 결정의 공개를 의도한다는 암시와 함께 그의 인터넷 사이트나 2004년도 연차보고서에서 공표했다는 것이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주장 및 전과행위, 즉 원고가 2003년 11월호 ÖKOtest 잡지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보도기사의 게재가 언론인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피고의 일방적 주장의 중지 및 비난의 철회 그리고 금지된 표현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의무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판결문의 주문에 상세히 표시된 바와 같이 주지방법원은 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비난이 남을 혈통의 것과 같은 성격이 없는 법이 허용하는 의사표현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또한 통상적으로 지속적으로 되풀이될 위험성도 없다고 하였다.

본(Bonn) 지방법원의 판결(AfP 2006 S. 198)에 대해 원고는 즉시 항소하였다.

원고는 2006년 2월 2일자 본 지방법원 판결이 변경되어야 하고,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려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1. 법원이 위반사안에 대해 확정된 벌금과 이것이 징수되지 않는 경우 구류 또는 6개월 간의 징역(개별 사안에 대한 최고의 벌금액은 250,000 유로, 징역은 최고 2년 형), 그리고 이것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이사회 의장은 2003년 11월호 ÖKO-Test 잡지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기사의 게재로 원고가 피고의 출판규범 제2조의 언론인으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

장하거나 전파하는 것을 피고에게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2. 피고는 등가보상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정에서 원고에게 표현한 비난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3. 제1항목에서 언급한 주장과 전파로 인하여 발생했거나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실질적인 손해를 피고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확정하여야 한다.

## 판결이유

... II.

민사소송법 제511조 이하에 의거하여 허용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지방법원은 당연하고도 대체로 적절하게, 하지만 약간의 보충만을 필요로 하는 판결이유로 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면서 제기한 반론은 판례를 변경할 어떠한 동기도 부여하지 않는다.

(1) 소의 제기는 적법하다. 이는 이어지는 제3항에 대한 항소심 청구에도 적용된다. 원고는 2004년 7월 16일 피고가 원고에게 언론인으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비난을 함으로써 발생했거나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의 확정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명백히 하였다. 원고의 확실한 소의 이익은 2005년 9월 1일 소가 제기된 시점에 또는 청구소송에 대한 보충성의 관점 하에 항소심 구두변론에 이르기까지 사라져 버렸다. 원고가 주장한 명예훼손은 지금까지 증명되지 않았다. 원고에게 점진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최종적인 추정치는 확인될 수 없다. 확실한 것은 피고가 문제가 된 비난을 2005년도 출판위원회의 연차보고서에서 공표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원고는 반박할 여지가 없는 결과보고의 구체적 예를 묘사했다. 손해가 부분적 항목으로 존재할 가능성은 확인소송을 허용하

는데 배치되지 아니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는 이유가 없다.

(2.1) 원고는 피고에게 제1항목에 대한 부작위청구소송과 함께 이어지는 금지청구, 즉 원고가 관련기사의 게재를 통하여 원고가 출판규범 제2조의 언론인으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 또는 전파의 금지를 청구하거나,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이른바 민법 제823조와 연관된 제1004조 제1항 제2문에 따른 부정적 금지청구의 법적 상황을 근거로 설비를 갖추어 수행되는 영업권과 인격권의 관점 하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 또는 금지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

(2.1.1) 원고가 관련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언론인으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2004년 7월 16일의 발표는 민법 제823조 제1항에 열거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다. 피고의 게재와 다른 공공기관과 사람들의 결과보도를 통한 공표는 원고의 영업행위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에 적당하다. 관심있는 계층에게는 원고에 대한 무비판적이고 성의 없는 보도로 비난이 나쁜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해된 원고의 권리가 유보없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의 권리는 기본법 제5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과 같은 타 기본권으로 인한 한계를 가진다. 다른 한편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민법 제1004조와 823조 제1항과 같은 일반법에서의 한계가 있다. 이는 해석 가능한 일반법 규정의 구성요건적 특징의 범주 내에서, 민법 제823조 제1항의 경우 위법성 심사의 범주 내에서, 의사표현으로 인한 중대한 침해와 다른 한편으로는 표현의 금지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가 희생되는 것 사이에서 개별적 사안과 관련하여 비교형량을 이끌어낸다. 그러한 점에서 판결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우선적용규칙(Vorzugsregeln)이 생겨나게 되었다. 따라서 의사표현이 비방이나 외형상 모독의 형태로 나타날 때 영업인격권보호와 설비를 갖추어 수행되는

영업권이 해당하는 인격권보호에 대한 가치판단 시에는 규칙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우선한다. 사실주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익형량은 표현의 내용의 진실성에 의존한다. 진실에 기초한 표현은 기본적으로 관련자에 대하여 불리하다 할지라도 규정상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고, 이와는 반대로 거짓된 표현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BVerfG, Beschluss vom 9. 10. 2000 - 1 BvR 1839/95, NJW-RR 2001 S. 411 f.; Beschluss vom 10. 11. 1998 - 1 BvR 1531/96, AfP 1999 S. 57).

(2.1.2) 소가 제기된 피고의 비난은 의사표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2.1.2.1) 표현의 내용이 평균적인 수신자의 이해에 따라 무엇인가 사건으로서 민사소송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때 사실주장을 출발점으로 할 수 있다.

의사표현은 상태나 과정이 비평가가 선택한 기준에 따라 평가되고 이것이 입장, 태도 또는 의견이라는 요소에 의해 각인되어 그 특징이 드러난다. 가치판단이 사실을 근간으로 하면서 의사표현과 관련되어 있으면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된다. 기본법 제5조 제1항의 보호범위 외에 이미 언급한 허구적 사실, 즉 이미 표현되는 시점에 명백하고도 확실한 그러한 허구적 사실이 존재한다(BVerfG, aa.O., NJW-RR 2001 S. 411; AfP 1999 S. 57 = NJW 1999 S. 1324).

(2.1.2.2) 이러한 사안들을 고려한 판결에서 피고가 수용한 출판규범 제2항에 따라 언론인으로서의 주의 의무를 원고가 침해했다는 근거는 제한적인 논쟁으로서의 대상성을 고려해 볼 때 비난적 표현이 아니다. 제1항에 대한 소의 제기과 함께 원고는 피고의 발표, 즉 “원고가 출판규범 제2조의 언론인으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발표와 관련하여 부작위확인판결을 기대했다. 피고의 비난표현이 사실주장인지 기본법 제5조 제1항의 보호를 받는 의사표현에 관한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은 소에서 표현된 문언에 제한되어야

한다(BVerfG, aa.O., NJW-RR 2001 S. 411 a. E. [412] 참조). 정기간행물 발행인이 언론인으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발표는 의심의 여지도 없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치판단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는 그것이 출판규범을 위반했다는 피고의 견해도 적용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는 명시적으로 견해로서 특정지를 수 있는 출판규범의 평가해석에 관한 사안이 된다.

(2.1.3) 한편으로 소의 내용에 포함된 피고의 판단으로 민법 제823조 제1항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받은 원고의 권리의 중대성,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금지함으로써 희생된 표현의 자유 사이의 비교형량은 논쟁이 된 피고의 의사표현이 적법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2.1.3.1) 이미 표현된 바 있고 판결에서 형성된 우선적용규정(Vorzugsregeln)을 기초로 한다면 의심의 여지없이 가치판단은 원고의 보호필요성에 우선한다. 또한 사생활이나 은밀한 부분에 대한 비방(Schmaehkritik), 모독(Formalbeleidigung) 또는 침해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원고는 주장할 수 없다.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는 또한 명백하지도 아니하다.

(2.1.3.2) 특히 재판부는 피고의 비난까지 전체적으로 이익형량에 포함시켜 판단했다. 따라서 언론인으로서의 주의 의무에 대한 위반근거는 기본법 제5조 제1항의 보호범위에 해당하는 가치판단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도로부터는 왜 H박사가 대표로 있는 이익단체에 속하지 않는 연구소를 제외하고 실험이 이루어졌는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증명 가능한 사실주장으로 볼 수도 있다고 표현될 경우, 위반의 근거가 된 이러한 보도는 마찬가지로 가치판단으로써 판단될 수 있다. 이것은 근거가 된 문언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문언은 “표현”의 개념적 특징이 잘 드러난다. 보도기사로부터 무엇인가 드

러나는지 아닌지는 독자의 주관적 평가기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또한 독자에게 어떠한 기준에 실험이 이루어진 연구소가 선택되었는지 알릴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라는 문언은 “긴급하다”라는 개념과 함께 의심할 여지없이 가치평가적인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2.1.3.3) 그러나 피고의 비난판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상의 표현은 적절한 것처럼 보인다. 확실히 H박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연구단체가 아닌 실험연구소에서 배타적으로 실험이 이루어졌어야 했다. 이러한 상황이 독자들에게 숨겨졌을 것이라는 피고의 가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제기될 수 없다. 또한 재판부도 실험실 선정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다. 관련기사에 “그렇게 우리는 실험했다”라는 제목의 설명에는 어머니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비밀리에 친부감식실험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연구소에서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어떠한 암시도 없었다. 거기에는 실험을 한 연구소 전체가 H박사가 관리하는 이익단체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덜 알려졌다. 또한 실험이 이루어진 연구소의 선택기준은 실험보다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특히 왜 H박사가 대표로 있는 이익단체에 속하는 연구실에서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설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노력한 관련 실험보도의 한 부분은 불편부당한 독자들을 위해 선택기준에 대해서가 아닌 평가기준, 특히 평가척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실험에서 어머니에 대한 침묵이 실험프로그램상의 관례에 따라 경시된 상황은 모든 다른 실험연구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평가가 선택기준이 아니라는 인상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인상은 실질적으로 H박사의 이익단체에 속한 연구소가 실험이 이루어지고 이익단체에 속하지 않는 연구소와의 연결을 통해 참여하게 됨으로써 더욱더 강화된다. 또한 이러한 것은 어머니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러는 사이에 단체에

속하는 연구소로 표시되지도 아니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익단체에 속하는 실험연구소가 친부확인검사를 더 성실하고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 것이다.

(2.1.3.4) 원고가 그와 같은 보도기사 때문에 그녀와 실험연구소장 사이에 진행된 소송인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의 2005년 8월 1일자 항소심판결(16 U 24/05)은 본건의 항소심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 원고에게 어떠한 불쾌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어떠한 표현도 가해질 수 없다는 판단으로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은 피고와는 다른 견해를 가졌다.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은 원고가 관련기사의 게재로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피소되고 실험이 이루어진 연구소 소유자의 설비를 갖추어 수행하는 영업상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판정해야 했다. 이러한 법적 표현에 대한 논쟁을 판단하는 경우 판례를 통해서 발전된 상품실험(Warentest)의 허용에 대한 기본원칙이 근본을 이루고 있다. 즉, 비교되는 상품실험의 결과 공표는 경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보고서의 구간을 구성하는 연구가 중립적, 객관적, 전문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심사목적 달성을 위한 방식과 연구로부터 도출된 결과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허용된다.

실험보고에 대한 공표가 민법 제824조 제1항에 위반하여 허위사실을 내포하고 있거나 가치판단으로 판단되는 실험보고가 민법 제823조 제1항의 보호를 받는 관련기업의 영업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해 피고는 실험보고서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상 소가 제기되지 않는 경우 출판규범을 근거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출판윤리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피고의 경우 1956년에 설립되었으며, 독일출판 및 언론인 단체의 가장 커다란 조직의 하나이다. 피고는 출판의 자유와 보도원에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게다가 독일출판업계의 자발적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고는 미디어종사자들에 대한 명예규범(Ehrenkodex)과 같은 보도매체의 기본원칙을 제정하였다. 피고의 존립근거는 기본법 제9조의 결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며, 회원들이 자유로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는 기본법 제5조로부터 도출된다. 피고가 출판윤리기본원칙의 위배에 대한 판단 및 경우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할 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이상적이고도 출판규정에 제시되어 있는 윤리개념에 따라 이루어진다(OLG Hamburg, 3. ZS, Urteil vom 17.12.1959 - 3 U 141/59). 그런 점에서 관련 실험보고서를 분석해보면 이미 부연한 바와 같이 왜 전문가 단체에 해당하는 연구소에서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와 이러한 사유로 연구소가 친부감정실험을 더 성실하게 잘 수행했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명확한 언급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비난표현을 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2.1.3.5) 원고는 이른바 사회적 영향력 있는 단체의 징계결정에 의한 검사에 대해 기본원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비회원관계의 투영을 위해 일심판결을 받아들였다. 또한 그로부터 원고는 피고가 “가치판단” 심사에서 판례에 비례하여 윤리적 기준을 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 그런 점에서 지방법원이 그녀의 일심판결에서의 소망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고소는 결론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이러한 방향으로 목표점을 지향하는 요구들은(Ulmer, AfP 1975 S. 829 ff. [840 ff.]) 법 발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협회내부의 중요한 규칙총서에 대한 내용통제의 요구와 함께 신의와 믿음이라는 관점 하에서 협회의 징계규정에 의해 형성된 판결은 출판규범에는 적용될 수 없다. 피고는 자체의 징계규정에 따른 판결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피고

의 조치는 단지 윤리적 관점을 다루고 있을 뿐이고, 또한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다. 단어 마지막에 위치하는 “rat”(위원회)의 표시는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독자층에게 원고가 고권적 권한을 행사하고(위에서 언급한 함부르크 고등법원판결), 전속적 유효청구소송(Alleingeltungsanspruch)을 제기하는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키지 아니한다. “rat”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단어형성은 사생활에 관한 법 영역에, 그리고 어쩌다가 많은 생활영역에 존재하는 “Beirat”(자문기관)개념에 나타난다. 피고가 공식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의 조치에 중요성이 부여되었다 해도 위법적 법률위반의 수인요구에 대한 과소평가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또한 상품에 대한 비교실험 또는 문학비평과 같은 영역에서 제3자들과 인적결사체의 견해표명은 표현법에 대한 판결에서의 특별한 기준이 정당하다고 간주되는

것과 상관없이 특히 공공에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

(22) 피고에 대해 원고에게는 등가보상의 형태인 민법 제249이하와 연관된 영업인격권과 같이 설비를 갖추어 수행하는 영업권에 대한 침해라는 관점 하에서 그녀에게 가해진 2004년 7월 16일자의 비난에 대해 명백하게 노력한 민법 제823조 제1항의 적절한 적용에 의한 취소청구권한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결론적으로 의사표현에 대한 철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명확한 근거도 제시되지 않은 이러한 청구는 피고의 손해배상의무 확인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위법적 법률위반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유가 없다.

출 처 : AfP 37 Jahrgang Heft 4 - 2006 SS. 374-377.

번 역 : 권 형 둔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 미국 판결

### 인터넷의 다른 소스에 기원한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온라인 뉴스그룹에 게시한 개인은 명예훼손적 내용의 “배포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부터 면책될 연방적 특권을 향유한다

Supreme Court of California

원고 Stephen J. BARRETT 대 피고 Ilena ROSENTHAL

No. S122953.

Nov. 20, 2006.

#### 미디어 내용의 규제

명예훼손 - 발행 - 재발행 - 일반론 (§11.0302.01)

명예훼손 - 책임의 기준 - 다른 기준들 (§11.3005)

인터넷의 다른 소스에 기원한 명예훼손적인 내용

을 온라인 뉴스그룹에 게시한 개인은 명예훼손적 내용의 “배포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부터 면책될 연방적 특권을 향유한다. 왜냐하면, 통신법 제 230(c)(1)은 “상호작용하는 컴퓨터 서비스의 제공자나 이용자는 다른 정보 내용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발행인이나 발표자로 취급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광범위하고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3자로부터 비롯된 명예훼손적 내용의 “발행인”과 “배포자” 모두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입법 연혁은 배포자도 법적 보호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지지해 준다. 왜냐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들에게 명예훼손 책임을 지우는 것은 온라인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위와 같은 위축적 영향을 경감시킬 수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위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적 내용이 존재함을 알지 못한 배포자들도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Zeran 대 America Online Inc. 사건 및 기타 법원에 의해 확립된 법과 달리 230조를 해석한다면 재판지 선택(forum shopping)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 면책특권은 상호작용적인 컴퓨터 서비스의 제공자와 개인 이용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능동적인 이용자와 수동적인 이용자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 CORRIGAN, J. 판사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 이하 CDA로 표시한다)에서 의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 “상호작용하는 컴퓨터 서비스의 제공자나 이용자는 다른 정보 내용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발행인(publisher)이나 발표자(speaker)로 취급되어서는 아니 된다”(47 United States Code § 230(c)(1), 이하 위 U.S.C.에 대하여는 조문만 표시한다). “이 조문과 어긋나는 어떠한 주법 혹은 지역법 하에서도 소송의 원인이 발생하거나 책임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230(e)(3)).<sup>1)</sup>

위 조항들은 다른 소스로부터 나온 정보를 공표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명예훼손

1) 230조 중 이 사건 검토에 관련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a) 발견. 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한다.

(1) 미국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과 기타 상호작용적인 컴퓨터 서비스의 눈부신 발전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교육적이고 정보적인 자원의 사용 가능성이 이례적으로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2) 이러한 서비스들은 이용자들에게 그들이 제공받는 정보에 대한 높은 정도의 통제력을 주고, 또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장차 더 높은 정도의 통제력을 주게 될 것이다.

(3) 인터넷과 기타 상호작용적인 컴퓨터 서비스는, 진정 정치적 토론의 다양성을 위한 논의의 장과 문화발전을 위한 독보적인 기회 그리고 지적 활동을 위한 무수한 경로를 제공한다.

(4) 인터넷과 기타 상호작용적인 컴퓨터 서비스는 최소한의 정부 규제를 통해서 미국인들의 이익을 위해 발전해 왔다.

(5) 미국인들은 정치적, 교육적, 문화적, 오락적 서비스의 다양성을 위해 상호작용적인 미디어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b) 정책. 다음은 미국의 정책이다.

(1) 인터넷과 기타 상호작용적인 컴퓨터 서비스 및 다른 상호작용적인 미디어의 계속된 발전을 촉진하는 것.

(2) 인터넷과 기타 상호작용적인 컴퓨터 서비스에 대하여 현재 존재하는, 연방이나 주의 규제를 받지 않는 행동감 있고 경쟁적인 자유시장을 보존하는 것.

(3) 인터넷과 기타 상호작용적인 컴퓨터 서비스를 사용하는 개인, 가족, 학교가 자신들이 제공받는 정보에 대해 이용자 통제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

(4) 부모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부적절한 온라인 내용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차단 및 필터링 기술의 발전 및 사용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

(5) 컴퓨터를 이용한 음란, 스토킹, 괴롭히기를 방지하고 처벌하는 연방 형법의 강력한 집행을 확보하는 것.

(c) 공격적인 내용에 대한 ‘선량한 사마리아인’으로서의 방지와 차단외 보호

(1) 발행인 혹은 발표자에 대한 처리. 상호작용하는 컴퓨터 서비스의 제공자나 이용자는 다른 정보내용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발행인(publisher)나 발표자(speaker)로 취급되어서는 아니 된다.

(2) 민사 책임. 상호작용적인 컴퓨터 서비스의 제공자나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책임을 지서는 아니된다.

책임에 대하여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주는 것으로 널리 그리고 일관되게 해석되어 왔다. 그 면책은 “발행인”과 “배포자” 사이의 전통적인 차이점에 상관없이 적용되어 왔다. 보통법에 의하면, 신문이나 책의 판매상과 같은 “배포자”는 그들의 상품 안에 있는 명예훼손적인 진술을 알고 있었을 때에만 책임을 진다. 반면, 명예훼손적 진술이 최초로 나타난 신문이나 책의 발행인은 알지 못하였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230조에 대한 통설적인 해석으로부터 이탈하였다. 항소심은, 보통법상의 “배포자” 책임은 의회가 부여한 면책특권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의 제공자와 이용자는 어떤 진술이 명예훼손적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 진술을 재발표하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결정했다.

우리는 230조가 “배포자”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 사건은 서비스 제공자보다는 개인의 책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쪽 당사자에게 법률상 용어인 “이용자”의 정의를 진술하도록 요청했다. 우리는 또한 이용자가 수동적인 행위보다는 능동적인 행위에 관계했을 때 면책특권

에 대한 분석이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했다. 우리는 230조가 인터넷 출판에 관하여 “배포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한다고 결론 내린다. 우리는 더 나아가, 230(c)(1)이 상호작용적인 컴퓨터 서비스의 개인 “이용자”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고, 또한 능동적 이용과 수동적 이용 사이에 어떠한 실질적 혹은 원칙적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는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다.

우리는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적 내용을 재발표하는 것에 대하여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곤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의회가 이 부분의 범조항을 개정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인터넷 포스팅(posting, 轉記)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은 그 진술의 최초 소스에 대해서만 그 회복을 구할 수밖에 없다.

## I. 사실적 및 절차적 배경

원고 Stephen J. Barrett 의사와 Terry Polevoy 의사는 보건 사기(health fraud)를 파헤치기 위해 노력하는 웹 사이트를 운영했다. 피고 Ilena Rosenthal은

(A) 제공자나 이용자가 음란하거나, 추잡하거나,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괴롭히거나,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 그것들이 헌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 에 대한 접근이나 사용을 좋은 의도에서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행동.

(B) 정보 내용 제공자 등으로 하여금 위 (A) 항목에서 묘사된 내용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수단을 사용 가능하게 하는 행동.

...  
(e) 다른 법에 대한 영향

...  
(3) 주(州)법. 이 조문의 어떤 내용도 이 조문과 일관되는 주법을 집행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과 어긋나는 어떠한 주법 혹은 지역법 하에서도 소송의 원인이 발생하거나 책임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f) 정의. 이 조문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 연방 혹은 비연방의 상호작용 가능하도록 연결된 데이터 네트워크의 국제적인 컴퓨터망.

(2) 상호작용적인 컴퓨터 서비스 - 인터넷 혹은 도서관이나 교육적 기관에 의하여 운영되거나 작동되는 시스템을 포함하여, 다수의 이용자에 의한 컴퓨터 서버에의 접근을 제공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나 시스템 정보 서비스, 시스템 혹은 접근 소프트웨어 제공자

(3) 정보내용 제공자 - 인터넷 기타 상호작용적인 컴퓨터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생산 혹은 발전에 대하여 전반적 혹은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주체.

여성을 위한 Humantics Foundation이란 기관을 관리했고 인터넷 토론 그룹을 운영했다. 원고들은 Rosenthal과 다른 사람들이 이메일과 인터넷 포스팅에 있는 명예훼손적 진술을 악의적으로 퍼뜨림으로써 원고들의 인격과 능력을 비난했고 보건 사기에 대항하는 그들의 노력을 폄하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했다.<sup>2)</sup>

Rosenthal은 反-SLAPP법(anti-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공공참여 저해를 목적으로 한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을 들어서 원고들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진술이 보호되는 진술이었고 또한 230조에 의해 면책되기 때문에 원고들은 승소 개연성을 입증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진술이 기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Rosenthal의 진술이 反-SLAPP법 하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계되고 또한 사실에 대한 거짓주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며, 그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원고들은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아니하였다. 법원은, 소송 가능한 유일한 진술은 Rosenthal이 공동피고인 Tim Bolen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받은 글 속에 있다고 판시했다. “Tim Bolen의 의견”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글은 Polevoy 의사가 캐나다인 라디오 제작자를 스토킹한다며 비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Rosenthal은 이 글의 복사본을 자신의 토론 그룹이 아닌, 대체 치료와 약의 정치학을 다루는 두 개의 뉴스그룹에 게재하였다. Rosenthal에 의하면 이 뉴스그룹은 “어떠한 감독관이나 행위규범을 강요하는 사람이 없는”, “인

터넷의 광활한 서부”의 일부였다. 제1심법원은 위 재게시 행위는 230조 (c)(1)에 의해 면책된다고 결정했다.

항소심은 Polevoy 의사 부분에 대한 제1심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항소심은 230조가 Rosenthal을 보통 법상의 명예훼손에 있어서 “배포자”로서의 책임으로부터 면제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II. 검토

230조 면책규정에 대한 리딩 케이스는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이 채택한 “배포자” 책임 이론을 배척했다. (Zeran 대 America Online, Inc.) 우리는 먼저 Zeran 사건의 결론과 논거를 검토하고 나서 항소심의 반대되는 분석을 검토한다. “배포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게 극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의회가 230조 면책조항에 그러한 예외를 두려고 하지 않았다는 Zeran 법원의 견해에 동의한다.

Rosenthal은 적어도 그녀가 Bolen의 글을 게시한 뉴스그룹에 대해서는 서비스 공급자가 아니다. 이 사건은 명예훼손적 내용이 나타났다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작용에 대하여 감독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CDA 230조 (f)(2)에 규정된 “상호작용적인 컴퓨터 서비스”의 제공자가 아닌 개인에 관하여 230조 면책조항이 문제된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양쪽 당사자에게 230조의 “이용자”의 의미와 능동적인 사용과 수동적인 사용 사이에 어떠한 법적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

2) 명예훼손적 진술은 다음과 같다 : 그들은 교만하고 기괴하고 마음이 닫혀있으며, 감정적으로 불안하고 직업적으로 무능하며, 지적으로 불성실하고, 진실하지 못한 저널리스트이며, 얄팍하고 비윤리적이며, 나치주의자이고, 기득권자들의 앞잡이이며, 기존 질서를 전복하려는 조직의 지도자이고, 범죄행위(음모, 왜곡, 거짓 경찰 진술 등)에 연루되어 있다.

해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C항에서 우리는 의회가 능동적 혹은 수동적 사용을 구별하지 아니한 채 상호작용적인 컴퓨터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용자”로 정의하였다고 결론내렸다.

## A. Zeran 사건

누군가가 아메리카 온라인(AOL)에 어떤 메시지를 게시한 후, Kenneth Zeran은 죽이겠다는 위협을 포함하여 분노에 차고 경멸적인 내용의 전화를 수없이 받게 되었다. 그 메시지는 오클라호마 시에 있는 Alfred P. Murrah 연방 빌딩에 대한 폭탄테러에 관하여 공격적인 슬로건을 담고 있는 티셔츠 판매 광고였는데, 그 셔츠의 장래 구입자들에게 Zeran의 집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도록 지시하였다. Zeran은 AOL에 그 문제를 알렸고, 그 게시물은 결국 삭제되었다. 그러나 유사한 게시물이 나타났고, 한 오클라호마 라디오 아나운서는 첫 번째 메시지의 내용을 방송하였다. Zeran은 다시 협박전화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는 명예훼손적인 메시지 삭제를 불합리하게 지체한 점, 취소의 글 게시하기를 거절한 점 그리고 유사한 게시물을 삭제하는데 실패한 점을 이유로 하여 AOL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AOL은 230조에 근거하여 Zeran의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성공적으로 신청하였다. 항소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하였다. 즉, 230조는 “제3자인 이용자로부터 비롯된 정보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을 지게 될 소송을 제기당하지 아니하는 연방적 차원의 면책특권을 창설하고 있다. 특히, 230조는 법원으로 하여금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를 발행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가 발행인의 전통적인 편집 기능 - 출판, 삭제, 연

기 혹은 내용 변경 등을 결정하는 - 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인터넷은 “정부 규제가 최소한도였기 때문에(230조(a)(4))” 발전했다고 본 의회의 입장과, 상호작용적인 컴퓨터 서비스를 위해서 연방이나 주의 규제에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시장체제를 선호한다는 정책적 진술을 언급하면서, Zeran 법원은, 의회가 “타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정부의 간섭적 규제의 한 형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고 결론내렸다. 명예훼손적 내용을 최초로 게시한 사람은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의회는 “타인에 대해 잠재적으로 명예훼손적인 메시지의 단순한 중개자 역할만 하는 회사들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과하는 방법에 의하여 해로운 온라인 발언을 규제하지 아니하기로 정책적 선택”을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에서 재게시된 메시지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면 그들은 게시되는 메시지의 수와 형태를 심각하게 제한하려고 할 것이라는 염려를 반영한 것이다.

법원은 230조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유포되는 것을 서비스 제공자 스스로 규제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법 역사는 230조가 보도되지 않았던 뉴욕 지방법원의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제정되었음을 알려준다 (Stratton Oakmont, Inc. v. Prodigy Services Co.). 그 사건에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게시물을 능동적으로 검토하거나 편집함으로써 “발행인”의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판의 명예훼손적인 내용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 스스로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삭제하거나 검토하는 것을 꺼리게 될까 염려하여, 의회는

230조의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제정했고 그 조항은 서비스 제공자의 편집 기능과 자율규제 기능의 행사로 인하여 그에게 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을 과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Zeran은 이 사건 항소심 법원에 의해 채택된 것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 즉, 의회는 “발행인(publishers)”과 “배포자(distributors)”를 구별하여 발행인만 면책시키고 배포자는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보통법에 의하면, 책, 뉴스, 잡지 발행인과 같은 “주된 발행인”은 저자와 같은 근거에서 명예훼손 책임을 진다. 하지만, 책 판매자, 뉴스 노점상, 기타 “배포자”들은 출판물의 명예훼손적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만 책임을 진다. Zeran은 의회가 230조에서 “발행인”만 언급했기 때문에 “배포자”는 보호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입법의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AOL에 게시물 가운데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렸기 때문에, AOL은 “배포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주장했다.

Zeran 법원은 230조의 면책에 있어서 발행인과 배포자의 구별이 의미가 없다고 판결했다. 발행은 모든 명예훼손 소송의 필수적인 요소이고 또한 명예훼손적 진술의 반복과 배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배포자”는 인식이 있을 때에만 책임을 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넓은 의미의 발행인 범주”에 포함된다. Zeran은 배포자 책임에 있어서 명백한 인식이라는 요소의 존재에만 지나친 중요성을 부과하여 주장하고 있다.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가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게시물에 대한 경고를 받기만 하면 그는 전통적인 발행인의 책임을 지게 된다.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는 게시물의 게시, 편집, 삭제 여부를 결정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Zeran은 230조에 의해 면제되는 발행인의 책임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면서 AOL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한다.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인식으로 인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발언을 제한하도록 독려하고 자율적 규제를 회피하게 만듦으로써 230조의 “두 가지 목적”을 무용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 공급자는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을 때마다 책임을 질 위험에 빠지게 되고, 따라서 그 주변상황을 조사하고 정보의 명예훼손적 성격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하며 그 게시물을 유지할지에 대한 편집적 결정을 해야만 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이 전통적인 인쇄물 발행인에 대하여는 가능할지라도, 상호작용적 컴퓨터 서비스상의 엄청난 양의 게시물들의 내용을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식에 근거한 책임은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공격적인 내용이 자신의 서비스에 퍼뜨려지는 것을 자율 규제하는 것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서비스 공급자가 게시물을 조사하려는 모든 노력은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내용물을 더 자주 인식하게 만들고 결국 책임을 질 더 강한 근거를 만들게 된다. 서비스 제공자들은 제소 당할 더 높은 가능성에 노출되는 대신 자율적 규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꺼리게 될 것이다.”

“더 일반적으로, 상호작용적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에 근거한 책임은 제3자에게 공짜로 장래 소송을 위한 근거를 만들 수단을 제공해 준다. 상호작용적 컴퓨터 서비스에서 이루어진 다른 사람의 발언에 의해 불쾌해진 사람은, 그 정보가 법적으로 명예훼손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리기만 하면 된다. 인터넷 언론 활성화와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 규제에 대한 배포자 책임의 영향이 230조의 입법의도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우리는 의회가 인식에 근거한 책임을 그대로 존치시키려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식에 근거한 책임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Zeran은 의회가 의문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않는 한 보통법상의 원칙들을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법칙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회가 “발행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언명했고 “배포자” 책임을 유지하는 것은 230조의 입법목적에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보통법을 훼손함에 있어서는 조문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정책이, 명백한 입법의도에 배치되는 문언적 해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Zeran 법원의 관점은 연방 및 주법원 모두에서 널리 받아들여졌다. 항소심 법원이 아래와 같은 의견을 개진하기 전에, 두 개의 다른 캘리포니아 항소심 법원이 Zeran 판결을 따랐다. Kathleen R. 대 City of Livermore(2001) 사건에서 납세자가 자신의 아들이 공공 도서관에서 인터넷 연결을 통하여 음란사진을 얻은 후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도서관에 대한 다양한 이론에 근거하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그 법원은 230조에 의해 주법에 근거한 소송 제기가 금지된다고 판단했다. 그 법원은 230조 (c)(1)이 “발행인”과 “배포자” 모두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다는 법칙의 근거로 Zeran 사건을 인용했다. 또한 그 법원은 의회의 의도에 대한 Zeran 법원의 분석에 동의했다.

Gentry 대 eBay Inc.(2002) 사건에서 원고들은 스포츠 기념품을 사기 위하여 eBay의 온라인 시장 서비스를 이용했다. 그 기념품들에 위조된 서명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은 eBay에 대하여 과실, 부당한 거래관행, 민법 1739.7조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법원은 230조가 eBay를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Zeran 법원 및 다른 법원에 의해서 부여된 230조의 광범위한 적용을 지적하면서, 원고들은 eBay가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개별 판매자에 의해 제공된 정

보를 배포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았다. eBay가 판매자의 불법적인 행동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함에도 기망적인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함으로써 이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 “이것은 Zeran 법원이 230조에 의해 이미 규정된 부분이라고 판시한 전형적인 종류의 소송이다. 즉, eBay가 발행인의 전통적인 편집 기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형태의 소송이다.”

## B. 항소심 법원의 분석

위와 같은 법률적 조류에 반해서, 이 사건 항소심은 Zeran 법원이 온라인상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으로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부여했고, 이는 실질적으로 자율적 규제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을 해치게 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세 가지 요소에 주목했다. 첫째, “발행인”이라는 법률용어에 대한 Zeran 법원의 해석, 둘째, 230조의 입법 연혁, 셋째, 인터넷 환경에서 인식에 의한 책임의 실질적 의미. 우리는 위 세 가지 논점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을 배척한다.

### 1. “발행인”의 의미

항소심은 발행이 명예훼손의 요소이고 “배포자”가 때때로 “2차적 발행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의회가 내용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주된 발행인”과 그렇지 못한 “배포자”에게 부과되는 보통법상 책임 기준의 차이를 고려했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발행인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체 검열을 방지하려는 목적은 명예훼손적인 허위사

실로부터 구제받는 개인의 권리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발행인”이라는 용어가 주된 발행인만 혹은 주된 발행인과 배포자 모두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모호하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그렇게 “법적으로 불확실한 단어”는 Zeran 법원이 법조문으로부터 끌어낸 광범위한 면책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은 의회가 온라인상의 발언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려고 했다고 볼 만한 법조문과 선언문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사실, 항소심은 230(c)(2)에서 오히려 반대되는 입법의도를 찾아내었다(조문 내용 - 상호작용적인 컴퓨터 서비스의 제공자나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책임을 져서는 아니 된다. (A) 제공자나 이용자가 음란하거나, 추잡하거나,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괴롭히거나, 불쾌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 그것들이 헌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 에 대한 접근이나 사용을 좋은 의도에서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행동. (B) 정보 내용 제공자 등으로 하여금 위 (A) 항목에서 묘사된 내용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수단을 사용 가능하게 하는 행동). 항소심은 모든 “발행인”이 203조(c)(1)에 의해 완전한 면책특권을 향유한다면 230조(c)(2)가 불필요한 조항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더 나아가 CDA의 면책조항을 1998년 제정된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DMCA: 17 U.S.C. § 512)의 면책조항과 비교함으로써 “발행인”의 의미를 주된 발행인으로 한정하는 근거를 추가하였다. DMCA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사실을 몰랐고 이를 알자마자 즉시 그 침해물을 제거한 때에는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은 상세한 인식의 요건과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통지에 의해 문제가 된 내용을 교체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17 U.S.C. § 512(c), (g)). 항소심은, 의회가 CDA에서 인식 책임에 대하여 그와 같이 자세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는 그 문제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는데 실패했고, 따라서 보통법상의 배포자 책임은 그대로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우리는 “발행인”에 대한 Zeran 법원의 해석은 정당하다고 결론내린다. 230(c)(1)의 문언은 광범위하고 직접적이다 : “상호작용하는 컴퓨터 서비스의 제공자나 이용자는 다른 정보내용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발행인이나 발표자로 취급되어서는 아니 된다”. “배포자”가 “2차적 발행인”으로 알려져 있다면, 의회가 배포자를 별도로 언급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고 볼 이유가 없다. 또한 단순한 배포자에 비해 발행인의 책임이 더 크에도, 의회가 “발행인”을 면책하면서 “배포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려 했다고 볼 이유는 더더욱 없다. 항소심은, 일단 온라인 배포자가 명예훼손적 내용을 통지받았다면 그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발행인과 같은 지위에 있게 되고 따라서 그 게시물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하여 편집적 결정을 해야만 한다는 Zeran 법원의 지적에 대응하는데 실패했다.

우리는 230(c)(1)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c)(2)를 불필요하게 만들 것이라는 항소심의 결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조항은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다. 230(c)(1)은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정보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에 대한 것이고, 230(c)(2)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나 이용자들의 온라인 정보에의 접근을 제한하려는 행위에 대한 것이다. 내용 검열에 대한 책임은 발행인이나 발표자로서의 피고의 지위와 일반적으로 연계된 것은 아니다. 230(c)(1)에 사용된 용어들은 명예훼손법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230(c)(1)은 온라인 출판에 의해 침해를 받은 사람들로부터의 소송에 대한 면책규정이고, 230(c)(2)는 온라인 출판에의 접근을 제한함에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의 소송에 대한 보호장치이다.

항소심의 DMCA에 대한 언급도, 의회가 발행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배포자 책임을 면제하기에 부족하다는 항소심의 결론을 지지하기에 부족하다. 반대로, DMCA는 의회가 인지 책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통하여 제한된 면책을 고안해 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의회가 CDA에 그러한 특별 규정을 두지 않은 채 위 법 제정 후 10년 및 DMCA 제정 후 8년 동안 지내왔다는 것은, 의회가 CDA 하에서 인지 책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한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입증한다.

우리는 전통적인 인쇄물 발행인과 배포자 사이의 차이점이 인터넷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될지가 전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Reno v.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참조). 상급심 법원에서 지적한 것처럼,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로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도 정보를 ‘발행’ 할 수 있다”. 그러한 정보가 다른 소스로부터 복사되면, 그러한 발행행위는 또한 배포행위로 볼 수도 있다. 활자 시대 이후 사이버 스페이스 시대 이전까지 발전된 법칙에 근거한 항소심의 구별은 피고가 발행인과 배포자 중 어느 쪽에 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촉발할 것이다. 명예훼손에 대한 보통법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가이드도 제시해 주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이 사건에서 Rosenthal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선택 및 게시에 관한 자신의 적극적인 역할로 인해 자신이 주된 발행인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Bolen 기사의 배포에 있어서 그녀의 참여는 단순한 배포 차원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 항소심은 Rosenthal이 배포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림에 있어서 그녀 자신이 달리 주장·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분석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우리는 위 문제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는 없지만, 원고의 주장 자체가 Rosenthal을 발행인의 지위에 놓이게 한다는 항변이

제기될 수 있다.

## 2. 입법 연혁

항소심은 230조가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음란하거나 상스럽거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메시지를 인식 하에 전달하는 것을 금하는 CDA의 다른 규정과 함께 제정되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나 이용자들로부터 주된 발행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찾아내서 제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이에 실패한 발행인과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유사한 목적 달성을 촉진시켰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의하면, 배포자 책임으로부터의 면제는 통지를 받고도 행동을 취하기를 거절한 사람들과 함께 명예훼손적 내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제공자나 이용자를 보호하게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목적에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항소심은 230조의 입법연혁에 있어서 이와 같은 관점을 지지할 것을 주장했다. 항소심은, 서비스 제공자가 게시물을 적극적으로 삭제하고 편집하였기 때문에 주된 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 Stratton Oakmont 사건에 의해 생겨난 자율 규제 회피 경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230조가 제정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230조의 목적을 밝히는데 있어서 이전의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사건도 똑같은 중요성을 갖는다고 했다.

Cubby, Inc. 대 CompuServe, Inc 사건에서 어떤 기자는 CompuServe에 의해 제공된 인터넷 포럼에 게재된 경쟁자의 게시물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보통법상의 배포자의 책임 기준을 적용해서 그 포럼은 CompuServe가 거의 편집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자적 도서관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CompuServe가 그 게시물을 알

았거나 알았어야 할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법원은 즉시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은 Cubby 사건은 Stratton Oakmont 사건과 230조의 지지자들에 의한 논평에 있어서 눈에 띄이는 중요성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이 의존한 법학지 기사에 의하면, “면책조항의 2명의 지지자 중 한명인 Cox 의원은, Cubby 사건에서 배포자 책임의 부과는 CompuServe가 그 내용에 대한 발행인이나 편집자가 아니었다고 결론내리는 것이라고 특징 지웠다. 그는 위 사건에서 CompuServe에 적용된 배포자 책임이 있다고 주장된 당사자들을 제외하기 위하여 명백히 발행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 조항의 지지자들은 Cubby 사건과 Stratton Oakmont 사건 모두를 요약했고, 또다시 Cubby 사건을 언급하지 않은 채 Stratton Oakmont 사건을 파기할 필요성에 대하여 계속 논의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에 의하여 항소심은 배포자 책임을 보존하려는 의회의 의도를 발견했다. 항소심은, 명예훼손적 내용을 차단하는데 실패한다면 아무런 책임을 지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배포자 책임으로부터 면제하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율적 규제라는 목적달성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는 몇 개의 학술 논문을 인용하였다.

하지만, 항소심과 인용된 논문들은 입법 기록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해석했다. 우리는 230조가 아니라 47 United States Code 223(f)(4)에 의해 입법화된 CDA의 별도 조항에 대한 Coats 상원의원의 논평을 인용한다. 230조의 지지자인 Cox 의원의 논평은 적절하고, 또한 배포자가 법적 보호로부터 제외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

Cox 의원은, 203조가 Stratton Oakmont 사건에서와 같은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함에 의하여 CompuServe와 같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의도에서 제정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자신들의 서비스

에 제공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감 있는 심사를 독려하기 위하여 CompuServe와 같은 배포자들은 책임에 노출되기 보다는 책임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230조에 대한 항소심의 해석 하에서, 배포자는 공격적인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그 내용을 지웠다고 하더라도 공격받은 당사자를 만족시킬 만큼 신속하게 혹은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게 된다. 공격적인 게시물을 제거하지 않기로 결정한 주된 발행인은 면책되는 반면 같은 결정을 내린 배포자는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의회가 이처럼 불합리한 결과를 의도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230(c)(1)의 문언과 Cox 의원의 논평 모두 타인에 의해 제공된 온라인 내용물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 자체적인 능동적 심사를 촉진하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의회는, 보통법상의 발행인과 배포자 사이의 구별을 유지하는 방법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발행 책임을 모든 제공자에게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의도를 제도화하였다. 의회는 불법행위 책임에 의해 강요되는 규제보다는 자율적 규제를 고려하였다. 의회는 제3자 제공 내용을 재발행 함에 있어 공격적인 역할을 한 가장 능동적인 형태의 인터넷 발행인까지도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덜 능동적인 배포자에 대하여 통지에 의한 책임을 묻는 것은 이상한 것이 된다. 따라서 230조의 면책특권은 자율적 규제가 성공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전혀 시도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Rosenthal과 공동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입법 연혁은 Zeran 법원의 해석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된다. 2002년에 의회는 아동 도메인의 보충 및 효력법(Dot Kids Implementation and Efficiency Act)을 제정했다. 하원 위원회 보고서는 이 법의 목적을, “인터넷을 사용하는 아동과 가족을 위해 긍정적인

경험을 촉진할 내용물들의 집합체가 될 새로운 2차적 수준의 인터넷 도메인 창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법률은 그것이 만든 새로운 레지스트리(registry) 및 관련된 실체들이 1934년 통신법 230(c)의 상호작용적인 컴퓨터 서비스로 간주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 위원회 보고서는, 이 조항은 미성년자에게 부적합하거나 해로운 내용을 차단하고 삭제하는 자율적 감시에 근거하여 'kids.us'라는 레지스트리, 등록기관 그리고 그 레지스트리와 접촉하는 당사자들을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제정되었다고 설명한다. 위원회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230(c)를 원용하여 많은 소송을 방어하는데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법원들은 과실(negligence) 등을 원인으로 한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230(c)를 올바르게 해석했다.

### 3. 인지(認知, 혹은 통지) 책임의 실질적인 의미

Zeran 법원은 230조를 인지에 의한 책임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인해 발생할 세 가지 해로운 결과를 확인했다. 첫째, 명예훼손적인 메시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서비스 제공자는 그 메시지를 제거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를 유지함에 의해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사실 및 수많은 메시지가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부담은 자연히 통지를 받자마자 메시지를 삭제하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고, 결국 인터넷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둘째, 인지에 근거한 책임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게시물의 내용을 능동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방해한다. 왜냐하면 잠재적으로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찾아내는 것이 제공자의 책임을 증가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지에 근거한 책임은 제공자에게 논쟁적인 발언을 억제하거나 금지할 끊임없는 선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제3자에게 손쉽게 소송을 제

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항소심은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공격적인 내용에의 접근을 제한하도록 독려하는 조항이 인터넷 언론의 자유를 촉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했다. 항소심은 또한 인지에 근거한 책임이 온라인 언론을 제한할 것이라는 결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와 같은 책임이 만들어낼 부담과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항소심은 Zeran 사건에 대한 비판적인 학자들의 관점을 언급했다.

어떤 비판가들은 시장의 힘이 서비스 제공자들의 무조건적인 게시물 제거를 방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마구 게시물을 삭제하는 제공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나쁜 명성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의 어려움이 제공자들의 인지에 근거한 책임 부담을 감경시킬 것이라는 점도 주장되었다. 또한 배포자의 책임이 인지에 의해서만 발생하고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미리 게시물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는 제공자가 메시지의 명예훼손성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것에 제한될 것이다.

McManus 사건을 언급하면서 항소심은, Zeran 판결이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명예훼손의 다양한 방식과 인터넷 중개자가 메시지 내용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통제 방식을 설명하는데 실패했다고 비판되어 왔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항소심은, 비평가들이 Zeran 판결은 명예훼손 피해자들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 법원은 명예훼손 책임의 합법적인 보호와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 사이의 균형을 이를 법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항소심은 230(c)(1)로부터 도출되는 전면적인 면책이 그 균형을 깰 것이라는 관념에

저항했다. 항소심은 배포자 책임을 보존하는 것이 230조의 면책조항과 일관된다고 결론내렸다.

항소심은 그 법원칙이 인터넷 언론에 부과할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의회가 230조를 제정할 때 언론의 자유 보장에 무관심했다고 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조문은 인터넷상의 “교육적, 정보적 자원의 사용에 있어서 이례적인 진전”을 환영하고 인터넷을 “지적 활동을 위한 수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정치적, 교육적, 문화적, 오락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치적 토론의 진정한 다양성을 위한 포럼”으로 격찬하고 있다(§ 230(a)(1), (3),(5)). 인터넷 중개자들의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230(c)(1)은 그 자체로, 온라인 표현을 위한 자유로운 시장 유지라는 가치에 대한 입법적 수행임을 강력하게 보여 준다.

의회가 어떠한 인터넷 내용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자 했다는 사실도 반대의 결론으로 이끌지 않는다. 법원이 *Batzel v. Smith* 사건에서 적절히 검토한 바와 같이, 언론의 자유를 촉진하면서 동시에 자녀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는 내용에 제한을 가하는 도구를 부모들에게 제공하려는 의회의 목표 사이에는 명백한 긴장관계가 있다. 이러한 긴장의 결과로, 어떤 학자들은 *Zeran* 법원이 인터넷을 통하여 내용물의 확산을 통제하려는 언론제한적인 목표를 가지고 도입된 첫 번째 수정조항의 목적을 입법에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판은 법이 종종 하나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상충하는 가치들의 균형을 잡을 필요성은 입법에 있어서 주된 유인이 된다. 조문의 긴장관계는 종종 결점이 아니라 입법부가 자신의 일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징표가 된다.

우리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에게 명예훼손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온라인 언론을 위축시

킬 것이라는 *Zeran* 법원 및 다른 법원의 판단에 동의한다. 이러한 결론은 시장의 힘이 제공자로 하여금 명예훼손성을 조사하지 않은 채 게시물을 제거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는 주장 보다 덜 가정적(假定的)이다.

우리는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의 어려움이 잠재적인 책임의 언론에 대한 억제적 효과를 경감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명예훼손법은 여러 요소에 대한 고려를 요구하는 복잡한 것이다. 그 요소들은 문제가 된 내용이 진실 혹은 거짓인지, 사실적인지 상징적인지, 면책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공적인 주제인지 사적인 주제인지, 원고가 공중인지 사인인지 등을 포함한다.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는 인터넷 게시물을 조사하는 것은 따라서 매우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드는 도전이 된다. 그 때문에 명예훼손 주장이 명백히 무가치하다고 하더라도 책임에 대한 위협은 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게 된다.

또한 우리는 통지가 없으면 배포자의 책임도 없다는 판단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배포자는 제3자로부터 통지를 받았을 때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적 내용을 독자적으로 알았거나 알았을 이유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도 책임을 지게 된다(*Osmond v. EWAP, Inc.*). 따라서 *Zeran* 법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배포자 책임의 이러한 측면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능동적인 검사를 위축시키게 된다. 그것은 제공자로 하여금 불만 통지를 수령하는 것을 거절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반응들은 자율적 규제라는 목적달성을 위축시킨다.

*Zeran* 사건에서 지적된 세 번째 실질적인 의미는 확실히 강제적인데, 항소심은 이것을 언급하지 않고 지나갔다. 서비스 제공자들의 통지에 근거한 책임은 불만을 제기하는 당사자로 하여금 그러한 내용을 발견할 때마다 불만을 접수하도록 함으로써 인

터넷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 항소심의 판단에 의할 때,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양과 범위에 비추어 수많은 비방글은 진정한 위협이 된다. 미연방 대법원은 CDA를 인터넷 발언에 의해 침해받은 사람들에게 광범위한 검열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Reno v.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인터넷 발행의 다양성과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행해질 수 있는 내용 통제의 다양한 수준이, 의회는 제3자가 제공한 내용의 온라인 재발행에 대하여 광범위한 손해배상 면책특권을 창설하려는 의도였다고 결론 내리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공자, 이용자 그리고 법원에 보통법상의 명예훼손의 미묘한 차이점과 인터넷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명예훼손을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 될 것이다. 우리는 Zeran 법원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에 근거한 책임을 요구함에 따른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했다고 결론내린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Rosenthal과 eBay에 의해 제기된 또 다른 실질적인 의미를 간과할 수 없다. Zeran 법원 및 다른 법원에서 선언된 법과 다른 법을 채택하는 것은 명예훼손 소송의 원고로 하여금 임의로 법원을 선택(forum shopping)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고려가 Etcheverry 대 Tri-Ag Service, Inc. 사건에서의 접근법을 따를 강한 정당성을 제공한다 : “우리는 연방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연방 하급심의 결정에 지속되지 않지만, 그 결정은 설득력이 있고 중요한 것으로 인정된다. 연방 하급심의 선례가 나뉘거나 부족한 경우, 주법원은 연방법에 대한 독립적인 결정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연방적인 문제에 대한 연방 하급심 법원의 결정이 많고 일관되는 경우에는 우리는 그 결정을 배척하는데 주저하여야 한다.”

### C. “이용자”의 책임

항소심에 의해 인정된 배포자 책임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개인의 구별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Rosenthal과 같은 개별 인터넷 이용자들은 Zeran 법원에서 논의되고 의회 기록에 반영된 정책적 고려 측면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차이점이 있다. 특히, 개인은 제공자가 직면하게 되는 광대한 양의 제3자 게시물 문제에 부딪히지 않는다. 개인에게 있어서 자율 규제는 덜 무거운 짐이 된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들이 의해 게시된 내용물을 검사함에 있어서 능동적이었던 수동적이었던 간에, 그 게시물의 이용자들보다 덜한 책임을 부담한다. 이용자들은 서비스 제공자보다 더 능동적으로 명예훼손적 혹은 다른 공격적인 내용의 악의적 배포에 관여하게 된다. 이러한 고려는 230조의 “이용자”란 용어의 범위와 이용자가 능동적 혹은 수동적 행동에 관계되었을 때의 면책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이용자는 법에 정의되지 않았고, 제한된 입법 기록은 의회가 왜 이용자를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230(c)(1)의 면책 대상으로 규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조문 해석의 일반적인 법칙은 명확한 결과를 도출해 낸다. 우리는 의회에 의해 사용된 용어와 그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가 입법 의도를 표현한다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용자”는 명백히 무언가를 이용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조문의 문맥상 의회는 ‘상호작용적인 컴퓨터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하였음이 명백하다.

230(c)(1)은 “상호작용적인 컴퓨터 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해 직접 언급하고 있다. 230(f)(2)는 “상호작용적인 컴퓨터 서비스”를 “인터넷 혹은 도서관이나 교육적 기관에 의하여 운영되거나 작동되는 시스템을 포함하여, 다수의 이용자에 의한 컴퓨터 서

버에의 접근을 제공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나 시스템 정보서비스, 시스템, 혹은 접근 소프트웨어 제공자”로 정의한다. 230(a)(2)는 그러한 서비스가 “이용자들에게 그들이 제공받는 정보에 대한 상당한 통제를 가능하게”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230(b)(3)은 의회의 의도가, “인터넷과 기타 상호작용적인 컴퓨터 서비스를 사용하는 개인, 가족, 학교가 자신들이 제공받는 정보에 대해 이용자 통제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의회는 230(b)(3)에서 표현된 “개인들”을 포함하여 일관되게 상호작용적인 컴퓨터 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의회가 230(c)(1)에서 이용자라는 용어에 관해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 Rosenthal은 Polevoy에 대한 Bolen의 글을 게시한 뉴스그룹에 접근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했다. 따라서 그녀는 CDA 상의 이용자였다. 의회가 230(c)(1)에서 “상호작용적인 컴퓨터 서비스의 어떠한 제공자나 사용자도 발행인이나 발표자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함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를 다르게 다루려고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우리는 “이용자”라는 용어가 의미를 갖지 않도록 위 조문을 해석할 수 없다. 우리는, 웹사이트의 운영자로서의 개인의 역할이 서비스 제공자인지 혹은 이용자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에 있어서 법원들은 법이 양자 모두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구별이 불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Polevoy는 우리로 하여금 “능동적” 그리고 “수동적” 인터넷 사용을 구별하고 법상의 “이용자”를 수동적인 이용자에 한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는 230조의 (a)(2)와 (b)(3)이 이용자들이 의해 “제공받은” 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

는 또한 (c)의 제목이 “공격적인 내용에 대한 ‘선량한 사마리아인’으로서의 방지와 차단의 보호”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Polevoy는 이용자라는 용어는 공격적인 정보를 수령하는 사람과 그러한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사하고 제거하는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터넷에 정보를 능동적으로 게시하거나 재발행하는 사람은 법상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정보 내용 제공자”라고 주장한다. “정보 내용 제공자”는 “인터넷 기타 상호작용적인 컴퓨터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생산 혹은 발전에 대하여 전반적 혹은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주체”로 정의된다.

Polevoy의 견해는 우리가 검토하는 문제의 중심에 있는 조항을 설명하지 못한다 : 어떠한 이용자도 다른 정보 내용 제공자에 의해 제공된 정보의 발행인 혹은 발표자로 취급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230(c)(1)의 금지조항이 그것이다. 컴퓨터상의 정보를 받기만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지 않는 이용자는 발행인 혹은 발표자가 될 수 없다. 의회는 명백히 더 넓은 의미로 사용했을 것이다. 또한 게시물을 지우는 이용자가 “수동적”이고, 게시물이 온라인상에 남아 있도록 놓아두는 사람이 “능동적”인지도 명백하지 않다. 더욱이, 의회는 모든 정보 내용 제공자로부터 면책특권을 박탈하려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왜냐하면 230(c)(1)의 “또 다른” 제공자에 대한 언급은 면책된 발행인 혹은 발표자가 또한 정보 내용 제공자임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능동적 이용과 수동적 이용의 구별은 *Batzel v. Smith* 사건에서 검토되었다. Smith는 박물관 안전과 도난당한 예술품을 다루는 웹 사이트에 Batzel이 2차 대전 당시 나치에 의해 도난당한 그림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 운영자는

웹 사이트에 그 메시지를 약간 수정하여 게시하였고, 그의 이메일 뉴스레터 독자들에게 그 내용을 발송하였다. Batzel은 Smith와 운영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제1심법원은 캘리포니아의 anti-SLAPP법에 의해 그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운영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법원으로 하여금 Smith가 그의 이메일이 인터넷에 게재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운영자가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했는지에 대해 판단할 것을 지시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메시지는 다른 정보 제공자에 의해 “제공된” 메시지가 아니어서 운영자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 관련된 논의는 동의 및 반대 의견에 나타난다.

Batzel 사건의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이 인터넷 중개자들에게 재발행될 정보를 퍼뜨리는 것에 대한 면책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적으로 루머와 가십을 만들거나 찾는 사람들에게 처벌받지 않고 허위의 해로운 정보를 퍼뜨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을 채택했다고 비판했다. 반대의견은 저자의 의도에 대신해서 피고의 행동에 근거한 법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피고가 문제된 정보를 발행하기로 선택함에 있어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에만 CDA에 의해 면책될 수 있게 된다. 만약 피고가 그 선택에 있어서 능동적인 역할을 했다면 그 정보는 더 이상 230조의 ‘타인에 의해 제공된 정보’가 아닌 것이 된다.

반대의견은, 재발행을 위해 능동적으로 선택된 정보는 만약 그것이 해로운 것이라면 변형되고 더 강화되어 더 많은 해를 끼치게 된다고 보았다. 반대의견은, 서비스 제공자가 공격적 내용을 포함한 수백만 개의 게시물을 검사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재발행 대상을 선택하기 위해

게시물을 능동적으로 검사하는 자는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면책되어서는 아니 된다. 반대의견에 의하면, 게시판 관리자가 발행을 위해 메시지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면책되고, 그가 특별한 명예훼손적 내용을 퍼뜨리기로 결정했다면 책임을 지게 된다. 반대의견에 의하면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려는 의회의 목적은 더 잘 달성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공격적인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삭제한 사람은 면책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의견은 의회가 인터넷상의 배포를 위하여 명예훼손적인 정보를 선택한 사람을 면책시키려 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Batzel 사건의 다수의견은 능동적으로 발행할 정보를 선택한 피고와 게시된 내용을 검사하여 공격적인 내용을 제거한 피고 사이의 논리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면책의 범위는 발행인이 선택의 과정에서 포함하였는지 제거하였는지에 의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방법이나 정도의 차이일 뿐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결론에 동의한다. 나아가, 우리는 능동적으로 선택되고 재발행된 정보는 더 이상 230(c)(1)의 “다른 정보 제공자에 의해 제공된 정보”가 아니라고 하는 반대의견의 관점도 배척한다. 모든 재발행은 어떤 의미에서 “변형”과 관련된다. 내용에 근거하여 능동적으로 게시물을 선택하여 게시하는 이용자는 전통적인 “발행인”의 역할에 부합한다. 의회는 그러한 역할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여하였다.

Rosenthal이 지적하는 것처럼, 인터넷상의 언론의 자유를 강화하려는 의회의 의도는 230조의 면책특권을 능동적인 개인 이용자들에게 확장하는 것을 지지한다. 법이 보호하려고 했던, “정치적 논의의 다양성”, “문화 발전 기회”의 추구, “지적 활동의 수많은 경로”의 탐험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능동적인

개인 이용자들이다(§ 230(a)(3)). Batzel 사건의 반대의견의 입장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고 자율적 규제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축시킬 것이다. 공격적인 내용을 삭제한 이용자는 남아있는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선택”으로 인해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입장에 있는 이용자들은 다소 공격적인 내용이라도 삭제하려고 할 것이고 결국 온라인 토론의 영역을 제한하게 된다. Rosenthal과 같이 이용자가 많은 인터넷 게시판을 관리하는 이용자들은 제3자의 게시물을 검사하기를 꺼리게 될 것이다. 개인 이용자들은 기관 서비스 제공자들보다 덜 자주 책임질 위험을 맞게 되겠지만, 개인들은 경제적, 법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그러한 위험이 결코 가볍지 않게 된다. 우리는 230(c)(1)의 “이용자”라는 용어로부터 특별한 의미를 도출하거나 “능동적” 혹은 “수동적” 인터넷 이용 사이의 실질적 차이를 인정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결론내린다. 어떠한 이용자도 제3자 제공 내용물의 발행인으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선언함에 의해서, 의회는 개인 인터넷 이용자들에 의한 재발행에 대하여 면책특권을 부여하였다.

#### D. 결론

우리는 Zeran 법원의 230조 면책특권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사람들의 염려에 공감한다. 인터넷에 명예훼손적 내용을 의도적으로 재발행한 사람에 대하여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0조는 그 문언에 따라 인터넷 중개자들에 대하여 재발행으로 인한 명예훼손 책임을 면제한다. 면책조항은 의회의 의도대로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자율적 규제를 독려하는 역할을 한다. 230조는 문언대로 해석되어 왔다. 그 조항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나 사용자들이 배포자로서 소송당하거나 능동적인 이용자들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원고들은 230조 하에서 최초로 명예훼손적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책임을 그 이상 확장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입법을 기다려야 한다.

#### III. 주 문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다.

출 처 : Media Law Reporter Vol. 34, No. 48 PP. 2573 ~ 2553  
 번 역 : 박재우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

영국사례

**널리 알려지지 않은 개인의 사적 정보를 공개한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

영국 PCC는 조안나 라이딩이 「판도라」라는 제목으로 『인디펜던트』지가 지난 2006년 3월 8일자에 게재한 기사에 대해 제기한 불만신청을 받아들였다. 불만신청인은 문제의 기사가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윤리강령 제3조(사생활 침해)를 위반했으며 또 제1조(정확성)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PCC에 불만을 제기했다.

문제의 기사는 불만신청인이 임신 하게 되면서 연극 배역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불만신청인이 과거 배역에서도 임신 때문에 ‘막바지에’ 중도하차 했으며 ‘가족을 구성하려는 노력이 불만신청인의 경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불만신청인은 자신이 임신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기도 전에 『인디펜던트』지가 이를 보도했고 이는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불만신청인이 임

신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불만신청인의 매니저와 연극 프로듀서 두 명뿐이었고 불만신청인은 연극 중도하차 이유를 “예측치 못한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라고 밝혔었다. 불만신청인은 후에 아기를 유산했다.

『인디펜던트』지는 불만신청인의 매니저에게 불만신청인이 겪은 고통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불만신청인의 임신 사실이 공적 정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디펜던트』지는 기사에 대한 답변 편지가 온다면 이를 게재할 수도 있음을 비쳤고 웹사이트에 올린 기사를 삭제했다고 통보했다. 또한 PCC가 조사에 들어가자 『인디펜던트』지는 불만신청인에게 임신에 대해 보도한 것을 사적으로 사과하고 사과문을 게재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불만신청인은 이를 거절하고 PCC의 결정을 받겠다고 밝혔다.

PCC는 어느 정보가 알려져 있어 이를 참조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상황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언론은 임신 12주가 지나지 않은 개인의 임신정보를 동의 없이 보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일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심하게는 유산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PCC는 불만신청인이 가족에게 알리기도 전 그리고 아직 확실할 단계가 아님에도 임신 사실을 보도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고 봤다. PCC는 비록 『인디펜던트』지가 불만에 대한 답변으로 조치를 취했지만 윤리강령 제3조 위반에 대한 배상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불만신청인의 불만을 인정했다.

한편 PCC는 불만신청인이 “막바지에” 배역에서 제외되었다는 『인디펜던트』지의 주장이 입증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정정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PCC는 불만신청인이 한 회 공연되는 쇼에서 배역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불만신청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프로듀서가 결정한 사안임을 명확히 밝힐 것도 요구했다. □

호주 사례 1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이 균형 있게 표현되지 않은  
기사에 대한 불만은 인정할 수 있다**

호주 신문평의회는 세인 나이트가 『뉴 아이디어』 지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신청을 받아들였다. 불만신청인은 『뉴 아이디어』 지가 지난 2006년 8월 19일자 신문에 「잃어버린 딸」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자 호주 신문평의회에 불만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는 비콘스필드 광산 붕괴사고에서 사망한 래리 나이트의 죽음과 그에 대한 후폭풍에 대해 다루고 있다. 게재된 기사는 그의 딸인 로렌 키엘만의 관점으로 쓰여 졌는데 이 기사는 「래리 보내기」라는 나이트 가족의 관점으로 쓰인 다른 기사가 보도되고 두 달 후에 게재됐다. 나이트 가족은 두 달 전의 기사가 이 사건에 대한 언론의 마지막 보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뉴 아이디어』 지가 보도한 8월의 기사는 특히 로렌의 매우 민감한 의견들이 담겨있었다. 기사에서 로렌은 그녀의 어머니에 비해 기부금과 비콘스필드 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자신의 아버지 장례식 준비절차에서 다른 가족들이 자신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망한 광부의 남동생인 불만신청인은 로렌의 발언이 부정확한 주장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사는

보도 전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로렌의 의견만을 담은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잡지사 측은 “자료를 따로 확인해 볼 기회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호주 신문평의회는 언론사는 자신들이 보도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불만의 대상이 된 잡지사가 후속 기사 등을 통해 불만신청인과 로렌의 의견을 균형 있게 보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불만신청인의 불만을 받아들였다. □

호주 사례 2

**다른 관점을 막지 않았다면  
불만 제기를 인정할 수 없다**

호주 신문평의회는 Dr. 배리 워딩턴이 『선데이 타임즈』를 상대로 낸 불만을 인정하지 않았다. 문제의 기사는 호주 서쪽지역에서 위험한 속도위반을 하면서도 번호판이 뒤에만 달린 오토바이의 특성상 앞쪽만 찍는 속도 위반 카메라에 걸리지 않아 벌금을 물지 않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에 대해 보도했다. 기사는 주지사가 오토바이도 앞에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의견을 입법부에 제출하는 것을 늦추고 있다는 RAC의 주장을 담았다.

불만신청인은 기사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활동을 억압하고 사실들을 잘못 전달하여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만신청인은 신문사가 기사 작성에 앞서

오토바이 협회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만신청인은 신문사는 다른 해결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운전자들이 앞 번호판을 부착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사의 핵심은 과속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위험한 태도인데 경찰에 접수된 5개의 가장 위험한 과속사고를 표로 작성해 보여주고 있다.

호주 신문평의회는 불만신청인의 주장대로 기사가 문제를 깊이 파고들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이 기사가 다른 관점을 억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불만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 호주 사례 3

#### 기사 제목이나 사진 등을 통해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신속히 정정되어야 한다

호주 신문평의회는 전(前) 호주 방위 사령부 사령관 피터 코스그로브 장군이 『더 오스트레일리안』을 상대로 제기한 불만신청을 인정했다.

불만신청인은 더 오스트레일리안이 지난 2005년 12월 23일자 1면 「무단이탈한 코스그로브의 아들, 육군에서 방출되다」 제하의 기사에서 불만신청인의 아들인 데이빗이 “막사에서 무단이탈하고 영창에 구금된 후 육군 측으로부터 방출당했다”라고 보도하자 허위의 사실을 보도했다며 불만신청을 냈다. 불만신청인은 기자들이 “유명 인사가 아닌 개인의 일상적인 일에 당사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개입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문사 측은 불만신청인이 호주 신문평의회로 불만신청을 낸 다음 날, 『더 워크엔드 오스트레일리안』에 「코스그로브, 군대의 아들을 위해 투쟁을 시작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호주 신문평의회로 보낸 불만신청인의 편지에 입각하여 작성된 이 기사는 문제가 되고 있는 기사의 내용을 반박하는 불만신청인의 진술을

담고 있다. 이 기사에는 불만신청인의 아들인 데이빗 코스그로브가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행정적인 통지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의 전역 요청에 의해 제대한 것”이라는 군사령관 피터 레히 장군의 편지도 포함하고 있다.

호주 신문평의회는 과거에 사회 유명인사의 가족에 대한 보도가

대중적 관심사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었고 현재도 이러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호주 신문평의회는 본 기사에 중대한 오류들이 있는 만큼 불공정과 부정확성에 대한 불만신청인의 불만을 인정했다. 호주 신문평의회는 비록 몇몇 오류는 후속 기사에서 정정되었지만, 정정되지 않은 불공정적인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특히 기사 제목과 불만신청인의 아들 사진이 나란히 배치되었기 때문에 그가 무단이탈을 했다는 암시를 주었고 이는 불공정한 보도 태도라고 밝혔다. □

### 뉴질랜드 사례

#### 명시적인 요청이 없다면 신문사로 보내진 독자의 편지는 신문사의 판단에 따라 공개될 수 있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C. E. 콘세다인이 『NZ 카톨릭』 지를 상대로 제기한 불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링턴 기독교 소속인 불만신청인은 『NZ 카톨릭』지가 지난 2006년 6월 18일자 「Christian Left to Meet」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자 불만신청을 제기했다. 문제의 기사는 위그햄 지역 하원의원이자 진보당 위원장인 짐 앤더튼의 카톨릭 신앙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불만신청인은 사건 신문의 매니저에게 편지를 보내 짐 앤더튼 하

원의원이 천주교도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불만신청인은 앤더튼 하원의원 스스로 신앙심이 깊지 않다고 말해왔으며 앤더튼 의원은 매춘, 낙태, 동성애에 대한 법률을 포함해 기독교의 교리에 맞는 원칙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니저에게 보내진 편지는 의견 청취를 위해 앤더튼 하원의원에게 보내졌고 앤더튼 하원의원의 답변이 2006년 7월 16 ~ 29일자 독자 편지란에 불만신청인의 편지와 함께 게재됐다.

이에 불만신청인은 지난 7월 17

일, 『NZ 카톨릭』지의 매니저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 신문사가 앤더튼 하원의원에 대해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천주교 신자라고 지칭했는지, 또한 어떠한 이유로 신문사에 사적으로 보낸 자신의 편지를 앤더튼 하원의원에게 보내고 그 편지를 공개해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했는지 등을 질의했다. 불만신청인은 앤더튼 하원의원과 어떤 ‘악감정’은 없다고 말하고 신문사로부터 답변을 듣길 원했다.

『NZ 카톨릭』지의 편집장인 개빈 아브라함은 지난 7월 25일에, 불만신청인의 항의에 대한 답변으로 앤더튼 하원의원이 교회와 접촉한 공적 사실을 인용하고 신문사에 보내는 편지는 따로 표시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편집장에게 보내는 편지’로 간주되며 신문평의회가 편지에 ‘발표 금지’라고 명시되어있지 않은 이상 ‘편집장에게 보내는 편지’는 발표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또한 『NZ 카톨릭』지는 불만신청인이 신분을 속이며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는 여러 통의 편지를 받았으며 앤더튼 하원의원이 천주교도인지 여부를 묻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났기에 앤더튼 하원의원에게 문의한 것이고 불만신청인의 편지와 함께 앤더튼 하원의원의 답변을 게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신문사 측의 답변에 대해 불만신청인은 다시 매니저에게 편지를 보내 신문사의 행동에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만신청인은 또다시 신문사가 왜 앤더튼 하원의원을 천주교도라고 판단했으며 자신의 편지가 무슨 이유로 앤더튼 하원의원에게 보내졌는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편집장은 앤더튼 하원의원에게 불만신청인의 편지를 보내고 그 답변을 공개한 것은 보통의 절차를 따른 것이며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결국 불만신청인은 뉴질랜드 신문평의회에 불만을 신청했다. 불만신청인은 자신의 편지를 허락 없이 앤더튼 하원의원에게 보낸 것과 신문사의 매니저에게 문의를 위해 보낸 편지를 애초부터 공개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신문사 측의 태도를 비난하고 “편지의 공개로 인해 큰 수치와 굴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불만신청인과 『NZ 카톨릭』지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비록 불만신청인이 자신의 편지를 신문사의 매니저에게 보냈지만 특별히 신문에 게재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나 표현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편지를 ‘편집

장에게 보내는 편지’로 본 신문사의 입장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유명인사에 관한 문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신문사의 편집장이 앤더튼 하원의원에게 연락을 취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보았다(앤더튼 하원의원은 불만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매춘 합법화를 반대하는 표를 던졌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어느 신문에서나 ‘편집장에게 보내는 편지’ 매우 귀중한 포럼을 제공한다”고 말하고 “신문사로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명시적으로 ‘게재하지 말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편지가 논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신문사로 오는 편지를 취사선택하고 이를 수정하며 지면에 게재해 토론을 장려하는 것 등의 일을 만드는 것은 편집장의 특권이며 다만 이러한 특권으로 인해 특정인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으므로 균형감과 공정성을 확실히 유지할 책임이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신문평의회는 천주교에 대한 믿음의 문제는 신문평의회가 다루기에 적합한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불만신청인의 불만을 인정하지 않았다. □

# 언론과 법

## 언론소송과 판결

### ‘일심회’ 피의자, 조선·중앙에 손배소 “실명·사진·인적사항·회사정보 악의적 공개”

이른바 ‘일심회 사건’ 피의자 가족들이 5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상대로 각각 9,000만 원씩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현재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이정훈 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의 처 구 모 씨, 최기영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의 처 김 모 씨, 손정목 씨의 처 김 모 씨 등 3명은 소장에서 “조선일보는 구속자들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게재하고 사건과 관련 없는 구속자들의 가족과 회사를 게재하는 등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중앙일보 또한 구속자들의 실명과 사진 뿐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선일보와 관련해 “간첩, 간첩단 등으로 표현해 구속자들에 대해 간첩 이미지를 씌우고 확정된 간첩인 것처럼 보도하는 한편 가족들의 실명과 이력까지도 공개해 간첩 가족으로 낙인 찍었다”며 “또한 회사를 악의적으로 보도해 가족들의 경제생활에도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일보에 대해서도 “이 전 위원이 통발어선 선원으로 일하던 99년 5월 독도 근해에서 조업하다 동료 선원을 감금한 뒤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됐다(10월 26일자)는 내용은 명백한 오보”라며 “이 전 위원에 대한 친북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조선과 중앙은 이 같은 보도를 통해 가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피해를 줬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변론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명목 언론인권위원장이 맡았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편집국 한 간부는 “개인들이 간첩혐의로 송치됐기 때문에 간첩, 간첩단이란 표현을 쓴 것”이라며 “보도의 정당성 여부는 법정에서 분명하게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2006년 12월 7일

### 청와대, 조선·문화 ‘일심회’ 보도 정정청구 소송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명예훼손·국민혼란”

청와대가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의 일심회 의혹보도로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고 법원이 28일 밝혔다.

대통령비서실은 소장에서 조선일보의 지난 10월 28일자 <정치권 386, 국정원에 압력>, <간첩단 발표 바로 다음날, 왜 김 원장이 사의를...>, <386 간첩단 ‘수사도중 물러나는 국정원장’>이라는 기사와 같은 달 30일자 <‘국정원 내부 갈등 불거지나’, ‘386 간첩사건 수사과정 김 원장, 일부 간부 마찰’>, <‘압력설 맞다’vs ‘아니다’/사건 보도직후 사의표명>, <수그러들지 않는 국정원장 사임 압력설, 청와대 이틀 만에 ‘황당한 얘기’> 등의 기사 6건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비서실은 이들 기사에 대해 “김승규 원장이 지난 10월 25일 대통령

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386비서진’들을 비롯한 여권의 386들이 ‘일심회’ 피의자들과 교분이 깊다고 전제해 마치 일심회 사건에 연루돼있는 것처럼 막연한 추측이나 무책임한 의혹 부풀리기로 허위보도했다”며 “이 때문에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혼란과 대립을 부추겼다”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은 “즉각 정정보도하라”며 “재판부의 정정보도 결정이 났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엔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문화일보의 10월 27일자 <노 정권 ‘친북기조’와 ‘386 간첩단’>, <핵실험 후 청·통일부 - 국정원 충돌>, <2007년 대선까지 붉게 들이려한 ‘386 간첩단’>라는 기사와 30

일자 <김 국정원장 사퇴의 전말>, 31일자 <김승규 원장 측 “타의에 의한 사퇴” 청 외압설 논란 증폭>, <386 간첩단 수사하는 김승규 국정원 흔들지 말라> 등의 기사 6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대통령비서실은 문화일보에 대한 소장에서 “국정원 수사 피의자들과 수시로 교류하거나 친분관계에 있는 청와대 비서진이 누구인가 밝혀야 하고, 어떤 근거에서 주장하는 것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무책임한 보도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앞서 언론중재위에 이들 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신청했지만 결렬돼 소송을 제기했다.

미디어오늘 2006년 12월 28일

## ‘미자’ 차화연 씨 여성월간지 상대 승소 인터뷰 거절당하고 인터뷰 실은 <여성조선>, <주부생활>에 배상판결

1986년작 TV드라마 <사랑과 야망>의 여주인공 ‘미자’역으로 유명한 차화연 씨가 인터뷰를 거절했음에도 자신에 대한 허위 기사를 내보낸 여성 월간지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29일 차화연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여성월간지 <여성조선>과 <주부생활>이 차 씨에게 각각 1,000만 원씩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문제의 기사는 지난 1986년 <사랑과 야망>으로 연기생활 최고점에 다다랐다가 출연히 연예계를 떠난 차 씨가 평범한 주부로 생활하고 있는 근황을 보도한 것. 지난해 2월 SBS에서 <사랑과 야망>을 다시 만들어 방송하자 원작 드라마의 여주인공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당시 이들 여성지는 차 씨가 ‘20년 만에 입을 열었다’는 식으로 보도했으나, “차 씨는 인터뷰를 거절했음에도 허위

인터뷰로 피해를 입었다”며 잡지 판매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문제의 기사 및 광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초상권 및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잡지들이 차 씨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과 연예계를 떠난 차 씨가 더 이상 공인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들과의 인터뷰를 거절했는데도 피고들은 제목과 그 표현에 있어 독자들로 하여금 상당 부분이 원고와의 인터뷰에 기초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도록 기사를 작성했고, 인터넷에 이 기사를 인용한 글이 다수 게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들은 원고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연예계를 은퇴한 후 가정생활에만 전념하고 있어 더 이상 공적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사생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볼 수도 없으며, 사생활 보도에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차 씨가 주장했던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기사 내용이 원고에 대해 주로 긍정적인 측면만 다루고 있고, 기사의 사진들은 이미 공개돼 있거나 원고의 동의를 바탕으로 촬영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여성조선>, <주부생활>과 함께 소송을 당한 <여성동아>의 보도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정도로 사생활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힘들며, 인터뷰 기사가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오마이뉴스 2007년 1월 30일

## 홍보처 ‘신문사실’ 반론보도 청구 패소 서울고법 “의견·비평은 반론대상 안 돼”, “동아일보에 1,889만 원 지급하라” 판결

국정홍보처가 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패소해 언론사에 1,889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이 금액은 언론사가 1심 판결 후 국정홍보처의 반론을 실어준 것과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 결과를 언론사가 보도하는 것을 광고비용으로 환산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조용구)는 국정홍보처가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국정홍보처는 1,889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또 “동아일보는 ‘국정홍보처, 당사 상대 반론보도 청구 패소’라는 기사를 보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언론 보

도 가운데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의견 표명이나 비평’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과거 환송 취지에 따라 나온 것이다.

국정홍보처는 2001년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10일 동안 4차례에 걸쳐 성명을 발표,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일부 언론이 편향·왜곡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그해 7월 4일자 기사와 사실을 통해 “사실에 한 번 꼴로 언론보도를 공격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정부 일각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언론 본연의 보도와 비판을 국정수행 방해나 국론분열 조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보도했다. 국정홍보처는 이에 대해 반론보도를 청구했고, 1심 법원은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동아일보는 그해 10월 25일 반론보도문을 실었다.

그 뒤 동아일보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결국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언론 보도의 본질적인 핵심이 사실 전달보다는 의견 표명에 있을 경우,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이날 “문제의 기사들은 의견 표명이나 논평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론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 2007년 1월 25일

## 대법 "이종기 변호사 명예훼손 인정" MBC에 7,000만 원 지급 판결

대법원 1부는 25일 대전 법조비리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종기 변호사가 MBC와 소속 PD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개인 비리의 단순 폭로에 불과해 명예훼손이

인정되므로 7,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BC가 뉴스와 PD수첩에서 이 변호사가 관감사들에게

항응을 제공하고 비도덕적인 사건수임 및 부당한 변론 활동을 했으며,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고 보도한 것은 모두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2007년 1월 26일

## 기장 총회, 비리 의혹 보도 YTN에 강력대응 방침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총회비리 의혹'을 보도한 일부 언론사에 대해 강력한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또 총회본부를 압수수색한 경찰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총회 임직원을 고소한 관계자들에게 대해서는 교단 차원에서 징계기로 결정했다.

기장 총회 교회와 사회위원회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YTN의 불법적인 취재 방식과 무책임한 논조는 사회적 공신인 언론의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며 "교회뿐 아니라 우리 국민 누구나도 언론의 횡포에 의해 무고하게 고난 받아

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장 총회에 따르면 YTN 취재진은 총회 본부 임직원이 퇴근한 저녁시간에 예고 없이 사무실에 침입, 사건과 관련 없는 문서들을 촬영했다. 총회는 또 "편집 과정에서 총회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돈다발 등의 장면을 삽입해 마치 부정한 돈이 오간 것처럼 비치게 한 점은 명백한 왜곡 보도"라고 주장했다.

기장 총회는 경찰 수사와 관련, "최대한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교단은 깊고 큰 상처를 입게 됐다"면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앞서 18일 총회는 대전에서 임시실행위원회를 열어 7인 징계위원회를 구성, 총회 임직원 등을 고소한 관련자 등을 교회법으로 징계기로 했다.

총회는 이번 사태가 기장 교단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관련자들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총회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 고소를 당한 총회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2006년 12월 19일

## 대전방송, 학교급식 관련 방송 '손배소' 승소

학교급식 문제를 기획물로 다뤘다 급식납품업자와 민사소송에 휘말렸던 대전방송이 재판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11단독(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은 대전 모 급식업체 대표 김 모 씨(52)가 대전방송(대표 이 모 씨)과 대전 모 여중 교사 권 모 씨(49)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전방송이 지난 2005년 제작, 방영한 '학교급식, 무엇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등 학교급식과 관련된 기획취재보도물은 학교급식의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대전방송의 보도내

용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나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데다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방송내용으로만 봐서는 이 같은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피고의) 제작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급식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주제를 구별해 방영했고 원고가 수입농산물을 사용한다는 등의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수입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없어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더욱이 이번 사건 방송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도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 권 씨가 방송에서 인터뷰한 내용도 전반적인 학교급식의 문제점에 대한 개인의견을 밝힌 것이지 원고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전 모 여중·고의 급식위탁업체인 대전 A도시락 대표 김 씨는 지난 2005년 말 대전방송이 방영한 학교급식 관련 기획물이 자사의 신용도와 명예를 훼손해 영업상 피해를 끼쳤으며 1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대전방송은 지난 2005년 학교급식의 다양한 문제점을 취재, 제작해 '현장리포트'란 프로그램을 통해 3부작으로 방영했었다.

뉴스 2007년 1월 24일

## 현직 판사, 문화일보 상대 1억 원 손해소 조미옥 판사 "개인병력, 허위사실 확인없이 보도", 문화 "취재한 내용 보도했을 뿐"

현직판사가 자신의 재판 연기 사유를 보도한 문화일보와 기자에 대해 당사자 확인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으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방법원 민사50부 조미옥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판사였던 지난 15일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의 포스코 상대 위자료 청구소송 선고공판을 연기한 것과 관련해 "몸이 아프다. 혈압이 높아져 선고를 연기했다"고 보도한 문화일보에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화일보는 지난 15일자 7면 〈판사 "몸이 아파서..."〉에서 "조 판사는...선고 공판을 돌연 연기했다"며 "조 판사는 이날 공판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태평양 전쟁 유족 사건의 경우 심리할 부분이 더 있다고 판단돼 변론 재개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문화는 이어 조 판사가 원고들에게 선고 연기를 통보해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선고 연기는 원래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통보하는 것이지 미리 통보해주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대법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조 판사가 최근

혈압이 높아져 의사들이 휴식을 권유했고, 이 때문에 휴직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문화는 이와 함께 "한편, 조 판사는 지난해 3월 아파트를 무단 증축했다며 구청이 2차레에 걸쳐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적정성 여부를 심리하면서 같은 원고의 동일 사건에 대해 한 달의 시차를 두고 상반된 결정을 내려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며 "당시 조 판사는 언론에 이 사실이 보도되자 연락을 끊고 휴가를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조 판사는 첫 번째 사건에 대해 전향적 판단을 했다가 이후 생각을 바꾼 것 같다'고 해명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조 판사는 소장에서 '혈압이 높아져 휴직까지 고려했다'는 보도에 대해 "원고의 개인적인 사항으로 가족도 모르도록 한 부분임에도 원고의 동의도 없이 대법원 관계자의 출처를 알 수 없는 보도를 했다"며 "수차례 개인병력을 기사화하지 말 것을 부탁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또한 구청의 이행강제금 적정성에 대한 두 차례의 상반된 판결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히 상반된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

적인 확인 없이 보도할 성질의 내용이 아니었으며 보도 전에 정식 인터뷰조차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판사는 '당시 사건이 문제가 돼 휴가신청을 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이 문제되기 10여 일 전에 아이들과 함께 하는 휴가를 신청한 것으로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휴가를 간 게 아니었다"며 "이 부분 역시 본인에게 충분한 확인도 거치지 않고 허위보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판사는 마지막으로 "내 아이들이 좀 더 커서 자신의 어머니가 '구설수에 올랐다', '무단으로 갑자기 휴가를 떠나 버렸다', '무책임한 사람이었다'는 기사를 접했을 때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내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후회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에 판사로서는 어려운 소송을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기사를 쓴 문화일보 노운정 기자는 "취재한 내용에 따라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보도한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화일보 2007년 2월 22일

## 1일 방문자 30만 이상 포털 제한적 실명제 실시

하루 평균 이용자 30만 명 이상의 포털과 이용자 20만 명 이상의 인터넷 언론은 7월부터 제한적 인터넷 본인확인제(실명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쓸 때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나 회원 로그인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제도다. 본인 확인만 거치면 가명이나 필명을 써도 문제가 없다.

정보통신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

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서다.

포털이나 인터넷 언론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정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서비스 제공자

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4분기(10~12월) 기준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30만 명을 넘는 포털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닷컴 등 16개이며 인터넷 언론은 동아닷컴과 조선닷컴 등 9개사이다.

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중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할 예정이다.

동아일보 2007년 2월 23일

- 강경근(2006). 언론의 자유와 신문관련법제. 언론과 법, 통권 제5권 1호, 69-142.
- 강남준(2006, 겨울). 미국방송협회(NAB) 자율심의제도의 변천과정 - 한국방송심의제도에 던지는 함의. 방송연구, 통권 제63호, 179-207.
- 고민수(2006). 의견형성의 다양성 보장과 다원성 원리 : 방송에서의 다양성 보장 수단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통권 제5권 1호, 551-577.
- 고창실(2006, 겨울). 신문법과 방송법을 중심으로 살펴본 언론의 책임. 언론중재, 통권 제101호, 126-127.
- 곽기성(2006, 하권). 호주의 디지털 정책과 미디어 개혁. 세계의 언론법제, 통권 제20호, 169-199.
- 김상환(2006). 반론보도 심판청구 사건 : 반론보도청구권의 요건 등에 관한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에 대한 평석. 언론과 법, 통권 제5권 1호, 439-490.
- 김이찬(2006, 하반기). KBS '열린채널' 과 시청자 액세스스권: '열린채널'을 '퍼블릭 액세스'로 바로세우기. 열린미디어와 열린사회, 통권 제18호, 128-139.
- 김주연(2006). 신뢰회복을 위한 언론윤리 확보 방안. 한국기자협회 주최 '전국신문방송통신기자세미나' 발제논문. 2006. 12. 14.
- 김창규(2006). 방송통신융합구조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해결방안 모색.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주최 '방송통신융합 하의 심의 어떻게 할 것인가 III - 방송통신융합 구조개편 쟁점과 통합적 내용규제기구 검토를 중심으로' 토론회 발제논문. 2006. 12. 5.
- 김창룡(2006). 신뢰받는 기자상. 한국기자협회 주최 '전국신문방송통신기자세미나' 발제논문. 2006. 12. 14.
- 김창룡(2006, 하권). 말레이시아의 언론과 인터넷 관련 법제. 세계의 언론법제, 통권 제20호, 142-165.
- 김창룡(2007, 1월). 신문법 개정과 신문 지원 정책. 신문과 방송, 통권 제433호, 8-11.
- 김형태(2007, 1월). 이승복 사건과 X 파일 판결을 보고. 신문과 방송, 통권 제433호, 68-73.
- 나낙균(2006, 겨울). 독일의 언론관계법 및 언론피해구제제도. 언론중재, 통권 제101호, 62-73.
- 남봉우(2006). 2007년 대선과 언론보도의 유의점. 한국기자협회 주최 '전국신문방송통신기자세미나' 발제논문. 2006. 12. 14.
- 남재일(2006). 한국 언론 윤리 현황과 과제. 서울: 한국언론재단.
- 문재완(2006). 선거방송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문제점 연구. 방송문화연구, 제18권 2호, 65-93.
- 문재완(2007, 1월). 반론권의 예외는 어디까지인가. 신문과 방송, 통권 제433호, 136-139.
- 박성호(2007, 1월). 방송통신융합위원회 전망과 과제. 신문과 방송, 통권 제433호, 16-21.
- 박용상(2006). 인터넷 실명제와 ISP의 책임 : 입법적 고찰. 언론과 법, 통권 제5권 1호, 491-548.
- 박재선(2007, 1월). 법을 알고 기사 쓰기 10 - 언론보도로 침해되는 인격권과 분쟁 대처 방안. 신문과 방송, 통권 제433호, 132-135.
- 박재선(2007, 2월). 법을 알고 기사 쓰기 11 - 선거후보자에 대한 비리보도와 언론사의 책임. 신문과 방송, 통권 제434호, 162-165.
- 브룬힐데 슈테클러(2007). 독일의 인터넷 법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성선제(2006, 하권). 미국의 인터넷 관련법과 판례. 세계의 언론법제, 통권 제20호, 118-140.
- 송종길·박상호(2006). 대통령후보 TV 토론의 법적·제도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방송문화연구,

- 제18권 2호, 37-64.
- 안정민(2006). 디지털 컨버전스와 방송규제. 서울: 한국학술정보.
- 안효걸(2006).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타인 기사의 책임과 그 한계. 언론과 법, 통권 제5권 1호, 339-384.
- 양문석(2007, 2월). 공기관 운영법·방통위법이 공영방송에 미치는 영향 - 정부 개입 통로, 정치 세력 개입 우려. 신문과 방송, 통권 제434호, 142-147.
- 양재규(2006, 겨울). 포털뉴스의 피해구제방안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언론중재, 통권 제101호, 21-43.
- 유일상(2006). 신문의 기능과 신문관계법. 언론과 법, 통권 제5권 1호, 143-190.
- 이광진(2006, 하권). 인터넷 시대의 명예훼손 규제. 세계의 언론법제, 통권 제20호, 53-84.
- 이민영(2006, 하권). 인터넷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 세계의 언론법제, 통권 제20호, 7-47.
- 이상정(2006, 하권).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 보호 제도. 세계의 언론법제, 통권 제20호, 88-116.
- 이승선(2007). X 파일 유죄판결과 시사저널 사태에 대한 언론법제적 고찰.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포럼 발제논문. 2007. 2. 14.
- 이승선, 김경호(2006). 댓글의 문제점과 인터넷 언론매체의 책임. 언론과 법, 통권 제5권 1호, 385-415.
- 이승한(2006, 겨울). 인격권에 관한 2006년 판결례. 언론중재, 통권 제101호, 74-83.
- 이영록(2007, 1월). UCC의 성장과 저작권. 신문과 방송, 통권 제433호, 128-131.
- 장영수(2006). 정부와 언론 - 신문법의 의의와 개정방향. 대한언론학회 주최 토론회 발제논문. 2006. 11. 14.
- 정찬형(2006). 신문기업의 지배(소유)구조 및 유통구조와 신문관계법. 언론과 법, 통권 제5권 1호, 191-238.
- 조준상(2006, 하반기). 신문법 개정과 쟁점방향: 신문법 개정\_신문-방송 교차소유 및 경영 금지... 여론 다양성 보완장치 마련해야. 열린미디어와 열린사회, 통권 제18호, 22-43.
- 최대권(2006). 자유민주주의의 후퇴인가? : 새로 개정된 언론관련법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통권 제5권 1호, 239-262.
- 한영학(2006, 하권). 일본의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규제 체계 변화. 세계의 언론법제, 통권 제20호, 203-235.
- 한위수(2006, 겨울). 새 언론중재제도의 성과와 개선점. 언론중재, 통권 제101호, 5-20.
- 현대원(2007, 1월). 집중점검 IPTV - 정책과 법제. 신문과 방송, 통권 제433호, 38-41.
- 황성기(2006). 통합내용규제기구모델의 설계 배경 및 법률적 검토.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주최 '방송통신융합 하의 심의 어떻게 할 것인가 III - 방송통신융합 구조개편 쟁점과 통합적 내용규제기구 검토를 중심으로' 토론회 발제논문. 2006. 12. 5.
- Alfred Choi(2006). 언론매체로서의 인터넷: 그 윤리적·법적 책임\_Internet in Singapore: Issues on Legal & Ethical Responsibilities. 언론과 법, 통권 제5권 1호, 315-338.
- Wushuang Huang(2006). 언론매체로서의 인터넷: 그 윤리적·법적 책임\_A Study on Internet Service Provider's Liability for Defamation and Privacy Infringement. 언론과 법, 통권 제5권 1호, 269-314.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정 : 2005. 1. 1.

시 행 : 2005. 7. 28.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방송”이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1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4.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잡지·기타간행물을 말한다.

5. “정기간행물사업자”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뉴스통신”이라 함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을 말한다.

7. “뉴스통신사업자”라 함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8.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9. “인터넷신문사업자”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0.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1. “언론사의 대표자”라 함은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정기간행물로서 국내에 지사 또는 지국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 “언론분쟁”이라 함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3. “사실적 주장”이라 함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14. “언론보도”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15. “정정보도”라 함은 언론의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6. “반론보도”라 함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①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①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②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

변하며 취재·보도·논평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제5조(인격권의 보장 등)** ①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른 구제절차는 유족이 대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한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때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때에는 형제자매로 하며,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⑤사망한 자에 대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격권침해에 대한 동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 유족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6조(고충처리인)**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

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③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

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언론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총장의 임명동의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결정 및 그 취소결정
5. 그 밖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9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
2.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

천한 자

3.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인, 2인 이내의 부위원장 및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감사는 중재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⑨중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⑪중재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①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및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4.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③중재위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직에서 해촉된다.

**제9조(중재부)** ①중재는 5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 중에서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중재부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중재위원의 제척 등)** ①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중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중재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인 보도 등에 관여한 경우

②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중재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중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사무처)** ①중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두되,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중재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결과를 다음 연

도 2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사무처의 조직, 운영과 그 직원의 보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 중재위원회의 운

영재원은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으로 하되,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재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중재위원 및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 제1절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등

**제14조(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

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자는 3월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언론사가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③언론사의 대표자가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4.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

⑤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을 제외한다.

⑥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언론사는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을 제외한다) 및 방송프로그램, 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

③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법의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

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2절 조 정

**제18조(조정신청)** ①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 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이내에 구술이나 서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며, 피해자가 제14조제1항·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언론사에 먼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한 때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구술로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중재사무소의 담당 직원에게 조정신청의 내용을 진술하고 이의대상인 보도내용과 정정보도청구등을 요청하는 정정보도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은 신청인의 조정신청의 내용을 기재한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당해 조정신청조서에 신청인 및 담당 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조정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신청인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이들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조정)** ①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한다. 관할 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②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이를 소명하여 기일 속행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부는 속행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다시 조정기일을 정하고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⑤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조정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조언하거나 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한다.

⑥변호사 아닌 자가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허가 없이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참고인의 진술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또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⑨조정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⑩조정의 절차와 중재부의 구성방법, 그 관할, 구술신청의 방식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증거조사)** ①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의 규정을 준용하며 중재부는 필요한 경우 그 위원 또는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

집·보고하게 하고 조정기일에 그에 관하여 진술을 명할 수 있다.

③중재부의 장은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회 조정기일 전이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증거자료의 수집·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④중재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 중 “법원”은 “중재부”로, “법관”은 “중재위원”으로, “법원서기”는 “중재위원회 직원”으로 본다.

**제21조(결정)** ①중재부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③중재부는 당사자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직권조정결정)** ①당사자 사이에 합의(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간주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직권조정결정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관여한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인 언론사를 피고로 한다.

**제23조(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조정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때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3절 중재

**제24조(중재)** ①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중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③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제35조·제39조·제41조 내지 제4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척·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중재부가 하고,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한다.

④중재위원의 회피는 중재부의 허가를 요하지 않으며 회피로 인하여 결원된 중재위원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4절 소 송

**제26조(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①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는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제1항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합부의 관할로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5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방송·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정정보도청구등의 소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재판)** ①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는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청구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방송·

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크기·시기·회수·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③법원이 제2항의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취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28조(불복절차)** ①정정보도청구등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통상의 지면게재 사용료 또는 방송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액은 해당된 지면사용료 또는 방송의 통상적인 광고비를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언론관련 소송의 우선처리)** 법원은 언론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30조(손해의 배상)** ①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정정보도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 제5절 시정권고 등

**제32조(시정권고)** 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아닌 자도 제1항의 시정권고를 신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친다.

⑤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⑥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⑦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⑧중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취업금지)** 형법 제357조 또는 제3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언론사의 임원이 되거나 직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2.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3.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

## 제4장 벌칙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다른 규정에 의하여 준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된 보도물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금지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 전 언론보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언론 보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의 청구기간,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 또는 중재 신청기간에 관한 제14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중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

행 당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중재위원 및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를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제25호를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방송법의 규정 중 이 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언론중재위원회 각 지역중재부 및 사무처

■ **서울중재부 및 사무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 •대표 02)397-3114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3010, 3100  
FAX : •상담센터 02)397-3089

-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051)759-7083~4 / FAX:051)759-7093
-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53)763-0020~1 / FAX:053)763-0242
-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062)676-0360~1 / FAX:062)676-0362
-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042)525-0778~9 / FAX:042)525-0768
-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62-6 (미래에셋생명빌딩 2층)  
031)211-9027, 9022 / FAX:031)212-0223
-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033)255-2878~9 / FAX:033)255-2872
-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94-62 (세전빌딩 302호)  
043)286-8083, 8081 / FAX:043)286-8084
-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063)288-0010, 0981 / FAX:063)288-0980
-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사파동 80번지 (보고빌딩 601호)  
055)263-1787, 1780 / FAX:055)263-1769
-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064)722-3328, 3352 / FAX:064)726-3201